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행계획

Yongin-si Public Design
Promotional Plan

제출문

용인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9.

(주)로커스파트너스

- Contents -

I. 개요

1. 진흥계획의 배경 및 근거	08
2. 진흥계획의 목적	09
3. 진흥계획의 범위	09

II. 조사 및 분석

1.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	12
2.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및 사업	16
3. 용인시 공공디자인 현황	25
4. 용인시 공공디자인 의식조사	71
5. 국내·외 사례	82
6. 종합분석	87

III. 기본구상

1. 비전 및 목표	92
2. 추진전략	94

IV. 실천과제

1. 개요	98
2. 시민과 소통하는 공공디자인	101
3. 미래를 여는 공공디자인	104
4.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행정	107

V. 실행계획

1. 조례 개정	112
2. 위원회 운영 방안	125
3. 홍보·교육	130
4. 전담조직(안)	134
5.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136
6. 시민참여방안	138

VI.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1. 가이드라인 체계	146
2. 세부디자인 가이드라인	150

VII.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1. 표준시설물 기본방향	298
2. 가로시설물	302
3. 안내사인	324

1. 진흥계획의 배경 및 근거	08
2. 진흥계획의 목적	09
3. 진흥계획의 범위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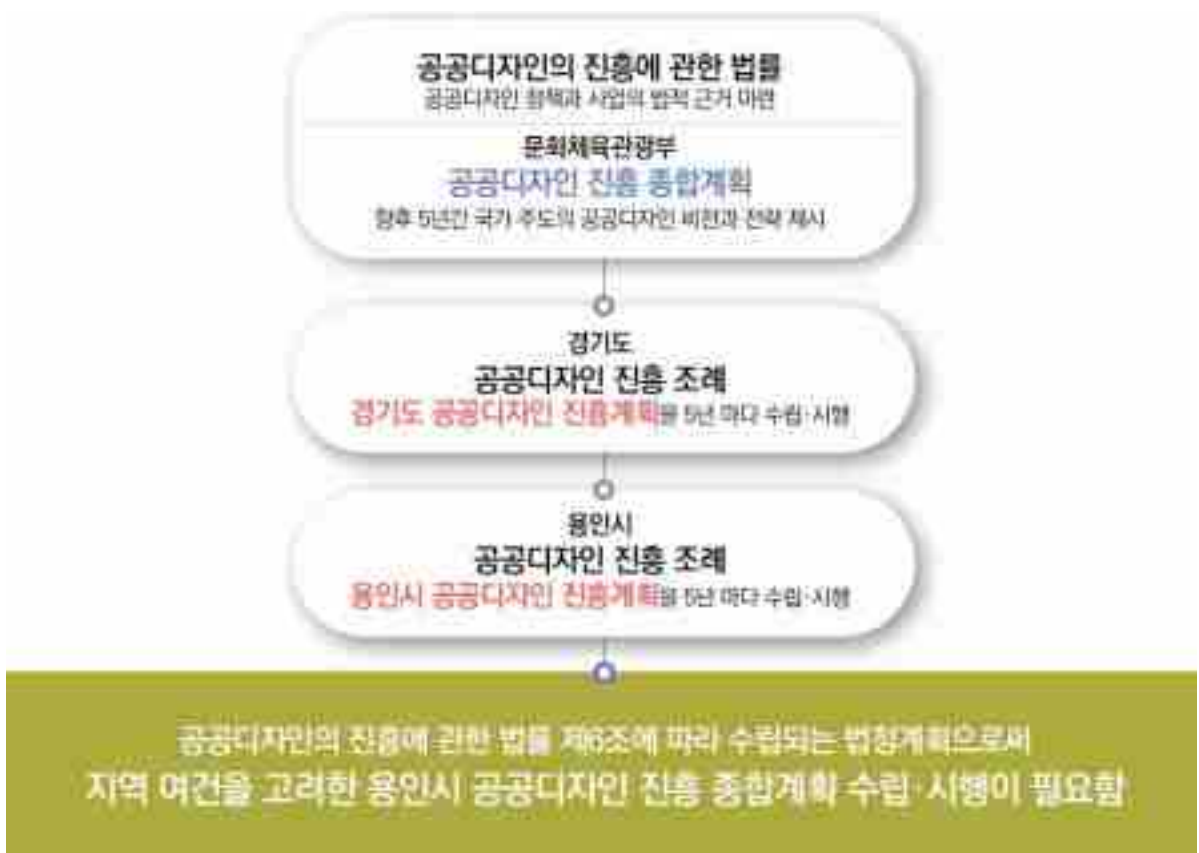
1. 진흥계획의 배경 및 근거

1.1 배경

- 공공디자인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디자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효과를 통해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가장 유연하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공공디자인 요소에 장식적인 요소를 과다하게 가미함으로써 생활 속 시각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종래 사업에서는 미적인 효과만을 강조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대함에 따라, 공공디자인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에 집중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고령화 및 1인 가구, 다문화 가족이 증가로 인해 사회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대형 사고의 증가, 새로운 유형의 범죄 발생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보편적 복지가 대두되면서 공공디자인의 대상도 특정 대상이 아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변화함에 따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으면서도 이용이 편리한 수준의 공공성 실현이 요구된다.
- 과시적이며 전시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공간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기반으로 용인시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과정과 방법을 통한 공공디자인 계획 및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근거

-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정책 수립 근거는 다음과 같다.



2. 진흥계획의 목적

용인시 정체성 구현을 위한 도시디자인 비전 및 실행계획 수립

- 용인시의 역점 추진정책 및 역사, 문화, 생활상, 지역경제, 잠재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비전 및 미래지향적 실행계획을 설정한다.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디자인 주체 및 적용 시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중복설계나 디자인이미지의 일관성 부족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용인시가 지향하는 공공디자인의 환경을 실현한다.

사람중심의 품격 높은 도시브랜드 창출

- 공간환경의 개선을 통해 시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구현하고 공공디자인의 올바른 가치를 공유한다.

3. 진흥계획의 범위

3.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0년
- 목표연도 : 단기 2024년, 장기 2030년

3.2 공간적 범위

- 용인시 행정구역 전체

행정구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행정 읍·면·동	포곡읍, 모현읍,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 동백3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1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2동, 성북동



3.3 내용적 범위

-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실천과제, 실행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의 주요한 내용으로 계획한다.
- 1)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2) 용인시 공공디자인 현황 조사 및 분석
- 3) 용인시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개선
- 4)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활용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 5) 용인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개발
- 6) 용인시 공공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재정비
- 7)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재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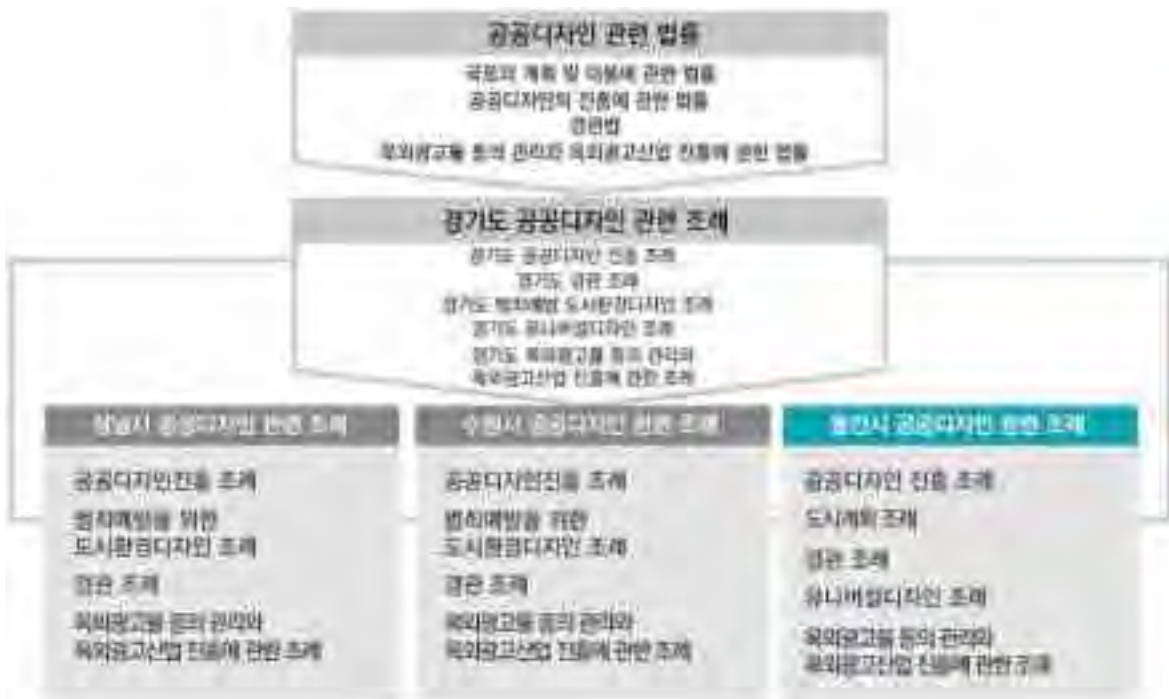
1.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	12
2.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및 사업	16
3. 용인시 공공디자인 현황	25
4. 용인시 공공디자인 의식조사	71
5. 국내·외 사례	82
6. 종합 분석	87

1.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

1.1 개요

- 공공디자인을 근간으로 하는 상위개념의 유사법규·계획·정책·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용인시 공공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 용인시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는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용인시 경관 조례,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용인시 상징물 조례가 있다.
- 용인시 관련 조례는 [3. 용인시 공공디자인 현황]에서 분석하였다.

공공디자인 관련 법규·제도 조사		
법규	조례	타 지자체 조례
법(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부령) 등	광역 조례, 기초단체 조례, 시행규칙 등	디자인 관련 조례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유관 조례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등이 있음

1.2 공공디자인 관련 법규

- 용인시의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경관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다.
- 공공디자인 조례 및 사업은 도시계획과 경관계획 등 법정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들의 현황 및 특성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

구분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관법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구분	목적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경관 조례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경기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타 지자체 관련조례

구분	목적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성남시의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성남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수원시의 공공디자인 및 도시 이미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도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용인시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구분	목적
도시계획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관 조례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용인시 공공시설을 비롯한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구분	주요내용
공공디자인의 목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것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 방법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진흥계획을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심의사항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등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8조제2항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광역, 기초지자체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등)에는 공통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환경 조성 및 지역의 정체성 제고

✓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는 상위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유관조례와의 연계에 중점을 두어 제정되었음
✓ 다만, 사업시행 시 유관조례에 의해 사업내용에 대한 중복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따라 중복검토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일 방안이 필요함

2.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및 사업

2.1 개요

-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연관이 있는 상위계획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 공공디자인 상위 계획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있다.
- 용인시의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은 2035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2030 용인시 경관계획, 2025 용인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다.
- 용인시 관련 계획 및 사업은 [3. 용인시 공공디자인 현황]에서 분석하였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상위계획과 유관계획은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중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필요

2.2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1)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문화체육관광부)_2018~2022

-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부처별, 지자체별로 추진되던 사업과 정책을 부처와 지역(지자체)이 협력·연계하는 형태로 탈바꿈하여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모형 개발사업과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 과정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시설물, 용품, 시각매체 등의 물리적, 시각적 매체에 한정된 공공디자인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도구, 체계 등을 포괄하는 공공디자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

• 비전

비전	안전하고 편리하며 품격 있는 삶
목표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생활 안전 마을 35곳/생활편의 도시 67곳/ 품격 도시 30곳 구축

• 추진전략

생활 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공공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 교통안전 디자인 · 재난대비 안전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 조성 ·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 교통 거점지 안내체계 개선 · 이용하기 쉬운 체육·관광시설 만들기 · 이용하기 좋은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 · 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 · 도시 틈새 공간 활성화 디자인 · 고품격 야간 문화·관광 환경조명 디자인 · 공공시각 이미지 품격 제고 및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 확대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 공공디자인 R&D 기반 조성 · 공공디자인 관리 및 검수체계 구축 	

- 공공디자인 관리 및 검수체계 구축의 세부 전략 중 ‘공공디자인 통합 조례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자체 인구 규모, 지역 특성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통합 운영 방안 개발 및 지자체 관련 부서의 협업을 유도하며 모범이 없는 유니버설·범죄 예방·사회문제 해결 등을 통합하는 조례안 개발

✓ 부처와 지역이 협력·연계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운영
 ✓ 공공디자인, 경관,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2) 경기도 종합계획_2012~2020

- 계획의 비전
 - 경기도 발전 비전을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로 설정
 - 환황해권의 중심(Hub of Yellow Sea Rim)은 경기도가 우리나라 국가 경제 및 국민 경제의 엔진역할을 수행하고, 환황해권 메가경제권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 더불어 사는 사회(Smart Life)는 경기도가 계층, 출신지역, 국적에 상관없이 용광로(melting pot)가 되어 누구나 꿈을 실현하는 지역이 될 것을 지향한다.

- 4대 목표 및 권역별 발전전략
 - 용인시는 경부권역에 속하고 있으며 경부권역의 핵심전략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 지역으로 역할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실현	건강한 녹색사회의 실현	살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 조성
1. 수도권 Grand R&D 벨트			
2. 수원화성 - 용인민속촌 - 에버랜드 역사문화관광 벨트			
3. 제2경부고속도로 (성남 - 용인 - 안성) 주변지역 개발			
4. 경기 남부지역 내륙 산업 · 물류 클러스터			
5. 향유와 체험의 녹지인프라 구축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일류도시의 방향성으로 발전방향 및 전략을 마련하였다.

구분	내용	
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간 균형발전 - 첨단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문화 진흥 - 환경생태 보전
발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 우위의 지역경쟁력 확보 디지털 시대의 지식기반 산업도시 역사문화·관광·레저가 공존하는 도시 역량 있는 인재 육성의 교육도시 - 인간중심의 삶의 질 추구 사회적 행복이 최적화된 복지도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및 경제활동의 편리성 제고 고품격 균형개발 계획도시 사통팔달 친환경 첨단교통 도시 - 지역발전 추진역량 강화 자치역량 보유 행정혁신도시 유비쿼터스 실현 정보중심도시

✓ 경기도 종합계획에서는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지역의 역할,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실현, 건강한 녹색사회를 실현하며, 살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 조성을 추진함

(3) 2020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기반 구축, 사업 추진, 평가체계 확립’의 3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6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 명확한 공공디자인 운영체계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기반 구축을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초를 확립한다.
 -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며 품격을 높이는 세부 사업 추진을 통해 실질적 공공디자인을 구현한다.
 - 시·군의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와 평가로 지속적인 공공디자인 발전을 유도하는 공공디자인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비전 및 목표

비전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공공디자인
목표	시·군을 함께 이끌어가고 도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디자인

• 추진전략

추진전략	추진목표	기본방향
기반구축	명확한 공공디자인 운영체계 및 관리를 통한 튼튼한 기반 구축	1. 기초를 세우는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도민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품격 높은 공공디자인 구축	2.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3. 배려하는 공공디자인
		4. 알기 쉬운 공공디자인
평가 체계 확립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공공디자인 발전 도모	5.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6. 순환하는 공공디자인

기초를 세우는 공공디자인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배려하는 공공디자인
- 공공디자인 조례, 위원회 통합 운영 및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 인력 및 도민 교육 운영 - 우수 공공디자인 통합 인증제 시행	- 어린이 이동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 -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낙후 산업단지 공간환경 개선 사업	-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사업 - 공공의료시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디자인 개선 사업
알기 쉬운 공공디자인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순환하는 공공디자인
-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통합 안내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대형 체육시설 안내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공개공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학교시설을 이용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 공공디자인 모니터링 - 공공디자인 평가지표 개발

✓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는 명확한 공공디자인 운영체계 및 관리 방안과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기반 구축을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초를 마련함

(4) 제1차 경기도 경관기본계획

- 경기도 행정구역 전체(31개 시·군)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경관관리와 지자체의 세부적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과 더불어 아름다운 미래를 여는 경기도」의 미래상을 가지고 거시적 관점에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 용인시의 처인구는 동남 평야권역에, 기흥구, 수지구가 도시화 중심권역에 포함되었다.

구분	경관계획 및 방향설정
시가지 내 고가도로 등 위압적 구조물 경관 관리	- 기흥구, 수지구 시가지를 지나는 경전철 철로로 인한 위압적 경관의 경감을 위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녹지경관 조망 확보를 위한 경관 형성	- 기흥구, 수지구 용인서울고속도로 서분당IC-광교IC구간에서 광고산으로의 조망관리방안 마련 불투명하고 원색적인 방음벽 등으로 조망이 차단되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수변경관 조망 확보를 위한 경관형성	- 기흥구, 수지구 수변을 따라 고층 아파트가 입지하여 조망이 차단되므로 조망축 확보를 통한 경관 관리방안 마련
수변경관 자원을 활용한 경관시범사업 실시	- 기흥구, 수지구 성남, 용인 시가지 구간은 수변공간이 양호한 정비 상태를 보이고,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어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관관리방안 마련 고층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도심 내 녹지가 부족하므로 수변 녹화 계획을 통한 경관 정비방안 마련
거점녹지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	- 처인구 동남 평야권역을 가로지르는 녹지축 중 일부로서 농경지 지역 취락지에서 구릉지 경관을 형성하므로 현재 잘 보전된 수려한 경관을 원형 그대로 보전할 수 있는 녹지자원의 보전 및 관리방안 마련 농경지와 산악의 접경지에 대한 녹지경관의 보전과 녹지축 연계성 확보방안 마련 용덕사천 주변 시가지 내 산업시설이 입지하여 녹지 경관의 차폐가 발생하므로 녹지 경관의 보전과 녹지축 연계성 확보방안 마련
수변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	- 처인구 하천을 중심으로 농경지와 조화된 수려한 자연 경관을 연출하므로 자원의 경관보전 방안 마련
시가지 내 중심지 경관관리	- 처인구 용인시 이동면 일대는 특성 없는 획일적 경관 형성으로 도시 이미지 결여 및 정체성이 모호하므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지역적 특성인 도농복합도시적인 성격이 미비하므로 지역성을 강조할 수 있는 테마를 선정하여 이를 활용한 지역 경관관리방안 마련

✓ 제1차 경기도 경관기본계획은 통합적인 경관 관리와 지자체의 세부적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의 기본방향을 제시

(5) 관련 가이드라인

-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2.3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1) 개요

-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계획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현황과 기존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사업의 진척 정도를 분석한다.
 - 검토대상 : 국토 공간계획지원체계 /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분석하여 공공디자인과 연계방안을 연구하였다.
 - 검토대상 :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계획

(2) 관련 사업 조사 내용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용인시가 포함된 지역에 제안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다.

주요전략	구분	사업 내용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공간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 산업의 혁신 촉진 - 혁신공간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산업단지를 혁신 허브로 구조 전환
	산업생태계전환을 통한 지역산업 회복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산업생태계 구축 - 쇠퇴 산업도시의 회복력 제고와 구조전환 촉진 - 노후 산업단지 등 재생·구조고도화 촉진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공간 창출 - 지역 문화·관광산업 혁신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지역 간 협력적 관광자원 발굴 - 재생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문화적 일상의 보편화와 글로벌 문화 경쟁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제약 없이 누리는 문화생활 조성 - 글로벌 문화·관광 서비스 인프라 개선 - 새로운 한류문화 확산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적정 개발과 관리 강화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 도시재생 활성화로 구도심 활력 제고 - 노후 건축물 및 빈집의 계획적 관리와 활용 - 용도지역 운영의 유연화와 분권화 - 개발제한구역 환경적 기능 강화와 관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주거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형 도시생활 공간 조성 - 생활SOC 접근성 제고로 편안한 생활공간 조성 - 새로운 거주 수요에 대응한 주거공간 확충

주요전략	구분	사업 내용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포용적 주거복지의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확대와 주거사각지대 해소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 - 커뮤니티 기반의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 - 미래형 주거서비스 확대와 협력적 주거 거버넌스 운영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안심국토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관리 전(全) 주기 방재체계의 구축이행 -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국토 구축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방재체계 구축 - 사람 중심의 안전 체계 구축 - 지능형 국토방재 기반 구축과 유지관리의 고도화
품격있고 친화적 공간 창출	깨끗하고 환경친화적 국토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강바다 국토환경관리 네트워크 강화 - 녹색인프라 확충 및 환경서비스 접근성 제고 - 오염방치 공간의 복원과 재생 - 첨단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적 국토공간 구현 - 국토-환경분야 정책 협력의 지속적인 이행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공간 조성 - 초국경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공조 확대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에 대한 형평성과 사회적 가치 제고 - 산림생태계 복원과 생태문화 공간화 - 전 주기적 수재해 대응과 물 서비스 강화 - 에너지 소비가 최적화된 도시공간구조 조성 -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갈등관리 강화
	고품격 아름다운 국토경관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과 조화를 통한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 - 통합적 관리를 통한 도시공간의 품격 제고 - 자연과 조화된 농산어촌 경관 조성 -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경관 향상

✓ 제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지역 산업의 특성을 살리며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유니버설 및 범죄 예방) 및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필요함

•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권장사업

-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용인시는 도시+산업·물류+농어촌 권역에 속하고 있다.
- 도시+산업·물류+농어촌 권역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권장사업〉

구분	권장사업 목록
생활안전을 더하는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단위 범죄예방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 - 학교 폭력예방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 - 여성 폭력예방 및 안심디자인 - 재난 대비 공간 및 공공용품 안전디자인 보급
배려하는 공공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 조성 - 모든 이를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 장애인을 위한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고령자·시각장애인 이용이 편한 행정 웹사이트 개선 - 작성자 중심의 간소화된 행정서식 개발, 보급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공공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형 보행자 길 찾기 시스템 디자인 및 시범조성 - 전문상점가로 활성화를 위한 안내체계 디자인 - 터미널 안내체계 개발 - 탐방로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 읽기 쉬운 관광 안내체계 구축 -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건소 실내 공간디자인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마을 단위 시각이미지 디자인 및 시범조성 - 주민들이 행복한 주거공간 디자인 - 미래 문화유산이 될 멋진 골목 보존 디자인 가이드라인 - 도시 주요 공간 공공시설물 통합 개선 - 기초 자치단체 접경 지역 공공시설물 공동개발 및 설치 - 지역축제 공간과 시설물 개선 공공디자인 - 쌈지공원, 노후 어린이공원 활성화 디자인 개선 - 문화·관광자원 품격향상개선 환경조명 디자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중 도시+산업·물류+농어촌 권역 권장사업〉

구분	권장사업 목록
생활안전을 더하는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이동환경 디자인 개선사업 -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낙후 산업단지 공간환경 개선사업
배려하는 공공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건강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사업 - 공공의료시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디자인 개선사업
알기 쉬운 공공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통합안내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개발 - 대형 체육시설 안내체계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학교시설을 이용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의 사업내용 중 도시+산업·물류+농어촌 권역에서 진행을 권장하는 사업은 위와 같이 함께 제시한다.

✓ 용인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위의 모든 성격(도시+산업+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도시로 각 지역의 성격에 맞게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기도는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며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부합하는 계획 필요

3. 용인시 공공디자인 현황

3.1 개요

- 용인시의 공공디자인 관련 유관 조례/계획/사업을 조사하고 용인시 행정기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용인시 공공디자인 행정조직을 인구 및 면적의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하여 용인시 디자인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여건분석

(1) 일반현황

- 용인시는 남북으로 성남과 안성을 잇고 있으며, 동서로는 수원, 화성, 광주, 이천과 연결하는 경기도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 수계로는 경안천, 송전천, 탄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동저수지가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 성남과 수원의 도시 확장으로 북서에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로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다.



면적	591.26km ² (농경지 : 106,93km ² , 임야 : 310.78km ² 대지 : 50.42km ² 기타 : 123.13km ²)
인구	1,091,025명 (처인구 : 267,185명, 기흥구 : 445,658명, 수지구 : 378,182명)
행정 구역	3구, 3읍, 4면, 28동, 1,260통·리, 8,661반
기구	2실, 6국, 1단, 49과·관, 4직속기관, 6사업소
학교	226개소 (초등학교 115개, 중학교 51개, 고등학교 31개, 특수학교 2개, 대학교 13개)

(2) 용인시 연혁



3.3 용인시 인구 현황

(1) 인구 현황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용인시/구/읍·면·동의 인구와 그 구성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한다.
 - 유사 규모의 지자체(수원시, 성남시)와 비교분석을 통해 분석과정의 객관성을 높인다.
 -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와 비교분석을 통해 인구 현황의 특수성을 파악한다.
- 조사 대상지 및 분석 항목
 - 용인시의 처인구(11개), 기흥구(15개), 수지구(9개), 총 35개의 읍·면·동을 조사하였으며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5개 항목에 따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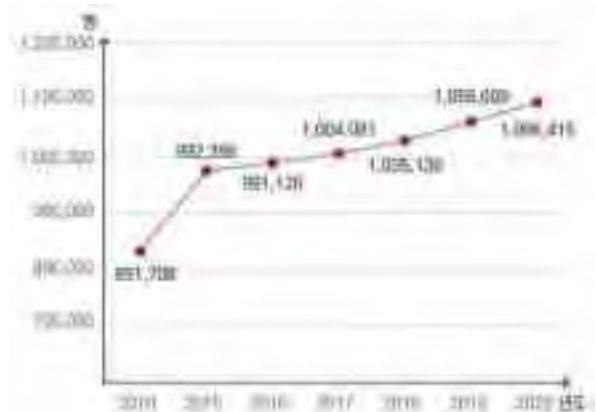


(2) 용인시 인구 변화

2000년대 이후 용인시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되었다.

출처 : GIS (2018년도)

연도	인구수(인)
2010	891,708
2015	992,396
2016	991,126
2017	1,004,081
2018	1,035,126
2019	1,059,609
2020	1,096,415



- 용인시는 지속적인 도시 및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0년 현재 인구 110만명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4) 인구 현황 및 최근 5년간 변화 (2020년 6월 기준)

• 용인시 인구분석



- ✓ 지난 5년간 용인시의 전체 인구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인구수 증가로 인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절대수요 증가
- ✓ 항목 중 가장 많은 인구수 증가량을 보인 노인 인구에 중점을 둔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필요

• 용인시와 경기도 비교

- 용인시와 경기도의 전체 인구수,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인구수의 변화 추이

용인시와 경기도의 인구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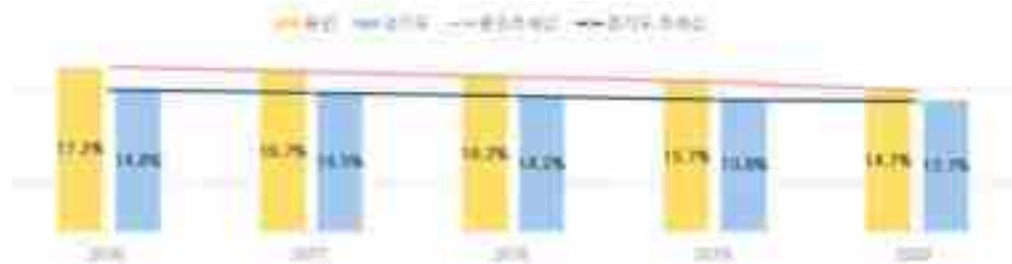
지난 5년간 용인시와 경기도의 전체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용인시와 경기도의 전체 인구수 대비 여성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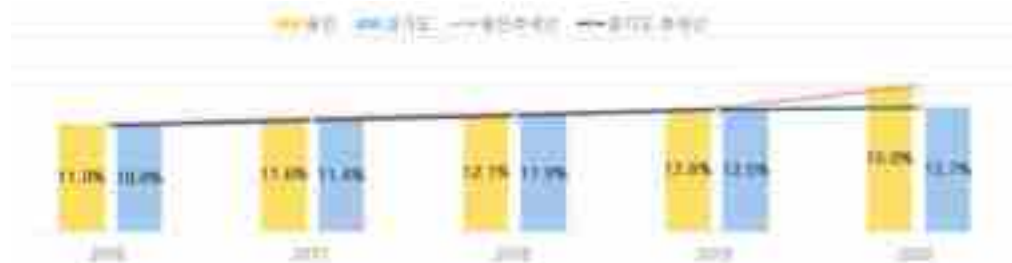
용인시 여성 인구비율은 2019년까지 50.0%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1.2%p 감소했다. 경기도 여성 인구비율은 2019년까지 50.0%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1.2%p 증가하였다.

용인시와 경기도의 전체 인구수 대비 어린이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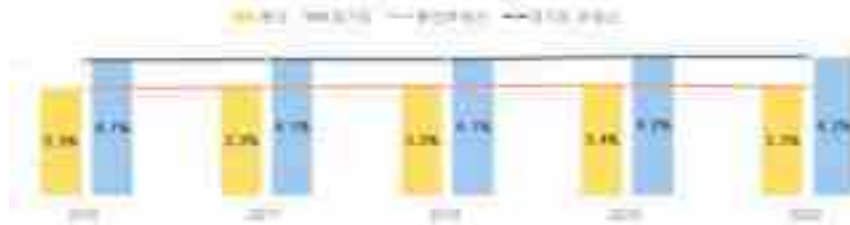
지난 5년간 용인시와 경기도의 어린이 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용인시와 경기도의 전체 인구수 대비 노인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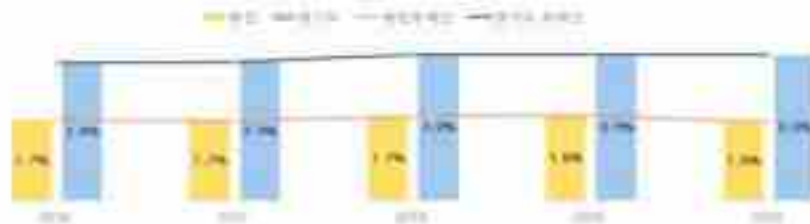
지난 5년간 용인시와 경기도의 노인 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도에 용인시의 노인 인구비율은 전년 대비 3.0%p 증가하여, 경기도에 비해 큰 증가율을 보였다.

용인시와 경기도의 전체 인구수 대비 장애인 인구수



지난 5년간 용인시 장애인 인구비율은 3.3%대 경기도 장애인 인구비율은 4.2%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용인시와 경기도의 전체 인구수 대비 외국인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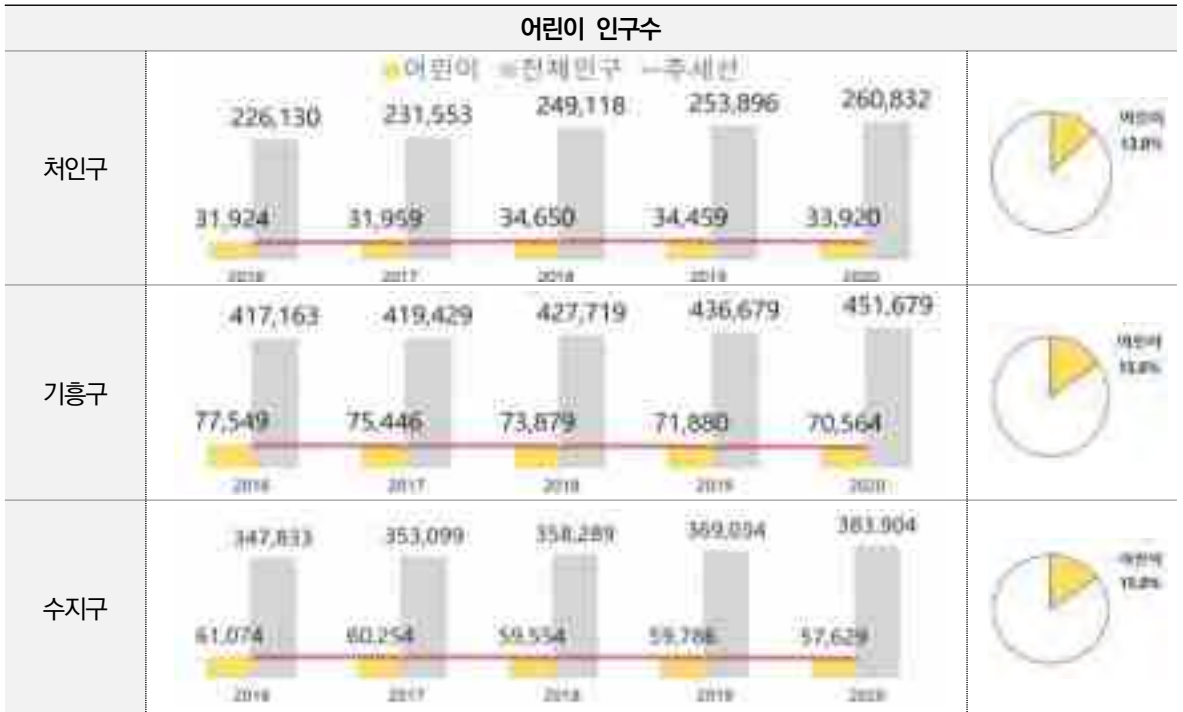
지난 5년간 용인시 외국인 인구비율은 1.7%대 경기도 외국인 인구비율은 3.0%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 ✓ 경기도 여성 인구비율 증가현상과 반대되는 용인시 여성 인구비율 하락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수유실 등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중점을 둔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필요
- ✓ 경기도에 비해 큰 증가율을 보인 용인시의 노인 인구비율 증가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 인구에 중점을 둔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필요

(5)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인구수의 최근 5년간 인구 변화

여성 인구수																																					
<p>처인구</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여성 인구수</th> <th>총인구</th> </tr> </thead> <tbody> <tr> <td>2016</td> <td>110,209</td> <td>226,130</td> </tr> <tr> <td>2017</td> <td>112,811</td> <td>231,553</td> </tr> <tr> <td>2018</td> <td>121,502</td> <td>249,118</td> </tr> <tr> <td>2019</td> <td>123,862</td> <td>253,896</td> </tr> <tr> <td>2020</td> <td>124,431</td> <td>260,832</td> </tr> </tbody> </table>	연도	여성 인구수	총인구	2016	110,209	226,130	2017	112,811	231,553	2018	121,502	249,118	2019	123,862	253,896	2020	124,431	260,832	<p>기흥구</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여성 인구수</th> <th>총인구</th> </tr> </thead> <tbody> <tr> <td>2016</td> <td>210,947</td> <td>417,163</td> </tr> <tr> <td>2017</td> <td>211,881</td> <td>419,429</td> </tr> <tr> <td>2018</td> <td>216,095</td> <td>427,719</td> </tr> <tr> <td>2019</td> <td>220,883</td> <td>436,679</td> </tr> <tr> <td>2020</td> <td>222,708</td> <td>451,679</td> </tr> </tbody> </table>	연도	여성 인구수	총인구	2016	210,947	417,163	2017	211,881	419,429	2018	216,095	427,719	2019	220,883	436,679	2020	222,708	451,679
연도	여성 인구수	총인구																																			
2016	110,209	226,130																																			
2017	112,811	231,553																																			
2018	121,502	249,118																																			
2019	123,862	253,896																																			
2020	124,431	260,832																																			
연도	여성 인구수	총인구																																			
2016	210,947	417,163																																			
2017	211,881	419,429																																			
2018	216,095	427,719																																			
2019	220,883	436,679																																			
2020	222,708	451,679																																			
<p>수지구</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여성 인구수</th> <th>총인구</th> </tr> </thead> <tbody> <tr> <td>2016</td> <td>177,816</td> <td>347,833</td> </tr> <tr> <td>2017</td> <td>180,466</td> <td>353,099</td> </tr> <tr> <td>2018</td> <td>183,327</td> <td>358,269</td> </tr> <tr> <td>2019</td> <td>188,918</td> <td>369,034</td> </tr> <tr> <td>2020</td> <td>192,123</td> <td>381,904</td> </tr> </tbody> </table>	연도	여성 인구수	총인구	2016	177,816	347,833	2017	180,466	353,099	2018	183,327	358,269	2019	188,918	369,034	2020	192,123	381,904																			
연도	여성 인구수	총인구																																			
2016	177,816	347,833																																			
2017	180,466	353,099																																			
2018	183,327	358,269																																			
2019	188,918	369,034																																			
2020	192,123	381,904																																			

- ✓ 3개구 모두 여성 인구수가 증가하였으나, 인구비율은 감소함
- ✓ 다른 구보다 높은 여성 인구비율을 보이는 수지구에 특화된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필요



- ✓ 3개구 모두 어린이 인구수와 인구비율이 감소함
- ✓ 다른 구보다 높은 어린이 인구비율을 보이는 기흥구에 특화된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필요
- ✓ 지속적인 어린이 인구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기존 어린이 관련 유희시설물을 재활용하는 방안 검토



- ✓ 3개구 모두 노인 인구수와 인구비율이 증가함
- ✓ 다른 구보다 높은 노인 인구비율을 보이는 초인구에 특화된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필요



- ✓ 3개구 모두 장애인 인구수가 증가하였으나, 인구비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 다른 구보다 높은 장애인 인구비율을 보이는 처인구에 특화된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필요



- ✓ 3개구 모두 외국인 인구수는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 3개구 모두 외국인 인구비율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 다른 구보다 높은 외국인 인구비율을 보이는 처인구에 특화된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필요

(6) 여성 인구분석

5년간 변화

- 5년간 용인시의 여성 인구수는 8.1% 증가하였으며, 남사면에서 여성 인구수가 245.7%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두 번째로 여성 인구수가 많이 증가한 곳은 구갈동으로 57% 증가하였다.
- 여성 인구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상갈동으로 71.9% 감소하였고, 두 번째는 구갈동으로 10% 감소하였다.



타 지자체

- 여성의 인구비율은 성남시와 용인시가 50%로 같았고, 수원시가 가장 낮은 48%로 나타났다.



구별 비교

- 구별 여성의 인구비율은 수지구가 50%로 가장 높고, 기흥구가 49.3%, 처인구가 47.7%로 나타났다.



읍·면·동 비교

- 여성의 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농동 45.6%, 두 번째로 낮은 지역은 포곡읍 46.5%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성북동 51.7%,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구성동 51.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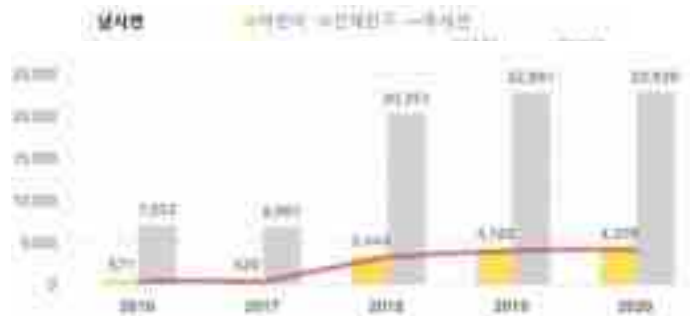


✓ 지난 5년간 용인시의 여성 인구수는 증가하였으나, 여성 인구비율은 감소하였음
 ✓ 용인시의 여성 인구비율은 50%이며 비교 지자체와 유사한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음
 ✓ 성북동이 가장 높은 여성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고, 지역에 따라 약 45.6~51.7% 사이 인구비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7) 어린이 인구분석

5년간 변화

- 5년간 용인시의 어린이 인구는 5.5% 감소하였으며, 남사면에서 어린이 인구수가 654.6%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두 번째로 어린이 인구수가 많이 증가한 곳은 구갈동으로 69.5% 증가하였다.
- 어린이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상갈동으로 80.5% 감소하였고, 두 번째는 동부동으로 28.1% 감소하였다.



타 지자체

- 어린이의 인구비율은 경기도 평균 14%, 용인시가 18%로 가장 높고, 수원시가 13%, 성남시가 12%로 나타났다. (용인 > 수원 > 성남)



구별 비교

- 구별 어린이의 인구비율은 기흥구가 15.6%로 가장 높고, 수지구가 15.0%, 처인구가 13.0%로 나타났다. (기흥구 > 수지구 > 처인구)



읍·면·동 비교

- 어린이의 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백암면 5.4%, 두 번째로 낮은 지역은 모현읍 9.3%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동백동 19.5%,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남사면 18.8%로 나타났다.



- ✓ 지난 5년간 용인시의 어린이 인구수와, 어린이 인구비율은 모두 감소하였음
- ✓ 용인시의 어린이 인구비율은 18%이며 비교 지자체보다 높은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음
- ✓ 동백동이 가장 높은 어린이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고, 지역에 따라 약 5.4~19.5% 사이 인구비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8) 노인 인구분석

5년간 변화

- 5년간 용인시의 노인 인구수는 50.8% 증가하였으며, 서농동에서 노인 인구수가 189.3%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두 번째로 노인 인구수가 많이 증가한 곳은 구갈동으로 146.3% 증가하였다.
- 노인 인구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상갈동으로 56.9% 감소하였고, 두 번째는 백암면으로 0.3% 감소하였다.



타 지자체

- 노인의 인구비율은 경기도 평균 13%, 용인시가 18%로 가장 높고, 성남시가 14%, 수원시가 10%로 나타났다.

(용인 > 성남 > 수원)



구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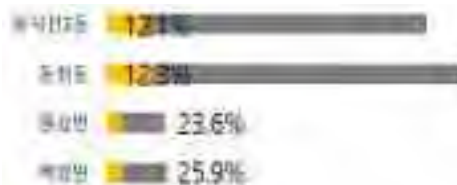
- 구별 노인의 인구비율은 처인구가 15.9%로 가장 높고, 기흥구와 수지구가 14.7%로 나타났다.

(처인구 > 기흥구 = 수지구)



읍·면·동 비교

- 노인의 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풍덕천2동 12.1%, 두 번째로 낮은 지역은 동천동과 영덕동이 12.3%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백암면이 25.9%,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원삼면 23.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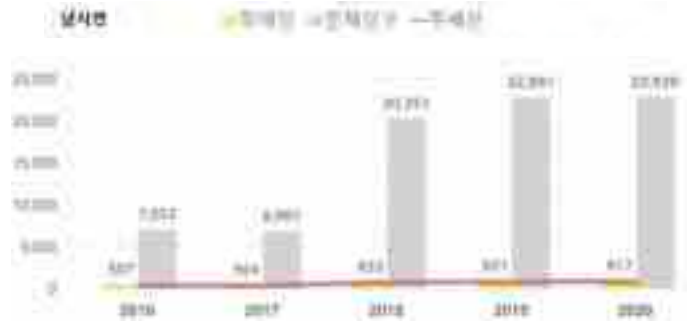


- ✓ 지난 5년간 용인시의 노인 인구수와, 노인 인구비율 모두 증가하였음
- ✓ 용인시의 노인 인구비율은 18%며 비교 지자체보다 높은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음
- ✓ 백암면이 가장 높은 노인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고, 지역에 따라 약 12.1~25.9% 사이 인구비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9) 장애인 인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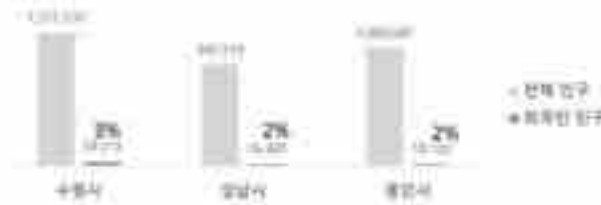
5년간 변화

- 5년간 용인시의 장애인 인구수는 11.8% 증가하였으며, 남사면에서 장애인 인구수가 80.9%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두 번째로 장애인 인구수가 많이 증가한 곳은 구갈동으로 42.2%로 증가하였다.
- 장애인 인구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상갈동으로 63.9% 감소하였고, 두 번째는 중앙동으로 0.6% 감소하였다.



타 지자체

- 장애인의 인구비율은 경기도 평균 4%, 수원시가 3%로 가장 높고, 용인시가 2%, 성남시가 2%로 나타났다. (수원 > 성남 = 용인)



구별 비교

- 구별 장애인의 인구비율은 처인구가 5.0%로 가장 높고, 기흥구가 3.1%, 수지구가 2.3%로 나타났다. (처인구 > 기흥구 > 수지구)



읍·면·동 비교

- 장애인의 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풍덕천2동 1.9%, 두 번째로 낮은 지역은 동천동 2.1%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백암면이 11.7%,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이동읍 7.7%로 나타났다.



✓ 지난 5년간 용인시의 장애인 인구수는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인구비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용인시의 장애인 인구비율은 2%며 비교 지자체와 유사한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음
 ✓ 백암면이 가장 높은 장애인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고, 지역에 따라 약 1.9~11.7% 사이 인구비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10) 외국인 인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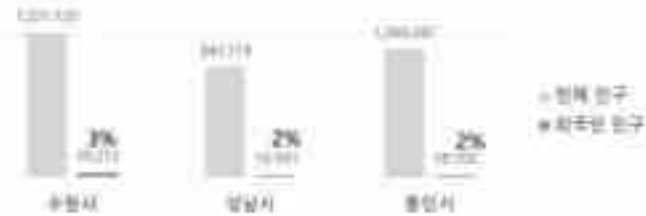
5년간 변화

- 5년간 용인시의 외국인 인구수는 7.2% 증가하였으며, 신봉동에서 외국인 인구수가 44.0%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두 번째로 외국인 인구수가 많이 증가한 곳은 동부동으로 42.6%로 증가하였다.
- 외국인 인구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상갈동으로 51.9% 감소하였고, 두 번째는 남사면으로 27.2% 감소하였다.



타 지자체

- 외국인의 인구비율은 경기도 평균 3%, 수원시가 3%로 가장 높고, 성남시가 2%, 용인시가 2%로 나타났다.
(수원 > 성남 = 용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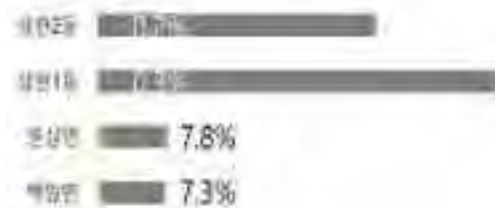
구별 비교

- 구별 외국인의 인구비율은 처인구가 3.8%로 가장 높고, 기흥구가 1.1%, 수지구가 0.7%로 나타났다.
(처인구 > 기흥구 > 수지구)



읍·면·동 비교

- 외국인의 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상현2동 0.2%, 두 번째로 낮은 지역은 상현1동 0.3%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백암면이 7.8%,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원삼면 7.3%로 나타났다.



- ✓ 지난 5년간 용인시의 외국인 인구수는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인구비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 용인시의 외국인 인구비율은 2%며 비교 지자체와 유사한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음
- ✓ 백암면이 가장 높은 외국인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고, 지역에 따라 약 0.2~7.8% 사이 인구비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11)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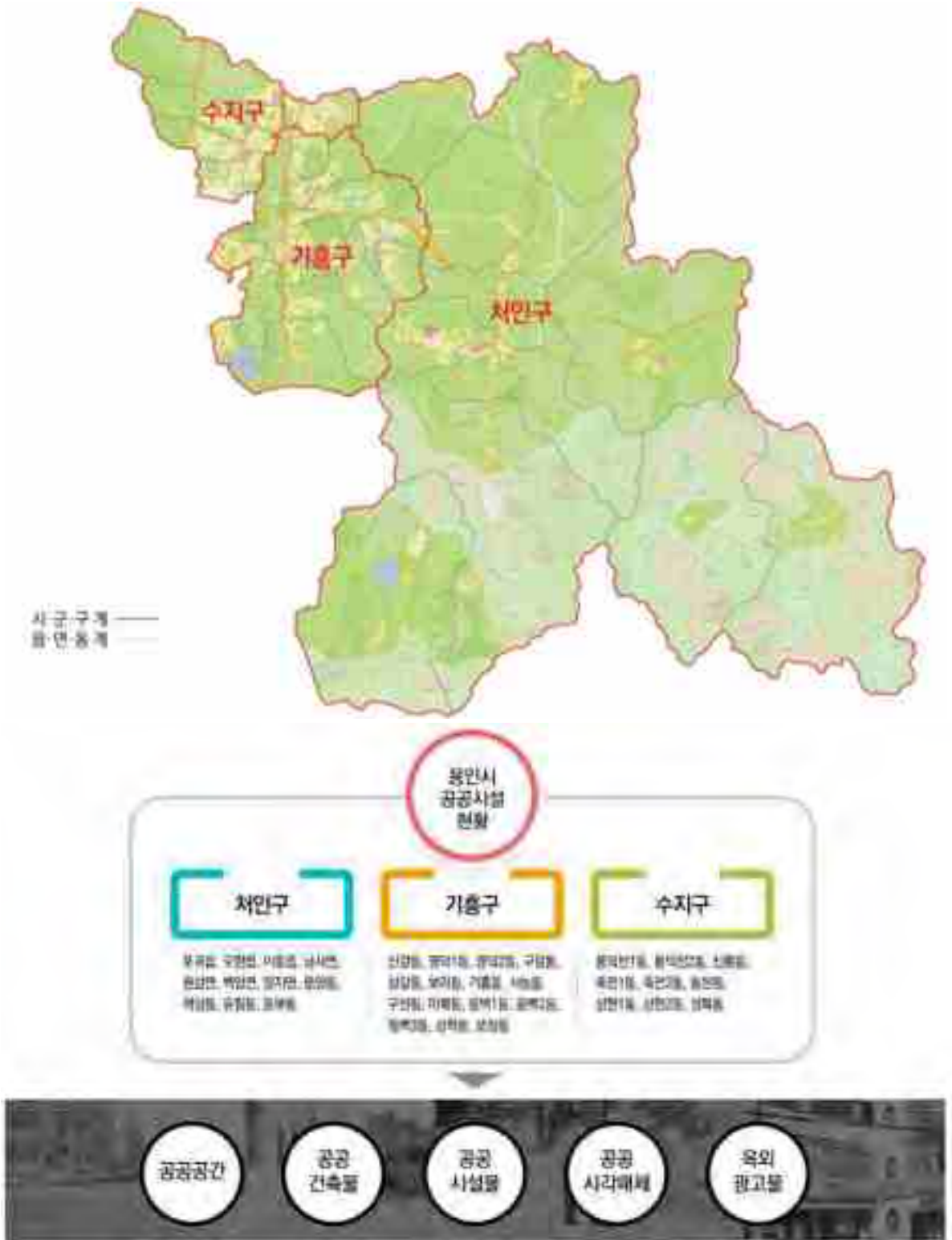
 <p>노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이 필요함 	 <p>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대비 도시의 여성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계획이 필요함 	 <p>어린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기존구획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이 필요함
 <p>장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인구는 약 3.9%의 비율로 유지되고 있으며 저연구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장애인을 배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이 필요함 	 <p>외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인구는 약 1.7%의 비율로 유지되고 있으며 저연구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외국인을 배려하는 공공환경계획의 고려가 필요함 	 <p>타 지자체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의 인구와 어린이 인구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과 어린이에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는 공공디자인 계획이 필요함

- ✓ 용인시 전체 인구수 증가로 인한 개인당 복지혜택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양적 지원확대와 지원대상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필요
- ✓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인구수 증가로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이 높아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증원 필요
- ✓ 고령화 현상 발생에 따라 노인의 생활 및 보행환경에 중점을 둔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필요
- ✓ 여성 및 어린이 등 범죄취약대상자를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계획 수립 필요
- ✓ 타 지자체와 비교를 통해 파악한 용인시 인구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필요

3.3 용인시 지역별 현황

(1) 개요

- 용인시 3개 구 및 읍·면·동별로 5개 분야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2) 공공디자인 현황분석

• 처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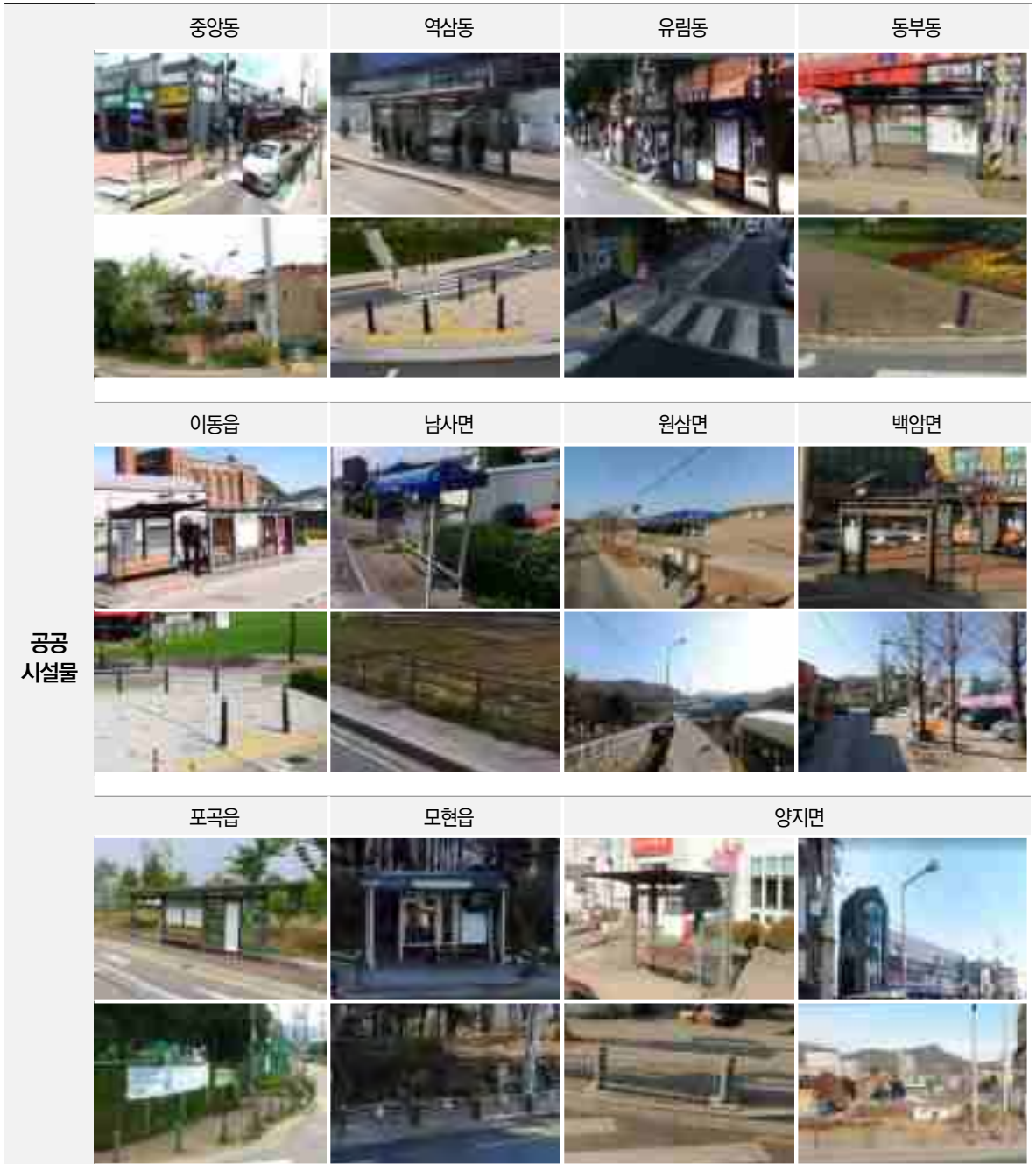
공공 공간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이동읍	남사면
백암면	포곡읍	모현읍	양지면

· 용인시의 원도심 지역은 다양한 공공공간 개선사업으로 보행환경이 개선되었으나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보도 정비가 부족해 보행 편의성이 낮음

· 읍·면 단위 지역들은 비포장도로가 많으며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어려워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음

공공 건축물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이동읍	남사면
백암면	포곡읍	모현읍	양지면

· 용인시청은 비교적 안내사인이 잘 정비되어 있으나 처인구청 및 각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안내사인시설 정비가 취약하며 민원실 이외의 다른 실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일부 농촌지역을 제외한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 볼라드의 정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도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시설물의 정비시기에 따라 시설물의 디자인이 상이하며, 편의시설이 부족함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공공 시각 매체				
				
				
	<p>· 처인구 모든 지역에서 공공시각매체가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해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게시판은 관리소홀로 인해 주변 경관 위해요소로 작용</p>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옥외 광고물				
				
				
	<p>· 간판 정비 사업이 진행된 중앙시장 내 옥외광고물을 제외하고는 간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상업시설이 밀집한 처인구청 주변과 각 읍·면의 상업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p>			

- ✓ 처인구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공공디자인 유지·관리의 편차가 심화되어 있으며, 유지·관리가 부족한 시설물이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보완할 계획수립 필요
- ✓ 또한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않은 공공시각매체와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의 산재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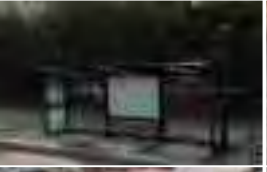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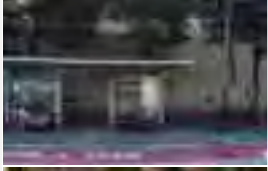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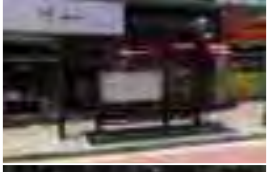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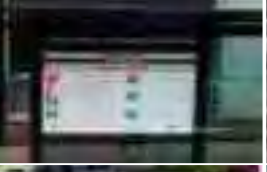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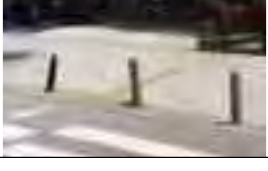


• 기흥구

공공 공간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	동백3동	상하동
	상갈동	마북동	보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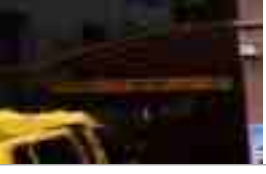





- 기흥구청이 위치한 구갈동과 상갈동은 보행로 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정비가 양호한 편이며 주택가 인근의 어린이 공원 및 근린공원의 정비 또한 잘 되어 있음
- 경기도 박물관 인근의 상갈동과 기흥저수지 인근지역은 보행로의 폭이 좁으며 정비 부족으로 보행환경이 열악한 상황임

공공 건축물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	동백3동	상하동
				
				
	상갈동	마북동	보정동	
				
				

- 최근 신축된 행정복지센터 등의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비교적 잘 적용되어 있음
- 대부분 지역의 공공건축물은 실내·외 사인의 설치가 미비하고, 통일되지 못한 안내사인 디자인으로 사인물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공공 시설물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	동백3동	상하동
				
				
	상갈동	마북동	보정동	
				
				

- 일부 지역은 공공시설물의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은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버스정류장, 보호펜스 등은 주변 색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새롭게 신설된 공공건축물들은 주변 환경의 정비가 잘 되고 있으며 편의·복지 시설물들이 다수 존재

공공 시각 매체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	동백3동	상하동	
				
상갈동	마북동	보정동		
				

- 공원내에 설치된 시각매체는 높은 채도로 인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함
- 지주형 시설물은 통합지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거리가 복잡해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공공 시각 매체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 주로 상업시설이 모여 있는 신갈동과 영덕1,2동, 구갈동, 상갈동에서 상가의 옥외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마관 저하 요인이 되고 있음

- ✓ 기흥구는 신축 공공건축물로 인해 주변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었으나, 보행환경 개선 및 공공시설물, 주변 경관과 조화롭지 않아 공공시각매체와 옥외광고물의 정비 필요

• 수지구

공공 공간	동천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상현1동	상현2동	죽전1동	
				
죽전2동	신봉동	성복동		
				

· 처인구 및 기흥구와 비교하여 보행환경이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학원 밀집지역의 경우 불법주차 차량과 학원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공공 건축물	동천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상현1동	상현2동	죽전1동	
				
죽전2동	신봉동	성복동		
				

· 모든 지역의 공공청사에서 실내·외 사인의 설치가 미비하여 각 실을 찾아가기가 어려운 상황
· 외부 안내사인은 보행자가 가까이 와야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며, 운전자 중심의 안내체계로 보행자는 안내시설을 찾기가 쉽지 않음





✓ 수지구는 처인구·기흥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행환경과 시설물 정비가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물 중 보호펜스와 블라드는 통일된 디자인 적용 필요

(3) 소결



- ✓ 각 지역특색이 반영되면서도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 필요
- ✓ 공공시각매체의 디자인 기준 수립과 편리한 시설이용을 위한 안내시스템 구축
- ✓ 정비가 빈번한 공공시설물의 설치기준과 도시미관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기준 수립

3.4 용인시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1) 관련조례

①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용인시의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4가지 제시
 -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한다.
 -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계획한다.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 진흥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용인시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
-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용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문제점

-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공공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 주택 및 사업지역 등 개발 시 공공시설물 설치 유도

③ 용인시 경관 조례

-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 시의 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경관계획, 사업, 협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경관사업과 연계되는 공공디자인 사업 및 경관협정을 통한 공공디자인 진흥 유도
- 교육·홍보 등 경관의식 개선, 도시경관의 기록화, 도시주요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 정비,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경전철 주변경관 등 경관사업 대상에 관한 내용

④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관리에 대한 사항 규정
- 광고물 정비시범구역,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⑤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용인시 공공시설을 비롯한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구성 유니버설디자인 센터 설치·운영 시범사업 추진 등에 관한 내용
- 시민의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시설로서 시비보조를 받아 신축·증축·개보수 하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⑥ 용인시 상징물 조례

- 용인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 용인시를 상징하는 기, 심벌마크, 마스코트, 도시브랜드, 동물, 식물 등 제시
- 상징물의 관리 변경, 등록 관련 사업에 관한 내용
-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

- 다음은 용인시와 주변 타 도시와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현황을 비교한 표이다.

〈용인시 주변지역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현황〉

항목	용인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	○	○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	○	×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조례	×	○	○	○	○
경관 조례	○	○	○	○	○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	○	○	○	○

- ✓ 공공디자인의 심의 대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진행 시 활용 할 수 있는 정확한 심의 대상의 기준 제시 필요
- ✓ 각 조례에 따라 분야별(공공디자인, 경관, 유니버설디자인 등) 심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게 되어 있어 사업 진행 시 중복된 내용으로 심의가 진행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안 제시 필요

3.5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1) 2035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 계획의 배경

기정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	21C 도시정책의 트렌드 변화 (주민참여 등)	용인시 대·내외적 여건변화	주민요구 다양화에 따른 상향식 참여형 계획
--------------------------	---------------------------	----------------	-------------------------

- 계획의 목적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추진기반 마련	가치창조 중심의 도시정책 방향 설정
----------------------	---------------------	---------------------

- 도시 미래상 및 목표

〈2035용인도시기본계획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내용〉

사업명	내용
도시환경설계를 통한 생활안전기반 확충	- 방법, 교통, 환경을 위한 CCTV 통합관리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반영한 도시환경 설계 유도	-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며 지속 가능성을 위한 유지·관리 시스템 적용
관광 전문 인력 확보 및 스마트 관광시스템 구축	- 용인시 내·외부의 유동인구가 많고 집객력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무인관광안내 시스템인 키오스크(KIOSK)를 설치하여 용인시 전반에 걸친 관광안내 및 예약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 저상버스의 도입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전동휠체어 충전소 등을 확대 설치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도시 구현

✓ 2035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거 안정성 보장, 경제자립 도시건설, 도시 활력 증진을 목표로 각각의 추진전략과 실천계획을 수립

(2) 2030 용인시 경관기본계획

- 조례의 목적
 -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다.
-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 시의 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경관사업의 대상
 - 다음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목록 이다.

1.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경량전철 주변 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7.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 시범사업

- 시범사업

〈2030 용인시 경관 기본계획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내용〉

사업명	내용
용담저수지 둘레길 매력증진사업	- 산책로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적정조도를 확보하고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한 산책로 조성
내동연꽃마을 마을특성화 사업	- 내동연꽃마을을 주요 진입부에 둘레길 및 마을길 전체에 대한 안내시설 설치, 시각적으로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마을길 탐방에 용이하도록 설치
용인 중앙시장 일대 상업특화 가로조성사업	- 가독성을 높이고 거리에 활력을 주는 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의 정비
에버랜드 진입가로경관 개선사업 및 전대리 마을경관 개선사업	- 관광지로의 진입관문을 형성, 보행통로 미관 및 안전 향상과 야간 안전 증진을 위한 보안등 등의 조명시설 확충

✓ 2030 용인시 경관계획에서는 공공디자인과 유관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안내사인, 옥외광고물 정비 등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

(3)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2010년 수립)

• 용인시 공공디자인 비전 및 기본방향

-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의 비전은 ‘디자인을 통해 미래를 여는 도시, 용인’으로 제시하였다.
- 용인시 공공디자인 비전은 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정체성 있는 디자인, 유비쿼터스 디자인을 추구한다.



• 용인시 공공디자인 중점실천전략

- 용인시의 문화, 역사적 도시의 정체성의 특징에 기초한 비전, 기본방향,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중점실천전략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연계하여 용인시민의 지속 가능한 체계구축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 용인시 공공디자인 3대 중점실천전략은 기반 구축, 권역 특성화, 통합·차별화로 제시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 ✓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정체성 있는 디자인, 유비쿼터스 디자인을 추구하고 중점실천전략은 방향성을 도출·연계하여 용인시민의 지속 가능한 체계구축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 구성 필요

•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 사업

- 추진되지 못하거나 일부 진행된 사업 중 본 진흥계획에서 진행 가능한 사업을 도출하여 개선·진행할 필요가 있다.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관련 사업〉

추진 시기	사업내용	진행 여부	비고	
단기	-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디자인통합가이드라인 개발	○	(구축예정)	
	- 조례, 법제화 기반 구축 및 활성화	○		
	- 용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용인시 공공디자인 정책포럼 운영	○		
	- 용인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		
	- 디자인 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공디자인 홍보지(리플렛) 제작	○		
	- 용인시 공공디자인 홈페이지 구축	X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		
중기	- 공공디자인 환경 및 유지관리 기반 구축	△	(명확한 시스템필요)	
	-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X		
	- 관과 시민 주도의 공공디자인 사업 개발 및 시행	△		
	- 공공디자인 평가 시스템 개발 및 제공	X		
	- 용인시 인접 지자체와의 공공디자인 협력 아이템 개발	X		
	- 용인시 시각정보체계 통합 개발	△		
	- 용인시 공공디자인 홍보를 위한 전시관 건립	X		
	- 용인시 지역 특성화를 고려한 시범사업 거리조성	△		
	- 용인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역사공간 개선사업	○		
	-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		
	-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색 도색 및 관광안내사인 국제화 사업	X		
	- 용인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도입	X		(도 인증제 사용)
	- 용인시 전용서체 개발	X		(진행 예정)
- 경전철 주변의 환경개선 사업	△	(타 과에서 진행)		
장기	- 제2차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명확한 절차 필요)	
	- 인접 지자체와 공공디자인 연계 사업 개발	X		
	- 인접 지자체와 공공디자인 균형화 진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X		
	- 주민 공공디자인 기초 지자체 교차 탐방 및 평가 제도 도입	X		
	- 공공디자인을 통한 용인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방안 수립	○		
	- 주민주도형 공공디자인 사업 지원 및 관리체제 구축	X		
	- 공공디자인 사후평가제 운영시스템 개발	X		
	- 중소기업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육성방안 수립	X		
	- 공공디자인 주민 제안제 및 가로수 주민 관리제 도입	○		
	- 공공복지개선을 위한 디자인 사업 확대	○		
	- 공공공간 실버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개선사업	○		
	- 농촌 취약지역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X		

○ : 진행됨, △ : 일부 진행됨, X : 진행되지 못함

- ✓ 2010년 수립된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단기사업이 진행된 이후 중기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거나 일부 사업만 진행된 상황
- ✓ 일부 사업은 본 진흥계획에서 명확한 시스템 개발로 효과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3.6 용인시 공공디자인관련 사업 현황

(1)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현황

〈용인시 홈페이지 도시개발 사업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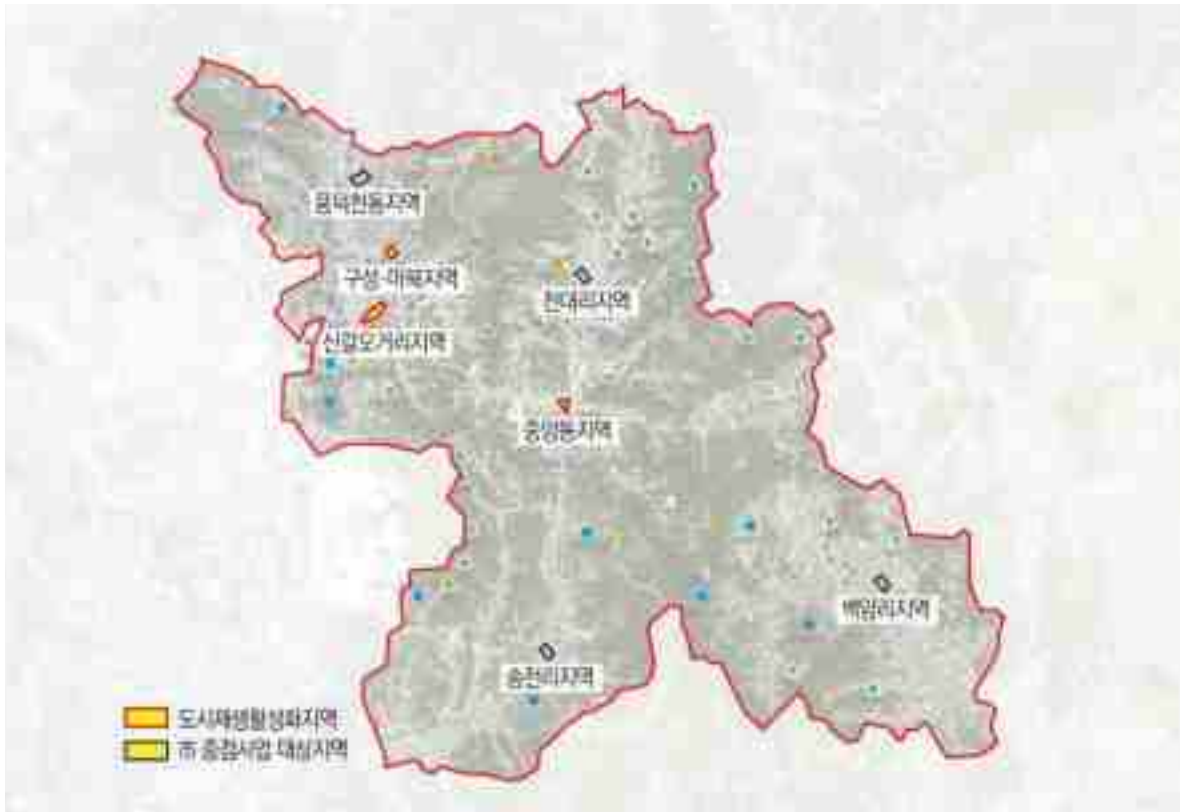
사업명	내용	사업명	내용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	- 사업위치 :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16-9번지 일원 - 사업면적 : 584,695㎡ - 계획인구 : 11,931인(3,943세대) - 시 행 자 : 용인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사업기간 : 2019.05. ~ 2022.02.	고림진덕지구	- 사업위치 :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59-8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40,512㎡ - 계획인구 : 8,495인(3,146세대) - 시 행 자 : 가칭)용인 고림진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사업기간 : 2020.11. ~ 2022.09.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위치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43-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334,770㎡ - 계획인구 : 8,381인(2,993세대) - 시 행 자 : 용인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사업기간 : 2013. 10. ~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위치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산151-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60,338㎡ - 계획인구 : 2,537인(906세대) - 시 행 자 : 용인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사업기간 : 2014. 04 ~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사업위치 :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234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47,765㎡ - 계획인구 : 14,280인(3,800세대) - 시 행 자 : 용인도시공사 - 사업기간 : 2010. 06 ~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 사업위치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 사업면적 : 691,604㎡ - 계획인구 : 14,717인(5,256세대) - 시 행 자 :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사업기간 : 2009. 08 ~
이동(송전) 도시개발사업	- 사업위치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965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54,020㎡ - 계획인구 : 3,808인(1,360세대) - 시 행 자 : 용인 이동송전 도시개발사업조합 - 사업기간 : 2008. 12 ~	모현(양산) 도시개발사업	- 사업위치 :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양산리 산25번지 일원 - 사업면적 : 364,232㎡ - 계획인구 : 10,500인(3,750세대) - 시 행 자 : 용인 모현양산 도시개발사업조합 - 사업기간 : 2010. 09 ~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위치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05번지 일원 - 사업면적 : 59,975㎡ - 계획인구 : 2,168인(803세대) - 시 행 자 : 용인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사업기간 : 2018. 11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업위치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이의동 일원 - 사업면적 : 11,304,494㎡(용인:1,352,879㎡) - 계획인구 : 31,329세대/78,323인(용인:3,674세대/9,185인) - 시 행 자 :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경기도공사 - 사업기간 : 2004. 06 ~ 2019. 12
성북지구 지구단위계획	- 사업위치 :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23번지 일원 - 사업면적 : 81,298㎡ - 용도지구 : 일반상업지역 - 결정고시일 : 2013.07.12(용고 2013-264호) - 시 행 자 : 용인시	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 사업위치 :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36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309,095㎡ - 용도지구 : 제1, 2, 3종일반주거지역 - 결정고시일 : 2012.12.11(용고 2012-513호) - 시 행 자 : 용인시
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	- 사업위치 :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48-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61,560㎡ - 용도지구 : 일반상업지역 - 결정고시일 : 2012.12.11(용고 2012-514호)발 - 시 행 자 : 용인시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 사업위치 : 용인시 처인구 김량동 339-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03,179㎡ - 용도지구 : 일반상업지역 - 결정고시일 : 2012.08.03(용고 2012-311호) - 시 행 자 : 용인시
유방지구 지구단위계획	- 사업위치 :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462-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27,388㎡ - 용도지구 :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결정고시일 : 2012.12.11(용고 2012-515호) - 시 행 자 : 용인시	북리지구 지구단위계획	- 사업위치 :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134-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070,162㎡ - 용도지구 :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결정고시일 : 2015.11.11.(용고 2015-428호) - 시 행 자 : 용인시

✓ 용인시는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공공공간·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으로 효과적인 공공디자인 정착 가능

(2) 기타 관련 사업 현황

• 도시재생 사업

-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좁은 도로,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 도시계획이다.
- 용인시는 지난해 1월 인구와 산업체수 감소, 노후 건축물 등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시급성·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재생전략을 수립하였다.



사업	지역	내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양동, 신갈오거리, 구성·마북지역	상대적 쇠퇴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3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
시 중점사업 대상 지역	처인구 포곡읍, 백암면 백암리, 이동읍 송전리, 수지구 풍덕천동 등	법적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을 '시 중점사업지역'으로 지정해 시 자체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진행할 예정

〈활성화 지역 주요 내용〉

중양동	신갈동	구성·마북
중양시장 활성화	자원순환 안전마을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	지역자산 활용 및 생활환경개선

- ✓ 용인시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분포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 플랫폼시티는 GTX구성역(용인역),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서 산학연이 어우러진 첨단산업의 발전과 상업,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용인의 경제 중심 복합신도시를 의미한다.



위치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계획인구	26,136인(11,151세대)
면적	2,756,853㎡(83만평)	시행사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예정
추진경위	2018.04.02.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2018.11.08. : 2035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경기도→용인시) 2019.03.27. : 사업타당성 검토의뢰(경기도시공사→지방공기업평가원) 2019.05.07. : 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확정 발표, MOU체결 2019.08.01. : 복합 환승 센터 기본구상 및 사업성 검토 용역 착수 2019.10.25. : 사업타당성 검토 완료(지방공기업 평가원) 2019.12.20. : 신규 사업 동의안 도·시의회 심의 의결 2020.03.16.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		
향후 추진계획	2021.03.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2022.03. :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착공		

✓ 향후 조성될 용인시 중점사업인 플랫폼 시티는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적용으로 미래지향적인 용인시 이미지 구현이 가능

• GTX-A 망 구축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중 하나로, 파주 운정 신도시 운정역과 화성 동탄 신도시의 동탄역을 잇고 있다.
- 언론과 건설업계에서는 기존 구상 단계에서 나온 GTX라는 명칭을 선호하기 때문에 GTX-A, GTX A선 등으로 불리는 경우가 더 많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음에 따라 현재 제안된 세 노선 중 현재 가장 진척이 빠른 노선이다.

위치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운영역	운정,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
시행자	SG레일, 서울교통공사, 주식회사 SR
추진상황	2017년 3월 : 삼성역 ↔ 수서역 ↔ 동탄역 구간 착공 2018년 12월 27일 : 운정역 ↔ 삼성역 구간 착공 2023년 동탄-운정 개통 예정

〈GTX-A 노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의 건설 예정인 역.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역 이름이 다르지만 개통되면 구성역과 환승이 될 예정이다.

✓ 용인 GTX-A 망 구축 사업은 용인시의 중점사업으로 다양한 시설이 집중되어있는 복합 환승센터에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계획수립 필요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SK하이닉스가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할 생산·연구시설을 조성하여 '상생형 클러스터'를 구성하였다.

위치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독성리 일원
사업기간	2019~2025년
추진 일정	2021년 : 부지조성 2024년 : 반도체 생산시설 FAB1기 완공 2024년 이후 : 추가로 3개의 FAB를 연차적으로 건설
사업비	약 1조 6290억원(산단조성비)
사업 시행자	민간SPC법인
시의 역할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인프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관련기관 협의와 산업단지 승인 등의 행정지원 (반도체 산단/F팀 구성)



〈사업 대상지 특징〉

SK하이닉스 이천/청주캠퍼스와 물류 효율성 양호

- 이천 캠퍼스 20km, 청주캠퍼스 55km 거리
- 우수인력 유치용이
-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인접
- 현 구성원 주 거주지역인 수도권에 입지

안정적인 용수·전력공급 및 환경영향 최소화

- 신안성변전소와 8km거리로 전력 확보 및 안정적 공급 용이
- 자연보전권역 및 수질 오염 총량제 미 적용지역으로 환경영향 최소화
- 수도권 광역상수도(판교)망과 42km거리로 용수 공급 용이

협력업체와 시너지 창출 가능 및 이해관계자 대응 최적

- 반도체 협력업체 본사와 인접해 중복투자 미발생
- 반도체 주요 고객사인 국내 외 PC, 스마트폰 및 서버업체 대응용이
- 판교/강남 등에 위치한 벤처업체와 신규협력 및 공동개발 용이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용인시의 중점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중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개발·관리와 연계된 사업

(3) 관련 가이드라인

-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용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인시 경관 가이드라인/ 용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

- ✓ 2035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 친환경 / 주거안정성 / 일자리창출 / 도시활력증진을 목표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 용인시의 중점사업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GTX-A 망 구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할 경우 개발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 용인시의 기존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공공디자인 전담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

(2)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직 변천 과정

- 용인시 공공디자인팀은 2007년 조직이 신설되어 공공디자인팀,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팀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 용인시는 약 3년 주기로 디자인 관련 행정조직이 개편되었다.
- 2013년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시행되었다.
- 용인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디자인 담당조직이 크게 성장을 하였으나 인구 100만이 되었던 2017년 이후 조직이 축소되었다.
- 2016년 디자인 전문직 1인당 용인시민 약 250,000명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현재 2020년에는 디자인 전문직 1인당 용인시민 약 550,000명을 담당하고 있어 디자인 전문직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직 변천 과정〉

종류	기간	행정조직	사업내용
	2007	공공디자인팀 디자인 전문직 인원: 2명	- 공공디자인팀 신설
	2010	도시디자인과 디자인 전문직 인원: 3명	- 2010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통합가이드라인 수립
	2013	부시장 직속 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 전문직 인원: 4명	- 2013 행정 디자인 매뉴얼 개발
	2017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디자인 전문직 인원: 4명	- 2017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 2017 공공디자인 업무연찬 - 2017 도시디자인 공직자 특강 - 2017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 2017 기업의 브랜드 디자인 및 포장디자인 개발 - 2018 지역 커뮤니티 거점을 위한 맞춤형 공간모델 제안
	2018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디자인 전문직 인원: 4명	- 2018 공공디자인 현장 연찬 - 2018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 2018 도시디자인 국제포럼 - 2018 학교환경개선 공공서비스디자인 추진
	2019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디자인 전문직 인원: 2명	- 2019 공직자 도시디자인 현장체험 - 2019 유니버설 디자인 현장체험

✓ 2019년 이후 디자인 전문직 인원이 2명으로 감소된 이후 업무가 과중(1인당 인구 550,000명 담당)으로 인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 전문직 총원이 필요한 상황

(3)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현황

- 용인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100여 가지의 안건을 가지고 공공디자인위원회를 72회 개최했다.

〈연도별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현황_2020년 8월 기준〉

연도	회차	안건
2010	1회	1
2011	3회	3
2012	2회	2
2013	10회	16
2014	4회	4
2015	8회	11
2016	7회	12
2017	13회	18
2018	7회	9
2019	13회	18
2020	7회	10

- ✓ 용인시는 2016년 이후 매년 7~13회의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2019년 이후 디자인 전문직이 2명으로 감소하여 업무 과중에 따른 디자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4) 공공디자인관련 타 지역 행정조직 분석

-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직

〈경기도 공공디자인팀 조직〉



〈경기도 공공디자인팀 업무분장〉

직위	담당 업무	비고	직위	담당 업무	비고
공공디자인팀장	공공디자인팀 업무 총괄		실무관 5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실무관 1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운영 등		실무관 6	국무조정실 파견	
실무관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업무		실무관 7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실무관 3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및 디자인 지원		실무관 8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실무관 4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운영				

- 경기도는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에 공공디자인팀이 있으며 팀장 1명과 담당 실무관 8명이 디자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 서울시 공공디자인 조직

〈서울시 공공디자인팀 조직〉



〈서울시 공공디자인관리팀 업무분장〉

직위	담당 업무	비고
팀장	- 공공디자인관리팀 총괄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 및 타 실·본부·국 디자인 자문	
실무관 1	- 각종 업무보고서 및 간부회의 자료작성 - 표준형디자인 개발 및 보급 -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만들기 추진	- 공공시각매체 분야 대내외 디자인 개발 및 지원 - 타 직원에 속하지 않는 업무
실무관 2	- 스타트업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 공공서비스디자인산업 저변확대	- 공공디자인어 운영
실무관 3	-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 운영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운영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실무관 4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및 경관심의 운영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모니터링 운영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클리닉 운영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온라인시스템 운영

- 서울시는 공공디자인관리팀 외 공공디자인 사업팀, 유니버설디자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팀장 3명과 담당 실무관 11명이 디자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조직

〈수원시 공공디자인팀 조직〉



〈수원시 공공디자인팀 업무분장〉

직위	담당 · 업무	비고
도시디자인단장	- 도시디자인 업무 총괄	
디자인기획관	- 디자인 업무 총괄 계획·관리	
디자인총괄팀장	- 디자인총괄팀 업무 총괄	
부팀장	- 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 - 디자인총괄체계 구축 협력 업무 등	
실무관	- 경관위원회 심의 운영 및 협의 - 공공조형물 관리	
디자인지원팀장	- 디자인지원팀 업무 총괄	
실무관 1	- 공공시설물 종합관리방안 수립 및 운영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 공공디자인 관련 개발 - 디자인 자문 및 협의
실무관 2	- 디자인 자문 협의 - 디자인 관련 대내외 협력추진	-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수립 운영
실무관3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 - 디자인 연구 및 용역	- 디자인 관련 홍보 및 교육 - 디자인기획관 업무 지원
디자인개발팀장	- 디자인개발팀 업무 총괄	
실무관 1	-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개정	- 디자인 행정체계 및 도시PD 제도 구축·운영
실무관 2	- 전략사업 디자인·설계·공사 감리 - 디자인 개발 및 지원	- 디자인 사전·후 모니터링 실시
실무관 3	-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개정 및 심의 운영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
디자인사업팀장	- 디자인사업팀 업무 총괄	
부팀장	- 파장초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	
실무관	- 파장초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	

- 수원시는 제2부시장 직속으로 도시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직9인(디자인 기획관 1인, 팀장2인, 실무관 6인)이 1인당 약 150,000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다.

•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직

〈성남시 공공디자인팀 조직〉



〈성남시 도시경관팀 업무분장〉

직위	담당 업무	비고
도시경관 팀장	- 도시경관업무 총괄	
실무관 1	- 지정게시시설(현수막·벽보) 설치 및 관리	
실무관 2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처리	
실무관 3	- 도시디자인 정책개발, 공공공간, 가로시설물, 디자인교육, 시산하디자인 업무지원	
실무관 4	- 환경색채, 공공시각매체,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 시 및 산하기관 디자인관련 업무지원, 디자인 정책개발	
실무관 5	-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및 옥외광고물 업무지원	

- 성남시는 도시주택국의 건축과에서 도시경관팀에서 팀장 1명과 담당 실무관 5명이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디자인 담당 실무관 1인당 약 196,000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다.

✓ 용인시 공공디자인 업무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공공디자인팀의 행정인력 및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 사업의 관리감독, 관련 정책의 수립, 타 부서 협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의 재정비 필요

(5) 소결

- ✓ 용인시의 현 공공디자인 조직은 전문직 인원 2명이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사 규모 지자체(수원시, 성남시)에 비해 팀 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
- ✓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자 1인당 담당인구가 550,000명에 육박하며, 이는 유사 규모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치임
- ✓ 타 지자체는 부서 내 정책팀, 사업팀, 관리팀 등 팀 단위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 ✓ 유사 규모 지자체의 조직구성을 벤치마킹하면서도 용인시에 특화된 팀조직 구성 및 운영 필요
- ✓ 용인시 인구 현황 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인구수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업무를 담당할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 필요

3.8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1) 대한민국 정부 국가비전 및 목표

국가 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아래 “5개의 시정목표”와 “20개 국정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국정 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병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 전략	전략 1 - 국민주권의 쫓불 민주주의 실현	전략 5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전략 10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 15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전략 18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공화문 대통령	전략 6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전략 11 - 국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전략 16 -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	전략 19 - 남북 간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전략 7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전략 12 -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전략 17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전략 20 - 국제협력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전략 4 - 권력기반의 민주적 개혁	전략 8 - 광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 13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전략 9 - 중산층이 주도 하는 창업과 혁신 성장	전략 14 -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 대한민국 정부 사업별(AI,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추진실적 현황

2020. 01. 기준

구분	주관부처	국정과제	기타
1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AI
2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복지부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AI
3	산업부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및 육성	AI
4	문체부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AI
5	경찰청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도시재생
6	교육부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도시재생
7	국토부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도시재생
8	농식품부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도시재생
9	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
10	문체부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복지

✓ 정부에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아래 “5개의 시정목표”와 “20개 국정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며 AI,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의 사업 시행

(2) 용인시 시정비전 및 목표

시정비전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
------	--------------

-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이라는 비전 아래 “7개의 시정목표”와 “21개 발전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며, 공공디자인과 연계된 전략은 4가지로 볼 수 있다.

〈7가지 시정목표 및 21개 발전전략〉

1. 도시·교통	2. 환경·경관	3. 경제산업·일자리	4. 문화·체육·관광
편리한 출퇴근 스마트 교통도시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시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경제자족도시	여유롭고 활기찬 문화·체육·관광도시
전략1 - 동서남북을 잇는 도시 철도망 구축 전략2 - 출퇴근이 편리한 대중 교통 활성화 전략3 - 사람중심의 도로 환경 개선	전략4 -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친환경 청정 도시 구현 전략5 - 푸름이 지속 가능한 아름다운 경관도시 조성 전략6 -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전략7 - 4차 산업혁명 플랫폼시티 조성 전략8 - 더 좋은 ‘용인형’ 일자리 창출 전략9 - 나눔과 협력의 상생 경제 기반 구축	전략10 - 여유와 휴식이 넘치는 문화 예술 저변 확대 전략11 -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 메카 조성 전략12 -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힐링 관광도시 조성
5. 보건·복지	6. 교육·보육	7. 행정·재정	
모두에게 따뜻한 배려의 복지도시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도시	공감과 소통의 신뢰도시	
전략13 - 생애주기 맞춤형 공감 복지서비스 제공 전략14 - 다함께 건강한 빈틈없는 의료체계 구축 전략15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정책 추진	전략16 - 배움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평생교육 전략17 - 안전하고 든든한 교육 환경 조성 전략18 -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돌봄 체계 구축	전략19 - 시민감동 실현을 위한 100만 광역 체제 구축 전략20 -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열린 자치행정 전략21 - 시민에게 신뢰받는 참여형 건전 재정	

- 용인시 발전전략 중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내용

구분	발전전략	공공디자인과의 연계성
1	도시·교통 편리한 출퇴근 스마트 교통도시	· 공공와이파이 및 태양광 휴대폰 충전기 설치 사업 시 버스정류장 표준시설물을 도입하여 공약사업이과 연계하여 사업 가능 · 자전거도로 정비 시 펜스 표준시설물을 도입 설치하여 도로환경 개선 및 공공디자인과 연계하여 사업 가능
	전략2 출퇴근이 편리한 대중교통 활성화 ·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 점진적 확대	
	전략3 사람중심의 도로 환경 개선 · 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마련	
2	환경·경관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 방범 CCTV 설치를 통한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공공 디자인의 범죄예방디자인과 연계한 사업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전략6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방범용CCTV확대 귀가길 안전시스템 확충	
5	보건·복지 모두에게 따뜻한 배려의 복지도시	· 용인시의 직선화된 노선에 저상버스를 도입과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으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및 교통복지 구현 가능
	전략15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정책 추진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 용인시 사업별(AI,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추진실적 현황

2020. 06. 30. 기준

구분	담당부서	공약사업명	목표연도	이행률	기타
1	대중교통과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 점진적 확대	2022	100%	AI
2	기후에너지과	대기측정소(실시간 모니터링) 확대	2020	100%	AI
3	노인복지과	독거노인 돌봄시스템 구축	2018	100%	AI
4	정보통신과	용인 공공와이파이 구축	2021	100%	AI
5	건축과	대형 신축건물 보행환경 검토	2019	100%	도시재생
6	산림과	용인 둘레길 조성	2020	80%	도시재생
7	도시재생과	머내고개~동막C 도로개설 추진	2020	77%	도시재생
8	건축과	대형 신축건물 보행환경 검토	2019	100%	도시재생
9	공원조성과	이동저수지 환경생태공원 조성 추진	2022	33%	도시재생
10	정보통신과	방범용 CCTV 확대 귀갓길 안전시스템 확충	2022	76%	도시재생
11	플랫폼시티과	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추진 (GTX역세권,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2022	40%	도시재생
12	교육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	미세먼지 민감계층 공기청정기 보급 전면 확대 (초·중·고교, 경로당, 어린이집)	2020 2018 2022	100%	복지
13	기후에너지과	민감계층 마스크 무료보급	2022	69%	복지
14	일자리정책과	용인형 3대 일자리 2만개 창출 (첨단산업, 산학연계, 어르신 참여)	2022	54%	복지
15	일자리정책과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2022	66%	복지
16	복지정책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통합 복지서비스 지원센터)	2018	100%	복지
17	주택과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확대 시행	2022	18%	복지

✓ 용인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기반 (전략3. 사람중심의 도로 환경개선, 전략6.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마련

✓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개선과 시민 복지 개선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 정책과 연계한 시민중심의 실행 수단 마련

✓ 중점사업으로 실행하는 공공디자인과 연계된 정책은 범죄예방디자인(전략6,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방범용CCTV확대, 귀갓길 안전 시스템 확충)과 유니버설디자인 (전략15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정책 추진-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도입)이 중점사업으로 실행

4. 용인시 공공디자인 의식조사

4.1 개요

- 목적
 - 용인시 공공디자인 정체성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공공디자인 의식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 공공디자인 개선 주요 방향에 대한 실무 전문가 의식조사를 통해 계획 운영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의식조사 대상, 기간 및 방법

대상	인원 및 선정기준	기간	방법
시민	· 728명 · 현장에서 무작위 선정	· 2019년 12월 3주~4주 (2주간)	· 8명의 현장 인원을 투입하여 약 2주일간 현장에서 무작위 설문조사 진행
공무원	· 17명 · 용인시 도시재생과 / 건설도로과 / 도로정책과 / 푸른공원사업소 / 공공건축과 / 처인·기흥·수지 건설도로과	· 2020년 6월 2일~5일, 16일	· 각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인터뷰 진행
전문가	· 8명 ·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 2020년 6월 23일~29일	· 유선 및 온라인 인터뷰 진행

4.2 시민의식조사

(1) 의식조사 내용

문항 구성	문제점	디자인 만족도	디자인 개선 정도
내용	· 공공디자인 주요 문제점	· 공공디자인의 정체성 · 공공디자인의 약자 배려	· 개선이 잘된 공공디자인 · 개선이 필요한 공공디자인
문항 수	1	2	2
분석방법	선택 문항	5점 척도	선택 문항

문항 구성	용인시 미래상	공공디자인사업	주민참여방안 및 기타의견
내용	· 도시 이미지 방향 · 공공디자인 방향	· 필요한 사업	· 적절한 시민 참여 제도 · 시민모니터링 참여 의향 · 기타의견
문항 수	2	1	3
분석방법	선택 문항	선택 문항	선택 문항, 주관

(2) 거주기간 및 거주지

- 설문에 응답한 시민들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 용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31.9%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용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사는 사람이 29.4%로 두 번째로 나타남



(3) 공공디자인 문제점

- 용인시 공공디자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선택)



공공디자인 문제점에 대한 조사 결과

- 공공공간의 보행로와 산책로, 공공시설물의 버스정류장 및 가로등, 공공시각매체의 안내판, 공공건축물의 문화시설, 옥외광고물에서 문제점을 다수 제시

(4) 용인시 공공디자인 정체성 표현

- 용인시의 공공디자인은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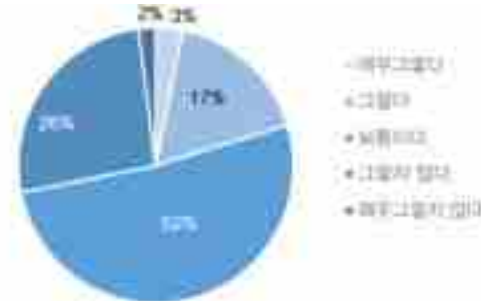


공공디자인 정체성 표현에 대한 조사 결과

- 정체성 표현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시민은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며 29%의 시민이 정체성 표현이 되어 있다고 평가함

(5) 용인시 공공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여부

- 용인시의 공공디자인이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약자를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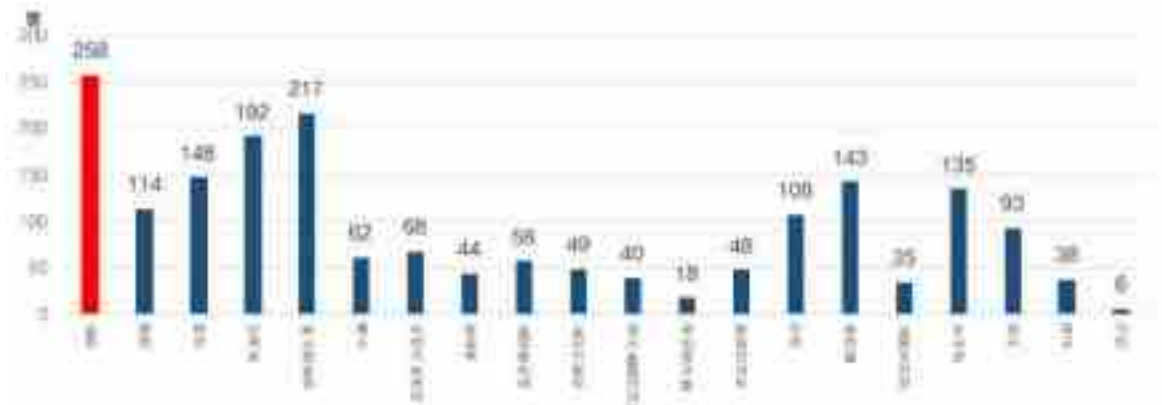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여부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주민은 판단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며 28%의 주민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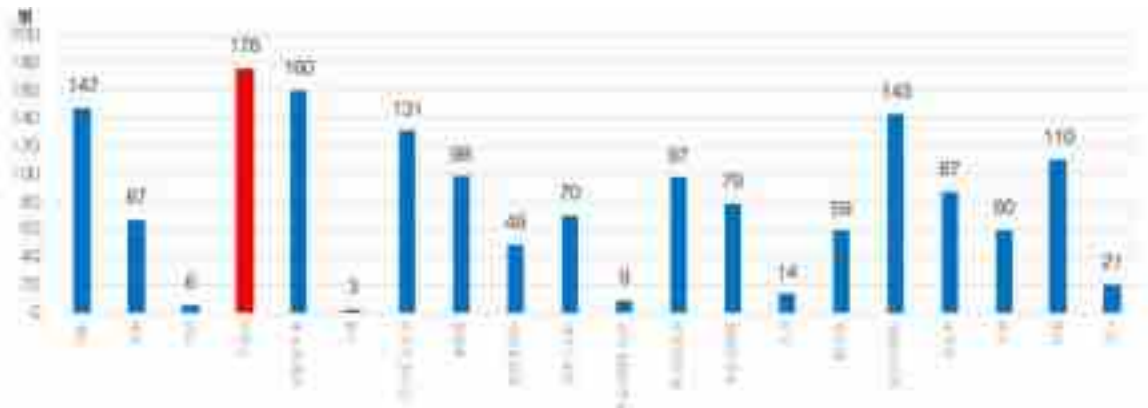
(6) 용인시 공공디자인 현황

- 최근 용인시에서 개선이 잘된 공공디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선택)



개선 잘 된 디자인에 대한 조사 결과

- 용인시에서 개선이 필요한 공공디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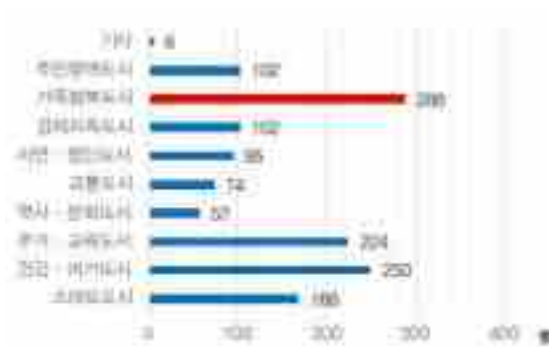


개선이 필요한 디자인에 대한 조사 결과

- 용인시의 시민들은 공원을 개선이 잘 된 공공디자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산책로가 개선이 필요한 디자인이라고 평가함

(7) 용인시 미래상 설정 방향

- 용인시 공공디자인에서 도시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앞으로 용인시 공공디자인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용인시 미래상 설정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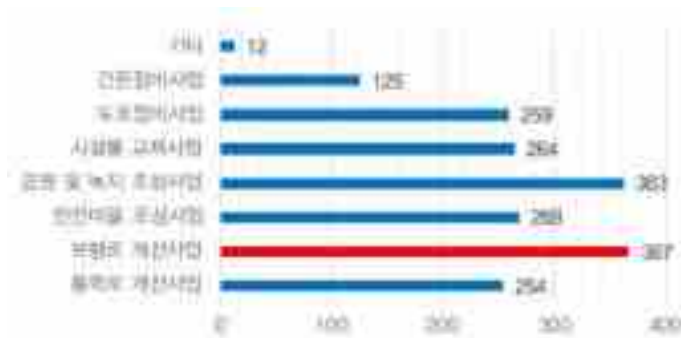


향후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행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

- 용인시의 주민들은 가족·행복도시, 건강·여가도시, 주거·교육도시 순으로 의견이 나왔으며 가족과 건강에 관련된 주제가 다수의 의견을 차지함
- 용인시의 주민들은 생활편의를 높이는 공공디자인,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순으로 의견이 나왔으며 용인시의 주민들은 생활하는 도시공간의 안전과 편의를 중요시 함

(8) 공공디자인사업

- 용인시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3가지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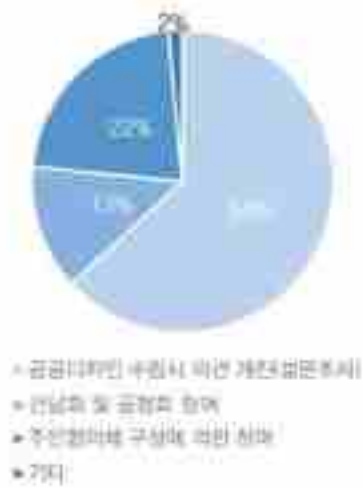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 용인시의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보행로 개선사업이며 공원 및 녹지조성 사업이 다음으로 많은 의견 제시
- 대체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거주환경개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

(9) 주민참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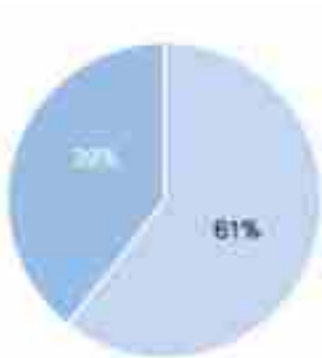
- 다음 중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가장 적절한 시민참여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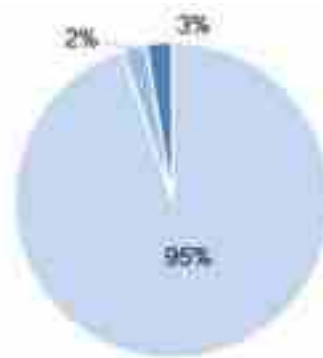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 주민의 참여방안의 질문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공공디자인 수립 시 의견을 묻는 방법 선호

- 용인시에서 공공디자인 및 행정 발전을 위해 시민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하실 의향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모니터링 참여에 대한 조사 결과



참여의향 및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

- 시민의 과반수가 모니터링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 선호



(10) 시민 의식조사 종합

구분	주요 내용
용인시 공공디자인 현황의 문제점	· 공공공간(산책로, 보행로, 공원 등)과 공공시설물(버스정류장, 가로등, 자전거 보관대 등)에서 문제점에 대한 가장 많은 의견이 있으며, 건축물에서는 문화시설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문제점을 다수 제시
공공디자인 만족도	· 용인시 정체성 표현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주민이 정체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29%만이 정체성 표현이 되었다고 평가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여부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주민은 판단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며 28%의 주민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
디자인 개선 정도	· 공원과 산책로, 버스정류장은 현재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 옥외광고물, 방향안내판, 공용주차장, 육교는 현재 공공디자인의 만족도가 낮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용인시의 미래상	· 생활편의를 높이는 공공디자인,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순으로 의견이 나왔으며 용인시의 주민들은 생활하는 도시공간의 안전과 편의를 중요시 함
공공디자인사업	· 용인시의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보행로 개선사업이며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이 다음으로 많은 의견 제시
주민참여방안 및 기타의견	· 과반수의 주민이 공공디자인 사업 진행 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참여방법으로는 설문조사 및 온라인 게시판 활용 선호



- ✓ 시민들은 산책로 및 보행로(공공공간) 등의 보행환경과 관련된 시설물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제기
- ✓ 보행로 및 공원 및 녹지·공공간의 개선과 관련된 공공디자인 사업 요구
- ✓ 대부분 시민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 의사 개진

4.3 공무원 의식조사

(1) 의식조사 내용

문항 구성	심의 및 협의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위원회 개선	기타
내용	· 공공디자인 심의·협의 시 불편한 점	· 추가로 필요한 표준디자인 목록	· 개선점, 추가요청사항	· 도시 이미지 방향 · 공공디자인 방향	· 필요한 사업
문항 수	1	2	2	2	1
분석방법	주관 문항	5점 척도	선택 문항	선택 문항	선택 문항

(2) 부서별 의식조사 결과

부서	주제	의견
용인시 도시재생과	심의/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위원의 디자인의 외의 것(사업시행, 적합성, 공정 등)에 대한 요구 지양을 바람 · 디자인 협의를 위한 디자인 시안 제작 시 세세한 부분의 요구, 설계도 재작성은 불합리해보임 · 디자인 협의 시 전문가, 비전문가 모두를 이해하기 쉽게 도서를 꾸미고 심리적 부분까지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표준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 자제업체도 잘되어 있다고 판단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라인은 건축물과 주변의 적합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의미 하다고 판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용인시 건설도로과	심의/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시 디자인에 대한 의견이 아닌 주제를 벗어난 의견을 주는 경우가 다수 있음
	표준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음벽과 보도패턴의 정형화 필요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구조물에 대한 통일성 필요(예 : 옹벽_보강토 블록, 패널, L형옹벽의 정형화)
용인시 도로정책과	심의/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시설물의 색채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음
	표준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상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판단 (백옥토양색 추구)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급기관(경기도 등)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색상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담당자가 의견을 제시 하여도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 건축, 건설, 교통, 공원 등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함 · 용인시 표준디자인을 각 부서별로 홍보 필요 (매년 공문으로 홍보 등)

부 서	주 제	의 견
푸른공원 사업소 (공원조성- 공원계획팀)	심의/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기반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데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하게 되면서 기본적인 조성계획이 틀어지게 된다. 디자인위원회의 의견을 맞추기 위해서는 재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힘들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표준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표준디자인은 도시시설물 위주여서 공원 안에 디자인과 맞지 않다. 공원과 공원 외 지역은 구분이 되어야 함 교통시설물의 블라드를 공원에 적용하는게 맞는지 공통적으로 쓰는 시설물들은 공원에서 공원 특성에 맞게 별도로 잡아 줄 것을 권장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이드라인은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화하여 적용하고 나머지는 각 관리부서나 사업부서에서 그때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권장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디자인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 두 번의 심의 거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합동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으로 조례상이나 규칙상에 정해놓은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
푸른공원 사업소 (공원조성- 시설팀)	심의/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 디자인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위치 또는 계획 등 공원조성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문제 됨
	표준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 없음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음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원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좁혀 공원위원회와 디자인위원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
수지구 건설도로과	심의/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경계표지판 설치 사업 진행 시 공공디자인에 시안이 제시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
	표준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 없음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 없음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 없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 없음
처인구 건설도로과	심의/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 없음
	표준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량에 들어가는 펜스의 디자인 필요 (현재 세로 살로 설치하는 것이 추세이다.)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 없음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사업만 진행하고 있어 굳이 심의 및 자문을 신청하지 않고 있음
용인시 공공건축과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의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심의/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배치 받고 도서관2개를 감독 중으로 모두 공모전으로 진행된 거라 심의·협의를 거의 없음 심의는 안 해보고, 협의만 1번 해봤으며 특별히 힘들 지는 않다. 단,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 필요
	표준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지통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은 것 같으며, 경기도디자인인증제도를 모르며, 경기도디자인인증제품의 경우, 관급 자재인지 사급 자재인지 알려줄 것을 요청 바닥패턴의 표준디자인 요청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성시 동탄처럼 아파트 색채들이 생동감 있고 예쁘면 좋겠는데 용인시 아파트들은 색이 너무 칙칙하여 가이드라인 필요 가이드라인이 설계자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았으면 함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나 협의 시 요청되는 자료를 위해 스케치업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적지 않아 관계자들이 부담스러워 하며, 비용을 줄이는 방법 필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 없음 	

(3) 공무원 의식조사 종합결과

구분	주요 내용
심의/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외의 것에 대한 요구를 지양하길 원하며, 심의 시 디자인에 대한 의견이 아닌 주제를 벗어난 의견을 주는 경우가 있음 ·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기반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하게 되면서 기본적인 조성계획이 틀어지게 되고 디자인위원회의 추가사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시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
표준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이 획일화되어 있으나 주변의 환경에 따른 맞춤 디자인이 추가적으로 필요 · 공공디자인은 도로시설물 기반으로 디자인되어 공원디자인과는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 · 교량에 들어가는 펜스의 디자인 필요 · 경기도디자인인증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음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라인은 건축물과 주변의 적합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의미 하다고 판단 · 가이드라인이 설계자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으면 좋겠음,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화하여 적용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 2억 이상인 경우, 공모를 통해서 업체의 디자인이 선정되는데 공공디자인 심의와 위원회를 거쳐 또다시 평가를 받는 것이 의문이고 내부적인 부분의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외관적인 부분은 공모된 업체의 특성을 인정해주고 유지하는 방향이 맞는 것으로 판단 · 도시공원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 두 번의 심의가 아닌 합동하여 심의를 보는 것을 원하며, 도시공원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좁혀 디자인위원회와 공원위원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급기관(경기도 등)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색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담당자가 의견을 제시해도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건축, 건설, 교통, 공원 등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함 · 표준디자인을 각 부서별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례상이나 규칙상에 정해놓은 것은 최소한으로 가고, 다르게 생각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



- ✓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심의·협의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 필요
- ✓ 공공디자인이 획일화 되지 않고 장소 및 시기의 변화에 따라 대응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 관련 사업부서의 공공디자인 인식의 개선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 요구

4.4 전문가 의식조사

• 의식조사 내용

문항 구성	공공디자인 위원회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기타
내용	· 문제점 및 개선점	· 개선점, 추가요청사항	· 개선점, 추가요청사항	· 필요한 사업
문항 수	1	1	1	1
분석방법	주관 문항	선택 문항	주관 문항	주관 문항

• 의식조사 결과

구분	설문 결과
공공디자인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분야에 각부서의 위원회 활용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 위원회 검토 결과물의 사후관리측면의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위원회 검토로 끝나고 시공 및 설치 시 문제에 대한 책임자는 없는 상태임 · 공공디자인위원회, 공원심의위원회와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잘 활용되어 심의의 적정성이 보이나,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 · 유니버설디자인에 입각한 가이드라인 수립은 용인시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색채, 서체, 사인시스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사항의 보완 필요 · 심의 및 자문이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거시적 내용이 많으나 지역적 입지상황, 사업의 특수성 측면에서 설계적 기법, 조례 등 제도적 내용, 행정조직, 경기도 지원정책 및 자원 등의 검토가 가능하도록 진흥계획 시 반영 요청 · 체계적인 계획안 수립으로 지역 공공디자인 운영을 잘 진행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의 보강 및 개발 필요 · 업체 선정과 심의 시점에 대한 고려 필요 · 내용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료를 만들 경우 심의 과정에서 지적이 나오면 처음부터 작업을 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면이 많이 발생함 · 엄선해서 업체를 선정할 뒤 업체가 제안한 프로세스 또는 대안을 검토하고 협의하면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표준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디자인인지 생각이 필요함, 타 지자체와의 차별을 꾀하기 위한 전략 필요 · 각종 사인 시스템에서 최근 일반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스마트기술의 적극적인 반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논쟁거리가 되는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살펴야 한다고 판단 · 횡단보도 앞 그늘막이가 늘어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표준디자인 필요하며, 버스정류장에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이 늘어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표준디자인 필요 · 상위 기관 및 제도와의 연속성을 고려한 2030 경기도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과 연계한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현장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와 기능성을 고려한 공공시설물 설치 필요 · 지역이 통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폭 넓게 적용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뒷받침 필요

<p>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라인 영역은 공공공간의 유형에 따라 공간구조 및 공공디자인 요소별 설계 및 설치기준 제시 필요 · 용인시 전체 가로 유형별 기본 디자인 기준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롭게 디자인 조성하는 가로 공간 이외에도 기존 가로 공간, 특히 가로 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 필요 · 야간 경관조명, 옥외광고물 빛공해 유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개선안이 필요하며, 주차장과 광장, 공공공지, 공원, 가로녹지 공간의 통합 디자인 체계 구축 필요 · 환경색채 추가 필요 · 용인시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의 필요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도시와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에 공공디자인의 비전, 기본원칙, 기본 방향 등 실질적으로 각 부처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방안이 되도록 현실적 접근 필요 · 용인시는 우선적 도시 계획의 큰 정책의 명확하고 체계적인 관리 속에 공공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하나 도시구조가 산발적 적용으로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를 적용 시 효과가 부족하다고 사료되어 문제의 요소들의 찾고 반영하는 개선 추진반의 구성 요구 · 우선적 문제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개별 사업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과물의 책임과 지속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체계화하는 제도 필요 · 사소한 선택일지라도 위원회의를 통해 결정 및 집행되어야 한다, 결과물의 책임과 지속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체계화 제도가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개발’보다는 ‘보존’ 또는 ‘회복’에 중점을 둔 계획 필요 ·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등의 상위계획과의 사업적 연계 반영 고려 필요 · 마스터 플랜에 의해 세부 디자인들이 개발되어야 하겠으나, 모든 디자인 간의 맥락적 연결과 추구되어야 할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므로, 아무리 사소한 디자인 선택과 결과라도 마스터 디자이너 또는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결정 및 집행 필요 · 현재의 진흥계획 안과 기타 가이드라인과 정책 등이 방향성 없이 진행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 필요

- ✓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지침 필요
- ✓ 유니버설디자인에 입각하여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보완이 필요하며 개발보다는 보존 또는 회복에 중점을 두는 계획 필요

5. 국내·외 사례 조사

5.1 국내사례

(1) 행복도시(세종시)

행복도시 공공디자인 설계 추진

- 개별 발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 시설물의 부조화를 막기 위해 가로공간과 가로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을 통합 설계하는 「행복도시 공공디자인 설계」(사업시행자 발주)를 추진하였다.

구분	기본설계 내용
공공디자인 설계영역	도시차원과 생활권 차원으로 구분을 저감 - 도시 : 대중교통중심도로, 외곽순환도로 및 주요 진입로 - 생활권 : 1-2·1-4·1-5 생활권의 가로 공간
설계대상	공공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는 공공시설물 - 도시 : 대중교통중심도로, 외곽 순환도로 및 주요 진입로 - 37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계를 원칙으로 하되 특화공간, 공공시설물 등 일부에 대해 설계 공모를 진행

주요 내용

- 도시계획단계부터 품격 높은 거리 경관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통합 설계를 추진하였다.
- ※ 각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사업은 개별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여 통합적인 경관조성에 어려움이 있다.
- 타 도시와 차별화 하고 품격 높은 디자인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 조정 체계(공공디자인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 도시 공간에 문화적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행복도시 공공미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 ✓ 계획 단계부터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여 통합적인 공공디자인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함
-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디자인분과를 운영하여 세종시만의 공공디자인 체계 마련

(2) 평택시

평택시 공공디자인 미래상

비전 및 전략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활력의 문화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소통, 협력하는 도시
목표	- 평택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쾌적한 환경 조성	- 풍부한 자연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로 평택시만의 정체성 확립	- 생태환경 확충 및 공공디자인 기준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평택 만들기	- 평택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평택시 공공디자인 인프라 체계 정립
실현과제	- 모두가 안전하고 불편 없는 평택시 - 안심되고 건강한 환경의 평택시 - 보도, 광장, 공원 등이 쾌적한 평택시 - 외국인도 쉽게 길 찾기 편한 평택시	- 글로벌 문화가 공존하는 평택시 - 젊은 감각의 즐거움이 있는 평택시 - 색깔 있는 관광문화를 가진 평택시 -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체성의 평택시	- 변화의 수용성을 가진 평택시 - 자연과 조화되는 개발의 평택시 - 국제적 기준의 도시 인프라의 평택시 - 지역 역사, 문화를 존중하는 평택시	- 지역 맞춤형 균형 발전의 평택시 - 지역 커뮤니티간 협력의 평택시 - 시민들의 참여가 제도화된 평택시 - 민·관 거버넌스가 활성화된 평택시
디자인 키워드	- 유니버설디자인 - 안전 디자인 - 읽기 쉬운 디자인	- 도시브랜드 디자인 - 관광 콘텐츠 디자인 - 펀(FUN) 디자인	- 녹색 디자인 - 탄력 있는 디자인 - 조화로운 디자인	- 서비스 디자인 - 커뮤니티 디자인

공공디자인 트렌드 반영

-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시 시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평택시 공공디자인은 서비스, 콘텐츠 등 도시의 문화적 품질(소프트파워)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평택시 공공디자인은 품질 관리를 위한 효율적, 체계적 공공디자인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 공공디자인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시민과의 소통, 문화적 품질,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 마련

(3) 수원시

정책

- 수원시의 공공건축물의 도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과 공공성 증진과 도시경관 수준 향상을 위해 수원 가이드라인 정책을 만들고, 새로운 지표, 도시디자인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에서 수원시 도시 질적 수준 제고와 지역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은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직

- 수원시는 제2부시장 직속의 도시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경관계획 및 심의, 협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디자인 행정 및 모니터링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가이드라인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총 5개 팀이 운영 중이며, 디자인 단장과 디자인기획관 외 20명이 운영 중에 있다.

사업

- “걸어서 수원” : 수원시의 공공공간 사업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 실행하고 있으며 “걸어서 수원”은 길 찾기가 쉬운 수원을 구축하기 위해 안내시스템과 보행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주제 2대 기본전략

1) 표준디자인시설물 활용 전략

- 수원의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 역사 문화 공간, 중심상업지, 산업공단 등 다양한 공간성을 활용한다.
- 수원 표준디자인 시설물에서는 수원을 일반형과 테마형으로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디자인을 활용한다.

일반형 활용	테마형 활용
- 도시 정체성 통일(복잡, 고밀, 혼잡 이미지 탈피)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계획 실행 필요 - 수원의 구도심을 중심으로 정비계획 실시	- 수원은 풍부한 역사문화요소 및 다양한 디자인 요소 보유 - 대상지 공간에 어울리는 디자인 수준 확보가 필요 - 지역의 특성을 연계시키는 디자인 계획 실시

2) 지역별 디자인 전략

일반적인 디자인 전략	테마지역 디자인 전략
- 수원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가로 및 지역에 적용 (단, 표준디자인이 조화롭지 못한 곳은 제외할 수 있다.) -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공공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환경의질을 높임	- 수원시내 특화가로 및 테마 지역, 공원, 신도시 등 특화된 지역을 적용 (단, 경관심의를 거쳐 계획, 설치 결정 할 수 있다.) - 문화, 예술 등 역사 도시로서 수원의 이미지를 새롭게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디자인을 선도

- ✓ 부시장 직속으로 디자인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다양한 분야의 부서에 디자인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디자인 협조 체계 구축
- ✓ 읽기 쉬운 도시를 구축하여 수원시 어디든 걸어서 찾아가갈 수 있는 보행 중심의 도시가 되도록 사업 진행
- ✓ 풍부한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도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역사자원이 풍부한 테마지역과 일반지역을 분류하여 지역 특색에 따라 디자인요소 결정

5.2 해외사례

(1) 일본 요코하마

주요내용

- 1960년대 도쿄 인구가 대량 유입되면서 도쿄의 부속도시·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로 전락한 요코하마시는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 1965년 이후 요코하마시는 전략적으로 ‘도시 만들기’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1971년 시청에 기획조정국과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하여 디자인을 도시계획 정책의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 2002년에 ‘국제항구 요코하마의 도시 만들기’ 전략이 수립되어 생활문화 도시조성을 위해 행정·시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 시민 참여를 공공이 지원하기 위해 시민활동과 협력에 관한 기본방침을 조례로 제정하였다.
- 행정기관이 구체화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준을 확립시키고, 정비단계에 맞는 사업들을 통해 파급효과를 강화하고 최종적으로 성과의 정착을 유도하였다.

방향과 기준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확보, ‘지형이나 식생의 보존’, ‘문화와 역사적 자산 보존’, ‘수변공간의 강화’, ‘사람들의 접촉과 소통이 원활한 공간 조성’,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방향과 기준으로 삼았다.

공공공간

(특화가로: 모토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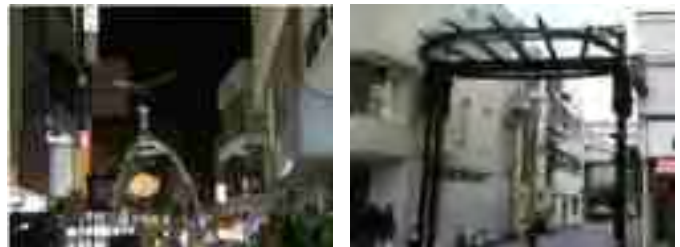
공공공간

(공원)



공공미술

(진입부 환경조형물)



- ✓ 법체계의 개선, 도시디자인 활동의 전개 방안, 도심부 중점관리방법 및 협의제도를 마련, 관련 조례 제정
- ✓ 다양한 시민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디자인의 원칙을 설정하여 도시의 모든 디자인적인 요소 조정
- ✓ 요코하마시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인 (주)미나토미라이를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으로 민·관 합동의 대표적 사례

(2) 영국 브리스틀

주요내용

- 쇼핑, 리테일에 관련된 것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주요 요소로 판단하여 '방문객의 편의'에 중점을 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실시되었다.
- 도시 전체의 인포메이션 체계 및 도시이미지의 통일화로 도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읽을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였다.
- 지역특색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뿐만 아니라 지역에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방향과 기준

- 방향과 기준 : '도시는 돌아다니기 편해야 한다.' '제공된 정보는 혼란스럽지 않고 이해가 쉬운 명료한 것이어야 한다.' '웹사이트건 거리 사인이건, 누가 어디서 어떠한 매체를 사용하든지 간에 동일한 정보를 일관성 있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를 방향과 기준으로 삼았다.

정보매체
(지역관광안내도)



정보매체
(방향유도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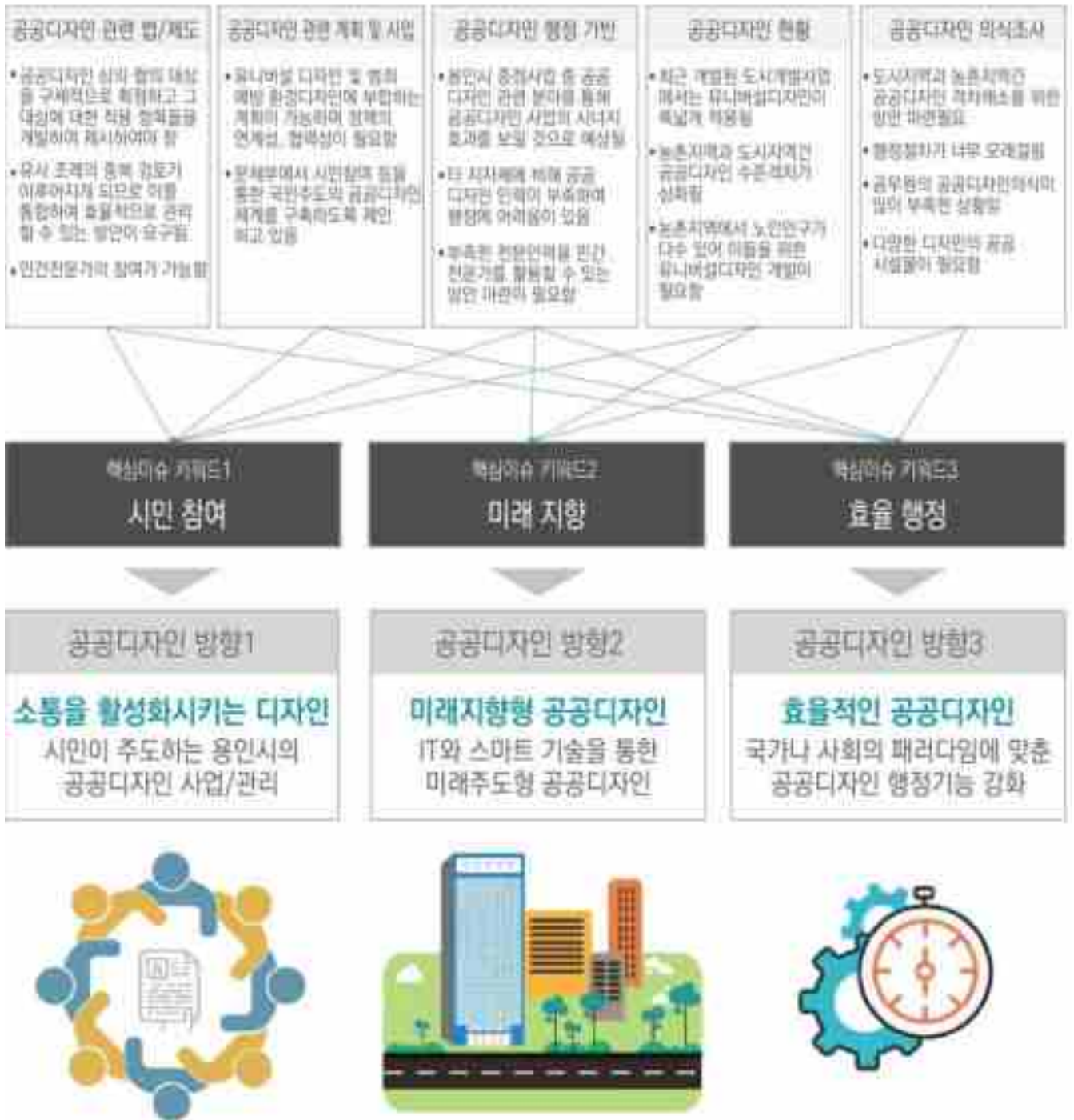
공공공간



- ✓ 도시 전체의 인포메이션 체계 및 도시이미지의 통일화로 도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읽을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
- ✓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뿐만 아니라 지역에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

6. 종합분석

6.1 용인시 종합분석



공공디자인 관련 이슈

관련 법/제도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전문가 위촉 가능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되어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강화
- 공공디자인진흥조례는 공공디자인 심의·협의 대상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비슷한 성격을 지닌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제도 구축이 필요함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및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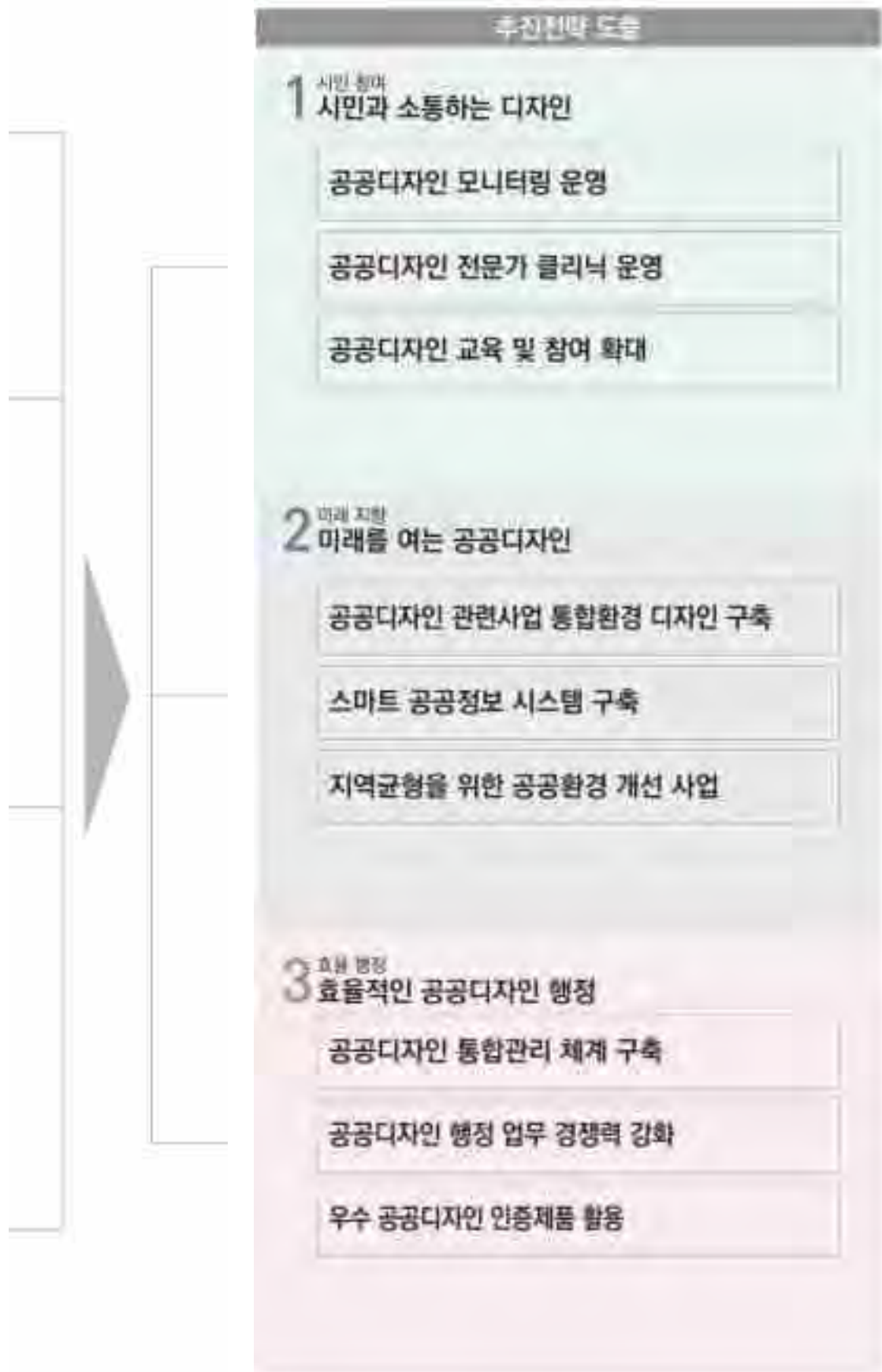
- 유니버설 디자인 및 범죄 예방 디자인에 부합하는 계획 및 연계, 협력을 통해 정책 효율성 강화
- 상위 기관 계획을 검토하고 동일한 정책적 목표와 역할이 가능하도록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연계성을 적극 검토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에서는 시민참여 등을 통한 국민주도의 공공디자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플랫폼시티’, ‘도시재생사업’, ‘택지 개발사업’ 등 도시공간 사업에서 공공 공간, 공공 시각 정보환경 등 공공디자인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용인시 공공디자인 현황

- 상위 계획과 함께 유니버설 디자인 및 범죄 예방 디자인에 부합하는 계획 및 연계, 협력을 통해 정책 효율성 강화
- 비슷한 규모의 타도시에 비해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임
- 전문 인력의 보완 전까지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공공디자인 정책의 변화와 트렌드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며 관련 정책의 연계체계를 유연하게 구축하여 계획의 혁신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 용인시는 도시 및 택지 개발사업과 용인시의 중심사업인 플랫폼시티, GTX, 반도체 클러스터 등 공공디자인 관련 부분의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함
- 농촌지역의 경우 기존의 공공 공간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역량이 매우 부실함
- 일부 공공시설물(블러드 및 안내사인)에서 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있음
- 용인시의 기존 공공건축물의 정보 안내 시스템이 부재하여 사용자가 공간을 인지하기 어려움
- 용인시는 타지역에 비해 노인·어린이인구 비율이 높음
-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노인·외국인구의 비율이 높음
- 용인시의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이 감소하는 등 정책적 동력이 취약해지는 추세에 있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용인시 공공디자인 인식조사

- 용인시의 시민들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진행할 시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함
- 인식조사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공공디자인격차 해소를 원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필요함
- 심의/협의의 효율화 방안이 필요함
- 공공디자인 인식의 향상이 필요함
- 용인시는 장소의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시설물이 필요함
- 정책적으로 개발보다는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함



6.2 기본방향

(1) 용인시 3구 및 세대별, 권역별, 계층별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공공디자인 (소통을 활성화 시키는 디자인)

- 용인시 3구의 개별적 특성 유지와 각 구별 특성에 공간적 단절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지역 내 계층과 시민들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한다.
- 민·관의 협업 및 공공디자인 전문가 참여를 통해 용인시의 현실과 시민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한다.



(2) 세계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형 공공디자인 (미래지향적 공공디자인)

- 미래지향형 IT기술을 활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급의 도시디자인 시설과 세계적 트렌드에 동반하는 공공디자인 기반을 구축한다.
- 용인시의 공공디자인 유관 사업 및 중점사업(플랫폼시티 조성사업, GTX-A 망 구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다.
-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의 공공디자인(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의 관리 및 조성수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3) 행정업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디자인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 단순한 선진, 선도 사례의 도입 개념을 벗어나 용인시 특성과 가치를 부각하는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한다.
- 용인시의 현실에 알맞은 행정조직 및 인력 충원을 통해 공공디자인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구성한다.
- 다양하고 검증된 공공시설물과 용인시의 다양한 특징(도시, 농촌 등)에 알맞은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우수디자인 인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1. 비전 및 목표	92
2. 추진전략	94

1. 비전 및 목표

1.1 공공디자인 비전

-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현황, 시정 정책,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비전 추진 목표를 설정한다.



용인시 공공디자인진흥의 비전은 시민·전문가·행정이 함께 거버넌스를 향상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구축하는 용인시민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의미함

1.2 추진목표

(1) 용인시 공공디자인 개념 체계의 구축

- 용인시는 도시계획에 있어 다른 지자체보다 공공디자인의 개념 도입과 조례 수립이 빨랐으며, 그 주체 및 대상,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합의된 정책적 용어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용인시만의 공공디자인 개념 체계 구축이 지연되었다.
- 2020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통해 용인시 고유의 공공디자인 개념 체계를 구축하고 용인시 공공디자인 부서 및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자들이 통일된 정책적 용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2) 용인시 공공디자인 정책 기본모델 제시

- 용인시 정책과 다양한 정부 추진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 체계에 대한 현황조사에서 각기 다른 부서의 이해가 충돌하는 의견이 도출되는 것은 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용인시에 특화된 공공디자인 정책 개념·모델을 명확하게 정립한다.

(3) 용인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구성 및 운영체계 기준 마련

- 공공디자인 부서 내에 공공디자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수가 부족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확보된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
- 현재 용인시에서는 다수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과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 행정체계, 담당자의 전문성, 전문 인력의 규모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2. 추진전략

2.1 시민과 소통하는 디자인

(1)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디자인

- 다양한 공공디자인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시민디자인심사제 (도시 시설물 등의 심사에 시민참여 및 추천제), 시민디자인 감리단(다양한 정부 사업의 모니터링 및 관리참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속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 전문가·행정부서와의 소통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정착시켜 나가도록 한다.
- 향후 ‘용인시 공공디자인’은 시민이 단순 참여로 그치지 않고 민간영역의 디자인을 관리하고, 민간 중심의 계획이 주도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민 디자인 프로젝트를 용인시 공공디자인 모델로 규정하여 타 지자체보다 크게 열리고 넓게 소통하는 공공디자인 정책 지향성을 추진한다.
- 궁극적으로 시민주도 공공디자인이 되도록 목표를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관 중심의 운영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를 통해 공공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한다.

(2) 장기적 관점의 복합·단계별 공공디자인계획 수립

-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용인시의 미래 사회 변화에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형 공공디자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 용인시 공공디자인 정책적 관점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연차별 시책 및 사업을 개발하여 실효적이고 용인시 발전에 적극 기여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2.2 미래지향형 공공디자인

(1) 정책과 사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 수립

- 용인시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수립 및 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개발한다.
- 용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용인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전반에 걸쳐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과 유사 사업에 부처별 격벽을 넘어 전문성을 발휘하여 기여하도록 한다.

(2) 공공디자인 특화권역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추진

- 용인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각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권역을 설정하고 각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각 공공디자인 권역은 도시경관기능, 토지활용특성, 거점도심권 분포 등의 지표들을 통해 정책수립의 근거를 계량화하여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기대효과를 부각한다.
- 균형발전 및 특화발전 등 권역별 특수성을 고려하되,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특정 권역에 이득이나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균형잡힌 결과를 창출한다.

(3)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공공디자인 정책추진

- 용인시의 도농복합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도시대비 농촌 환경의 상대적 열악함을 개선하고, 특히 고령자 생활환경의 장애환경개선 (보행 장애, 정보환경 장애 등)을 추진한다.
- 도농 양극화와 고령화, 소외 지역에 대한 맞춤형 시범사업 계획과 정책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시범사업으로 축적된 여러 성과들과 공공디자인 지원클리닉 등에서 발의된 아이디어들을 통합하여 ‘용인시 공공디자인 생활환경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각 지역이 공유한다.

2.3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행정

(1) 용인시의 공공디자인 개발과 업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통합성 유지를 위해 공공디자인 행정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은 용인시의 각 권역 개발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용인시 개발의 균형발전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2) 용인 시정책 추진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

- 현재 용인시의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계획 및 조례 등의 운영과 기능 정도가 충돌하거나 유격이 발생하는 등 정부 내 관리계획이 각기 다른 상황이므로 이를 정비해 통합적 관리계획이 적용될 수 있는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추진한다.

1. 개요	98
2. 시민과 소통하는 공공디자인	101
3. 미래를 여는 공공디자인	104
3.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행정	107

1. 개요

1.1 공공디자인 추진전략에 따른 실천과제 개요

-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비전인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도시 용인!'의 실천과제의 유형을 '시민과 소통하는 디자인', '미래를 여는 공공디자인',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행정'을 제시한다.



- 각각의 유형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유형	키워드	내용
1. 시민과 소통하는 디자인	시민 참여	모든 공공디자인 주체에게 참여 기회 제공
2. 미래를 여는 공공디자인	미래 지향	미래지향적 용인시 공공디자인 구축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
3.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행정	효율 행정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한 행정 프로세스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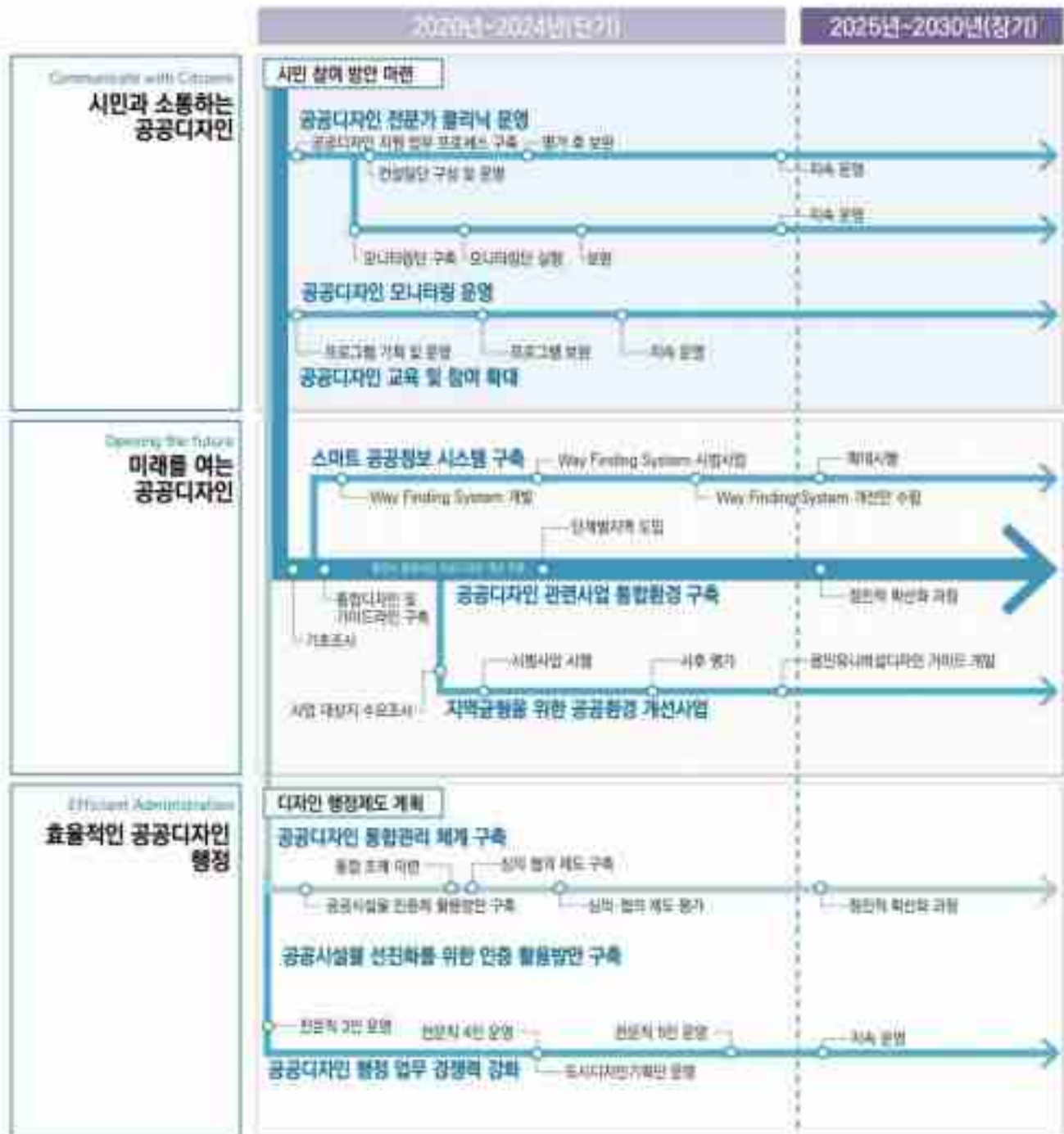
1.2 공공디자인 실천과제 도출

-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비전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9대 실천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실천과제		기대효과
시민과 소통하는 디자인 시민 참여	1 공공디자인 전문가 클리닉 운영	중소기업의 디자인 사업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통한 공공디자인 산업경쟁력 강화
	2 공공디자인 모니터링 운영	시민주도의 모니터링 제도를 통한 시민의 의견을 쉽게 접하여 직접적으로 공공관심에 직결 가능
	3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 확대	공무원 및 시민의 공공디자인 교육확대를 통해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참여를 상승 기여
미래를 여는 공공디자인 미래 시선	1 스마트 공공정보 시스템 구축	4차산업시대 이미지에 걸맞은 공공정보체계 구축하여 미래지향적인 IT도시 이미지 구축
	2 공공디자인 관련사업 통합환경 디자인 구축	미래지향적인 용인시 이미지 구축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의 구축
	3 지역균형을 위한 공공환경 개선 사업	가로환경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리얼한 정보 제공으로 부흥현역 만족도 향상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행정 효율 행정	1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	용인시의 각 조직 개별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통합의 운영체계를 효율 관리
	2 공공시설물 선진화를 위한 인증 활용방안 구축	타당한 수상 및 국제인증 디자인 시범품등 도입 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 도시로 변모
	3 공공디자인 행정 업무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추진 및 사업 시행을 위해 전문부서의 전문화 강화

-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중심의 디자인은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함께 만들어나가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시민중심의 용인시 디자인 환경 구축에 목적이 있다.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모니터링과 공공디자인 교육대상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의식 및 공공디자인 역량을 강화한다.
- 상생의 미래를 여는 스마트 디자인은 용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미래형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구성하고, 4차 혁명시대에 발맞춰 IT개념을 도입한 정보체계에 더하여 미래의 용인시의 인구변화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위한 디자인은 법과 제도를 국가나 사회적인 패러다임에 맞추어 조례와 제도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조직을 인구 110만의 용인시 규모에 걸맞은 규모 및 조직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표준디자인 제도는 국가 및 사회의 패러다임에 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제품을 활용하여 미래지향적인 용인시의 이미지를 구축한다.

1.3 공공디자인 로드맵






2. 시민과 소통하는 디자인

2.1 공공디자인 전문가 클리닉 운영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의 주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부서 간 공공디자인 분야 협력 사업, 용인소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의 디자인 지원 사업 시 전문가 클리닉 운영을 통해 지역산업과 공공디자인 분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 전문가가 참여하여 디자인하는 용인시의 공공디자인제도를 마련한다.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실행, 관리 단계에서 각 상황에 대한 적합한 ‘공공지원디자인 전문가’의 지역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 각 부처 간 공공디자인 및 거버넌스 디자인 협력분야의 발생 시 이를 지원하고 문제들을 해결할 다양한 디자인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디자인관련 사업에 행정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해당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혁신 디자인 클리닉’을 구축한다. - 용인시 공공혁신 디자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술지원 포털을 구축한다. - 지원 사업 인력과 공공지원 디자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 공공혁신 디자인클리닉’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성과관리,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시책사업 컨설팅을 위한 공공디자인 컨설팅 프로그램 및 사업단을 구성한다. - 공공사업과 시책사업의 기획단계에서 공공디자인 개발·지원·자문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플랫폼을 개발한다. - 공공디자인 담당과 공공디자인 지원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성하여 공공디자인 지원업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구축한다. - 언제든 공공디자인 지원 및 컨설팅 등이 가능한 용인시의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포털을 구축하여 용인시 공공혁신 디자인클리닉을 용인시 공공디자인 대표 행정 브랜드로 발전시킨다. - 공공디자인 자문단운영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 공공디자인 전문가 클리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건축가제도와 연계한다. <div data-bbox="459 1339 1295 1771" style="text-align: center;"> </div>										
<p>기대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디자인 사업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통한 공공디자인 산업경쟁력 강화 -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공공디자인 행정의 업무의 효율성 강화 										
<p>추진 계획</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1년차</th> <th style="width: 20%;">2년차</th> <th style="width: 20%;">3년차</th> <th style="width: 20%;">4년차</th> <th style="width: 20%;">5년차</th> </tr> </thead> <tbody> <tr> <td>공공디자인 지원 업무 프로세스 구축</td> <td>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td> <td>평가 후 보완</td> <td>지속 운영</td> <td></td> </tr> </tbody> </table>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공공디자인 지원 업무 프로세스 구축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평가 후 보완	지속 운영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공공디자인 지원 업무 프로세스 구축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평가 후 보완	지속 운영								

2.2 공공디자인 모니터링 운영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의 관리체계는 사업 진행 시의 성과 관리와 공정관리 외에,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 확보 차원에서 사후 관리의 일환인 후속 관리체계가 존재한다. - 천편일률적이고 사무적인 사후 관리가 아닌 사업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생력 확보 목적으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후속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 시민참여를 유도한다.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완공단계 및 사용단계에서 결과물에 대한 디자인 관리체계의 부재가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엄정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과 사업성과의 환류를 위해서 다양한 사후관리 방안이 요구되며 최종 사용자이자 서비스 대상인 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 및 관리감독 역할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 시민이 공공디자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된다.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사후 평가 체계 및 자체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업무를 부여하도록 한다. - 사업관리 그룹에 모니터링 업무를 지정하여 사후 평가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단계별 전문가 모니터링 단의 투입으로 중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각 단계별 성과관리 그룹은 성과 관리 결과의 공개와 중간 평가를 통해 사업 관리를 추진한다. - 시민&전문가 모니터링 추진체계 구축,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통보 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지침 목록의 개발을 공유한다. - 모니터링 대상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해 시민의 의견이 개선되어 시민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기반을 마련한다.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이 구축하는 관리지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모니터링 프로세스의 개발과 지원방안 수립 (조례 반영)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전문가관리 체계 전문가관리단 운영 (개요 및 프로세스 확인)</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시민관리 체계 시민관리단 운영 (개요 및 지원방안 수립)</p> </div>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4">평가 요소</th> </tr> </thead> <tbody> <tr> <td>공공성</td> <td>접근성</td> <td>사용성</td> <td>안전성</td> <td>지역성</td> </tr> <tr> <td>디자인</td> <td>경관성</td> <td>지속가능성</td> <td colspan="2">시공성</td> </tr> <tr> <td>효 과</td> <td>지역주민</td> <td>지역사회</td> <td colspan="2">경제성</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사후관리 지침 목록〉</p> </div>	구 분	평가 요소				공공성	접근성	사용성	안전성	지역성	디자인	경관성	지속가능성	시공성		효 과	지역주민	지역사회	경제성	
구 분	평가 요소																				
	공공성	접근성	사용성	안전성	지역성																
디자인	경관성	지속가능성	시공성																		
효 과	지역주민	지역사회	경제성																		
<p>기대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실질적인 사용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 시민들이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수 수렴할 수 있다. 																				
<p>추진 계획</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1년차</th> <th>2년차</th> <th>3년차</th> <th>4년차</th> <th>5년차</th> </tr> <tr> <td>-</td> <td>구축 및 실행</td> <td>보완</td> <td>지속 운영</td> <td></td> </tr> </table>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구축 및 실행	보완	지속 운영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구축 및 실행	보완	지속 운영																		

2.3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 확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부서 간 협업과 공공디자인의 가치 공유를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교육을 진행한다. - 용인시를 만들어 가는 다양한 계층과 관계자의 공공디자인 마인드 제고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심화교육 시스템을 도입한다.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실무자가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여 사업결과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시민, 계층별 대상 관료, 전문가, 공공디자인 산업주체 등 다양한 공공디자인 관계자들의 공공디자인 기초교육과 전문교육, 선진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 단순한 공공디자인 개념 교육을 넘어서 대상 간 맞춤형교육과 기능이 요구되며 교육 및 역량강화 대상의 확장을 통해 공공디자인 컨센서스의 확대와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맞춤형 공공디자인을 교육한다. - 공공디자인 교육 교안 개발과 참여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한다. - 시기별, 대상별 프로그램의 상시 보완과정을 구축하여 현장성 있고 살아있는 실용교육을 추진한다. - 지속가능한 운영 플랫폼의 구축을 위해 시·군·구별 전문 교육 강사 확보와 다양한 기능의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추진한다. - 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를 통해 용인시 시민들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 시민들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추후 공공디자인 시민기획단 운영에 발판이 되도록 한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교육 : 시민교육은 지역활동가, 지역참여 등을 하는 활성화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공무원교육(6급 이하) : 일반 공무원에게는 체계적으로 공공디자인 교육을 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35%; text-align: center;">공공디자인 기본 개념</td> <td style="width: 35%; text-align: center;">공공디자인 관련 이론</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이론교육</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의 이해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해 - 공공디자인 추진사업 유형 - 공공디자인 행정 시스템의 이해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 - 공공서비스디자인 </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체험·실습 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례 답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습 교육</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간, 건축물 등 공공디자인의 우수사례 답사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 인지건강, 어린이 안전 등의 이론 교육의 상황 제시를 통한 현장 체험 교육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 개선필요사례(실무적용) 토론회 -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td> <td colspan="2"></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직 및 선출직 관료 교육 : 시장을 비롯한 정무직 관료, 각 실·국장 및 내외 지원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 전문가 교육 : 용인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자문, 평가, 위원회 위원과 지역사회의 지역개발 분야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 교육지원센터 : 단 기간의 간헐적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문교육으로 추진한다. 						공공디자인 기본 개념	공공디자인 관련 이론			이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의 이해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해 - 공공디자인 추진사업 유형 - 공공디자인 행정 시스템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 - 공공서비스디자인 			체험·실습 교육	사례 답사	실습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간, 건축물 등 공공디자인의 우수사례 답사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 인지건강, 어린이 안전 등의 이론 교육의 상황 제시를 통한 현장 체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 개선필요사례(실무적용) 토론회 -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공공디자인 기본 개념	공공디자인 관련 이론																							
이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의 이해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해 - 공공디자인 추진사업 유형 - 공공디자인 행정 시스템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 - 공공서비스디자인 																							
체험·실습 교육	사례 답사	실습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간, 건축물 등 공공디자인의 우수사례 답사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 인지건강, 어린이 안전 등의 이론 교육의 상황 제시를 통한 현장 체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 개선필요사례(실무적용) 토론회 -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 공직자들의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시의 공공디자인 수준이 상승될 것이다. - 시민들의 사업 참여도가 높아져 지역 특색에 알맞은 디자인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추진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프로그램 보완	지속운영																						

3. 미래를 여는 공공디자인

3.1 스마트 공공정보 시스템 구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사업의 어려운 과제중 하나인 Way Finding System(길 찾기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수도권 도시디자인을 선도하는 시로 발전한다. - IT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공공환경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의 정보디자인 체계가 낙후되고 미비하여 길 찾기 및 공공시설 이용 시 이용자가 각 목표점으로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양한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 Way Finding System의 구축은 지역, 권역, 주요 시설 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해 주고 이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이어져 이용자 및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 취약계층(노인 및 어린이 등)을 위한 안내사인 개발로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동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기술을 활용하여 미래지향적인 용인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Way Finding System 전문 인력과 협업기관을 확보한다. - 지역 이해도와 전문성을 가진 전문조직을 통해 디자인·시스템을 개발한다. (예 : 대학연구소 및 학술기관 등) - Way Finding System을 통해 지역특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보 집중 대상 권역을 선정하고 선제적으로 시범 적용하여 다양한 정보 오류를 사전 검토하는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한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생활자 및 방문 사용자의 특성 및 행태를 반영한 Way Finding System을 구축한다. - 신·구 건축물과 준공 완료중인 대상 공간을 포괄하여 지속가능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 설치, 운영 지침 개발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의·규칙에 대한 안내사인 개발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도시공간에 스마트 플라와 같은 공공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물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관성·시인성·국제성이 확보된 공공안내사인을 통해 알기 쉬운 안내사인의 정보를 제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취약계층(노인 및 어린이 등)을 배려하는 공공정보환경이 구축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조성될 것이다. 										
추진 계획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1년차</th> <th style="width: 20%;">2년차</th> <th style="width: 20%;">3년차</th> <th style="width: 20%;">4년차</th> <th style="width: 20%;">5년차</th> </tr> </thead> <tbody> <tr> <td>Way Finding System 디자인 개발</td> <td>Way Finding System 디자인 개발 시범사업</td> <td>Way Finding System 개선안 수립</td> <td>확대 시행</td> <td></td> </tr> </tbody> </table>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Way Finding System 디자인 개발	Way Finding System 디자인 개발 시범사업	Way Finding System 개선안 수립	확대 시행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Way Finding System 디자인 개발	Way Finding System 디자인 개발 시범사업	Way Finding System 개선안 수립	확대 시행								

3.2 공공디자인 관련사업 통합환경 디자인 구축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또는 활성화를 위한 단계에서 공공기반 시설로 사용되는 도시환경시설물의 통합 과정이며 공공공간과 공공 건축물 및 정부기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품질을 높이고 혁신하는 정책은 민간의 공공디자인 수준을 견인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 용인시의 중점사업인 GTX, 플랫폼시티, 반도체클러스터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이며 스마트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브랜딩의 일환으로 시기와 목적 등이 상이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공공건축물과 도시환경시설물을 정비하여 통합된 도시이미지를 제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공적 자원이 투명하게 투입될 수 있는 공공건축물과 도시환경시설물을 우선대상으로 삼아 시범사례를 만들고 민간이 자체적으로 공공디자인의 효용성을 인지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인프라의 미래지향적인 통합이미지 적용 방안의 개발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열린 프로세스와 과정으로서의 용인시 공공건축·공간의 공공디자인 통합화 정책과 방안을 도입한다. - 도시 및 택지 개발사업 등을 진행 시 공공디자인 관련 부문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용인시 중점사업(GTX, 플랫폼시티, 반도체클러스터사업)은 IT기술이 접목된 공공디자인을 사용하여 미래지향적인 용인시의 이미지를 구축한다. - 미래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을 마련하여 공공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다.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디자인(Integral Design)+서비스디자인(Service Design)’의 협업 플랫폼을 통해 용인만의 디자인 컨셉을 도출하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용인시 내의 용인형 공공디자인을 추진한다. - 도시환경시설물의 용인디자인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을 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인 용인시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개념을 확립한다. - 개별 공공건축·공간의 특성과 용인시 공공디자인 전략이 조화롭게 나타나도록 공공건축·공간의 통합이미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현재 진행 중인 도시·택지 개발사업이나 진행 예정인 사업에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기존의 건축물과 공간에 용인시의 이미지를 공유하는 디자인 개념을 개발하여 통합된 용인시의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예; 대표 사인시설 또는 컬러계획의 통합디자인 등) - 용인시 중점사업(GTX, 플랫폼시티, 반도체클러스터사업)은 IT혁신 공공디자인 사업지역으로서 공공환경정보를 알수 있는 스마트폴, 시민의 안전과 편의시설을 갖춘 스마트쉼터 등을 적용하며, 또한 스마트 파킹, 스마트 신호체계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 시설물 설치 시 용인시 내의 업체를 활용하여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data-bbox="319 1500 1101 1792" style="flex: 1;"> <p>공공디자인 TF팀 구성: 기획/전략, 디자인/시각, 운영/관리, 평가/개선</p> <p>업무 프로세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검토 (색채/형태/소재/실재성) 중 가이드라인 적용 → 원형에 특수성이나 관문적인 관점이 필요한 경우 공공디자인 요소/사업 컨설팅도 활용</p> </div> <div data-bbox="1117 1478 1452 1758" style="flex: 1;"> <p>스마트 쉼터</p> </div> </div>										
<p>기대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관성과 통일성이 필요한 공공시설 디자인의 기준을 정립하여 용인시만의 이미지가 구축된다. - 다양한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개념이 도시에 적용될 것이다. 										
<p>추진 계획</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1년차</th> <th>2년차</th> <th>3년차</th> <th>4년차</th> <th>5년차</th> </tr> </thead> <tbody> <tr> <td>기초조사</td> <td>통합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구축</td> <td>단계별 지역도입</td> <td>점진적 확산화 과정</td> <td>프로그램 보완</td> </tr> </tbody> </table>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기초조사	통합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구축	단계별 지역도입	점진적 확산화 과정	프로그램 보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기초조사	통합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구축	단계별 지역도입	점진적 확산화 과정	프로그램 보완							

3.3 지역균형을 위한 공공환경 개선 사업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의 도농복합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도시대비 농촌 환경의 상대적 열악함을 개선하고, 특히 고령자 생활환경의 장애환경개선 (보행 장애, 정보환경 장애 등)을 추진한다.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농촌지역 공공디자인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 고령자, 보행 및 교통 환경 취약계층과 정책 소외 계층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에 대해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 공공디자인은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등한 공공디자인 서비스의 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양극화에 의한 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의 수요를 조사한다. - 도농 양극화와 고령화, 소외지역에 대한 맞춤형 시범사업 계획과 정책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시범사업으로 축적된 여러 성과들과 공공디자인 지원클리닉 등에서 발의된 아이디어들을 통합하여 '용인시 공공디자인 생활환경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각 지역이 공유한다. - 지역의 역사적인 특징(역사적인 인물 및 지역의 설화 등)을 활용하여 지역적 특징이 살릴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 양극화와 소외지역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개선을 동시 달성한다. - 지역특성, 참여주민, 다양한 지역 오피니언들과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솔루션 개발을 공론의 장에서 발굴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정책과 사업을 제공한다. - 도농 간 균형 있는 공공시설내의 일상공간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 - 용인시 농촌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디자인 생활환경 가이드북을 개발한다. 예) 용인유니버설디자인 - 도농지역과 고령자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현실에 맞는 환경디자인 가이드를 개발한다. - 다양한 사회적 거리와 양극화 해결을 위한 사업결과와 성과를 중심의 용인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북을 개발한다. - 농촌지역과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환경개선 사업 시 쉽게 아이디어의 발굴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p>The images show various public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s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The top image shows a street scene with a pedestrian crossing and a bus stop. The second image shows a street with a pedestrian crossing and a bus stop. The third image shows a modern building with a glass facade. The bottom image shows a street scene with a pedestrian crossing and a bus stop.</p>			
<p>기대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지역에 대한 맞춤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진다. - 농촌지역의 고령인구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한다. - 유니버설디자인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한 시민들의 공공환경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p>추진 계획</p>	<p>1년차</p> <p>-</p>	<p>2년차</p> <p>사업 대상지 수요조사</p>	<p>3년차</p> <p>시범사업 시행</p>	<p>4년차</p> <p>사후 평가</p>	<p>5년차</p> <p>용인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 개발</p>

4.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행정

4.1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법정계획 간 통합 운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 공공디자인 유관 조례의 검토와 조례 간 이해의 상충, 중복 등의 내용을 조정하여 통합적 정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 용인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심의, 검토, 자문, 협의 평가 프로세스를 개발한다.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성격을 지닌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유니버설디자인조례’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디자인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 사항인 통합조례가 요구되고 있다. - 용인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을 경관에서 다루고 있으나, 경관에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다루기 어려우므로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 통합형 공공디자인 제도(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개발 및 구축하고 통합 조례를 마련한다. -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협의 제도의 용인시 프로세스의 개발 및 구축과 새로운 심의·협의제도 평가 제도의 개발 및 운영한다.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인시의 공공 디자인 진흥조례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검토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기초한 공공디자인 통합 조례안을 검토 상정한다. - 공공디자인의 심의·협의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공공 디자인 업무 시스템 마련하고 공공디자인의 심의·협의 대상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 용인형 공공디자인 심의, 평가, 자문체계는 향후 비대면 평가방식의 도입으로 국내외 환경에 변화하는 발 빠른 대응 방식을 마련한다. - 향후 평가, 자문, 심의 시스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은 물론 서면, 방문, 심화 평가 등으로 세분화 또는 다양화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심의 풀을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확대하여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div data-bbox="954 1025 1460 1444" style="text-align: center;"> <p>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범죄예방 환경도시디자인 = 통합형 디자인 조례 (통합조례구상)</p> </div> <div data-bbox="316 1550 1455 1758" style="text-align: center;"> <p>책임의심의 지적 사항 보완 후 재요청</p> <p>심의 자문 요청 → 계획제출 수립 → 기타관련부처 협의 → 위원회 검토 → 위원회 개최 → 심의 자문결과 통보</p> </div>										
<p>기대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평가방식을 통해 사업규모 및 환경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다. - 유사조례의 통합으로 관련 사업 시행 시 중복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된다. 										
<p>추진 계획</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1년차</th> <th style="width: 20%;">2년차</th> <th style="width: 20%;">3년차</th> <th style="width: 20%;">4년차</th> <th style="width: 20%;">5년차</th> </tr> </thead> <tbody> <tr> <td>심의·협의 제도 구축 통합 조례 마련</td> <td>심의·협의제도 평가</td> <td>지속 운영</td> <td>점진적 확산화 과정</td> <td></td> </tr> </tbody> </table>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심의·협의 제도 구축 통합 조례 마련	심의·협의제도 평가	지속 운영	점진적 확산화 과정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심의·협의 제도 구축 통합 조례 마련	심의·협의제도 평가	지속 운영	점진적 확산화 과정								

4.2 공공시설물 선진화를 위한 인증 활용방안 구축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에 다양하고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보급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에서 인증하고 있는 인증제품을 활용한다. - 용인시 시민 및 용인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우수 시설물을 선정하고 시민선호도를 검토하여 용인시 특화 시설물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 다양한 전문선행기관 (도로공사, 토지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혁신도시 및 첨단도시)의 선정 시설물 및 신기술 도입시설물을 반영한다. - 기타 국제 대회의 수상 시설물, 해외 우수 디자인 기관의 첨단 시설물을 도입한다.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는 도시, 농촌, 산촌 등 다양한 특성을 포괄하는 도농 복합 도시로 각 장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이 필요하다. - 세계화 시대에 발맞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설물 도입이 필요하다. - 첨단 시설물의 선행 도입을 통해 우수 소재, 신기술 도입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고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국내외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의 우수 도시환경 시설물 수상, 인증을 검토하고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품질제고의 특수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모니터링 한다. - 상급, 인증의 법적 평가 등 다양한 사회적 실적을 전문위원회를 통해 도입 등급화 체계를 수립한다. -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의 도입에 대한 성과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외 사업에서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의 도입을 권고한다.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 시민선호도(시민참여 방안) 제품을 선정한다.(용인시민이 뽑은 우수 도시경관시설물) - 한국디자인 진흥원(KIDP) 'G' 마크,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사업의 선정 제품 등 우수 디자인 선도기관의 인증 또는 선정 제품의 도입안을 수립한다. - IF, 레드닷 등 국제 디자인 공모전 선정 작품 등에 대한 용인시 우수디자인 시설의 도입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도시경관 시설과 경관재 도입을 추진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text-align: center;"> <div data-bbox="295 1467 598 1691">  <p>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p> </div> <div data-bbox="662 1467 933 1713">  <p>레드닷</p> </div> <div data-bbox="997 1456 1260 1713">  <p>IF</p> </div> </div>										
<p>기대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수상 및 국제인증 디자인 시설물의 도입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 도시로 변모될 것이다. -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고 시민이 디자인한 시민중심의 도시로 변화할 것이다. 										
<p>추진 계획</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1년차</th> <th style="width: 15%;">2년차</th> <th style="width: 15%;">3년차</th> <th style="width: 15%;">4년차</th> <th style="width: 15%;">5년차</th> </tr> </thead> <tbody> <tr> <td>지속운영</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지속운영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지속운영											

4.3 공공디자인 행정 업무 경쟁력 강화

<p>개요</p>	<p>- 용인시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추진 및 사업시행을 위해 전담부서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p>				
<p>필요성</p>	<p>-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관련 기법들이 다양화되고 전문화 되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이 고도화 되어야 한다.</p> <p>- 도시환경디자인, 지역활성화 디자인, 갈등해소 디자인 등 공공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정책적 요구도가 고도화되어 정부 내 전문역량을 가진 전문가의 수요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p> <p>- 용인시는 규모(인구 110만 이상)가 비슷한 타 도시(성남, 수원 등)에 비해 공공디자인 행정 조직의 규모가 작아 전문인력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p>				
<p>목적</p>	<p>-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부처별 지원과 사업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접적인 디자인 지원과 컨설팅 정책기획이 필요한 도시디자인 활성화, 소통 활성화, 지역개발 사업추진 관련 전문직을 5인으로 확대하여 조직구성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에 기초해 조직 내 조력과 협업,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도시디자인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함이다.</p>				
<p>내용</p>	<p>- 현 주택국의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운영하는 체계에서, 제2부시장 직속 도시디자인기획단을 신설하여 운영한다.</p> <p>- 연차별로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인력 및 기능을 확대하여 110만 인구도시의 공공디자인 수요에 맞는 공공디자인 전문조직의 규모로 발전한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TD A[제2부시장] --> B[도시디자인기획단] B --> C[공공디자인 정책팀] B --> D[유니버설디자인팀] B --> E[공공디자인 사업팀] </pre> </div>				
<p>기대 효과</p>	<p>- 분야별 팀조직 구성을 통해 조직의 다양성이 강화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통해 분야별 전문성이 강화되어, 용인시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p>				
<p>추진 계획</p>	<p>1년차</p>	<p>2년차</p>	<p>3년차</p>	<p>4년차</p>	<p>5년차</p>
<p></p>	<p>-</p>	<p>전문직 4인 확대</p>	<p>도시디자인 기획단 운영</p>	<p>전문직 5인 확대</p>	<p></p>

1. 조례 개정	112
2. 위원회 운영 방안	125
3. 홍보·교육	130
4. 전담조직(안)	134
5.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136
6. 시민참여방안	138

1. 조례개정

1.1 조례개정 개요

(1)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개정의 필요성

- 공공디자인의 심의 대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진행 시 관련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우므로 세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2) 용인시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현황

-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포함하여 공공디자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례가 아래와 같이 시행 중이다.

구분	목적 및 내용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용인시의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
용인시 경관 조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용인시 공공시설을 비롯한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 상징물 조례	용인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개정 방향

- 현재 운영 중인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련사업 진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을 유도한다.
-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해 심의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1.2 개정 계획(안)

- 다음 조례(안)에서는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4가지 규정에 디자인의 기본방향 3개 분야를 더하여 총칙의 장에 통합하였다.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변경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변경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
- ② “공공디자인”이란 시가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 ③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④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 ⑥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 ⑦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시·도 / 시·군·구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
 - 나.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업
 -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제3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변경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7. 주민들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4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청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제6조 제5항에 따른 공고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용인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 5. 공공시설물 등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6. 제21조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 8.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변경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 1. 공공디자인 업무관련 국장 및 부서장
 -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3. 용인시의회 의원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제12조 등의 사유로 인해 생긴 결위를 보충하는 경우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를 승계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5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 ③ 소위원회는 회의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④ 소위원회 심의·자문은 업무의 긴급함을 요할 경우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심의신청 시기)

신설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
(심의절차)

신설

- ① 시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
 2.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②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기본설계 완료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가 수립되지 않는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에 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

-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4장 시범사업

제21조
(시범사업의 추진)

-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에 주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비의 지원)

-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공공디자인 업무협약)

- ① 시의 각 부서 및 구청장이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시의 각 부서 및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는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의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외에 시의 각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디자인 협의를 위한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제25조
(협력체계 구축)

-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장·시민단체·전문가·구의회 의원·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20조 관련)	
<p>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한다.</p>	
<p>1. 공공공간</p>	
분류	세부항목
공원 및 휴양공간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등
가로공간	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다. 공개·전면공지 등 라.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p>2. 공공건축물</p>	
분류	세부항목
공공청사	가. 공공기관 청사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다. 소방서 등
문화·복지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경기장 사. 공연·전시장 아. 홍보·기념관 등
교통시설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등
환경시설	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기 타	시 및 시 출연·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3. 도시기반시설물

분류	세부항목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 바. 생태통로 등
도로부속 시설물	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사. 석축 및 옹벽 등
교통기반	가. 지하철 출입구 나. 환기구(흡배기구) 다. (경)전철 관련 설치물 등

4. 가로시설물

분류	세부항목
대중교통시설물	가. 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교통차단·억제물 라. 주차관련 시설물 마. 교통량 검지기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횡스 다. 가드레일 라. 가로등 마. 보행유도등 바. 공원등 사. 배수구덮개 등
편의시설물	가. 벤치 나. 파고라(쉼터 포함) 다. 휴지통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등
공급시설물	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등
녹지시설물	가. 가로수보호대 나. 가로화분대 등
안내시설물	가. 안내표지판 나. 현수막게시대 다. 지정벽보판 등

5. 공공매체 및 용품

분류	세부항목
정보매체	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재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공공미술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시각이미지	가.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서체 등), 문양 등
공공용품	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나. 공중위생(차량, 피복 등)장비 다. 사무용품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등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변경
- ①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의 분류는 [별표1]과 같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1.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요소(색채, 재질, 형태, 조형 양식 등)를 변경하는 경우
 - 2.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와의 협의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 1.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 추가 설치하는 경우
 - 2.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3.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민간전문가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획, 설계 또는 자문한 경우
 - 4.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하거나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 제3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방법)
변경
- ①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표2]의 심의·자문 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하려는 부서의 장이나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편의시설물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 조경공사를 할 경우
 - 2.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대상시설물을 일부 추가 설치 또는 정비 할 경우

[별표1]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제2조제1항 관련)			
분류	세부 분류	종류	기준
공공 공간	보도 및 차도	특화거리, 등산로, 산책로 등	심의: 공사비 5억 초과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심의: 공사비 10억 초과
	오픈스페이스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테마공원 등	심의: 공사비 20억 또는 면적 10,000㎡ 초과
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등			
수변 공간			
공공 건축물	공공청사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심의: 3층 또는 연면적 1,000㎡ 초과
	문화·체육·복지시설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체육관련시설 등	
	교통시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공공 시설물	도시기반 시설물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심의: 공사비 20억 초과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등	심의: 공사비 10억 초과
	교통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등	심의: 공사비 3억 초과
공공 시각 매체	시각이미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심의: 공사비(사업비) 1억 초과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기타	도시개발사업	(도로, 공원, 녹지, 공공건축 등 통합)	

[별표2]

심의·자문 도서 작성기준(제3조제1항 관련)	
<p>심의·자문 도서 작성 시 디자인 재료, 색채, 마감재 등의 표기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p>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과업범위 및 내용, 수행 계획, 관리운영 계획 등 나. 설계개요 다.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현황분석	가. 위치도 및 사업부지 영역 나. 대지주변 사진 및 현황(주 가로별 조망점을 기준으로 현황 사진 10컷 이상) -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현황사진에 디자인(안)을 오버랩 된 계획안 다. 문제점 분석 및 개선 추진방향,
건축 계획	가. 건축개념(디자인 컨셉, 스페이스 프로그램, 색채계획, 사례분석) -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마감재, 색상, 규격, 수량, 사례 이미지 등(마감 이미지 포함)
외부공간 계획	가. 포장/시설물/휴게공간 계획(디자인 컨셉, 기본방향) - 배치, 패턴, 마감재, 색상, 규격, 수량, 사례 이미지 등(마감 이미지 포함) 나. 조경/식재 계획(디자인 컨셉, 기본방향) - 배치, 규격, 수량, 이미지 등 다. 동선 계획 - 보행자, 자전거, 차량 라.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기준 적용) - 장애인, 노약자 등 모두를 위한 배려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계획(이미지 포함) 마. 조명 계획 - 조명배치 계획, CCTV 설치 계획
실내공간 계획	가. 층별, 실별, 공간별 계획(디자인 컨셉, 색채계획, 실별 사용 및 배치 목적) - 바닥, 천정, 벽, 출입문, 난간, 계단, 마감재, 색상, 규격, 마감 이미지 등 나. 화장실 계획(규격 표시) - 출입문, 설치 방식, 편의시설(마감 이미지 포함) 다. 계단실 계획 - 출입문, 색채계획, 마감재, 난간, 조명 등 라. 동선 계획 - 이용자 마.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기준 적용) - 장애인, 노약자 등 모두를 위한 배려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계획(이미지 포함) 바. 조명 계획 - 실별 조명계획, CCTV 설치 계획
사인 계획	가. 개요 - 디자인 컨셉, 색채계획, 서체, 픽토그램, 내외부 사인디자인 배열 - 이용자 동선에 따른 사인 배치계획 나. 옥외사인 계획 - 시뮬레이션, 종합안내, 주출입, 주차장, 건축물 외벽, 출입문, 방향안내 등 - 배치계획, 마감재, 색상, 규격, 수량, 제작 방식 등 다. 내부사인 계획 - 시뮬레이션, 종합안내, 층별, 벽부, 돌출, 픽토그램, 화장실 등 - 배치계획, 마감재, 색상, 규격, 수량, 제작 방식 등 - 주차장 색채계획 및 사인계획
유지·관리	가. 관리 운영계획 및 과업 수행계획 등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p><비고> 심의·자문 내용 및 계획에 따라 작성기준 및 관련서류는 변경할 수 있다. 심의·자문 도서 규격 A3(420mm×297mm)</p>	

[별지 제1호서식]

용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심의 <input type="checkbox"/> 자문				
신청부서 (또는 기관)	국·소·원 (또는 기관명)		연락처	T)
	소관부서명			F)
	팀명			
	담당자		직위 (직급)	
과업명				
과업 개요	공공시설물	<input type="checkbox"/> 기본설계 <input type="checkbox"/> 실시설계		
	공공매체	<input type="checkbox"/> 정보매체 <input type="checkbox"/> 공공조형물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input type="checkbox"/> 공모전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8조 및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용인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인시 공공디자인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서류	심의·자문 도서(전자 파일)			

2. 위원회 운영 방안

2.1 위원회 개요

(1) 위원회 설치 목적

-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구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물 등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8조제2항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 설치(조례 제9조 및 제10조 관련)

-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공공디자인 업무관련 국장 및 부서장
 -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용인시 의회 의원
- **(위원장의 직무)**위원회 대표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우선으로 하고, 불가능한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임기)**당연직인 경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인 경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함.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2 위원회 기능

(1)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기능

-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은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통해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의 공정성(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_조례 개정안 시행규칙 [별표1] 참고〉

분류	세부 분류	종류	기준
공공 공간	보도 및 차도	특화거리, 등산로, 산책로 등	심의: 공사비 5억 초과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심의: 공사비 10억 초과
	오픈스페이스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테마공원 등	심의: 공사비 20억 또는 면적 10,000㎡ 초과
		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등 수변 공간	
공공 건축물	공공청사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심의: 3층 또는 연면적 1,000㎡ 초과
	문화·체육·복지 시설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체육관련시설 등	
	교통시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공공 시설물	도시기반시설물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심의: 공사비 20억 초과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등	심의: 공사비 10억 초과
	교통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등	심의: 공사비 3억 초과
공공 시각 매체	시각이미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심의: 공사비(사업비) 1억 초과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기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사업,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	(도로, 공원, 녹지, 공공건축 등 통합)	기부채납 시설

- (심의·자문 기준)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디자인원칙은 다음과 같음

- (심의 신청 시기)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신청하되, 기본설계를 포함한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신청한다.
- (심의 제외대상)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자문 제외 대상〉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시행규칙			
구분	내용		비고
조항	내용	개정안	비고
제2조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와의 협의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20〉 1.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 추가 설치하는 경우 2.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민간전문가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기획, 설계 또는 자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와의 협의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20〉 -중략- 4.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하거나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추가

2.3 위원회 운영

(1)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운영



- 심의·자문요청
 - 사업 부서에서 공공디자인 대상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로 안건 상정을 요청하여 개최 계획을 수립한다.
 - 조례로 정한 위원회 개최 인원을 확보하고 상정될 안건을 확정하여 위원장에게 결재를 요청한다.
- 가이드라인 적정성 검토
 - 심의·자문 요청된 사업 계획에 대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의 적정성 등을 전담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한다.
- 위원 사전 검토
 - 위원회 회의에 참석 예정인 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회의 당일 사전 검토 조치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 사전 검토를 통해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사업 초기에 확립하도록 한다.
- 위원회 개최
 - 온라인 사전 검토를 통해 제시된 위원회 의견 중 미반영 또는 부분 반영된 사항을 중심으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한다.
- 결과 통보
 - 위원회 심의·자문 과정을 거쳐 의결된 결과를 사업부서로 통보하고, 사업부서는 의결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 재심의 의결된 안건의 경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 안건으로 재상정 한다.

(2)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

절차	업무 부서	업무 처리 내용	비고
1. 사업계획 수립	사업부서	사업부서 계획수립 시 디자인 부서장 협조 요청한다.	
2. 심의·자문 요청	사업 → 도시디자인과	심의도서 사전협의 후 심의요청 문서접수 ※ 필요 시 심의도서 보완 요청 한다.	심의요청 자료 등 사전 협의(집행부)
3. 안건 접수 및 개최 계획 수립	도시디자인과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상정안건 확정한다.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 섭외 및 장소 확정 개최계획 수립한다.(위원장 결재)	1회 개최 시 3~4건 상정 권장
4. 사전검토 요청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정성 검토한다.(집행부) 심의안건에 대한 온라인 사전검토한다.(심의위원)	사전검토의견 취합 후 사업부서 통보
5. 조치계획 제출 요청	도시디자인과 → 사업	가이드라인 적정성, 사전검토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요청을 한다.	
6. 현장 답사	도시디자인과	현장여건의 위원회 보고를 위한 동영상 촬영을 한다.(집행부)	필요 시 드론 촬영
7. 조치계획 제출	사업 → 도시디자인과	가이드라인 적정성, 사전검토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을 한다.(심의도서 수정)	반영, 미반영, 부분 반영으로 구분
8. 심의도서 검토	도시디자인과	사전검토의견 및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확인 심의도서 변경 여부 확인한다.	
9. 회의 준비	도시디자인과	회의자료 작성한다.(집행부 검토의견 포함)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검토
10. 위원회 개최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최한다.(심의·자문) ※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중심	
11. 개최결과 보고	도시디자인과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한다.(위원장 결재)	심의의결서, 회의록, 심의의견서 참석자 명부 첨부
12. 의결결과 통보	도시디자인과 → 사업	심의·자문결과 통보한다.	
13. 반영결과 회신	사업 → 도시디자인과	조건부 가결된 경우 조치결과 반영 여부 확인 재심의의결된 경우 다음 위원회 재심의요청 공문 발송한다.	
14. 최종 통보	도시디자인과 → 사업	조치(반영)결과 확인 후 최종 결과 통보한다.	

(3) 용인시 심의/자문/협의 방식 세분화

- 사업의 특성에 맞는 심의 방식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서면, 방문, 심화 심의로 세분화하여 나누었다.
- 서면 심의는 재심의 및 재심의 또는 예비 심사의 심의 위원회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실행한다.
- 심화 심의는 심의 위원의 판단이 극명하게 대립되거나 심화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행한다.
- 방문 심의는 위의 사항 이외 일반적인 사항인 경우 실행한다.



(4) 심의·자문 자료 내용

구분	내용
표지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개요	위치 및 규모,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사업계획	사업대상지 및 현황, 설계 개요 등
디자인 계획	디자인 개발방향, 유사 사례분석, 디자인 컨셉 등
디자인(안)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 계획, 등 도면화 된 자료 - 재료계획, 색채 및 사인계획, 등 구체적 디자인 계획 자료 (재질, 마감재, 색채, 크기, 설치 위치 등을 명확히 표기) -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실제 현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현황사진에 오버랩(Overlap)된 디자인(안))
유지·관리	관리 운영계획 및 과업 수행계획 등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홍보·교육

3.1 공공디자인 온라인 홍보 방안

(1) 필요성

- 용인시민이나 관련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플랫폼 마련에 대한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보 검색 및 공유 방안으로 용인시 공공디자인 홈페이지 구축하여 지속적인 디자인 DB 확충과 콘텐츠를 개발한다.

(2) 구성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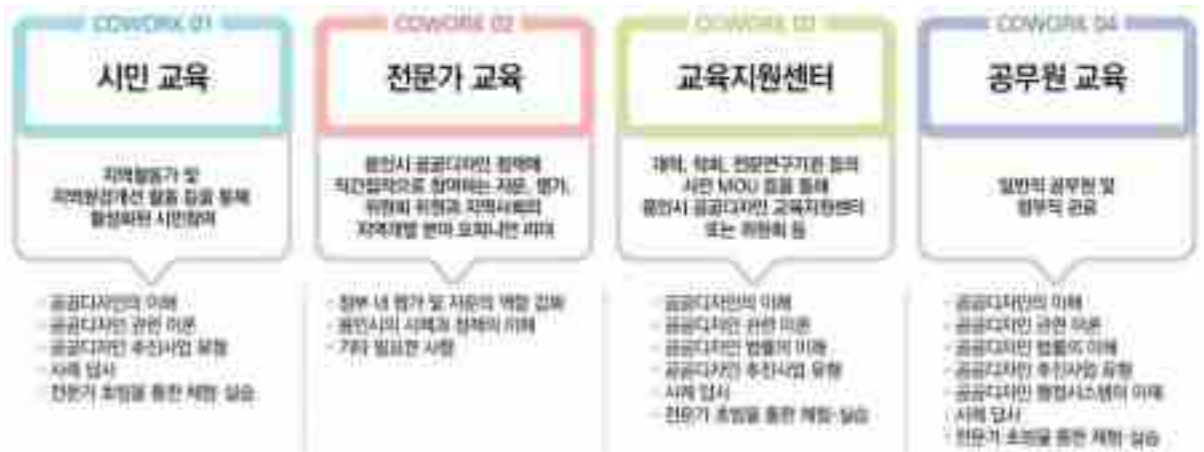
- 용인시 홈페이지 내에 공공디자인 관련 메뉴를 삽입하여 누구나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홈페이지의 정보 구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구분	내용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정의 및 용인시 공공디자인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별 제공
공공디자인 관련 법규	법률,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에 따른 공공디자인 법규 제공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개념 및 수립개요, 내용구성안, 추진전략 등 제공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통합가이드라인	본 진흥계획 내용 첨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내용 첨부
디자인 가이드라인	종류별 가이드라인 제공
공공디자인 개선사례	종류별 디자인 개선사례 제공
공공디자인 업무 처리 유형	심의, 자문, 협의를 통한 유형별 공공디자인 업무처리 안내 제공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제공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절차 및 작성기준 제공
공공디자인 사전협의 운영	사전협의 절차 및 협의대상, 요청시기, 협의절차 과정 제공

3.2 공공디자인 교육 내용

(1) 교육의 목적 및 대상

-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실효성 및 기대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분야별 교육(공공디자인 전문화 및 주민들의 공공디자인 의식 개선)을 시행한다.
- 교육의 대상은 시민, 공무원(6급 이하, 고위직 및 선출직 관료), 전문가, 교육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공공디자인 교육은 피드백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교육의 내용을 개선하여 진행한다.



(2) 시민 교육방안

- 지역 환경개선 활동 등을 통해 참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비활성 시민들의 교육은 비정규 교육으로 일반 문화형 강연을 통해 간접 교육을 지원하고 개별 사업과 지역센터 등을 통해 일상 교육으로 추진한다.

〈시민대상 교육 내용〉

	공공디자인 기본 개념	공공디자인 관련 이론
이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의 이해 - 공공디자인 추진사업 유형 - 공공디자인 행정 시스템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 - 공공서비스디자인
	사례 답사	실습 교육
체험·실습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 인지건강, 어린이 안전 등 현장 체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관련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실습 - 실습교육의 성과품을 토대로한 품평회

〈시민 A그룹 추진 방안〉

구분	대상자 모집	이론교육	체험·실습 교육	성과발표
기간/횟수 (매년)	1개월	1개월 / 3회	1개월 / 4회	1주 / 1회
내용	사업대상지 대상으로 홍보	공공디자인 기본 개념 1회 공공디자인 관련 이론 2회 ※ 전문가 초빙 교육	사례 답사 1회 실습교육(팀별) 3회 ※ 공모사업과 연계	성과품에 대한 품평회 및 수료식

(3) 전문가 교육방안

- 전문가는 용인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자문, 평가, 위원회 위원과 지역사회의 지역개발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한다.
- 전문가는 교육의 주체이자 동시에 교육 대상이므로 정부 내 평가 및 자문역량의 강화지원은 물론 특히 용인시책과 정책의 특성을 상시 이해하고 학습하는 교육으로 진행한다.
- 특히 사업선정 평가 등의 업무 풀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의 경우 용인시의 특성과 매년 변화하는 평가방식과 지침의 교육 등 자문역할 이전에 용인시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교육한다.

〈공무원 공공디자인 교육 내용〉

	공공디자인 기본 개념	공공디자인 관련 이론	용인시 지역의 이해
이론교육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해 - 공공디자인 추진사업 유형 - 공공디자인 행정 시스템의 이해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 - 공공서비스디자인	- 용인시 시책과 정책의 이해 - 기타 용인시 관련 사항
사례 답사			
체험·실습 교육	- 용인시 주요 지역 답사 (용인시 내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이 진행된 지역)		

〈전문가 교육 추진 방안〉

구분	대상자 모집	이론교육	사례 답사	피드백
기간/횟수 (매년)	1개월	1개년 / 3회	1개년 / 1회	1개월
내용	관련부서 홍보	공공디자인 기본 개념 1회 공공디자인 관련 이론 1회 용인시 지역의 이해 1회	사례 답사 1회	만족도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4) 공무원 교육(6급 이하, 고위직 및 선출직)방안

-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초빙하여 1주 이하 기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정기간의 교육 후 국내 공공디자인 선진도시의 답사 등을 통해 실제 도시공간 속에 적용된 공공디자인 우수사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경우 행정조직의 특성과 용인시의 이해를 토대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 고위직 및 선출직 공무원은 시장, 정무직 관료, 각 실·국장 및 내외 지원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 고위직 및 선출직 공무원은 다양한 정책의 직·간접적인 결정권자이므로 공공디자인이 시민 및 도시이용자의 생활과 관련된 직관적인 사례 중심으로 학습한다.

〈공무원 공공디자인 교육 내용〉

	공공디자인 기본 개념	공공디자인 관련 이론
이론교육	- 공공디자인의 이해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해 - 공공디자인 추진사업 유형 - 공공디자인 행정 시스템의 이해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 - 공공서비스디자인
	사례 답사	실습 교육
체험·실습 교육	- 공공공간, 건축물 등 공공디자인의 우수사례 답사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 인지건강, 어린이 안전 등의 이론 교육의 상황 제시를 통한 현장 체험 교육	- 용인시 개선필요사례(실무적용) 토론회 -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6급이하, 고위직 및 선출직 공무원 교육 추진 방안〉

구분	대상자 모집	이론교육	체험·실습 교육	피드백
기간/횟수	1개월	1개년 / 5회	1개월 / 2회	1개월
내용	관련부서 홍보	공공디자인 기본 개념 3회 공공디자인 관련 이론 2회	사례 답사 1회 실습교육 1회	만족도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5) 교육지원센터

- 단기간의 간헐적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문교육으로 추진한다.
- 공공디자인 교육이 사회에 도입된 기간이 길지 않아 교육 및 훌륭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학, 학회, 전문연구기관 등과의 사전 MOU 등을 통해 용인시 공공디자인 교육지원센터 또는 위원회 등을 구축하도록 한다.
- 교육 추진 방안은 공무원교육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4. 전담조직(안)

4.1 개선 방향

(1) 전담부서의 운영 근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제24조에 근거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전담부서의 정의

- 용인시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정책 수립, 사업 관리, 위원회 운영 등)을 총괄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의 중복업무 방지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 독자적 업무수행을 통한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조직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서를 뜻한다.

(3) 전담부서의 필요성

- 주택국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직의 구성과 규모면에서 인구수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의 한계로 인해 효율적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 사업의 관리감독, 관련 정책의 수립, 타 부서 협조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 구성이 필요하다.
- 공공디자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는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등 다양한 관련 부서가 관련되어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 협조가 어려워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 현재 공공디자인 관련 조직은 팀 단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 인력 충원을 통해 전문성이 강화된 과 단위의 조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4) 전담부서의 구성 및 운영

- 현재 운영 중인 도시디자인과를 제2부시장 직속의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승격하여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 기획단 산하 부서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 분야의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충원하고, 이를 중심으로 부서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 현재 운영되는 공공디자인팀을 과(課) 단위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산하에 분야별 3개 팀(공공디자인정책팀, 유니버설디자인 팀, 공공디자인사업팀)을 운영한다.
- 3개 팀과 전문 인력(행정직, 전문직, 시설직)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2024년까지 조직구성을 완료한다.

(5) 연차별 개선 계획

시기	2021년	2022년	2023~2024년
개선 내용	제2부시장 직속 도시디자인기획단 신설	기존 공공디자인팀 2개 팀으로 분리 (공공디자인 정책팀 및 공공디자인 사업팀으로 분리)	유니버설디자인팀 신설
	전문직 1인 총원 (전문직 2인 → 전문직 3인)	전문직 1인 총원 (전문직 3인 → 전문직 4인)	전문직 1인 총원 (전문직 4인 → 전문직 5인)

- 3개 팀과 전문 인력(전문직, 행정직, 시설직)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개선한다.

〈조직 개선 안_2024년 예정〉



〈업무 역할〉

구분	공공디자인 정책팀	유니버설디자인팀	공공디자인 사업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총괄체계 구축 및 정책 발굴 - 공공디자인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관리 -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운영 및 관리 - 스마트폴 공공정보 관리 -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 관리 - 공공디자인 포털사이트 운영 및 관리 - 전문가 클리닉 운영 및 협의 - 상징물 조례운영 및 관리 - 상징물 재정비 및 종합 개발관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운영 및 관리 - 대·내외 공공디자인 협력체계 구축 - 도시디자인 현장 체험 교육 운영 - 공공디자인 사전·후 시민참여 모니터링 운영 - 공공·유니버설디자인 홍보 및 교육 - 공공서비스 디자인 관련 업무 -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발굴 추진 - 시민참여 공공디자인 공모전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 국제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자문 및 협의 (공공시설물, 공사장 가설 울타리) -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 추진 - 중점사업 디자인·설계·공사 감리 - 플랫폼시티, 반도체 클러스터, GTX 예정 역 주변 공공환경개선 관련 협의 -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 응모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관리 - 협의 이행결과 현장점검 및 개선사례집 제작 - 공공공간 안내사인 개발 및 관리
조직 인원	팀장 1인 전문직 1인 행정직 1인	팀장 1인(전문직) 전문직 1인 행정직 2인	팀장 1인(전문직) 전문직 1인 시설직 2인

5.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5.1 시범사업의 개요

(1) 개요

-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실행하고, 이후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우수사례를 남겨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인다.
- 용인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용인시 경관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기·중기경관사업 대상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의 공공디자인 환경 개선은 물론 국가 지원사업의 참여를 통해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 경기도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중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우수사례는 개선 및 확대적용을 통해 대상지 선정에 있어 행정구역 단위(읍·면·동)별로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

(2) 단계별 경관사업 대상자 선정안

-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용인시 전체의 공공디자인 환경 제고를 유도한다.

실천과제	과제명	상위 계획 연계			추진 시기 (년)					비고
		국가 사업	광역 사업	지자체 사업	'21	'22	'23	'24	'25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중심의 디자인	고령자/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웹사이트 디자인	0					0	0		관계 부서
	공공디자인 정보공유체계 구축	0						0	0	
	공공디자인 행정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0		0			0	0	0	
	어린이 청소년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0					0	0	0	
	생활불편 시민 아이디어 공모 및 거버넌스 모델개발	0					0	0	0	
	인지건강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0					0	0	
	어린이 이동환경디자인 개선 사업		0				0	0		
	시민참여 모니터링단 운영			0		0	0	0	0	
	공공디자인 전문가 클리닉 운영			0	0	0	0	0	0	

실천과제	과제명	상위 계획 연계			추진 시기 (년)					비고
		국가 사업	광역 사업	지자체 사업	'21	'22	'23	'24	'25	
상생의 미래를 여는 스마트 디자인	플랫폼시티, 반도체 클러스터, GTX예정역 주변 공공환경 개선 사업			0		0	0			기부 체납
	IT 기술을 적용한 공공정보 안내시스템 개발			0	0	0	0			
	버스 환승센터 플랫폼 통합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0				0	0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통합 안내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0			0	0			
	공개공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 개발		0					0	0	
	도시 주요 공간 공공시설물 통합 개선	0		0				0	0	
	통합형 보행자 길 찾기 시스템 디자인	0	0	0	0	0				공모 사업
	고령자를 위한 인지건강 디자인 시범사업	0						0	0	
	백암면소재지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0				0	0	
	인지건강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0						0	
	마을 단위 범죄예방 통합협력 체계 디자인 시범사업	0	0					0	0	공모 사업
	재난 대비 공간 및 공공용품 안전 디자인 보급	0						0	0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조성	0	0					0	0	공모 사업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위한 디자인	작성자 중심의 간소화된 행정서식 개발, 보급	0				0	0			
	공공디자인 통합조례 개발	0		0	0	0				
	공공디자인 행정매뉴얼 개발 및 보급	0				0	0			
	공공시설물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0		0	0	0	0	
기타	탐방로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0	0					0	0	공모 사업
	탄천로 자전거도로&공유 시스템 개발			0			0	0		
	쌈지공원, 노후 어린이공원 활성화 디자인 개선	0	0				0	0		공모 사업
	산단 공간환경 조성사업		0					0	0	공모 사업
	학교시설을 이용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0					0	0	
	빛과 용인시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문화예술축제 기획			0		0	0			

6. 시민참여방안

6.1 개요

- 주민들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3가지 참여 전략(교육, 참여, 실행)을 제시하였다.



시기	2020~2021년	2021~2022년	2023~2024년
교육	시민 참여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교육 프로그램 피드백 및 프로그램 보완	지속 운영
참여	시민 모니터링단 구축	모니터링 실행 피드백 및 보완	지속 운영
실행	시민참여 공공디자인 공모전 기획 및 운영	공공디자인 SNS소통창구 기획 및 운영	공공디자인 발굴 프로그램, 마을공공디자인 반성회 기획 및 운영

6.2 참여_시민모니터링단 운영

(1)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개요

- 공공디자인의 유사사업 간의 피드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목적을 두었다.
- 이는 평가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DB화를 통해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 시 유사사업에 대한 평가 자료를 참고로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시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심의 시에 유사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자료를 참고함으로써 기존에 유사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심의를 함으로써 향상된 공공디자인을 추구한다.



(2) 시민모니터링단 평가 항목

- **공공성**
 - 공공성 항목은 대상물이 공공을 위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일반 시민이 대상물에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가를 평가한다.
 - 공공디자인이 갖추어야 할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변공간과의 관계성에 대한 측면 및 지역의 특성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측면을 평가한다.

대분류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향
공공성	접근성	일반 시민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에 관한 평가로서 동선과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사용성	이용에 편리하고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로서 물리적·프로그램적 측면 모두 평가한다.
	안전성	이용에 위험이 없거나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지 안전성에 대한 측면을 평가한다.
	지역성	독특하고 고유한 장소를 만드는 디자인에 대한 측면을 평가한다.

- **디자인**
 - 디자인 항목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심미적 측면과 성능적 측면을 평가한다.
 - 심미적 측면에서 대상물의 외관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경관성을 평가하고, 성능적 측면에서는 유지관리를 통한 대상물의 지속가능성, 대상물의 시공 품질에 대한 기준인 시공성을 평가한다.

대분류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향
디자인	경관성	평가 대상의 미적 측면과 주변 지역과의 조화성에 대한 측면을 평가한다.
	지속가능성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기를 평가하기 위한 개념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내구성, 환경적 측면 등을 평가한다.
	시공성	시공의 질에 대한 측면을 평가한다.

- **효과**
 - 공공디자인 사업이 지역사회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지역사회의 가치를 향상 시켰는지를 평가한다.
 -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느끼는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대분류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향
효과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활성화 정도 및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시민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 및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정도를 평가한다.
	경제성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평가한다.

(3) 세부평가지표

- 평가항목 및 평가 방향을 토대로 공공디자인 유형에 따른 평가지표 검토한다.

대분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점수					미비영	비고
			1	2	3	4	5		
공공성	접근성	지역시민이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도보 및 차량의 접근성이 좋고 대중교통과 직간접 연계할 수 있도록 조성 했는가?							
		주요 보행 가로 및 다른 주변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대규모 필지 개발을 통한 단지 조성이나 신축 시, 대지내 가로와 주변 보행가로와의 연결되어 있는가?							
		건물 규모에 맞는 적절한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주변 가로와 연결되어 있는가?							
		지역시민의 접근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단차 및 권위적인 캐노피 설치를 지양했는가?							
		전면공지로의 차량진입을 금지하였는가?							
	사용성	다양한 지원 시설 및 시설물을 적절한 배치 계획을 하였는가? (전반적인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지표)							
		공간구성 및 시설배치는 행정편의보다 이용자 편의로 계획 하였는가?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 및 사용 목적별 동선을 적절히 분리 하였는가?							
		주변 여건과 상호 연관된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으로 상승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시설 및 프로그램이 복합화 되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주민참여를 통하여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각 시설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외부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 하였는가? (보육실, 유희실등은 외부공간과 연결하여 배치)							
		공간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었는가? (일조, 통풍, 실내환경의 질)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유도 및 기존시가지권역 주요자원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공간의 사용이 유연하고 가변적인가?							
		장애인, 노약자, 유아동반자 등 다양한 계층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는가?							
		외부 공간 및 실내형 공개공간은 24시간 개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안전성	시각적으로 차폐된 공간이 없는 열린 공간으로 자연 감시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효과적으로 분리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였는가?							
		램프의 경사로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확보하였는가?							
		야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내외 조명은 적절한 조도를 확보하였는가?							
		사용상 위험요소들에 대한 고려를 잘하였는가?							
		용인시의 정체성(지역의 정체성)에 맞는가?							
		시가지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시가지 고유의 지형지세를 고려하였는가?							
		지구별 지역특성에 어울리며, 지역특성강화를 도모하는가?							
		지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 평가 기준

평가 점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1	2	3	4	5

대분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점수					비고	
			1	2	3	4	5		
디자인	경관성	설치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ex. 문화재, 수변, 공원, 주거지구, 상업지구 등)							
		설치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명 계획을 하였는가? (ex. 주택가는 차분한 조명)							
		주변 경관에 방해되지 않도록 간결하고 단순화하여 디자인 하였는가?							
		시설물이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도로와 가로 폭에 맞게 스케일을 고려하였는가?							
		시설물 통합 설치 시 시설물간 통일감 있게 디자인 하였는가?							
		저명도, 저채도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시가지권역 경관의 개방감을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구조체와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보행자 또는 차량 운행시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크기와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표지판 또는 안내도 디자인 시 지나치게 많은 정보 표시, 지나친 장식과 상징 표현을 지양하였는가?							
	지속 가능성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충돌, 발길질 등의 외부충격에도 형태가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계절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해서 고려하였는가?							
		청소하기 쉬우며, 배수 및 유지·보수·교체가 가능하게 디자인 하였는가?							
	시공성	디자인 의도대로 견고하게 시공되었는가?							
		지면 및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 부위를 미려하게 마감 처리 하였는가?							
경사진 장소에서 시설물이 수직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였는가?									
효과	지역사회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업 시행 후 지역 사회의 가치가 상승하였는가?							
	시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는가?							
		지역주민들이 시설물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향상되었는가?							
		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은가?							
	경제성	활용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설치 장소를 검토하여 설치하였는가?							
사업 시행 후 시설물의 활용도는 높은가?									

- 평가 기준

평가 점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1	2	3	4	5

(4) 평가점수체계

- 공공디자인 평가시스템의 최종 평가방식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첫 번째로는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점수 도출, 두 번째로는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부문으로서 제한된 평가지표라는 틀에서 평가하지 못한 부문에 대하여 평가자가 평가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통하여 일정점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는 하도록 한다.

평가점수 도출

- 각 평가지표 별로 5점척도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준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 평가대상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미반영이라는 공란을 추가 하도록 한다.

주관적 평가 부문

-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부문은 대 분류인 공공성, 디자인, 효과 부문별로 평가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부문에 대한 점수를 부여 하도록 한다.
- 이는 한정된 평가지표의 틀로는 평가할 수 없는 부문을 보완하는 측면과 평가대상의 전체적인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한다.

6.3 실행_시민참여 공공서비스 운영

- 공공디자인 설계단계부터 제공·평가·환류까지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 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 한다.

(1) 공공디자인 발굴 프로그램 운영

목적

- 공공디자인(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의 문제 발굴 및 사업의 대상 선정, 실행계획을 시민이 주도하는 참여형 사업 계획을 추진한다.

사업내용

세부단계	기법	내용
분석 및 디자인 전략	SWOT 분석	고령 인구 및 다문화, 방문객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시민의 공간 사용에 대한 분석 및 전략 수립
대상 선정	미션 스테이트먼트 작성	과업의 핵심요소를 구체화 하여 선정
실행계획	실행계획 작성	사업의 선정 사유 및 사업 추진팀, 사업 진행일정 등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2) 시민참여 공공디자인 반사회 운영

목적

- 시민과 행정간의 건전한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사업내용

- 공공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 이전에 주민들에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하여 알리고 지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상지 곳곳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 및 공공디자인 반상회를 운영한다.
-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의견 및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오프라인 소통 창구로 운영한다.
- 주기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교육을 병행하여 시민의 공공디자인의식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사업기간

- 2024년 기획 및 운영하여 2025년 이후 지속 운영한다.

(3) 공공디자인 SNS 소통창구 운영

목적

- 공공디자인 사업의 주체 간의 쉬운 소통과 참여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내용

- 시민과 전문가, 행정 간의 공공디자인 사업의 진행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온라인 의견수렴 외에도 마을 공공디자인학교를 통하여 지역의 주민 기자단 구성 및 교육으로 지역에 대한 사람들을 만나는 오프라인 활동과 연계를 추진한다.

사업기간

- 2021년 기획하여 앱을 개발하며 2022년 이후 지속 운영한다.

(4) 시민참여 공공디자인 공모전

목적

-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통하여 시민 및 전문가에게 공공디자인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한 디자인을 발굴 및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용인시의 도시 정체성 또는 지역특성을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등에 반영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 동시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표준디자인 개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한다.

사업내용

-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요소를 발굴하며, 공공디자인 전문가 등의 참여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시민 및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수하고 실현 가능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시상한다.
- 수상작은 실물로 제작하여 추후 진행될 공공디자인 사업에 적용한다.

사업기간

- 2021년 기획 및 운영하여 2022년 이후 매년 시행한다.

1. 가이드라인 체계	146
2. 세부가이드라인	150

1. 가이드라인 체계

1.1 개요

(1) 목적

-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공공의 요소인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에 대해 서로 다른 실행 주체 및 시기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중복설계나 디자인의 일관성 부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소별로 디자인의 지침을 마련한다.
-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 및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필요성

- 첫째, 용인은 2016년 이후 인구 100만이 돌파하였으며 현재 110만 명에 육박한 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도시 수준에 맞는 통합된 질서와 공공성을 갖출 수 있도록 최소한의 디자인 원칙과 구체적인 세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둘째, 용인은 풍부한 레저·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도시로서, 이러한 레저·문화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사용자의 편의 및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문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셋째, 용인은 택지 도시개발사업 및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시티, GTX 사업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시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이 일정한 질서와 공공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넷째, 용인은 대도시임에도 행정구역으로 동·읍·면·리가 혼재하고 도시·농촌의 격차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3) 적용대상

- 용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조명에 적용한다.

(4) 활용

-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여 용인시가 지향하는 공공디자인의 기본개념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고, 효율적인 디자인 관리 기준으로 활용한다.
- 또한 시공·제작·공사 시 지침 자료로 응용되고, 공공디자인 심의 판단 기준과 사후 평가 및 유지·관리 지침으로 활용한다.

1.2 가이드라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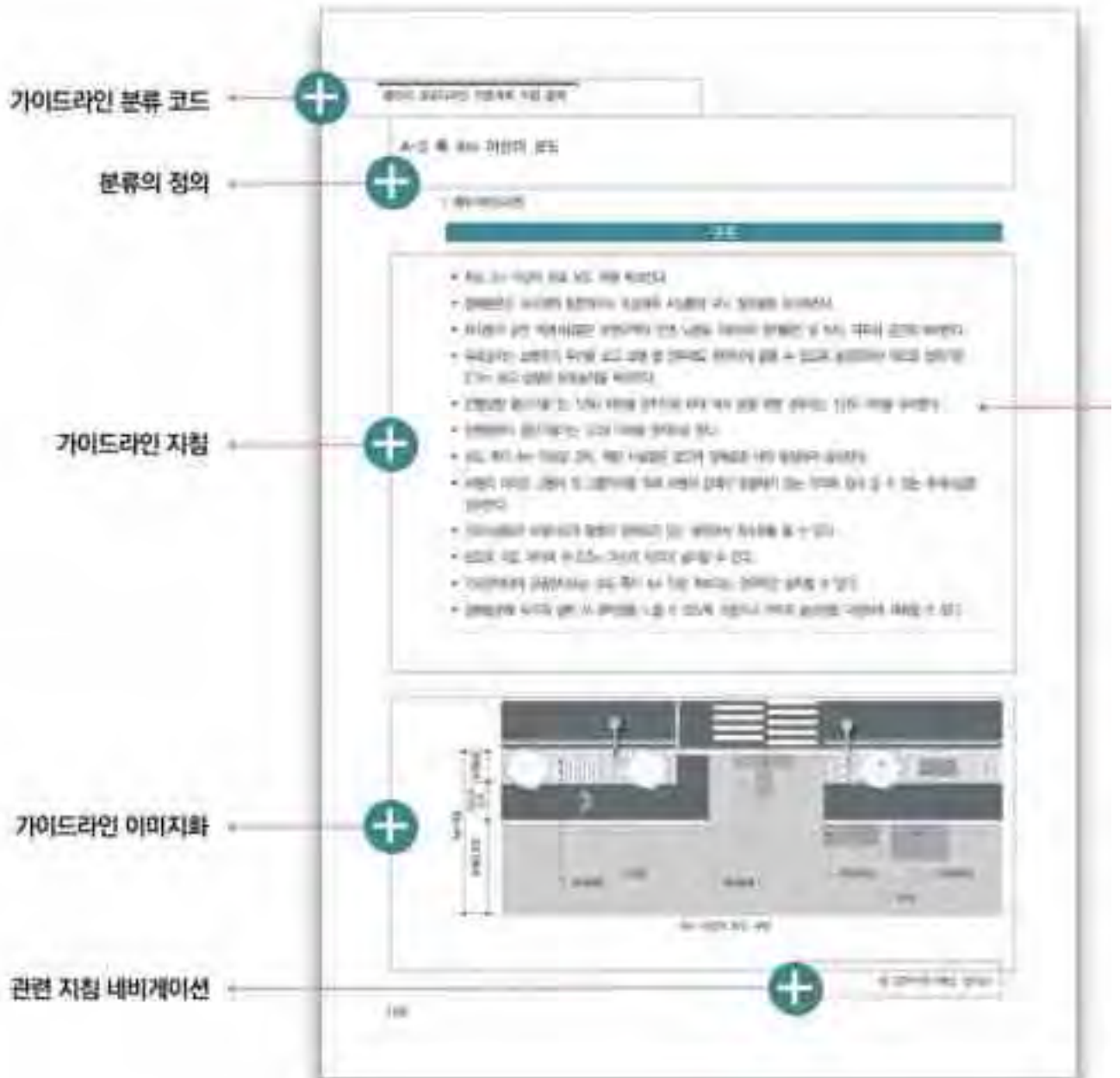
대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대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공공 공간	A. 가로공간	A-1. 폭 2m 미만의 보도	공공 시설물	A. 도시기반시설	A-1 육교	
		A-2. 폭 2m 이상 4m 미만의 보도			A-2 지하보도	
		A-3. 폭 4m 이상의 보도			A-3 방음벽	
		A-4. 보행자우선도로			A-4 옹벽	
		A-5. 회전교차로		공공시각 매체	A. 가로안내사인	A-1. 차량안내사인
		A-6. 횡단보도			A-2. 보행안내사인	
		A-7. 자전거도로			B. 건축물 안내사인	B-1. 외부안내
		A-8. 보호구역			B-2. 내부안내	
B. 오픈스페이스	B-1. 공원	C. 기타사인	C-1. 지시사인			
	B-2. 광장		C-2. 영상정보 사인			
	B-3. 수변공간		A-1. 가로형간판			
	B-4. 생태공간		A-2. 통합가로형간판			
공공 건축물	A. 실외공간	A-1. 접근로	옥외 광고물	A. 건물부착형 광고물	A-2. 통합가로형간판	
		A-2. 주차장			A-3. 돌출형간판	
		A-3. 주출입구			A-4. 창문이용간판	
		B-1. 로비			A-5. 옥상간판	
	B-2. 계단	B. 지주형광고물			B-1. 지주형간판	
	B-3. 경사로	C. 기타광고물		C-1. 현수막		
	B-4. 엘리베이터			C-2. 포스터		
	B-5. 복도			C-3. 배너		
	B. 실내공간	B-6. 사무실		야간경관 조명	A. 도로조명	A-1. 도로 조명
		B-7. 민원실			B. 건축물 조명	B-1. 일반건축물 조명
		B-8. 수유실			B-2. 문화재 조명	
		B-9. 화장실			C. 오픈스페이스 조명	C-1. 공원 및 광장 조명
C. 기타		C-1. 공중화장실				

1.3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기본방향인 ‘시민과 소통하는 디자인’, ‘미래를 여는 공공디자인’,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행정’과 부합되도록 ‘사람중심의 디자인’, ‘생활의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다.



1.4 가이드라인 구성



2. 세부가이드라인

2.1 공공공간

(1) 정의

- 공공공간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이용되며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공의 공간이다.
-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으며 외부공간과 준외부공간을 포함한다.

(2) 목표

- 본 가이드라인은 용인시 공공공간 디자인의 자문, 발주, 실행 및 유지 관리에 적용 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명시된 규정들은 제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 지속 가능한 공공공간 조성으로 용인시의 도시환경 수준을 향상시킨다.
 - 지역적 공간 특성을 활용하여 통행 및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다수가 이용 할 수 있는 쾌적한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
 - 지역적 특성과 장소적 맥락이 반영될 수 있는 공공공간의 장소성을 부여한다.
 - 공공공간 디자인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근본 원칙과 기준, 세부적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3)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4) 기본방향

-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인 ‘편의성’, ‘조화’, ‘유지·관리’에 알맞은 공공공간의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편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간의 목적 및 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한 공간 조성 계획 ② 보행약자를 고려한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하여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자연-도시 환경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친자연적 경관 창출 ④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연속성 있는 공간 창출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공동체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 ⑥ 유지·관리가 편리한 공공공간 추구

(5) 관련규정

분류	관련 법·제도	관련 상위계획
가로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디자인가이드라인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경기도 인공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 경기도 자전거 이용시설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6) 세부가이드라인

A 가로공간

• 정의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며, 차량의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차도와 보행자의 통행 목적으로 하는 보행로로 나뉘며 가로의 폭이 좁은 경우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 시가지의 일반도로는 도시의 구성원의 주요 활동공간이 되며 도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횡단보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원활하게 한다.
- 도시의 가로는 노면 뿐 아니라 공중과 지하에도 공공시설물의 설치장소로 이용되며 전선, 전화선, 상수도, 하수도 및 가스관 등이 설치된다.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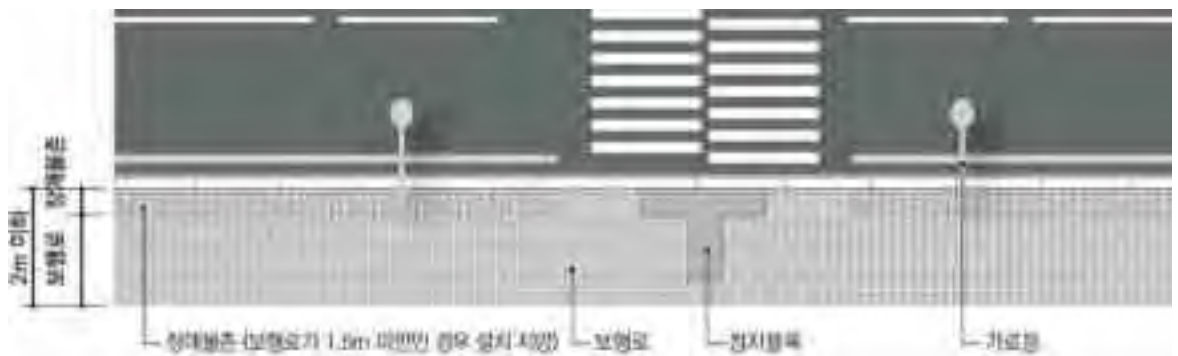
보호구역

A-1 폭 2m 미만의 보도

- 정의
 - 보도 : 사람의 통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의 일부이며,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이나 펜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를 통해 평면적으로 분리한 부분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성인 2명이 교행 가능한 최소 보행폭(1.5m)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설치구역을 자동차도로 쪽 0.3~0.5m 이내로 제한한다.
-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1.5m 미만의 보행폭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행구역을 설치한다.
- 시설물은 인접한 공간건축물, 공개공지, 녹지 및 옹벽 등과 통합하여 통행로의 유효폭을 최대한 확보한다.
- 우산을 쓰고 보행할 경우에도 시설물 등에 걸리지 않도록, 법적 기준 2.1m 이상의 유효높이 확보를 권장한다.
- 안내표지는 별도의 지주 설치를 지양하고 가급적 인접한 지주 시설물에 통합하여 설치함을 권장한다.
- 보도 진행방향 횡단기울기는 1/50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배수 등을 위한 경우나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5 이하를 유지할 수 있다.
- 보도 진행방향 종단기울기는 1/18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배수 등을 위한 경우나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12 까지 완화할 수 있다.
- 횡단보도 앞 점지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지양한다.
- 유효폭이 1.5m 미만일 경우 가로수 식재, 가로시설물 설치, 장애물존의 설치를 지양한다.
- 보행공간을 침범하는 버스쉘터나 택시쉘터의 사용은 지양한다. 단, 부득이하게 쉘터를 설치해야 할 경우 역방향으로 설치해 보행폭을 확보한다.



2m 미만의 보도 구성

관련 법률 및 지침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시설물 설치

공통 사항

- 보도와 인접하게 설치되는 시설물인 버스쉘터, 가로등, 펜스, 볼라드 등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행자의 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 교통신호제어기는 신호등 지주에 밀착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배수구덮개는 살이 통행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거나 살 간격을 촘촘히 하여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등의 바퀴가 끼지 않도록 한다.
- 시설물의 이용이 다른 시설물의 이용 및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가로수 보호덮개는 장애물존의 폭 이하로 하여 보도 축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장애물존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벤치, 공중전화, 배전함, 화단, 가로수 등의 시설물은 장애물존 내 설치한다.
- 부득이하게 안내표지 등을 설치해야 할 경우, 통합지주 활용을 통해 추가적인 지주 설치와 보행자와 차량 이용자의 시야를 막는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한다.
- 보행로 내 고정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한다.(단,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특수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버스 쉘터

- 2m 미만의 보도 폭에 버스쉘터를 설치 시 역방향 버스쉘터로 설치한다.
- 교통안내표지 등은 버스 승하차 및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버스쉘터 주변의 교통시설물 외의 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역방향 버스쉘터 설치

관련 법률 및 지침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보
도
육
교

- 폭 2m 미만의 보도에서는 보도육교 설치 시 최소 보행폭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보도육교의 설치를 지양하나, 부득이하게 설치가 필요할 경우 보도 내측의 공공공간이나 차도의 여유 폭을 활용하여 보도육교를 설치할 수 있다.
- 보도육교 설치 시 최소 보행폭은 1.5m 이상 확보한다.
- 주변 3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육교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보도육교 구조물의 보도공간 점유를 최소화하고, 장애인과 자전거 이용자 등의 편의를 위해 경사로 보다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권장한다.
-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보도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 공간을 확보한다.



공공공간을 활용



차도의 여유폭 활용

관련 법률 및 지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바닥마감

- 교통약자가 걸리거나 빠질 위험이 있는 맨홀, 배수구 등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 점자블록은 황색을 기본으로 하나, 주변환경과 조화를 위해 색채의 변화는 가능하며 블록의 돌출부분이나 질감은 주변 보도와 반드시 차별되도록 계획한다.
-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할 시에는 진행방향의 모따기 가공 등 안전확보를 우선시하며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바닥마감재의 명도, 질감 등의 차이를 두어 이용자가 보행구역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사로는 바닥표면 미끄럼 저항기준을 40BPN(British Pendulum Number)이상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경사로 구간의 바닥 재료와 질감, 색상 등의 변화를 줄 수 있다.
- 바닥마감재 선정은 설치 환경의 특성과 보수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주변환경과 최대한 조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블록형 바닥마감재를 사용하는 경우, 단위 규격이 크고 경계부와 곡선부의 마감이 미려한 시공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 보차도 경계석은 바닥 색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고 경계석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여 안정감 있는 형태로 마감한다.
- 단일 블록 내의 색채와 패턴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빈번한 패턴의 변화를 지양한다.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중·저채도 색을 주조색으로 하며, 지나치게 많은 재료의 혼용을 지양한다. ③



① 간격 1cm 이하의 틈새 유지



②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



③ 고채도의 포장 지양

관련 법률 및 지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 BPN(British Pendulum Number) :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여 미끄럼 저항기준을 나타내는 값으로 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하다.

식재

- 가로수 식재 간격은 주변의 경관적 특성에 따라 조절하고, 보도 상 녹지는 장애물존 내에 통합설치한다.
- 기존의 자연 식생 및 보호수와 조화되도록 식재한다.
- 1.5m 이상의 최소 보행폭이 확보되면 여건에 따라 가로녹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 교량이나 보행육교 주변에는 가로수의 성장을 고려하여 기반시설물이 가려지지 않도록 식재한다.
- 보행권을 침해하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한다. ①
- 보도와 횡단보도의 교차구간 내, 교통안전 표지 지주의 5m 이내 공간에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한다. ② ③
- 보도 폭 1.5m 이하의 가로공간에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한다. ④



① 보행권을 침해하는 가로수 지양



② 교통안전 표지 지주 5m이내 식재 지양



③ 횡단보도의 교차구간 내 식재 지양



④ 보도 폭 1.5m 이내 가로공간 가로수 식재 지양

관련 법률 및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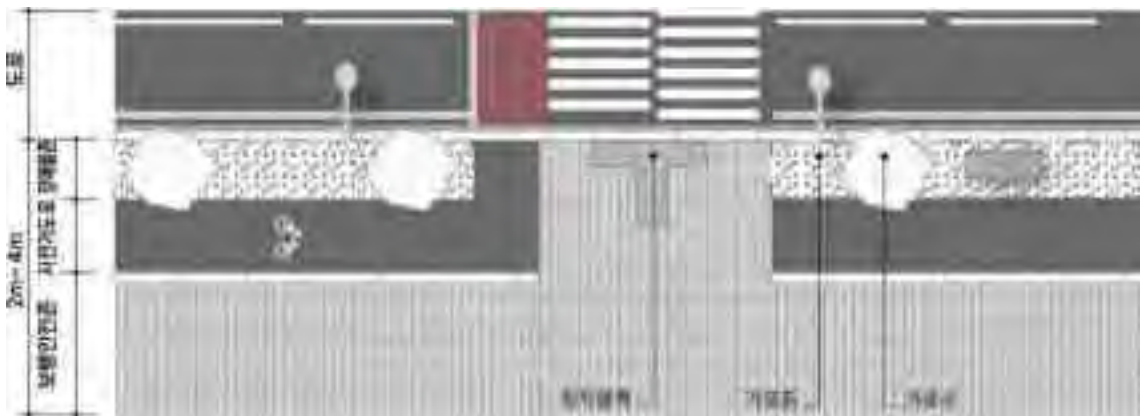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A-2 폭 2m 이상 4m 미만의 보도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최소 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한다.
- 장애물존은 가로녹지대와 통합적으로 조성하여 시설물의 보도 점유율을 최소화한다.
- 우산을 쓰고 보행할 경우에도 시설물 등에 걸리지 않도록, 법적 기준 2.1m 이상의 유효높이 확보를 권장한다.
- 보도 진행방향 횡단기울기는 1/50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배수 등을 위한 경우나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5 이하를 유지할 수 있다.
- 보도 진행방향 종단기울기는 1/18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배수 등을 위한 경우나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12 까지 완화할 수 있다.
-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보행이 어려운 고령자 및 교통약자를 위해 보행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 보도 폭이 3m 이상인 경우 보행기준선 대신 녹지를 조성하고, 3m 미만일 경우 장애물존과 보행안전존 간의 포장재질의 변화로 보행기준선을 대신할 수 있다.
- 가로수 식재 시 가급적 지지대의 설치를 지양한다.
- 보도 폭이 2m 이상, 4m 미만일 경우, 보도 내에 보행을 방해하는 가로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2m 이상 4m 미만의 보도 구성

관련 법률 및 지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시설물 설치

- 공통 사항**
- 보도와 인접하게 설치되는 시설물인 버스쉘터, 가로등, 펜스, 볼라드 등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행자의 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 교통신호제어기는 신호등 지주에 밀착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배수구덮개는 살이 통행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거나 살 간격을 촘촘히 하여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등의 바퀴가 끼지 않도록 한다.
 - 시설물의 이용이 다른 시설물의 이용 및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가로수 보호덮개는 장애물존의 폭 이하로 하여 보도 측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벤치, 공중전화, 배전함, 화단, 가로수 등의 시설물은 장애물존 내 설치를 권장한다.
 - 보행로 내 고정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통합지주 활용을 통해 추가적인 지주 설치와 보행자와 차량 이용자의 시야를 막는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한다.(단,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특수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 보도 내 위생시설물인 휴지통 등은 보행구역 전면 노출을 지양하고 장애물존, 가로녹지대 등의 자투리 공간에 배치한다.

- 버스 쉘터**
- 버스쉘터 주변은 승차 공간과 보도의 이용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시설물, 바닥마감, 식재 등을 이용하여 승차대기 공간과 보도를 분리조성 하여 식별성을 높일 수 있다.
 - 버스쉘터의 표준 폭은 2.5m로 하고 가급적 보도 폭이 축소되지 않도록 보도의 외측으로 그 폭만큼 보도를 확장할 수 있다.
 - 버스쉘터 설치로 인한 보도 유효폭 감소 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상충을 최소화한다.
 - 보행로의 폭이 협소한 경우 인근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다.
 - 교통안내표지 등은 버스 승하차 및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버스쉘터 주변에 교통시설물 외의 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버스쉘터 설치 예1(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상충 최소화)

관련 법률 및 지침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버스쉘터 설치 예2(인근 공공공간 활용)

보도육교

- 주변 3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육교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보도육교 구조물의 보도공간 점유를 최소화하고, 장애인과 자전거 이용자 등의 편의를 위해 경사로 보다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권장한다.
-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보도나 자전거도로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공간을 확보한다.
- 보도육교가 설치된 구간에 자전거도로 신설 시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공공공간(공원, 광장 등)과 차도 측으로 설치공간을 확보하여 자전거도로의 일관성, 연속성을 유지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보도육교 설치 예1(공공공간 활용)



보도육교 설치 예2(차도의 여유폭 활용)

관련 법률 및 지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Ⅵ.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_공공시설물_A. 도시기반시설_A-1 육교 준용_250p

Ⅶ.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버스쉘터) 준용_313p

바닥마감

- 보도의 신설 및 보수 시 주변환경, 연접한 바닥 마감의 색채, 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 마감한다.
- 교통약자가 걸리거나 빠질 위험이 있는 맨홀, 배수구 등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 점자블록은 황색을 기본으로 하나, 주변환경과 조화를 위해 색채의 변화는 가능하며 블록의 돌출부분이나 질감은 주변 보도와 반드시 차별되도록 계획한다.
-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할 시에는 진행방향의 모따기 가공 등 안전확보를 우선시하며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바닥마감재의 명도, 질감 등의 차이를 두어 이용자가 보행구역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사로는 바닥표면 미끄럼 저항기준을 40BPN(British Pendulum Number)이상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경사로 구간의 바닥 재료와 질감, 색상 등의 변화를 줄 수 있다.
- 바닥마감재 선정은 설치 환경의 특성과 보수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주변환경과 최대한 조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블록형 바닥마감재를 사용하는 경우, 단위 규격이 크고 경계부와 곡선부의 마감이 미려한 시공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 보차도 경계석은 바닥 색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고 경계석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여 안정감 있는 형태로 마감한다.
- 단일 블록 내의 색채와 패턴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빈번한 패턴의 변화를 지양한다. ③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중·저채도 색을 주조색으로 하며, 지나치게 많은 재료의 혼용을 지양한다.



① 간격 1cm 초과하는 틈새 지양



②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



③ 빈번한 패턴 변화 지양

관련 법률 및 지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 BPN(British Pendulum Number) :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여 미끄럼 저항기준을 나타내는 값으로 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하다.

식재

- 가로수 식재 간격은 주변의 경관적 특성에 따라 조절하고, 보도 상 녹지는 반드시 장애물존 내에 통합설치한다.
- 보행권을 침해하는 가로수 식재를 금지한다. ①
- 기존의 자연 식생 및 보호수와 조화되도록 식재한다.
- 가로수의 뿌리로 인해 보행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전적으로 천천히 자라는 수종을 선정하고 보·차도 포장 전 일정한 두께의 자갈층을 부설하여 뿌리와 포장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도록 한다. ②
- 일조 여건에 맞는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여름에는 적절한 그늘을, 가을에는 적절한 일조를 확보한다.
- 교량이나 보행육교 주변에는 가로수의 성장을 고려하여 기반시설물이 가려지지 않도록 식재한다.
- 가로녹지대는 생울타리와 같은 관목류를 식재하거나 자연 배수로 조성할 수 있다. ③
- 충분한 보도폭이 확보되면 가로녹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 보도와 횡단보도의 교차구간 내, 교통안전 표지 지주의 5m 이내 공간에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한다. ④ ⑤



① 가로수의 보행로 침범으로 인한 보행환경 악화



②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행환경 악화



③ 생울타리 활용한 보행로



④ 교통안전 표지 지주 5m이내 식재 지양



⑤ 횡단보도의 교차구간 내 가로수

관련 법률 및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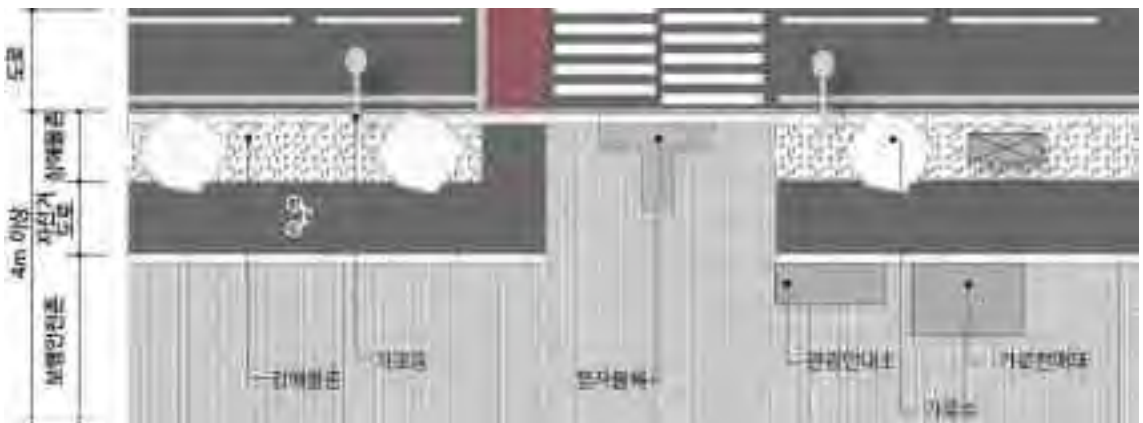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A-3 폭 4m 이상의 보도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최소 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한다.
- 보도 폭이 4m 이상인 경우, 가로시설물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장애물존 내 통합하여 시설물의 보도 점유율을 최소화한다.
- 보도와 차도 사이 폭 0.5m 이상의 가로녹지대 설치를 권장한다.
- 우산을 쓰고 보행할 경우에도 시설물 등에 걸리지 않도록, 법적 기준 2.1m 이상의 유효높이 확보를 권장한다.
- 보도 진행방향 횡단기울기는 1/50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배수 등을 위한 경우나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5 이하를 유지할 수 있다.
- 보도 진행방향 종단기울기는 1/18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배수 등을 위한 경우나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12 까지 완화할 수 있다.
-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보행이 어려운 고령자 및 교통약자를 위해 보행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 가로판매대와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



4m 이상의 보도 구성

관련 법률 및 지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시설물 설치

공
통
사
상

- 보도와 인접하게 설치되는 시설물인 버스쉘터, 가로등, 펜스, 볼라드 등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행자의 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 교통신호제어기는 신호등 지주에 밀착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배수구덮개는 살이 통행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거나 살 간격을 촘촘히 하여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등의 바퀴가 끼지 않도록 한다.
- 가로수 보호덮개는 장애물존의 폭 이하로 하여 보도 측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벤치, 공중전화, 배전함, 화단, 가로수 등의 시설물은 장애물존 내 설치를 권장한다.
- 보행로 내 고정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통합지주 활용을 통해 추가적인 지주 설치와 보행자와 차량 이용자의 시야를 막는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한다.(단,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특수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 보도 내 위생시설물인 휴지통 등은 보행구역 전면 노출을 지양하고 장애물존, 가로녹지대 등의 자투리 공간에 배치한다.

버
스
셸
터

- 버스쉘터 주변은 승차 공간과 보도의 이용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시설물, 바닥마감, 식재 등을 이용하여 승차대기 공간과 보도를 분리조성 하여 식별성을 높일 수 있다.
- 버스쉘터의 표준 폭은 2.5m로 하고 가급적 보도 폭이 축소되지 않도록 보도의 외측으로 그 폭만큼 보도를 확장할 수 있다.
- 보행로의 폭이 협소한 경우 인근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다.
- 교통안내표지 등은 버스 승하차 및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버스쉘터 주변에 교통시설물 외의 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버스쉘터 설치 예(인근 공공공간 활용)

관련 법률 및 지침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보
도
육
교**
- 주변 3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육교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보도육교 구조물의 보도공간 점유를 최소화하고, 장애인과 자전거 이용자 등의 편의를 위해 경사로 보다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권장한다.
 -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보행로나 자전거도로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공간을 확보한다. ①
 - 보도육교가 설치된 구간에 자전거도로 신설 시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공공공간(공원, 광장 등)과 차도 측으로 설치공간을 확보하여 자전거도로의 일관성, 연속성을 유지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②



4m 이상 보도위 육교 설치 예



① 보행로상 엘리베이터 위치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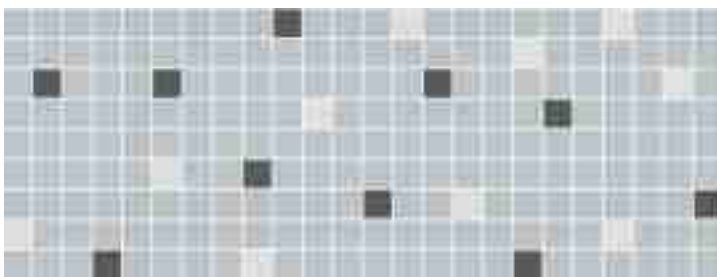
②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상충 최소화



관련 법률 및 지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바닥마감

- 보도의 신설 및 보수 시 주변환경, 연접한 바닥 마감의 색채, 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 마감한다.
- 교통약자가 걸리거나 빠질 위험이 있는 맨홀, 배수구 등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점자블록은 황색을 기본으로 하나, 주변환경과 조화를 위해 색채의 변화는 가능하며 블록의 돌출부분이나 질감은 주변 보도와 반드시 차별되도록 계획한다.
-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할 시에는 진행방향의 모따기 가공 등 안전확보를 우선시하며 활체어 및 유모차 등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바닥마감재의 명도, 질감 등의 차이를 두어 이용자가 보행구역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사로는 바닥표면 미끄럼 저항기준을 40BPN(British Pendulum Number)이상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경사로 구간의 바닥 재료와 질감, 색상 등의 변화를 줄 수 있다.
- 바닥마감재 선정은 설치 환경의 특성과 보수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주변환경과 최대한 조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블록형 바닥마감재를 사용하는 경우, 단위 규격이 크고 경계부와 곡선부의 마감이 미려한 시공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 보차도 경계석은 바닥 색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고 경계석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여 안정감 있는 형태로 마감한다.
- 단일 블록 내의 색채와 패턴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빈번한 패턴의 변화를 지양한다.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중·저채도 색을 주조색으로 하며, 지나치게 많은 재료의 혼용을 지양한다.



보도블록 패턴 예시



① 틈새의 간격 1cm 이하 권장

관련 법률 및 지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 BPN(British Pendulum Number) :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여 미끄럼 저항기준을 나타내는 값으로 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하다.

식재

- 가로수 식재 간격은 주변의 경관적 특성에 따라 조절하고, 보도 상 녹지는 장애물존 내에 통합설치한다.
- 기존의 자연 식생 및 보호수와 조화되도록 식재한다.
- 가로수의 뿌리로 인해 보행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전적으로 천천히 자라는 수종을 선정하고 보·차도 포장 전 일정한 두께의 자갈층을 부설하여 뿌리와 포장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도록 한다.
- 일조 여건에 맞는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여름에는 적절한 그늘을, 가을에는 적절한 일조를 확보한다. ①
- 교량이나 보행육교 주변에는 가로수의 성장을 고려하여 기반시설물이 가려지지 않도록 식재한다.
- 가로녹지대는 생울타리와 같은 관목류를 식재하거나 자연 배수로 조성할 수 있다.
- 보도와 횡단보도의 교차구간 내, 교통안전 표지 지주의 5m 이내 공간에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한다.



① 영구음지 발생 지양

관련 법률 및 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A-4 보행자우선도로

- 정의
 - 폭 10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차량감속을 유도한다.
-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로 빗물유도하며, 배수구 그레이팅에 유모차, 휠체어 등의 바퀴가 걸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한다.

시설물 설치

-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경계석으로 구분하거나 펜스, 볼라드 등 별도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협소한 보도 폭을 가지는 국지도로는 보행자 통행의 안전을 위해 통행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교통안전표지 설치를 권장한다.
- 교통안전표지는 주요 교차로와 보도구간에 표기한다.
- 통합지주 활용을 통해 추가적인 지주 설치와 보행자와 차량 이용자의 시야를 막는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한다.



보차분리 단면도

관련 법률 및 지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바닥마감

- 보도 포장 시 이음새 및 시설물 설치 부위는 정교하게 시공하여 평탄도가 균일하고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 포장의 요철이 안전한 보행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 공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닥패턴의 통일성을 고려한다.
- 보행자 및 차량이용자가 구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진입부에 입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표시를 표기한다.
- 고원식 횡단보도의 턱 주위를 석재블록과 사고석 포장 등을 통해 노면을 다르게 포장할 수 있다.
- 기존의 차도 바닥색상을 달리하여 설치하거나 스탬핑 등의 기법으로 요철 및 도로패턴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차량속도 저감 포장

경계석 구분



안전시설물 경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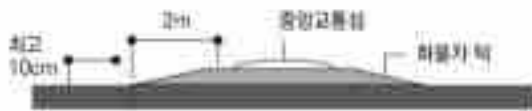
A-5 회전교차로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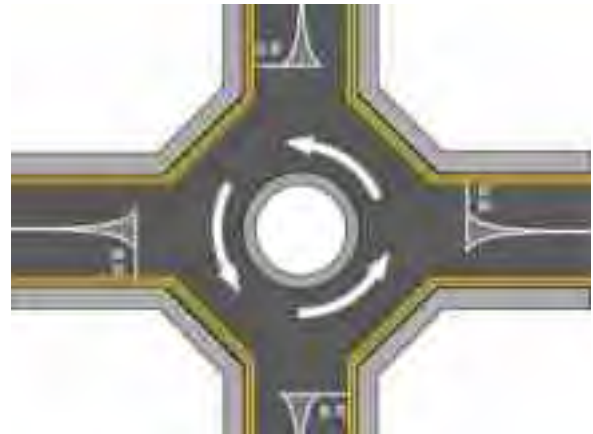
- 십자 교차로 대신 도로가 만나는 중심부에 교통섬을 두어 차량이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 교통섬을 돌아가도록 만든 교차로를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회 전 교 차 로	• 회전교차로 계획시 기준교통량은 교차로 전체의 통과교통량을 기준으로 하되, 회전교차로로 교통량 수준은 소형은 12,000대/일 이하, 1차로형은 20,000대/일 이하, 2차로형은 32,000대/일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 중앙교통섬은 돌출형을 기본으로 한다. ①
	• 중앙교통섬에는 대형차량의 통행을 고려해 요철포장된 화물차 턱을 설치한다.
	• 통행이 많고 차도폭이 좁은 지역의 화물차 턱은 노면표시로 대체할 수 있고,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야광도색을 권장한다. ②
	• 차도폭이 과다하여 차량 2대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주정차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도류화를 통하여 주정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폭을 최소화하고 주정차를 방지한다. ③



회전교차로 단면도



회전교차로 평면도



① 돌출형이 아닌 형태



② 노면표시 대체



③ 과다한 도로폭 지양

관련 법률 및 지침

- 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행정안전부)

시설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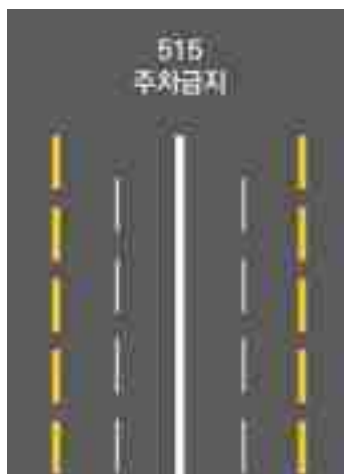
회전교차로

- 중앙교통섬의 높이는 최고 10cm 로 한다.
- 교통섬의 화물차 턱의 간격은 2m 로 한다.

바닥마감

회전교차로

- 차도폭 및 교차로의 폭이 일반 교차로에 비해 좁으므로 정지·양보·서행을 유도하는 노면표시를 표기한다.
- 차도폭 규정상 중앙선을 설치할 수 없는 생활도로의 경우, 중앙분리를 알리는 새로운 노면표시를 표기할 수 있다.
-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의 회전방향을 알리는 노면표시를 표기한다.
- 노면표시 규정 515-주차금지 및 516-정차·주차금지 표시와 차별되도록 항시 회전교차로의 '절대적 주차금지' 노면표시를 표기한다.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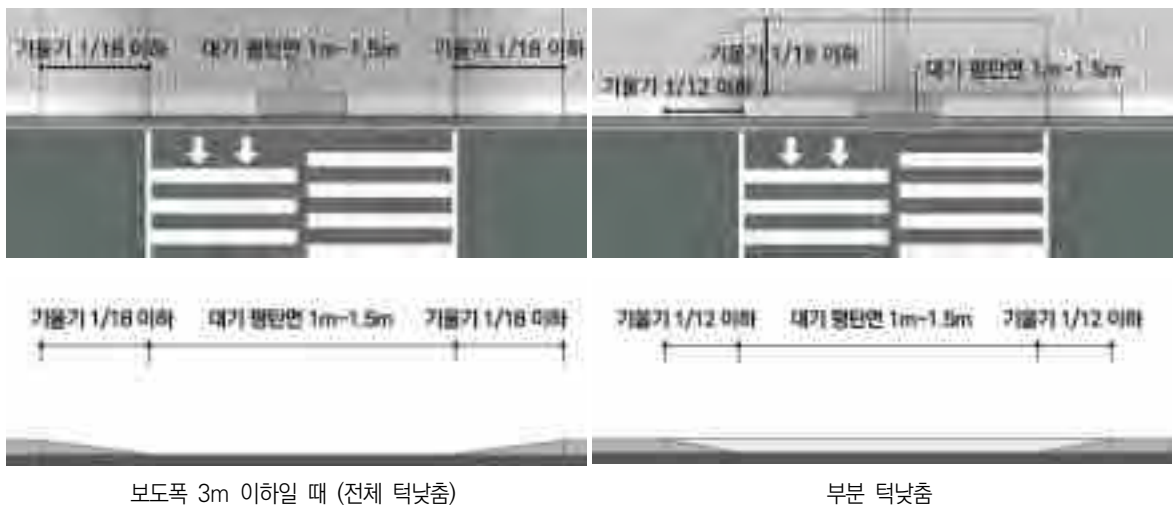
관련 법률 및 지침

- 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행정안전부)

A-6 횡단보도

- 정의
 -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의미한다.
- 가이드라인

구조	
공 통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횡단보도 표지를 표기한다. •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 고원식 또는 보행섬식 횡단보도 설치를 권장한다. • 휠체어·유모차·자전거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보행안전존, 자전거도로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자동차 우선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차도면 높이에 맞추며, 보행자 우선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보도면의 높이에 맞추도록 한다.
단 차 및 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보행섬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를 3cm 이하로 한다. • 턱낮추기를 실시할 때 연석경사로를 설치한다. • 연석경사로의 폭은 횡단보도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경사로의 폭은 최소 0.9m 이상으로 한다. • 횡단보도 진입방향의 연석경사로 기울기는 1/18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12 이하로 한다. • 보도의 보행방향의 연석경사로 기울기는 1/12 이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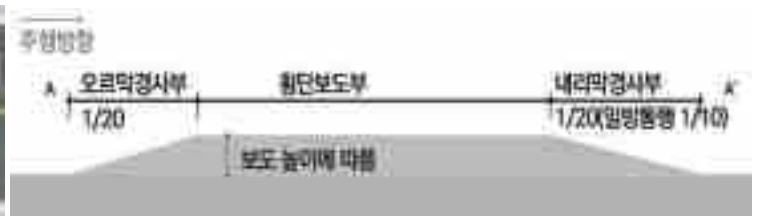
관련 법률 및 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고원식 횡단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접근성이 요구되는 도로나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설치한다. • 사다리꼴 구조물의 경사(턱) 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 우수가 적절하게 배수 될 수 있도록 측구 등 주변에 배수 체계를 함께 고려하여 설치한다. • 주변에는 야간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표지, 볼라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횡단보도부의 높이는 보도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며, 길이는 4m 이상으로 하되, 보행 통행량이 적어 횡단 시에 보행자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곳에서는 2.5m까지 길이를 축소할 수 있다. • 경사부의 경사도는 1/20으로 하며 일방통행에서 내리막경사부에서는 1/10으로 할 수 있다.
보행섬식 횡단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m 이상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에 횡단을 위한 일시적인 대기장소 (이하 보행섬)를 두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섬은 도로의 규모에 따라 직선형태 또는 굴절형태의 횡단보도의 중앙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섬의 최소폭은 1.5m로 하여야 한다. • 보행섬의 전후에는 안전지대 노면표시 및 볼라드, 펜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자동차와 보행자의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섬 중 횡단보도와 연속되는 부분은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설치한다.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예시



고원식 횡단보도 A-A' 단면도



보행섬 평면도

교차로 외 횡단보도

- 노상주차가 있는 경우 내민보도를 설치하여 주차선보다 약 0.6m 정도 좁은 폭으로 설치하며, 도로상황에 따라 1.8~4m의 폭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노상주차가 있는 경우 내민보도의 폭은 횡단보도 너비의 최소 기준인 4m에서 24m 이내로 확보할 수 있다.
-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 보행섬식횡단보도 기준에 따라 중앙분리대와 횡단보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보행섬을 설치할 수 있다.
- 왕복 2차선의 도로 또는 도로의 가장 바깥 차로의 폭이 3.5m 이상의 폭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 양측으로 각10m 까지(폭 3.0~3.5m) 내민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가장 바깥쪽 차로가 3.0m가 되도록 내민보도의 폭을 조정한다.)_보행섬 + 내민도로 설치 예 참고



보행섬 설치 예



보행섬 + 내민도로 설치 예

관련 법률 및 지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교차로 횡단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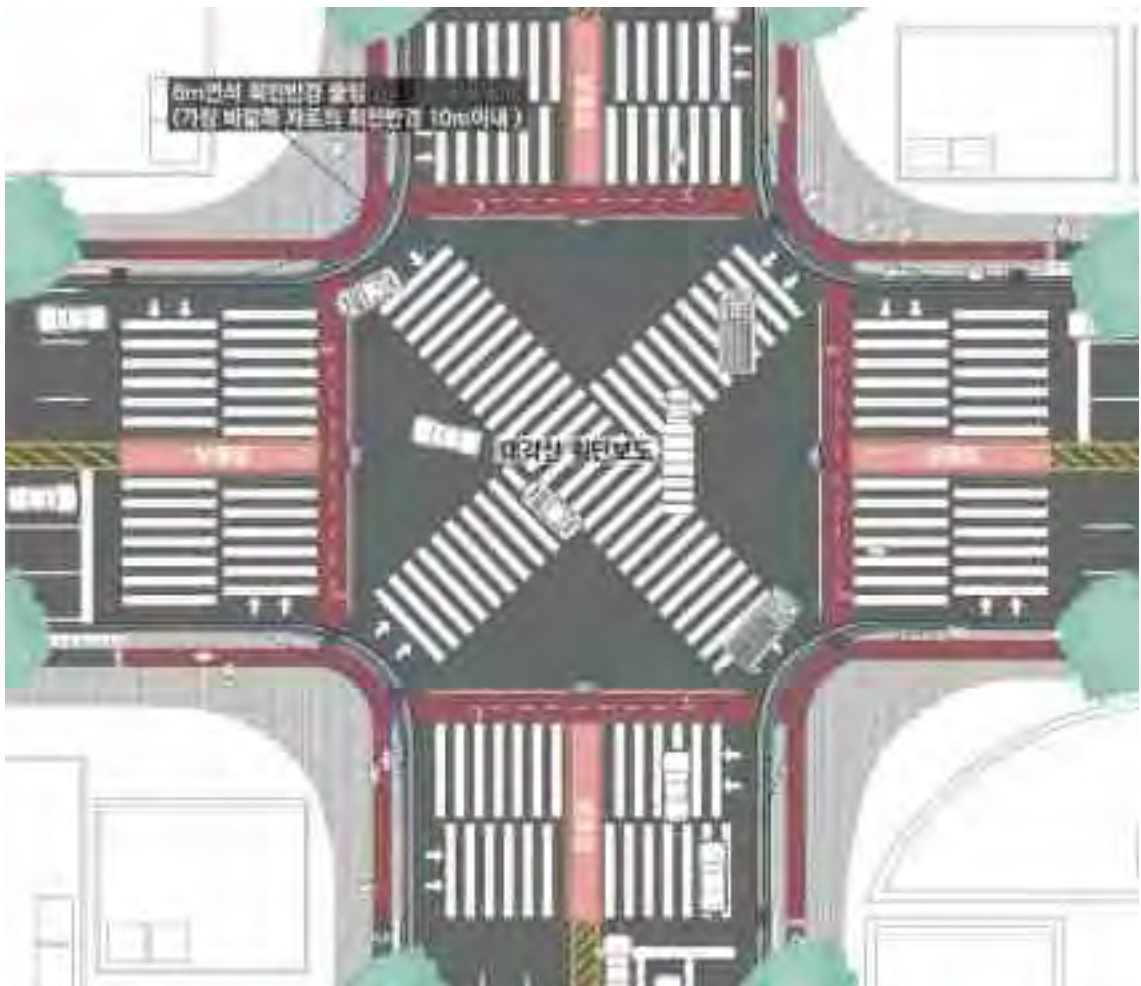
-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인 경우 대각선방향의 횡단보도 설치할 수 있다.
- 속도제한 50km/h이하 교차로인 경우 모퉁이의 회전반경을 10m 이내로 하여 우회전차량의 통과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횡단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
- 속도제한 30km/h이하 교차로의 경우 회전반경 회전반경을 10m 이내로 하며 내민보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내민보도는 가장 바깥에 위치한 차로의 폭이 3.0m 미만인 되지 않도록 조정)
-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 보행섬식횡단보도 기준에 따라 중앙분리대와 횡단보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보행섬 설치할 수 있다.



+자형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권장 설치 예

교차로 횡단보도 (T)

- 속도제한 50km/h이하 교차로인 경우 모퉁이의 회전반경을 10m 이내로 하여 우회전차량의 통과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횡단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
- 속도제한 30km/h이하 교차로의 경우 회전반경 회전반경을 10m 이내로 하며 내민보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내민보도는 가장 바깥에 위치한 차로의 폭이 3.0m 미만이 되지 않도록 조정)
-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 보행섬식횡단보도 기준에 따라 중앙분리대와 횡단보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보행섬 설치할 수 있다.



T자형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권장 설치 예

시설물 설치

- 보도와 횡단보도 경계 부분에는 배수구와 맨홀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되, 차도의 물이 보도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를 횡단보도로부터 1m 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2m가 되도록 한다. ①
- 보행자 우선구역 안의 교통신호기에는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녹색신호 변경 버튼을 설치해야 한다.
-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은 조명색을 일반 가로등과 달리하거나 조도를 50lx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블라드는 전면 턱 낮춤 시에만 설치하며 1.5m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 횡단보도의 대기공간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신호등, 가로등, 교통신호제어기 등)은 안전을 위한 시야와 공간확보를 위해 통합 설치하고, 보행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③



① 수동식 음향신호기 설치



② 횡단보도 블라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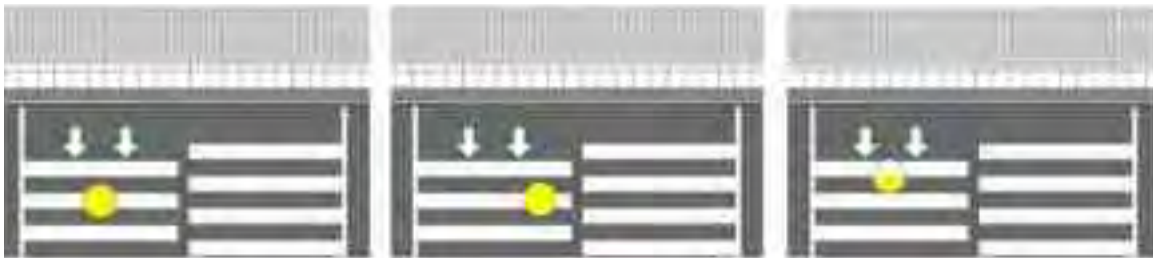
③ 신호등 지주의 통합 설치

관련 법률 및 지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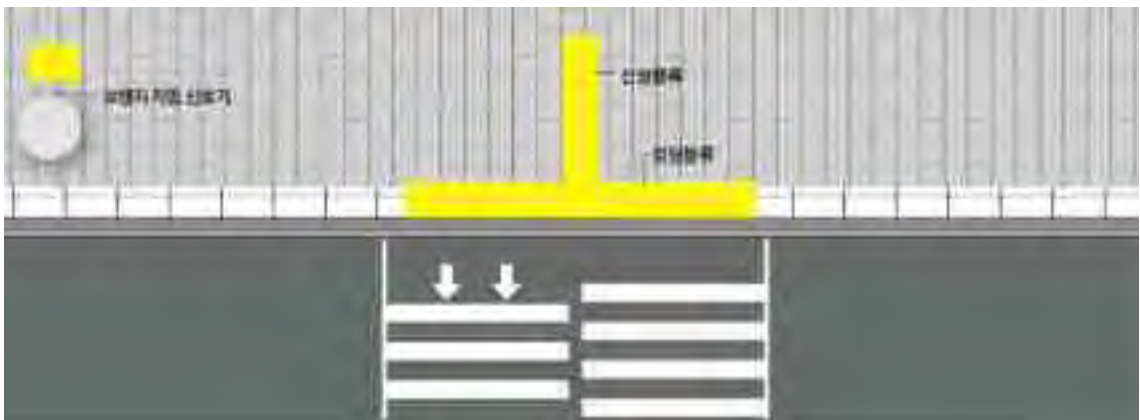
바닥마감

- 시각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진입부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으로부터 보도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횡단보도 도색 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우천 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용 특수 도료를 이용하고 미끄럼 저항기준으로 45BPN이상 권장한다.
- 노면 표시에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
- 횡단보도에 맨홀이 설치되는 경우, 맨홀덮개를 개폐할 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맨홀 표면에 횡단보도의 노면표시 도색을 지양한다.



횡단보도 맨홀 노면표기 권장

횡단보도 맨홀 노면표기 도색 지양



점형블록 및 선형블록 설치 예

관련 법률 및 지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BPN(British Pendulum Number :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여 미끄럼 저항기준을 나타내는 값으로 BPN 수치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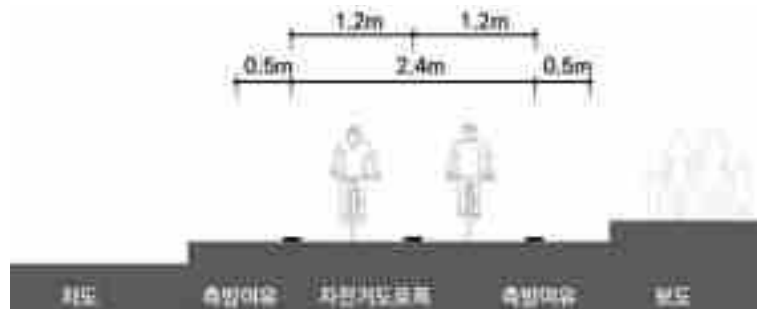
A-7 자전거도로

- 정의
 - 자전거도로는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차량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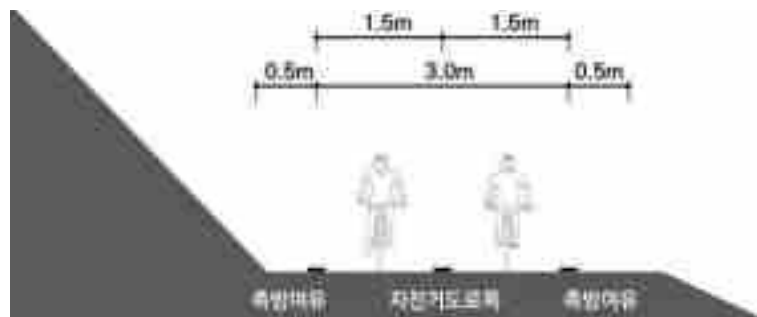
구조

자
전
거
전
용
도
로

- 도시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폭은 일방향 1.5m(양방향 2.4m)이상으로 한다.
- 공원, 하천, 둔치 등에 독립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시 폭은 일방향 1.5m(양방향 3.0m) 이상으로 한다.
- 차도에 인접한 자전거 전용도로 일방향 설계 시 폭은 1.5m로 하고 제한속도 60km/h 이하 일경우 에는 0.5m이하, 60km/h 초과일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분리대의 폭을 설치한다.
- 노면의 요철은 최소화하며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시설물이나 식재에 의해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도 및 보행동선과 엄격히 구분하여 설치한다.
- 야간 시인성 저하 등 필요 시 차도 바깥쪽 차선에 시인성을 확보를 위하여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다.
- 택시 승·하차 구간 또는 상가 밀집지역 등 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구간은 별도의 주 정차공간을 확보하거나 보도로 우회하는 자전거도로의 설치할 수 있다.
- 차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분리시설의 설치를 지양한다.
- 자전거도로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2.5m 이내에는 자전거의 주행이 원활하도록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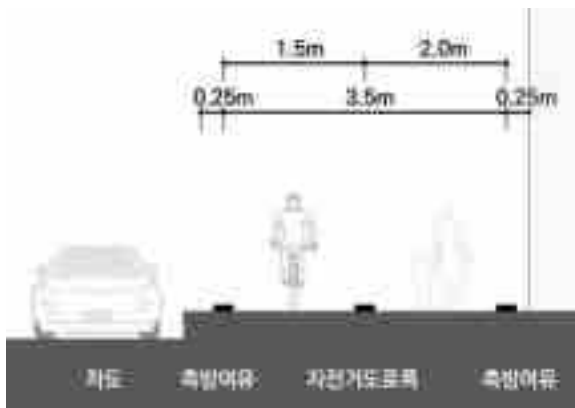
도시지역 자전거전용도로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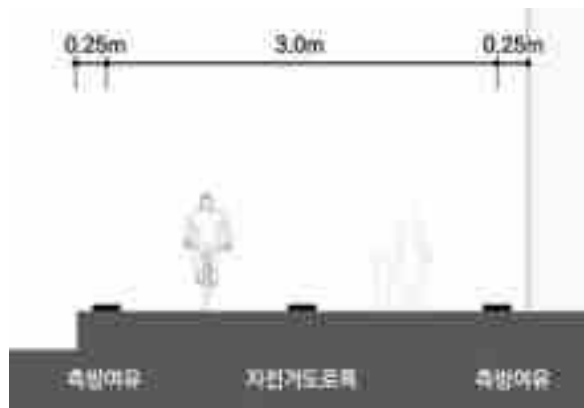
농촌지역, 하천 및 둔치에 설치 되는 자전거전용도로 단면

자
전
거
보
행
자
겸
용
도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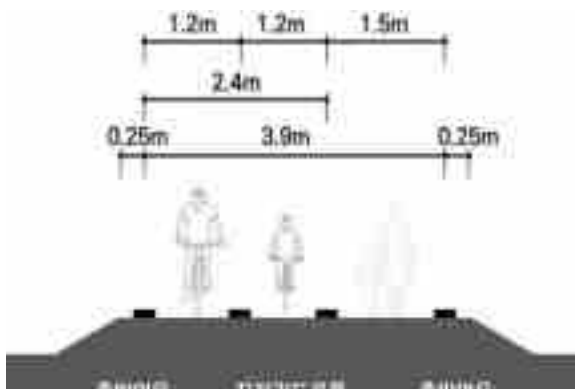
- 도시지역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은 다음과 같다.
 - 분리 시 자전거도로는 폭 1.5m 이상, 보행자도로는 유효보도폭 2.0m 이상으로 설치한다.
 - 비분리 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3.0m 이상으로 설치한다.
- 하천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은 다음과 같다.
 - 분리 시 자전거도로는 폭 2.4m(양방향) 이상, 보행자도로는 유효보도폭 1.5m 이상으로 설치한다.
 - 비분리 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3.0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 설치 시 자전거도로는 차도 측으로 설치한다.
(단, 조경 및 식수대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시거 및 운행에 지장을 줄 경우 예외로 적용)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측면에 0.25m 이상의 측방여유를 확보한다.
- 보도와 함께 설치할 시에는 양측 편방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하천변 등 주변여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에 따라 편측 양방향, 양측 양방향도 가능하며, 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한다.
- 노면 표시, 재질 변화 등을 통해 자전거와 보행자 공간을 엄격히 분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를 동시에 통행하도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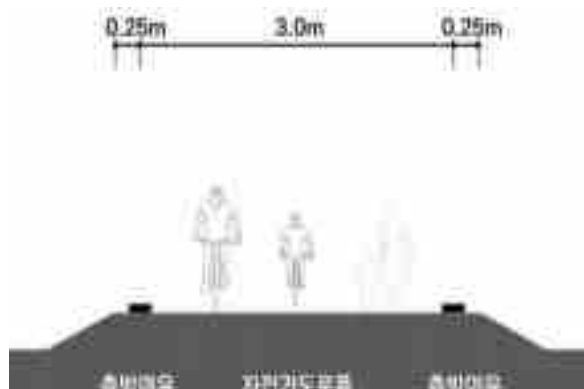
도시지역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단면(분리)



도시지역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단면(비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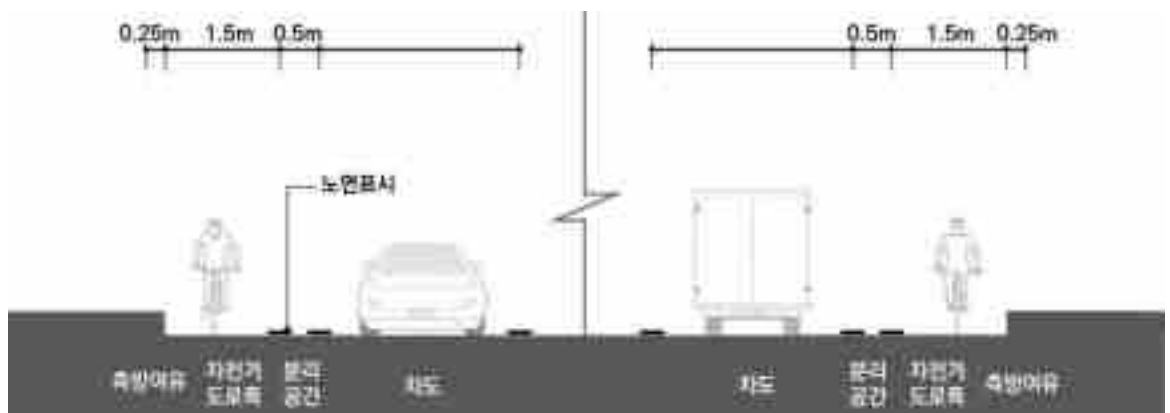


하천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단면(분리)



하천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단면(비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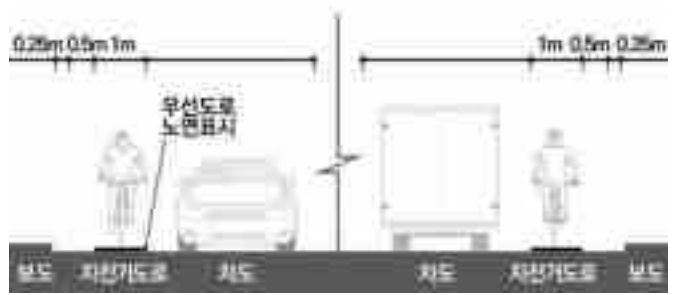
- 자
전
거
전
용
차
로
·
자
전
거
우
선
도
로
- 자전거 전용차로의 폭은 1.5m 이상으로 한다.
(단, 1.5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자전거도로 폭 특례 적용에 따라 최소폭 1.2m로 설치할 수 있다.)
 - 자전거 전용차로와 차도사이에 측풍을 고려한 분리공간은 다음과 같다.
 - 제한속도 60km/h 이하의 경우 0.5m의 분리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제한속도 50km/h 이하의 경우 0.2m의 분리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자전거 전용차로의 측방여유(보도 측)는 최소 0.25m로 설계한다.
 -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차로 구역 전체를 활용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자전거 우선도로는 도로(혹은 차로)구역 전체를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차로폭이 넓은 도로의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영역의 통행을 할 수 있다.
 - 자동차와 자전거를 분리하는 보호시설이 없으므로 야간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선 0.5m 내에 시선유도시설(도로 표지병 등) 설치할 수 있다.



도시지역 자전거전용차로 단면



자전거 우선도로 단면(좁은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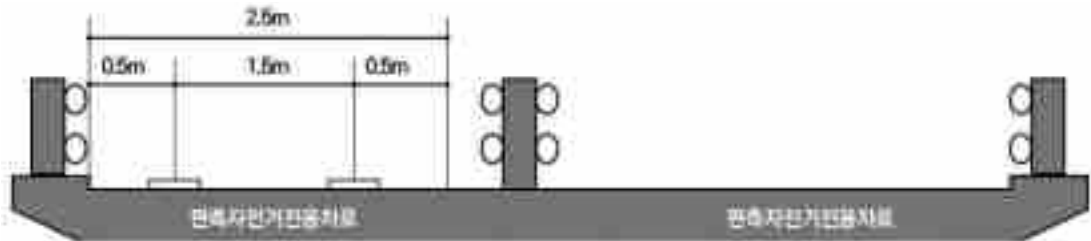


자전거 우선도로 단면(넓은 차로)

관련 법률 및 지침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3장 자전거도로

교량 · 터널

- 자전거도로의 교량 설치 시 「도로교 설계기준」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설계 및 시공한다.
- 자전거 전용도로 교량 설치 시 폭은 3.0m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교량 설치 시 분리시설은 폭 4.5m 이상, 비분리 시설은 폭 3.0m로 설치한다
- 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 교량 설치 시 폭은 1.5m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 기존 터널, 지하도로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구조 및 기타 시설물은 일반도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터널부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설치 시 양방향 3.0m로 설치하고, 종단 시거를 고려 수직 여유공간 높이는 2.4m 이상으로 하고, 양측면에 별도의 여유공간을 고려한다.
- 터널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폭 3.0m, 양측면에 시거를 고려한 여유공간을 최소 0.5m 이상 확보한다.
 - 종단 시거를 확보하기 위해 2.4m 이상의 높이로 설계한다.
- 터널부 자전거 전용차로는 1.5m를 적용한다.
- 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 터널부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시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최소폭 1.2m까지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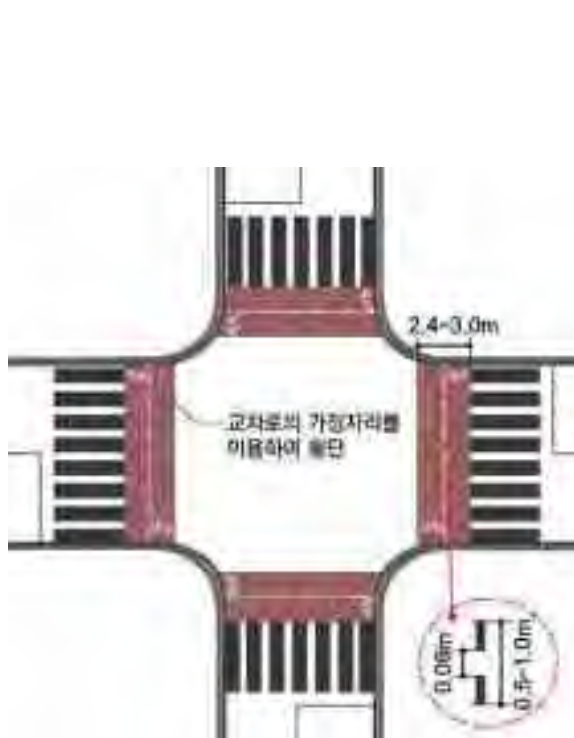
자전거 전용차로 편측 횡단구성



터널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횡단구성

평면 교차로

- 자전거 횡단도는 보행자와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차로와 가장 인접하도록 설치한다.
- 자전거 횡단도의 폭은 접속되어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와 동일한 폭으로 설치한다.
- 자전거 이용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통해 좌회전해야 한다.
- 우회전하는 자전거의 안전을 위해서 도류화된 우회전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자동차와의 상충 없이 안전한 교차를 위해 자전거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자전거 이용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와 교차로 구간의 높이가 같도록 설치한다.
- 보행자와 자전거의 상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도록 유도한다.
- 자전거 통행안전을 위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암적색 포장 적용대상 범위는 자전거와 차량, 자전거와 보행자간 상충이 발생하고 사고위험 요인이 있는 구간 (상충구간 포함)으로 전후방 10m(총 20m)를 암적색으로 포장하며 여건에 따라 자전거횡단도 및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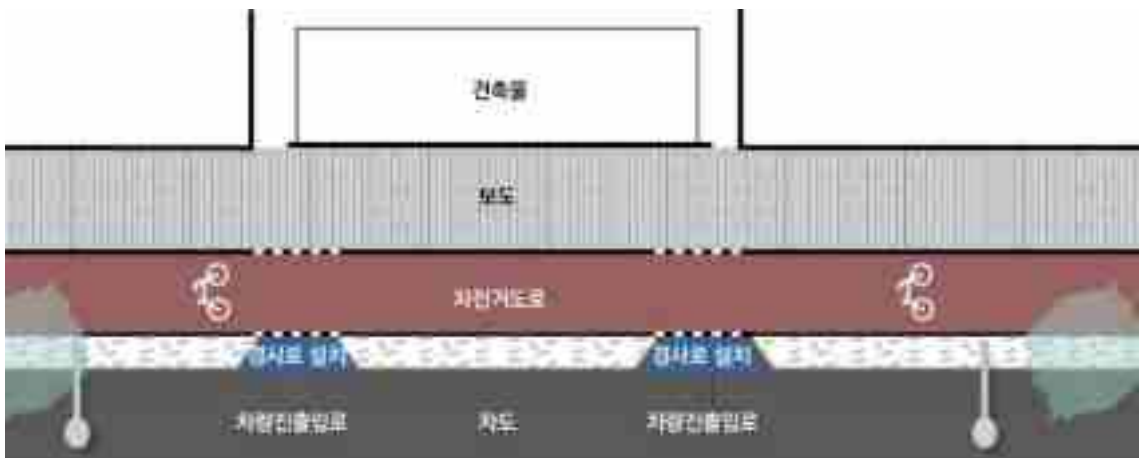
자전거 횡단도 설치



교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예시도

이면도로 출입구 교차지점 설계

- 자전거도로와 이면도로 출입구가 교차하는 지점은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출입하는 자전거의 우선통행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주유소 진입, 주차장 또는 주택으로 진입과 같은 교차장소에서는 임적색으로 포장하고 자전거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 도로와 단차를 둔 자전거도로라면, 자전거도로의 높이는 자동차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로쪽에 경사를 둔다.
- 차량이 이면도로를 출입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차선을 백색 점선으로 표시한다.
-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을 활용하여 이면도로의 차량 및 보행자의 접근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이면도로 출입구 교차지점 설계 예시도



이면도로 출입구 교차지점 설계 예시도(자전거 우선도로)

경사로

- 경사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폭과 경사방식으로 설계한다.
- 육교 및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폭 15cm(바퀴이동 홈이 있는 경우 9cm) 이상의 자전거경사로를 설치한다.
- 자전거 경사로는 가급적 이용자의 편리성을 위해 중앙부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계단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만 계단 양측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경사로 주변 점자블럭을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의 교차부 설계는 차량의 진입을 막고, 교통간의 상충이 생기지 않도록 분리하여 설계한다.
- 자전거도로의 교차 설계는 평면교차 설계를 준용하되 직선도로의 경우 연속 제거구간을 최소 2.4m 확보해야 한다.
- 자전거 경사로 끝 부분이 계단의 가장 상부인 첩면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직선형, 지그재그형, 원형연결로형 등 '자전거 연결로'를 설치할 수 있다.
- 택시 및 버스 교통량이 많은 지점의 경우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류장을 우회하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인구 밀집지역의 강변 자전거도로와 접속되는 주요 교량에는 직선형, 지그재그형, 원형연결로형 등의 자전거 연결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자전거 연결로는 횡단하는 자전거 통행량 또는 적색신호에 대기하는 자전거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입체교차로 내 자전거 경사로 중앙부 설치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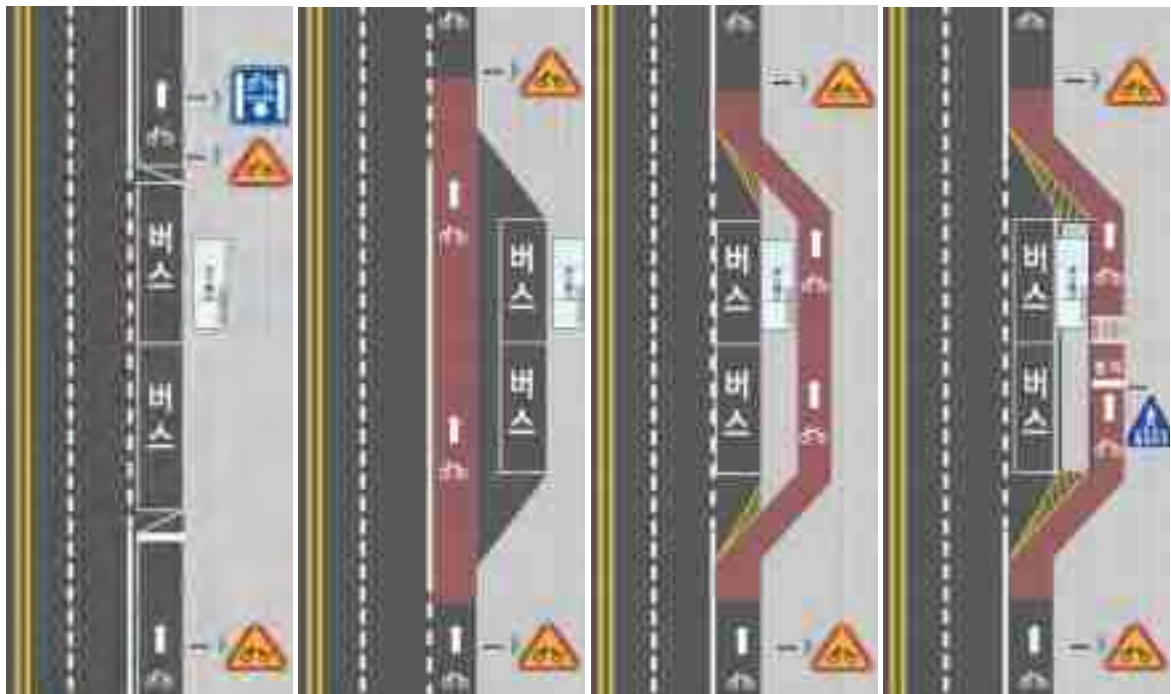
입체교차로 내 양측 자전거 경사로

정류장 구간
자전거도로 설계

- 자전거도로와 택시 및 버스정류장이 교차하는 지점은 이용객을 고려하여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의 포장 색상은 암적색으로 한다.
- 택시 및 버스 교통량이 많은 지점의 경우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류장을 우회하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바닥 마감

- 우천 시 미끄러지기 쉬운 포장 노면은 제동력을 만족하기 위하여 40BPN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 자전거도로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충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포장의 색상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 상충구간에 적용하는 자전거도로 포장의 색상은 암적색(어두운 빨강)으로 한다.



일반구간

베이 설치시

보도 우회시

교통섬 설치시

관련 법률 및 지침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배수기준을 적용한다. • 자전거 전용도로는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33~1/50의 횡단경사를 설치한다.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동일한 배수기준을 적용한다. •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시 필요에 따라 측구, 집수정, 맨암거 등 배수시설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 이면도로, 시·종점 등 상충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장의 색상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 상충구간에 적용하는 자전거 도로 포장의 색상은 아래의 <자전거 도로 포장 색채기준>의 상충구간에 따른다.
노면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면 표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45BPN 이상의 미끄럼 저항치를 갖도록 계획한다. • 자전거도로 차선의 노면표시의 기준은 중앙선은 노란색, 양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하고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흰색 점선으로 표시한다. • 자전거도로 시종점부에는 노면 표시를 자전거 주행방향에서 정면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방향과 일치하게 바닥면에 표시한다.



기본구간
표층 고유의 색상 사용



상충구간
Munsell : 5R 3/4
KS : 0075
L*a*b : 30.25 20.68 8.56
도로용표준색 : F-154004
CMYK : 0 45 44 59

<자전거 도로 포장 색채기준>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



자전거 횡단도 표시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

<자전거 도로 노면 표시 기준>

시설물 설치

자
전
거
도
로
안
전
시
설

- 카센터, 소방서 앞 등 차량 진출입이 빈번한 지역, 급커브 구간, 건물 모퉁이 진출입부 등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장소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표지, 자전거 주의 표지 등을 설치하고 위험구간에 색채포장 및 표지병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① ②
- 난간은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보다 난간에 충돌하는 것이 사고의 치명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급커브, 낭떠러지 등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난간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전거도로 난간의 설치 높이는 일반구간 1.2m 이상 적용한다.
 - 교량 및 고가도로 구간 1.4m를 적용한다.
 - 측방여유는 최소 0.3m 이상 확보해야 한다.
- 자전거도로 난간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개방(open)형으로 하고, 직접 충돌을 방지하는 블록아웃형 구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④
-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교통정온화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 자전거도로 난간의 최상단 보는 필요시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탄채로 안전하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자전거 우선도로를 제외한 자전거 이용시설에서 방호울타리 설치는 지양한다.



① 자전거도로 표지



② 표지병



③ 블록아웃형 난간



④ 난간 높이기준



⑤ 자전거도로로 교통정온화 (과속방지턱)

주
차
시
설

-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연계지점, 주요 가로,의 결절점, 휴게시설 등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자전거 보관대는 옹벽, 교량하부, 건축물 벽면 등을 활용하여 보행자에게 장애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자전거 주차시설 설계 시 잠재수요를 추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 도난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CCTV 설치 및 야간 이용에 대비해서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자전거 주차시설이 있는 노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는 공기주입기를 설치해야 한다.
- 자전거주차장치 간격이 주변 자전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평행 주차시설의 경우 개별 자전거 사이 간격은 1.2m(최소 0.8m), 열 사이 간격은 1.8m로 결정한다.
 - 사각 주차시설의 경우 개별 자전거 사이 간격은 0.8m, 주차열 사이의 간격은 1.3m로 결정한다.
- 자전거 주차시설을 보도 위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충분한 유효 보도 폭을 확보하고, 보행자와 충돌 위험을 배제할 수 있도록 차도 측으로 설치한다.
- 자전거 이용자는 목적지 건물 앞까지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목적지 바로 앞 적당한 형태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자전거 주차장의 위치와 구조는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정 및 설계되어야 한다.
-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 시 이용 안내문, 위치 안내도, 공기 주입기 등을 설치한다.

유
지
관
리

- 자전거도로 포장 유지보수의 경우 친환경적인 측면과 내구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자전거도로가 유실되거나 재포장할 경우 다른 노면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보수해야 한다.
- 자전거도로 포장의 미소한 결함의 조기 발견 및 보수를 통해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및 제방 등의 자전거도로나 교량의 경우 오염물질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외관이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구조물은 지양한다.

관련 법률 및 지침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 도로안전시설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A-8 보호구역

- 정의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관련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계획한 구역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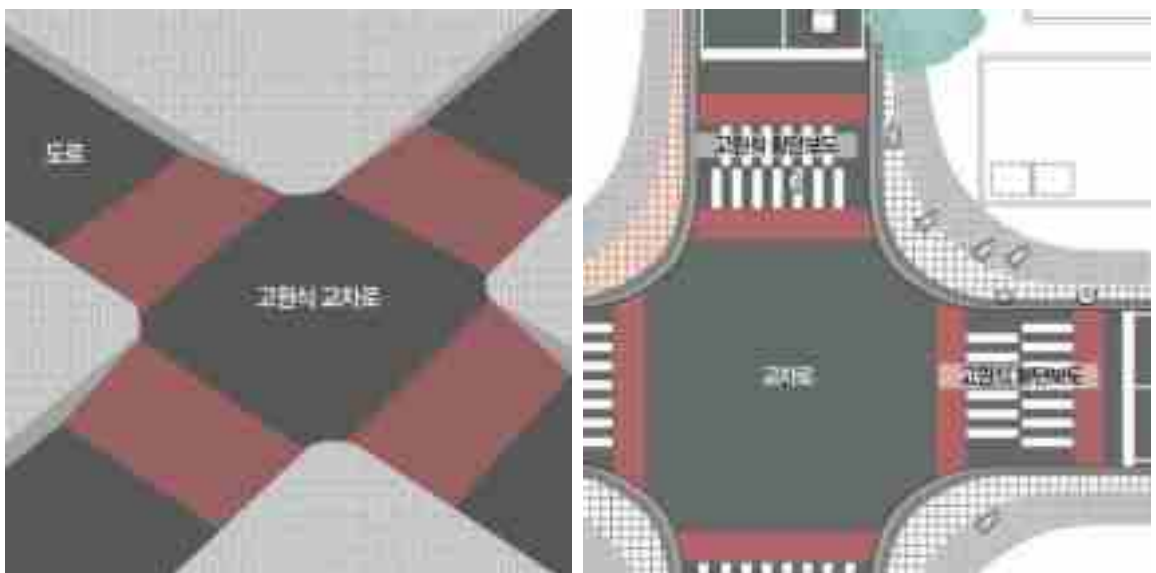
구조	
공 통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유도한다. • 보호구역 내 어린이, 노인, 사회적 약자의 보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시설물을 제거한다. • 보도 폭원을 확보할 수 없는 지점에는 차도 폭원을 줄여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차도의 길 가장자리에 구역선 표시와 색채포장, 블라드 등을 통해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를 지양한다.
횡 단 보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 시간은 어린이, 노인, 사회적 약자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녹색 신호 유지 시간=보행진입시간'7초'+0.8m당1초) •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양측면 50m 이내는 주정차를 금지토록 함으로써 통행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지방도 등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의 횡단보도 구간에는 차량 이용자의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부분적인 조명시설이나 연속적인 조명시설 설치할 수 있다. •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인근 15m이내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시설물(가로수, 버스쉘터 표지판 등) 설치를 지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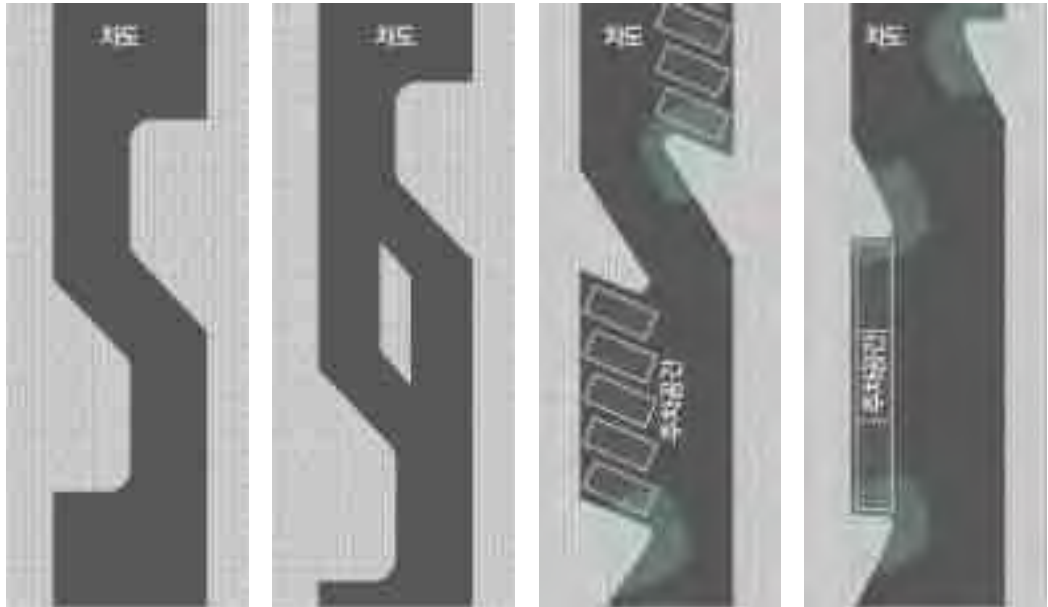
보도 폭원을 확보할 수 없는 지점의 구역선 지정 예시

속도저감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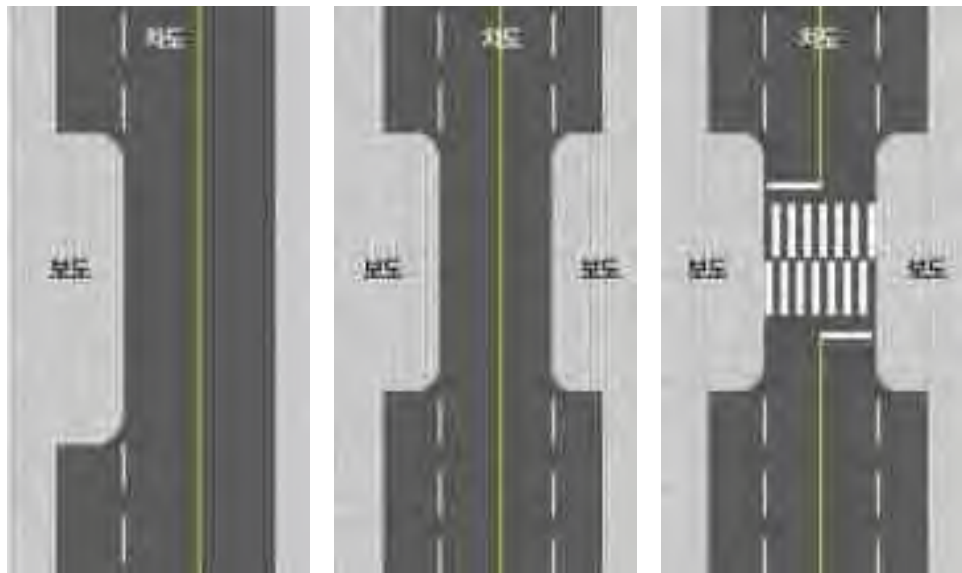
-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보도와 고원식 교차로의 연결부에는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노면의 요철포장은 자동차의 통행방이 많은 지역에서 실시하되, 주객이 밀집한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①
-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더라도 승차자, 차체 및 운행 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고원식 교차로는 그 전체를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포장으로 설치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 차량통행 부분의 선형은 차량 이용자의 빈번한 방향조작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낮추도록 하기 위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할 수 있다.
-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가 지그재그 형태의 선형을 유지할 수 있다.
- 주차를 허용하는 도로의 좌우에는 교대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다.
- 차량 이용자가 주행속도를 낮추도록 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차도의 폭을 좁게 하거나 시각적으로 차도의 폭이 좁게 보이도록 할 수 있다.
- 도로 구간 및 교차로 구간에는 차량 이용자의 과속을 억제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연속적인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 과속방지턱의 폭은 차축의 폭이 넓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좁게 할 수 있다.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예시



지그재그 형태 도로 예



차도폭 감소 예



① 요철포장



② 고원식 횡단보도 예



③ 과속방지턱 설치 예

시설물 설치

보호 펜스

- 보호펜스를 이루는 보의 형태는 어린이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해 날카롭지 않는 형태로 설치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호펜스의 형태는 세로보의 형태로 하며 세로보 사이에는 시야확보를 위해 개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 보호펜스는 고명도 및 고채도의 색채를 적용하거나 행태를 특화하기 보다는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운전자의 인지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주변 시설과 조화로운 색채와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안내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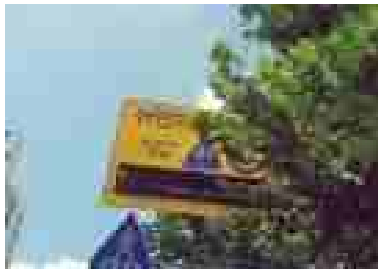
- 표지시설은 차량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가로수에 가리지 않게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되 노푼, 주행속도를 고려하여 지주형태를 결정한다. (표지의 크기는 속도를 기준으로 한 '교통안전 시설물 편람에서 정하는 규격을 준용한다.) ③
- 어린이 등 돌발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행동을 인지할 수 있게 색채와 형태 등을 단순화할 수 있다.
- 보호구역의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작점과 끝점을 알리는 표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교통량이 많은 시점부 지점에서는 2개 이상의 교통안전 표지판을 1개의 표지판으로 통합 설치함으로써 시인성을 높이도록 할 수 있다.
- 가변속도 표출기는 차량 이용자가 자신의 차량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④



① 비개방적인 펜스



②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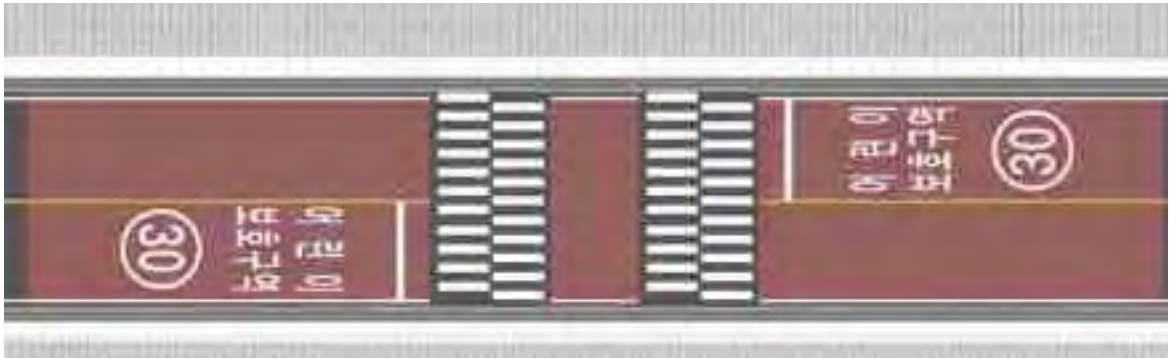
③ 수목에 의해 차폐된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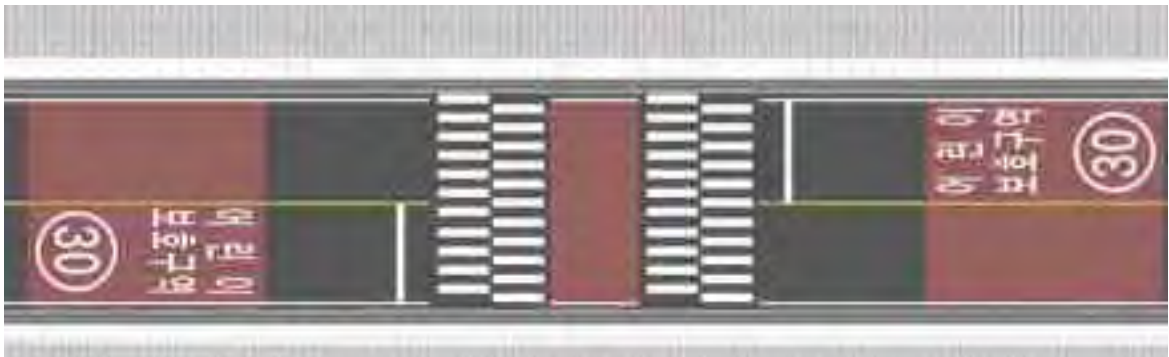
④ 차량의 속도 실시간 확인

바닥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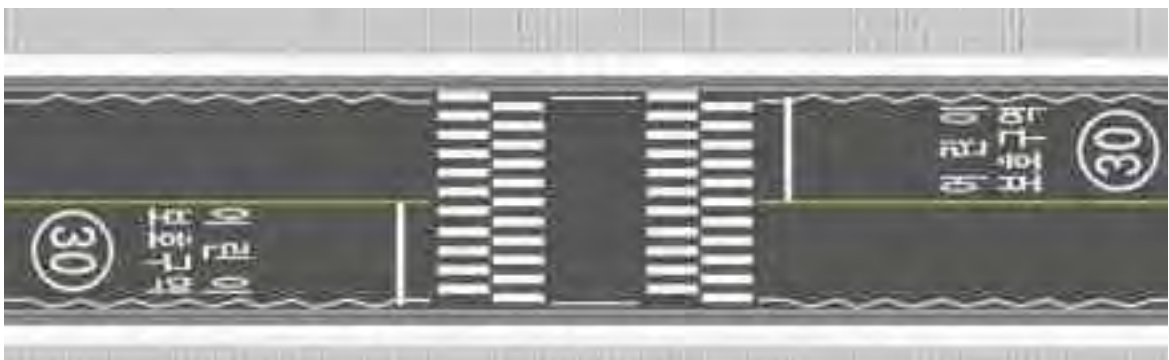
- 보도 면이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휠체어가 뒤집어지지 않게 미끄럼 저항과 배수성이 우수한 포장재료를 사용한다.
- 바닥 마감에 있어 패턴, 색상, 표식 등을 통하여 보호구역을 가시적으로 구분하되, 전 구간에 적용하기보다는 시·종점부 위주로 사용한다.



지양 : 전 구간 미끄럼 방지 색채 포장



시·종점부 미끄럼 방지 색채 포장 예시



지그재그 노면 표지 예시

관련 법률 및 지침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B

오픈스페이스

• 정의

- 건물·구조물 등이 많지 않고 주변이 건축물 없이 유지되는 토지를 총칭하며 공원·녹지를 포함한 녹지공간을 의미한다.
- 도시공간의 오픈스페이스는 공기·물·개방감의 확보를 통한 쾌적성의 제공과 용수의 공급·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통한 물적 자원의 향상 및 그린벨트·공원·녹지 등의 복합적 기능을 가지며, 주택단지의 오픈스페이스는 경관적 요소와 쾌적한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고 공기정화를 위한 순환통로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유로운 옥외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등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의미한다.
- **광장** :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거리에 만들어 놓은 넓은 빈터를 의미한다.
- **수변공간** : 강 또는 시내와 연접한 공간 또는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변공원이나 분수, 벽천 등과 같은 수경시설이 설치된 공간을 의미한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광장



수변공간

B-1 공원

(1) 어린이공원

- 정의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의미한다.
-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서 놀이·운동·자연학습 등이 어린이들의 능력에 맞게 설계되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보행로 및 지역과의 연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 주출입구는 광장형태로 조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출입구의 단차가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공원의 접근로는 3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며 유모차·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모든 보행자가 불편이 없게 한다.
- 공원의 이동공간에는 계단이나 급경사를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단 외에 안전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 주변 건축과 가로의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항시 보호와 관찰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
- 놀이시설과 더불어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학습체험시설을 설치한다.
- 친환경 재료와 시설물을 사용하고, 공원의 주제에 맞는 시설들을 설치한다.
-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의 이용도 함께 고려하여 공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보도의 기본구조 예시

시설물 설치

- 시설물 설치 시 시선의 차폐를 지양하고 공원 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 우범지대 발생을 방지한다. ①
- 시설물은 어린이의 체형에 맞게 조성하며 놀이시설은 친환경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접근로와 가까운 공원 일부 공간에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을 설치한다.
- 놀이시설은 연령별 이용자(유아, 유년, 소년)에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연령별 이용자 간의 충돌이 최소화되도록 공간적 구분을 두어 설치한다.
- 어린이의 모습이 잘 보이는 곳에 보호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파고라 등을 설치해 그늘을 조성한다. ②
- 공원의 경계부에는 담장 및 펜스의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장애인, 어린이 등의 안전이나 공원의 보안과 관련된 펜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울타리, 놀이벽 등 폐쇄감이 낮은 형태를 권장한다. ③
- 접근로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 측으로 조성될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보호펜스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 설치를 권장한다.
-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수대 및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
- 공중화장실 위치는 이용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지하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공중화장실 주위에는 CCTV를 설치하고 방범, 수사, 관찰 등 설치목적에 따라 CCTV의 가시성을 달리한다.



① 폐쇄적인 어린이공원 지양



② 파고라 설치



③ 펜스 및 울타리 설치 지양

관련 법률 및 지침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닥마감

- 지나치게 과장된 패턴과 자극적인 색채를 금지한다. ①
- 진입로의 바닥은 포장재를 달리하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설치로 보도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 비가 내리거나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고무바닥일 경우 바닥의 변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해야 한다.
- 어린이공원 내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충격흡수가 가능한 친환경 투수성 탄성포장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모래 등을 활용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②
- 안정감 있고 공원의 성격에 부합하는 색채를 사용해 마감한다.
- 안전을 위해 석재, 콘크리트 등 단단한 재질의 바닥 마감은 지양한다.

식재

- 식재 시 시선의 차폐를 지양하고 공원 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 우범지대 발생을 방지한다. ③
- 공원의 경관은 전반적으로 자연녹음이 우선이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원시설 주위보다 녹지 위주로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식물 등을 식재한다.
- 교목, 관목, 잔디 등 다양한 높이의 식물을 활용한 식재를 통해 조경의 수직적 다양성을 확보한다.



① 자극적 색채 지양



② 친환경 투수성 탄성포장



③ 개방성을 위한 식재

관련 법률 및 지침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소공원

- 정의
 -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작은 공원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주변 건축물의 높이와 방향을 고려하여 하절기 그늘과 동절기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 계획한다.
- 도심이나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조성되므로 인접가로와 연계하고, 접근로에 단차를 없애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 공원의 접근로는 3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며 유모차·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모든 보행자가 불편이 없게 한다.
- 공원의 이동공간에는 계단이나 급경사를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단 외에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 도심의 자투리 공간, 유보지, 공개공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마을단위의 숲을 조성하는 등 소규모 녹지를 확충한다.
- 시각장애인이 추락, 충돌 또는 가시 등에 찰릴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방향유도와 접근제한 등을 할 수 있는 난간, 보호대 등의 설치가 필요하며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낮은 블라드나 화분 등 보행장애 요소는 제한한다.

시설물 설치

- 시설물 설치 시 시선의 차폐를 지양하고 공원 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 우범지대 발생을 방지한다.
- 공원시설안내도는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시야를 가로막지 않는 크기로 설치한다.
- 공원 입구에 안내사인 등의 공공시각매체를 통해 공원 내 통행, 애완견 동반출입, 자전거 등이 제한되는 공간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 공원의 경계부에는 담장 및 펜스의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장애인, 어린이 등의 안전이나 공원의 보안과 관련된 펜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울타리, 놀이벽 등 폐쇄감이 낮은 형태를 권장한다.
- 공원 내 CCTV를 설치하고 방범, 수사, 관찰 등 설치목적에 따라 CCTV의 가시성을 달리한다.

관련 법률 및 지침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닥마감

- 진입로의 바닥은 포장재를 달리하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설치로 보도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 공원 내 이동공간은 바닥재의 질감, 재질, 색상 등 차이를 통해 점자블록을 대신할 수 있다.
- 용도와 목적이 다른 공간이 서로 교차하는 구간에는 바닥 마감의 색채와 재질에 변화를 주어 경계를 명시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를 권장한다. ①
- 공원 내 바닥재질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투수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식재

- 식재 시 시선의 차폐를 지양하고 공원 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 우범지대 발생을 방지한다. ②
- 공원의 기존 식생을 최대한 활용하고,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노거수나 보호수는 보존한다.
- 사계절에 걸쳐 계절감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선택한다.
- 공원시설 주위보다 녹지 위주로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식물 등을 식재한다.



① 바닥 재질 및 색채의 변화를 통한 공간의 변화 인지



② 수목에 의한 공간 차폐 지양

관련 법률 및 지침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근린공원

- 정의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접근성이 확보된 공간에 계획한다. ①
- 공원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하도록 주출입구, 휴게공간 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공원이용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주출입구는 광장형태로 조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출입구의 단차가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공간과 인접하여 조성되므로 인접가로와 연계하고, 접근로에 단차를 없애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②
- 공원의 접근로는 3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며 유도차·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모든 보행자가 불편이 없게 한다.
- 공원의 이동공간에는 계단이나 급경사를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단 외에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이 추락, 충돌 또는 가시 등에 찰릴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방향유도와 접근제한 등을 할 수 있는 난간, 보호대 등의 설치가 필요하며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낮은 블라드나 화분 등 보행장애 요소는 제한한다.
- 놀이와 운동공간 등 소음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주변 건축물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고 마운딩, 수림대 등으로 차음과 차폐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① 개방성과 접근성이 확보된 공간



② 공원 출입구 단차 지양

시설물 설치

- 시설물 설치 시 시선의 차폐를 지양하고 공원 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 우범지대 발생을 방지한다.
- 공원의 성격과 주제에 맞추어 통일된 콘셉트의 시설물 디자인을 구상·배치하도록 한다. ①
- 공원시설안내도는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시야를 가로막지 않는 크기로 설치한다.
- 공원 입구에 안내사인 등의 공공시각매체를 통해 공원 내 통행, 애완견 동반출입, 자전거 등이 제한되는 공간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 공원의 시설물을 최소화 및 통합화하며 지나치게 장식적인 상징조형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②
- 공원 내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범죄에 대한 감시 및 음성전송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공원의 경계부에는 담장 및 펜스의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장애인, 어린이 등의 안전이나 공원의 보안과 관련된 펜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울타리, 놀이벽 등 폐쇄감이 낮은 형태를 권장한다.
- 산책로와 자연스러운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정자형태의 휴게공간, 원형으로 배치된 벤치 등 지역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시설 배치를 할 수 있다.

바닥마감

- 진입로의 바닥은 포장재를 달리하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설치로 보도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③
- 공원 내 이동공간은 바닥재의 질감, 재질, 색상 등 차이를 통해 점자블록을 대신할 수 있다.
- 용도와 목적이 다른 공간이 서로 교차하는 구간에는 바닥 마감의 색채와 재질에 변화를 주어 경계를 명시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를 권장한다.
- 공원 내 바닥재질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투수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① 공원의 콘셉트에 맞는 디자인



② 공원시설물 통합 및 최소화 필요



③ 공원 진입로 포장 차별화

VII.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보호펜스) 준용_305p

식재

- 식재 시 시선의 차폐를 지양하고 공원 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 우범지대 발생을 방지한다.
- 공원의 기존 식생을 최대한 활용하고,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노거수나 보호수는 보존한다.
- 공원 외곽부는 군집식재하여 정돈된 이미지를 형성하고 내부는 낙엽수, 상록수, 화목류 등을 적정 비율로 식재하여 풍부한 계절감을 유도한다.
- 공원시설 주위보다 녹지 위주로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식물 등을 식재한다.
- 도로에 연접한 공간은 녹지 폭을 확보하여 공기정화, 방재나 방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할 수 있다.
- 공원 내 기존 수림대를 최대한 보존하고, 이식수목을 식재할 경우 기존 조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지형차와 다양한 식재조성을 통한 입체적인 공간계획 예시

관련 법률 및 지침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주제공원

- 정의
 - 특정한 주제를 내세워서 조성되는 공원.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곳으로, 생활권 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마련되는 역사공원, 문화 공원, 수변 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주출입구는 대중교통, 주요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지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 역사공원은 보호를 위하여 공공구역과 보호공간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용자의 동선을 계획한다.
- 체육공원의 시설은 되도록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주민건강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위치에 설치함을 권장한다.
- 각종 편의시설 및 위락시설을 함께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시설물 설치

- 역사공원의 경우 역사적 상징과 의미가 부각될 수 있도록 관람과 관련 안내시설물을 설치하되 직접적인 시설의 부착을 금지한다.
- 소음이나 진동이 유발되는 체육시설은 거주지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만 배치한다.
- 공원 내 이용객을 위한 방문센터, 매점 등은 누구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공원 주출입구와 관리사무소 등에는 종합안내소 또는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공원 내·외부의 편의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안내소를 통해 공원 이용정보를 얻거나 활체어, 유모차 등의 편의장비를 대여 받을 수 있는 가이드센터 역할을 병행한다.
- 공원 내 주요 시설물인 주차장 또는 보행안전구역 등에는 관리사무소와 연락할 수 있는 인터폰 또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인근 파출소와도 연결되도록 한다.
- 운동 후 기댈 수 있는 긴 막대 모양의 서포트 벤치형, 평상형 등을 설치하고 다른 시설물과 조화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
- 운동량이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햇빛 가림막이 있는 휴게시설과 벤치, 음수대 설치를 할 수 있다.
- 시설물 설치 시 보행과 산책 동선, 자전거 이용 동선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의 확보를 할 수 있다.
- 역사공원의 경우 역사자원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자체도 색채 계획을 할 수 있다.
- 공원 관리사무소는 3면 이상의 벽면에 창을 설치하여 공원내부를 관리 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감 및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 벽면 녹화를 할 수 있다.
- 공원 매표소와 매표기의 상부에는 비, 눈, 햇볕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붕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공원 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하며, 매표기에는 점자표기와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틀 함께 병기할 수 있다.

- 공원 안내판은 메시지 전달과 정확한 정보표시가 가능한 구조로 하며, 다양한 안내정보의 전달방법을 고려한다.
- 공원 내 지형상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나 애완견 동반출입 및 자전거 등이 제한되는 공간은 입구에서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 안내판은 대상 공원과 연계 가능한 곳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등 보행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한다.
- 공원 내 주요시설인 공원 입구, 보행로의 분기점, 주차장 등은 최소 2개소 이상 설치한다.
- 공원의 관리사무소 또는 인터넷이 가능한 무인 키오스크를 공원 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다.
- 공원 내 안내표지의 인지성을 높이기 알아보기 쉬운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적용하며, 명료한 서체와 크기,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 관광안내소는 지역 정보물의 제공과 접근이 용이하면서 주변환경과 규모를 고려해 간결한 형태와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 조망성이 좋은 공간의 경우 조망용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바닥마감

- 무채색 계열 색채를 권장하고, 바닥 패턴은 간결하게 유지한다. ①
- 진입로의 바닥은 포장재를 달리하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설치로 보도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 공원 내 이동공간은 바닥재의 질감, 재질, 색상 등 차이를 통해 점자블록을 대신할 수 있다.
- 용도와 목적이 다른 공간이 서로 교차하는 구간에는 바닥 마감의 색채와 재질에 변화를 주어 경계를 명시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를 권장한다.
- 공원 내 바닥재질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투수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① 무채색을 이용한 간결한 바닥패턴

식재

- 역사공원은 유적지와 문화역사 요소의 주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해 외부의 인공경관 요소를 가려줌으로써 역사성을 보존한다. ①
- 공원 외곽부는 군집식재하여 정돈된 이미지를 형성하고 내부는 낙엽수, 상록수, 화목류 등을 적정 비율로 식재하여 풍부한 계절감을 유도한다.
- 공원의 기존 식생을 최대한 활용하고,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노거수나 보호수는 보존한다. ②
- 수목 등이 가로등, 보안등, 유도등을 가리거나 그림자를 만들지 않도록 한다.
- 도로에 연접한 공간은 녹지 폭을 확보하여 공기정화, 방재나 방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할 수 있다.
- 공원 내 기존 수림대를 최대한 보존하고, 이식수목을 식재할 경우 기존 조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① 역사성 보존을 위한 완충녹지대 조성



② 노거수의 보존



관련 법률 및 지침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규칙

B-2 광장

(1)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 정의
 - 건축물의 이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건축물 이용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접근성이 확보된 공간에 계획한다.
- 주출입구는 대중교통, 주요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지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 인접한 보행로,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통합적 디자인을 통해 조성한다.
- 인접한 보행로와 시각적, 공간적으로 열려 있는 공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단차를 최소화하여 접근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휴식공간과 단순 통과 목적을 위한 보행공간을 구분하여 적은 면적이라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물 설치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인지할 수 있도록 범위와 면적 및 관련 시설을 알기 쉽게 표시한 안내표지를 해당 공간의 주출입구 및 주요 진입로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안내판은 해당 광장과 연계 가능한 곳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등 보행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한다.
- 건축물과 연계하여 트라광장을 조성할 경우 보행약자를 배려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등 설치를 권장한다.
- 담장 및 펜스의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여 광장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높인다. 단, 장애인, 어린이 등의 안전이나 공원의 보안과 관련된 펜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울타리, 놀이벽 등 폐쇄감이 낮은 형태를 권장한다.
- 광장 내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범죄에 대한 감시 및 음성전송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열린 공간의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조각품이나 분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바닥마감

- 인접한 건축물과 보행공간을 고려한 바닥 패턴과 색채의 마감으로 통합적 경관을 연출한다.
- 보행진입로의 바닥은 포장재를 달리하거나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보도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 가로와 연결되는 공원 내 이동공간은 점자블록을 대신하여 바닥재질, 색상, 질감 등에 차이를 두어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용도와 목적이 다른 공간이 서로 교차하는 구간에는 바닥 마감의 색채와 재질에 변화를 주어 경계를 표시하고, 약시자 등을 위한 색채, 재질 등을 고려한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물부설광장 내 바닥재질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투수성이 높은 포장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식재

- 충분한 녹지 면적을 확보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공간을 조성한다.
- 주변 보행축과 연계되는 수종을 식재하여 녹지를 통한 공공공간의 연속성, 연계성을 부여한다.
- 공원의 기존 식생을 최대한 활용하고,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노거수나 보호수는 보존한다.
- 사계절에 걸쳐 계절감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선택한다.
- 보행의 흐름이 있는 곳의 식재는 나무의 지하고를 충분히 높게 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할 수 있다.
- 시설보다 녹지 위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할 수 있다.
- 외부 가로에서 수목에 의해 시선이 가려져 우범화 되지 않도록 교목의 높이가 높은 것은 지양한다.

관련 법률 및 지침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근린광장

- 정의
 - 도심지의 주택가 주변에 있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을 의미한다.

공간배치

- 대중교통, 주요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최단거리의 보행동선을 연결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지하기 쉬운 곳에 입구를 설치한다.
-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녹지와 휴게, 문화시설을 접목하는 등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할 수 있다.
- 단순한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벤트가 상시 기획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할 수 있다.
-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휴식공간과 단순 통과 목적을 위한 보행공간을 구분하여 적은 면적이라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
- 주민의 사고, 오락, 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을 목적의 도로 배치를 지양한다.

시설물 설치

- 시설물을 최소화 및 통합화하고 지나치게 장식적인 상징조형물의 설치를 지양하여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
- 안내판은 대상 공원과 연계 가능한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보행자 출구 주변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한다.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범위와 면적 및 관련 시설을 알기 쉽게 표시한 안내표지를 해당 공간의 주요 출입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다.
- 열린 공간의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조각품이나 분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이용자의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고 'CCTV 감시 중'이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범죄예방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정보매체를 도입하여 보행자에게 위치와 안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놀이요소, 휴게시설, 편의시설의 도입을 할 수 있다. ②
- 담장과 펜스를 되도록 지양하여 건축물 부설광장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높인다. 단, 이용자의 안전, 공원의 보안과 관련된 펜스는 설치 가능하며 이 경우 생울타리, 놀이벽 등 폐쇄감이 낮은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이용객의 편의를 돕도록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설치를 권장하며, 이질적인 재료의 혼용은 지양한다.



① 안내사인을 통한 정보 제공



② 광장 휴게시설



바닥마감

- 보행진입로의 바닥은 포장재를 달리하거나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보도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 가로와 연결되는 공원 내 이동공간은 점자블록을 대신하여 바닥재질, 색상, 질감 등에 차이를 두어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용도와 목적이 다른 공간이 서로 교차하는 구간에는 바닥 마감의 색채와 재질에 변화를 주어 경계를 표시하고, 약사자 등을 위한 색채, 재질 등을 고려한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 근린광장 내 바닥재질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투수성이 높은 포장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식재

- 충분한 녹지 면적을 확보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공간을 조성한다.
- 주변 보행축과 연계되는 수종을 식재하여 녹지를 통한 공공공간의 연속성, 연계성을 부여한다.
- 공원의 기존 식생을 최대한 활용하고,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노거수나 보호수는 보존한다.
- 사계절에 걸쳐 계절감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선택한다.
- 보행의 흐름이 있는 곳의 식재는 나무의 지하고를 충분히 높게 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할 수 있다.
- 시설보다 녹지 위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할 수 있다.
- 외부 가로에서 수목에 의해 시선이 가려져 우범화 되지 않도록 교목의 높이가 높은 것은 지양한다.
-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적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되, 영구 음지 발생을 지양한다.

관련 법률 및 지침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B-3 수변공간

- 정의
 - 강 또는 시내와 연접한 공간 또는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변공원이나 분수 등과 같은 수경시설이 설치된 공간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수변공간의 접근로 및 이동공간에는 유모차·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모든 보행자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유효폭을 확보한다.
- 시각장애인이 충돌, 추락 또는 가시 등에 찰릴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접근제한, 방향유도 등을 할 수 있는 난간, 보호대 등을 설치하며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낮은 볼라드나 화분 등 보행장애 요소는 제거한다.
- 휴게공간에서 보호자가 어린이의 안전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한다.
- 보존이 우선시되는 구역과 개발 이용 가능한 구역을 구분하여 생태 서식지를 보존하면서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 수변공간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경사 적용을 할 수 있다.
- 인접보행로와 경계 없이 연결되도록 조성하여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일 수 있다.
- 친수공간을 조망하며 산책할 수 있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수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물과 접촉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①

시설물 설치

- 수변공간 내 지형상 가파른 경사로 등이 조성되어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나 자전거, 애완견 동반 출입 등이 제한되는 공간은 입구에서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 수변공간 안내표지나 수변 시설안내도 등 공공시각매체는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수시로 침수되는 지역은 고정형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전기 관련 설비의 노출을 금지한다.
- 수상사고를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절한 곳에 배치할 수 있다.
- 수변환경과 조화로운 통합디자인을 계획하고, 연속된 구역 내 동일한 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수중보 등 토목 구조물 설치 시 물의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은 홍수를 대비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잦은 침수를 고려하여 내부식성, 내오염성,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다.
- 지나친 장식설치로 인해 주변 경관에 해를 주지 않도록 지양한다. ②



① 수면 가까이 갈 수 있는 돌담설치



② 지나친 장식설치로 인한 주변 경관 위험감 조성 지양



바닥마감

- 보행진입로의 바닥은 포장재를 달리하거나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보도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 가로와 연결되는 공원 내 이동공간은 점자블록을 대신하여 바닥재질, 색상, 질감 등에 차이를 두어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용도와 목적이 다른 공간이 서로 교차하는 구간에는 바닥마감의 색채와 재질에 변화를 주어 경계를 표시하고, 약시자 등을 위한 색채, 재질 등을 고려한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 수변공간 내 바닥재질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투수성이 높은 포장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수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장식적이거나 복잡한 패턴의 바닥 마감을 지양한다.

식재

- 하천변에 서식하는 자생 수종의 식재를 할 수 있다. ①
- 서식 환경의 홍수위, 침수 빈도 등을 고려하여 서식 환경에 적합한 수종과 식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폭원이 넓은 하천의 경우 연속된 선형을 강조하고 공간 스케일에 어울리도록 규모감 있게 군식할 수 있다.
- 하천·호수 등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완충녹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하천변 자생 수종 식재

관련 법률 및 지침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B-4 생태공간

(1) 생태통로

- 정의
 - 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뜻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육교형 통로 설치 시 중앙부의 최소 폭은 7m 이상이어야 하며, '주요 생태축'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폭을 30m 이상으로 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설치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설치한다.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에 설치한다.
-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 생태계의 공간적 연속성 확보가 중요한 구간, 도로에 의한 능선부 절개로 훼손된 경관 또는 풍수지리적 가치 제고가 필요한 구간에 조성한다.
- 도로에 의해 훼손된 절개면, 능선, 식생 등이 원래에 가깝게 복원되도록 하고 성토를 충분히 하며 폭은 가급적 100m 이상으로 한다.



육교형 생태통로



터널형 생태통로

식재

- 주변의 식생 및 식물상을 조사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이용 대상 동물의 은신처, 이동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식재한다.
- 진입부와 내부의 식생은 주변과 유사하게 식재하되 과밀하지 않아 이용 대상 동물의 이동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①
- 야생동물과 보행자의 동선을 성토와 식재 등의 기법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통로의 입·출구부는 통로의 내부보다 넓게 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 통로 내 식재지에서의 토심은 식생의 안정적인 성장을 고려하여 70cm 이상을 확보하며, 지표면은 양토와 낙엽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며 초본의 발아와 활착이 용이하도록 한다.



① 통로 식생이 과밀하여 동물의 이용이 어려운 사례



통로의 입 출구부

관련 법률 및 지침

- 환경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2) 유도울타리

- 정의
 - 유도울타리는 야생동물이 도로로 침입하여 발생하는 로드킬을 방지하고 동물들을 생태통로까지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포유류 울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교형과 터널형의 생태통로는 유도울타리와 연결될 시 울타리의 높이는 최소 1.5m로 한다. (단 터널형 생태통로는 개방도 0.6 이상) • 포유류의 도로 침입을 막고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울타리의 높이는 1.2~1.5m를 기본으로 한다. • 유도울타리 망목의 규격은 지표면 40cm 이하 1cm, 80cm 이하 10cm, 80cm 이상은 20cm의 상하 간격을 주어야 하고 40cm 이하의 망목은 양서류와 파충류 울타리를 덧대어 설치하여야 한다. • 유도울타리 설치 시 목표종이 되는 동물의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유도울타리 성토비탈면 양쪽에 산림과 연결되는 경우 비탈면의 상부 또는 소단에 울타리를 설치한다. • 소형포유류의 도로침입이 우려되는 경우 울타리 하단에 양서류, 파충류를 대상으로 한 울타리를 덧대어 사용한다. • 유도울타리 설치 시 목표종이 되는 동물의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유도울타리 성토비탈면 양쪽에 산림과 연결되는 경우 비탈면의 상부 또는 소단에 울타리를 설치한다. • 소형포유류의 도로침입이 우려되는 경우 울타리 하단에 양서류, 파충류를 대상으로 한 울타리를 덧대어 사용한다.
양서·파충류 울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도울타리 높이는 40cm 이상 망목은 최대 1cm x 1cm 이내로 하며 포유류를 대상으로 한 울타리 하단에 이를 덧대어 사용할 수 있다. • 생태통로 주변의 산 또는 습지에 접하여 로드킬이 빈번한 구간에 설치하며, 구체적인 구간은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야생동물이 땅을 파고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울타리 아래를 반드시 지표면에 밀착시켜야 하고 비와 바람에 의해 표토의 침식이 우려되는 구간은 땅속에 10cm 이상 묻히도록 설치한다. • 유도울타리의 시작과 끝은 옹벽, 생태통로, 교량, 낙석방지책 등 40cm 높이 이상의 울타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구조물과 빈틈없이 연결되어야 한다.
조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의 높은 비행을 유도하기 위해 가로수 및 기둥 등을 로드킬이 빈번한 구간에 조성한다. • 투명한 재질의 방음벽 설치 시 불투명하고 너비 2cm, 간격 10cm 이상인 세로 줄무늬를 사용한다.

관련 법률 및 지침

- 환경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2.2 공공건축물

(1) 정의

-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유사단체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2) 목표

- 본 가이드라인은 용인시 공공건축물 디자인의 자문, 발주, 실행 및 유지 관리에 적용 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명시된 규정들은 제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 공공성과 장소성을 확보하여 시민과 이용자 위주의 공공건축물 공간을 계획한다.
 -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공공건축의 디자인 질을 향상시킨다.
 - 공공건축물 디자인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근본 원칙과 기준, 세부적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 기존의 획일적인 공공건축물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열린 공간의 다양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추구한다.

(3)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4) 기본방향

-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인 ‘편의성’, ‘조화’, ‘유지·관리’에 알맞은 공공건축물의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편의성	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개방적인 공간구조와 이미지의 디자인 ②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공간 제공
조화	③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창의적인 디자인 ④ 녹지공간에 자연요소의 적극적 도입
유지·관리	⑤ 에너지를 절감하고, 친환경 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 ⑥ 기능 중심의 간결성을 강조하는 디자인

(5) 관련규정

분류	관련 법·제도	관련 상위계획
공공건축물	- 건축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주차장법	- 경기도 공공건축 가이드라인 -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 - 경기도 인공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A

실외공간

• 정의

- **접근로** : 부지출입구 및 주차장에서 해당 건축물로 이동하는 보행로를 의미한다.
- **주차장** :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 **주출입구** :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한 장소, 혹은 그곳에 설치된 문을 의미한다.



주차장의 접근로



부지출입구의 접근로



주차장



주출입구

A-1 접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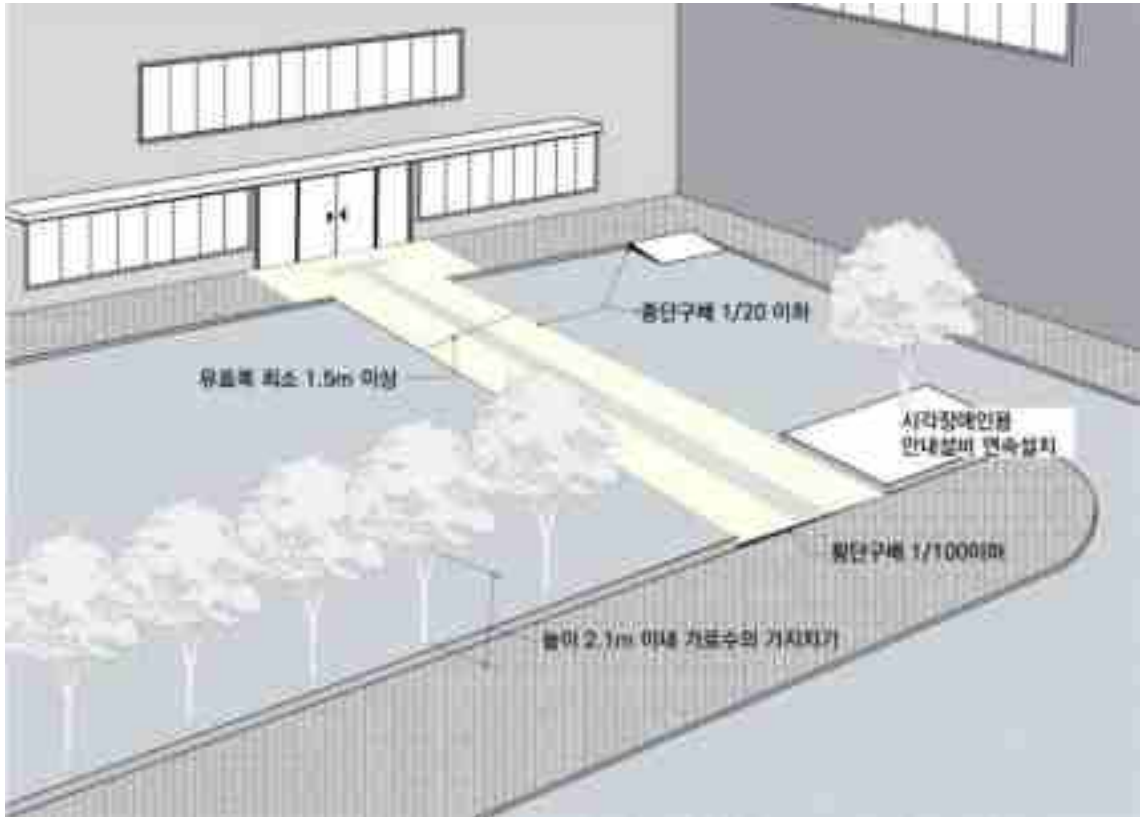
- 정의
 - 부지출입구 및 주차장에서 해당 건축물로 이동하는 보행로를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

- 접근로는 도로에서 인지하기 쉬우며,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한 위치에 부지 출입구를 설치한다.
- 모든 보행접근로는 보도에서 건축물 출입구까지의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차량으로부터 간섭을 전혀 받지않고 건축물 내부로 진입하는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접근의 연속성을 우선시한 구조로 한다.
- 복수의 도로와 접하면 부출입구를 적절한 위치에 복수로 설치하여 이용자가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
-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와 자동차의 동선은 교차하지 않도록 명확히 분리하여 출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부득이 동선이 교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 접근로에 인접하여 대지 내 차도가 있는 경우는 경계부분에 울타리, 연석,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여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지형상의 이유로 보도에서 건축물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를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한다.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할 경우)

구조

- 접근로 이외의 대지내 통로는 최소 1.2m 이상으로 하되, 휠체어의 방향전환이 자유로운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접근로의 단차로 인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1/20 이하 (법적 치수 1/18 이하)로 하며, 횡단구배는 1/100 이하로 한다. ①
- 연속된 경사로는 3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 참을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 가로등·전주·간판 등의 시설물은 접근로의 유효폭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지면에서 높이 2.1m 이내에는 가로수의 가지나 상부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 접근로와 부지 내 차도의 경계 부분에는 두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6~15cm의 연석·울타리·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단차가 있는 경우 1cm 이하 (법적 치수 2cm 이하)로 한다.
- 주요 보행접근로의 유효 폭은 최소 1.5m이며, 유모차나 휠체어 상호 간이 서로 지나칠 수 있도록 1.8m 이상 또는 우산을 쓴 사람들이 서로 지나칠 수 있도록 2.3m 이상의 공간확보를 할 수 있다.



접근로의 기본구조 예시



① 경사로 1/18 이하로 유지



② 휴게공간 조성



② 휴게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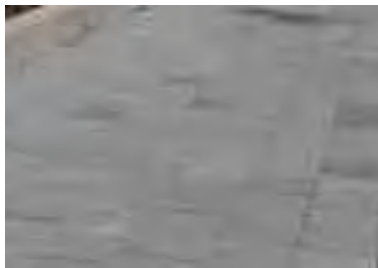


③ 평탄하게 마감



재질

- 바닥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물에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 지나치게 복잡한 색채, 패턴, 재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대지 내 차도와 접근로의 바닥포장재는 색채와 질감을 달리하여 시인성을 높이도록 한다.
- 이음새가 있는 바닥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그 이음새에 유모차 하이힐, 지팡이, 바퀴, 등이 빠지지 않도록 줄눈간격은 0.5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①
- 유모차, 지팡이, 하이힐 등 누구나 걷기 쉬운 바닥 재료로 마감하고, 블록 포장 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시공해야 한다.
- 접근로와 차도의 바닥재 질감을 달리하여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변의 경관·식재 등을 고려한 재질과 색채로 마감한다.
- 접근로에는 배수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설치기 필요한 경우 접근로의 포장면과 단차가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해야 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하고, 틈새가 없거나 격자 구멍이 1cm 이하(법적치수 2cm이하)인 덮개를 사용하여 유모차 바퀴, 지팡이, 하이힐 등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 배수로는 보행접근로를 가로질러 설치하지 않는다.
- 부득이하게 보행접근로에 배수로를 설치할 경우, 배수로 덮개는 격자구멍 등의 틈새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 배수로 덮개와 보행접근로의 표면의 높이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감처리 한다. ③



① 줄눈간격 0.5cm 이하



② 배수로 덮개 격자 구멍 1cm 미만



③ 배수로 평탄하게 마감

관련 법률 및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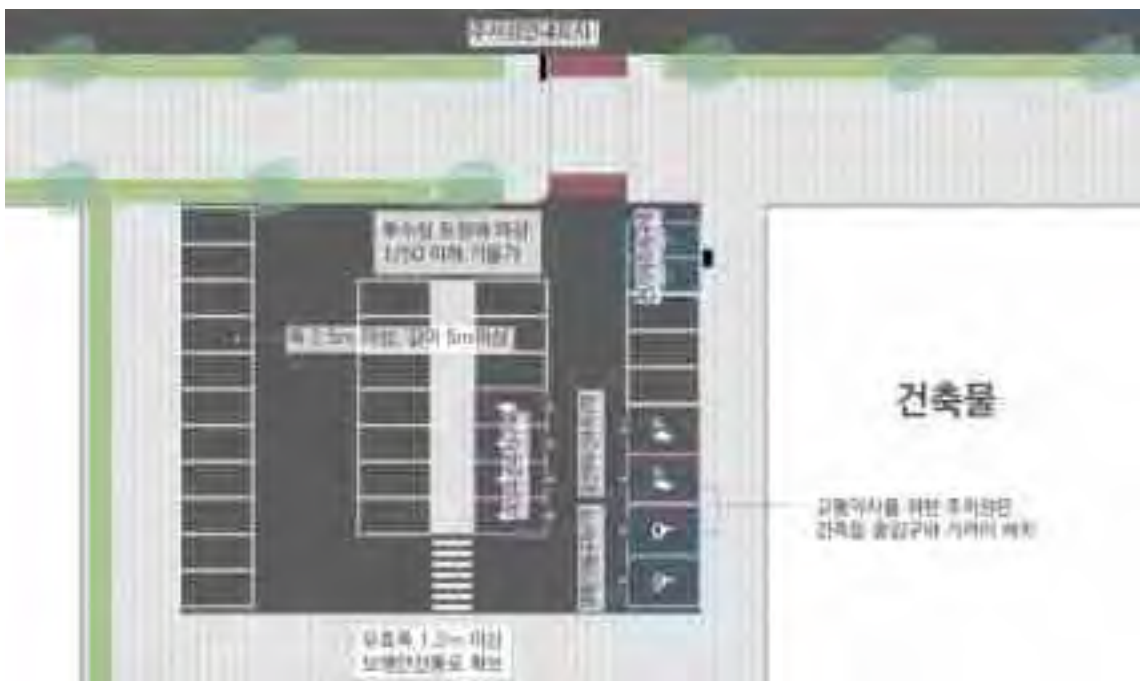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A-2 주차장

- 정의
 -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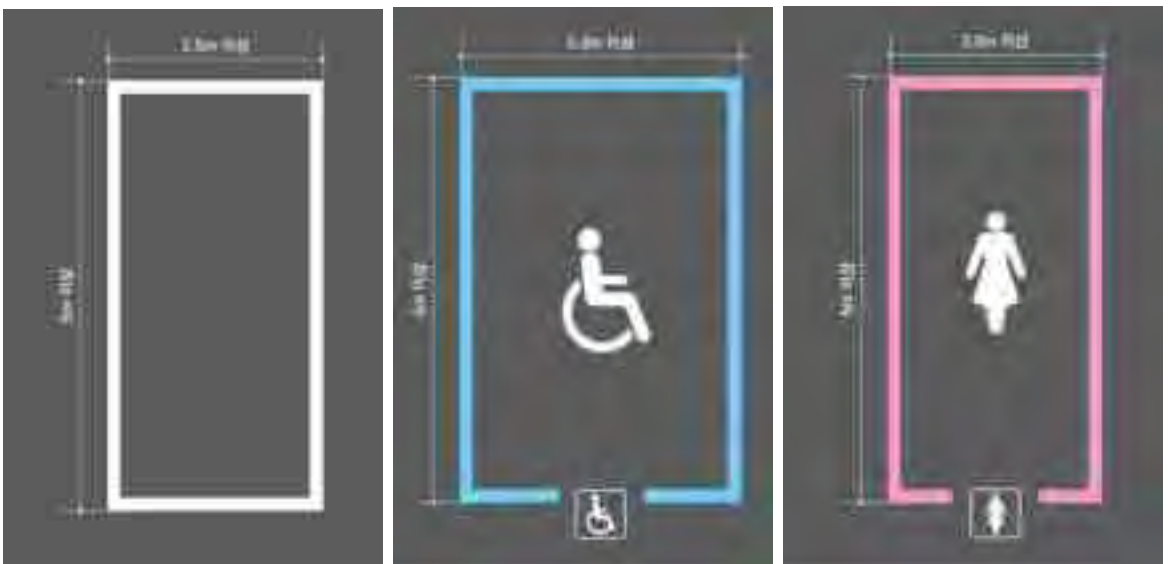
- 주차장 입구는 차량 이동이 빈번한 곳으로 주변의 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위치로 계획하며, 유도 및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한다.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면수는 2면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법적 규정의 비율을 초과하여 확보한다. (전체 주차 면수의 3% 이상)
- 주차장 외부는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기에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한다.
- 교통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은 건축물 출입구에 최대한 인접하게 설치하여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동거리가 짧아지도록 계획한다.
- 교통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은 차로를 횡단하지 않고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이 배치한다.
- 산모나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주차구역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건축물 주출입구나 엘리베이터 홀 등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최소 이동 거리가 되도록 배려한다.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건축물 전면부를 피하고, 보행접근로와 건축물 주출입구의 사이에 배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주차장의 기본구조 예시

구조

<p>일반 주차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용도와에서 주출입구까지 바닥에 단차가 없도록 하여 유모차나, 휠체어의 이용, 짐 운반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차량과 동선이 교차하게 규모에 따라 여유 있는 주차구역 수를 확보한다. • 주차구역을 보행하지 않도록 보행 안전통로를 확보한다. • 차량의 동선과 차량에서 내린 보행자 동선을 최대한 분리한다. • 방법 등에 대비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 • 주차구역의 폭은 2.5m 이상, 길이는 5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 주출입구에 도달하도록 차도와 분리된 유효폭 1.2m 이상의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p>장애인전용주차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 입구에서 바로 보이도록 배치하며(별도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를 설치함과 동시에 색상의 차별화를 통한 식별성을 확보하고 연속적인 유도표시를 설치한다. • 대지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연속적으로 유도표시를 설치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폭은 3.3m 이상, 길이는 5.0m 이상으로 설치하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폭은 3.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p>여성우선주차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주차구획 내와 주차구획선 앞에 여성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여성 이미지 색상은 흰색, 주차구획선 색상은 분홍색 실선(M 50%)으로 하여야 한다. • 여성우선주차구역의 크기는 1대에 대하여 폭 2.5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일반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여성우선주차구역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 임산부우선주차구역의 크기는 1대에 대하여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임산부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주차구획 내와 주차구획선 앞에 임산부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임산부 이미지 색상은 흰색, 주차구획선 색상은 분홍색 실선(M 50%)으로 하여야 한다.

전기차 주차구역

-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해야한다.
- 주차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 이상 X 세로 5m 이상)으로 주차장설치에 대한 기준으로 하되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를 사용한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

- 경차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주차구획 내와 주차구획선 앞에 경차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 경차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1대에 대하여 폭 2m 이상, 길이 3.6m 이상(확장형은 폭 2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경차 이미지 색상은 흰색, 주차구획선 색상은 파란색 실선(C 50%)으로 하여야 한다.



임산부우선 주차구역



전기차 주차구역



경차 전용주차구역

관련 법률 및 지침

- 주차구역 표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별표1_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재질

- 주차구역 및 보행안전통로의 바닥면은 평탄하게 마감하여 승하차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마감재는 물에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바닥면에 물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1/50 이하의 기울기로 한다. ①
- 바닥마감재는 급적 투수성 포장재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 보행로로 연결되는 경계부분은 단차가 전혀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며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울기 1/12 이하로 턱낮추기를 한다. ②



① 바닥면 평탄하게 포장



② 보행로 연결

관련 법률 및 지침

- 주차장 법 시행규칙_3조 1항제2호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별표1_1.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A-3 주출입구

- 정의
 -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한 장소, 혹은 그곳에 설치된 문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

- 주출입구는 초행자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 주출입구에서 로비로 들어서면 엘리베이터, 계단, 안내데스크 등이 한눈에 알 수 있는 공간구성으로 계획한다.
- 주출입문은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하기 힘든 회전문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누구나 접근 및 이동이 편리한 자동문을 설치한다. ①
- 주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닐 경우를 대비해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여닫이문이나 미닫이문을 병설하고,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출입문이 연속된 주출입구는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전부 제외한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 주출입구 주변에 우산거치대나 시설종합안내판을 설치 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① 회전문 설치 금지



② 자동문과 미닫이문 병설



구조

- 주출입구에서 로비로 들어서면 엘리베이터, 계단, 안내데스크 등이 한눈에 보이게 공간구성을 계획한다.
- 보행접근로에서 건축물 내부까지 단차 없이 법적치수 2cm 이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이나 경사로 등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출입구 전면공간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혼잡하지 않게 시설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상부에는 비나 눈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을 설치한다.
- 자동문은 문 유리에 충돌하거나 신체의 일부가 문에 끼이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의 키나 문 주위에서 쪼그려 앉는 특성을 고려하여 문틀 좌우와 0.5~0.7m의 적절한 높이에 안전센서를 설치하도록 한다.
- 계단과 경사로는 사용자가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이동거리가 짧은 곳에 설치한다.
- 옥외 전면공간의 상부에는 비, 눈, 햇볕에 보호되는 지붕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한다.
- 수동문 또는 반자동문의 손잡이는 어린이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0.8~0.9m의 높이에 수직 막대형 손잡이를 부착한다.
- 자동문이 아닐 시 휠체어 사용자 등의 출입문 개폐가 용이하도록 반자동문의 버튼이나 문손잡이를 설치하고 손잡이 쪽 옆에 최소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주출입구문의 유효폭은 원활한 출입을 위해 1.2m 이상 확보한다.
- 부출입구의 유효폭은 최소 0.8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주출입문에서의 전면 유효거리는 휠체어나 유모차 개폐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여닫이문의 경우 열리는 쪽은 1.5m 이상, 반대쪽은 1.2m 이상, 미닫이문은 좌우폭 1.9m 이상, 깊이 1.2m 이상을 확보한다.



주출입구의 기본구조 예시

재질

- 우천시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에 의해 바닥면이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 바닥면은 출입문의 문턱이나 홈 등에 의해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안내판은 문자의 크기나 색상 등을 고려하여,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인지하기 쉽게 하며,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 병기와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 주출입문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해야 한다.



주출입구가 전면공간 확보



충돌방지를 위한 주의 환기용 표식



평평하지 않은 접근로



경사로를 이용해 접근성 용이



관련 법률 및 지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별표1_1.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

실내공간

- 정의
 - **로비** : 응접실·휴게실·통로 등을 겸하는 현관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가진 넓은 공간을 의미한다.
 - **계단** : 높이가 다른 두 바닥면을 연결하는 단형의 통로를 의미한다.
 - **경사로** : 경사가 30° 이하인 통로 구조물을 의미한다.
 - **엘리베이터**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를 의미한다.
 - **복도** : 방과 방을 잇는 일정한 폭을 가진 건물 내 통로를 의미한다.
 - **사무실** : 조직 내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 **민원실** : 민원을 접수·상담·처리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 **수유실** : 아기에게 젖을 먹이도록 마련된 방을 의미한다.
 - **화장실** : 대소변을 배설하고 손을 씻거나 화장 따위를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을 의미한다.



주차장



계단



민원실



화장실

B-1 로비

- 정의
 - 응접실·휴게실·통로 등을 겸하는 현관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가진 넓은 공간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

- 안내데스크나 종합안내판은 로비에 들어서면 누구나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 주출입문에서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까지의 경로에는 단차 없이 수평접근 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안내표시를 제공해야 한다.
- 안내데스크는 청력이나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청각정보와 시각정보를 같이 제공해야 하며, 외국인을 위한 인적 또는 설비의 대응을 해야 한다.

구조

- 안내데스크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안내데스크 및 작업대는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튼튼하며, 몸을 지지하기 쉬운 형상으로 하거나 손잡이를 설치한다.
- 안내데스크 또는 작업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0.7~0.9m의 범위 내가 되어야 하며, 특히 휠체어 사용자는 물론 어린이나 노인이 의자에 앉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이 0.7m 정도의 선반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물 출입부에 팬데믹 상황을 대비한 안면인식 체온측정기 등의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로비의 기본구조 예시

관련 법률 및 지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준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별표1_22.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B-2 계단

- 정의
 - 높이가 다른 두 바닥면을 연결하는 단형의 통로를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

- 계단은 오르내리는 동작을 행하는 장소로, 넘어질 위험이 높은 장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 계단코는 용이하게 식별되도록 하며, 철평 높이 및 디딤판 넓이는 중간에 바꾸지 않고 동일하게 한다.
- 계단 손잡이는 양측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 관리자용 계단을 제외한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 형으로 하며, 돌음 또는 나선형 계단은 지양한다. ①

구조

휴식참

- 계단은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참을 설치하며 수평면으로 된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계단참을 기준으로 상하 계단수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유효폭 · 높이

- 관리자용 계단을 제외한 계단 및 참의 유효 폭은 양손에 짐을 든 사람이나 목발 사용자, 화재 시 안전한 피난을 위해 1.5m 이상 (법적 치수 1.2m 이상) 확보할 수 있다. ②
- 계단의 최소 높이는 머리가 부딪히지 않는 2.1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한다.

디딤판 · 철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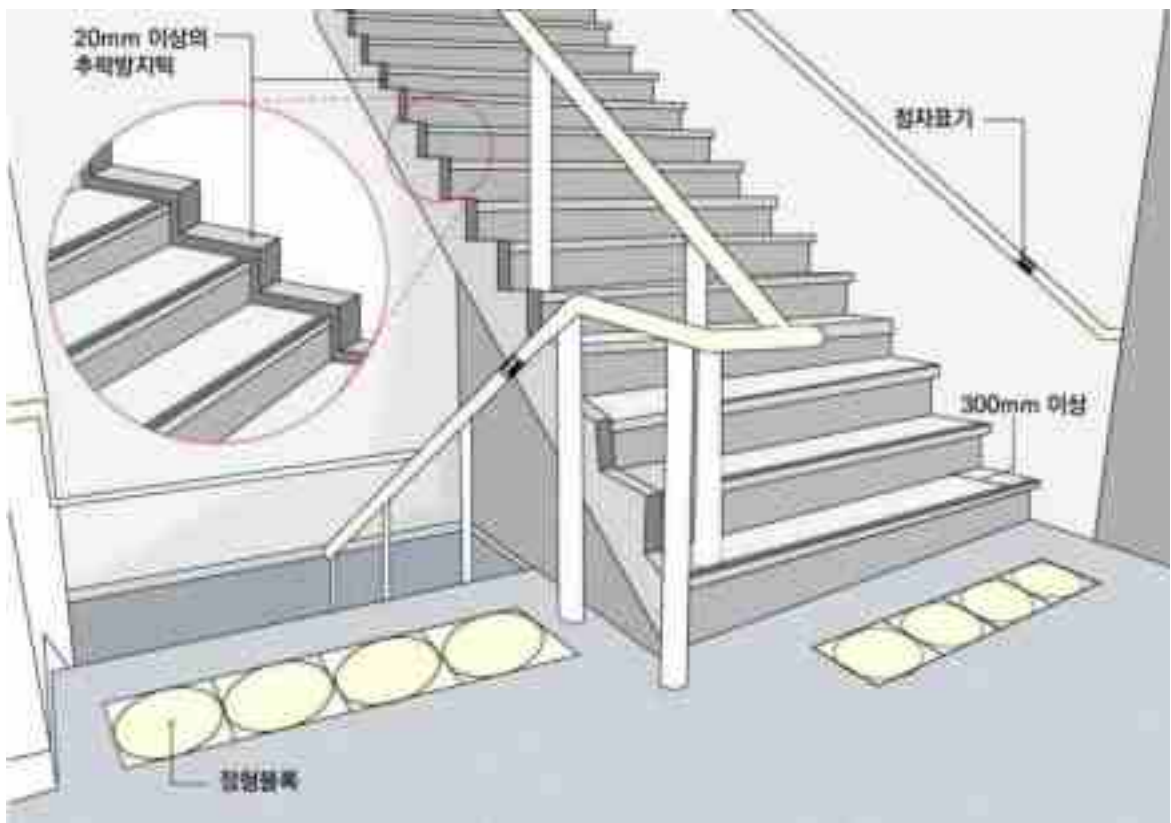
- 디딤판의 너비는 30cm 이상, 철평면의 높이는 16cm 이하 (법적 치수 디딤판 28cm 이상, 철평면 18cm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에서 치수를 도중에 바꾸지 않고 균일해야 한다.
- 계단에서 디딤판 너비와 철평 높이가 다르면 넘어지게 되므로, 균일하게 계획한다.
- 계단을 오를 때 사람의 지팡이 또는 발이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철평면을 설치한다. ③
- 계단 측면이 벽면이 아닌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형식으로 하며, 난간 하부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20mm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한다.

계단코

- 계단코는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철평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으로 하며, 계단코는 3cm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손잡이

- 수평 손잡이의 양 끝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문자를 병기해야 한다.
- 계단 손잡이는 방화문 등이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계단참을 포함하여 연속하여 설치한다.
- 손잡이의 중심선을 바닥면으로부터 850mm 높이에 설치하고 계단 손잡이의 시작과 끝부분에 300mm이상 수평 손잡이를 연장하며 굵기는 $\varnothing 32\sim 38\text{mm}$ PVC, 플라스틱, 목재 등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한다.



계단의 기본구조 예시



① 나선형 계단 지양



② 유효폭 1.5m 이상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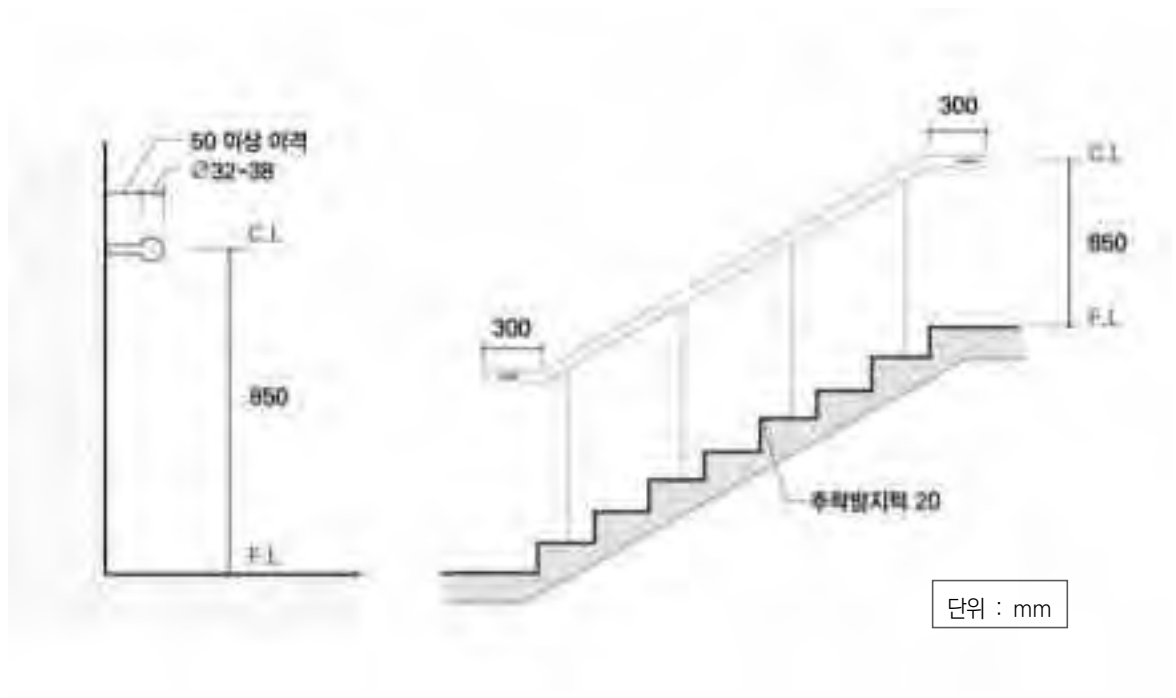
③ 철편 설치 필요

관련 법률 및 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별표1_8.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재질 및 색채

-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
- 계단코, 철크, 디딤판은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닥마감재의 색상, 명도, 채도, 질감, 조명의 밝기 등을 달리하도록 한다.
- 유모차나 휠체어 등 충돌 시 충격 완화를 위하여 매트를 부착할 수 있으며, 매트 색상과 재질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계단의 기본구조 예시

관련 법률 및 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별표1_8.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B-3 경사로

- 정의
 - 경사가 30° 이하인 통로 구조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

-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부득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모차나 휠체어의 통행에 적합하도록 설치 위치, 기울기, 폭, 바닥 마감재, 경사로 참, 손잡이 등을 계획한다.
- 보행자, 유모차, 휠체어 사용자, 짐수레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여유 있는 폭으로 계획한다.
- 경사로의 이용이 불편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임신부나 어린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계단을 병설하도록 설치한다.

구조/형태

- 경사로의 유효 폭은 복도와 동일한 1.5m 이상 (법적치수 1.2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하며, 가급적 계단과 병설하도록 한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 굴절지점, 휴식참에는 1.5m X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휴식참을 설치한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 참 등의 0.3m 전면에는 경사로 폭만큼 점형 블록을 설치하되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
- 경사로의 기울기는 가급적 완만한 경사가 되도록 1/18 이하 (법적치수 1/12 이하)로 하며, 횡단구배가 없도록 설치한다.



경사로의 기본구조 예시

손
잡
이

- 수평 손잡이의 양 끝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문자를 병기해야 한다.
- 경사로의 측면에는 반드시 휴식참 포함 연속되는 2단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며 가급적 양쪽 측면에 모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러운 재질은 지양한다. ①

재질 및 색채

-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되 휠체어의 주행성을 고려한다.
- 벽면에 충격 완화용 매트 부착할 수 있으며, 매트의 색상과 재질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어린이, 노인, 약시자 등이 경사로 시작과 끝지점, 경사 부분과 수평한 참부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 마감재의 색상, 명도, 채도, 질감, 조명 밝기 등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차가운 재질의 손잡이 설치 지양



손잡이를 미설치한 경우



관련 법률 및 지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별표1_12.경사로

B-4 엘리베이터

- 정의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쓰이는 설비를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

- 건축물의 주출입구나 안내데스크에서 가까우며, 복도에서 인지하기 쉽고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의 수직이동 수단과 근접하게 설치하여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 배치를 할 수 있다.
-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유모차, 짐을 가진 사람, 휠체어,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위해 저층 건물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구조

활동공간

- 엘리베이터 승강로비는 복도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1.5 m X 1.5 m 이상 법적차수 1.4m X 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유모차나 휠체어의 교행이나 회전을 위해 1.8m X 1.8m 이상을 권장하며, 이용량이 많은 층은 가급적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승강로비의 활동공간은 통로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출입문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 (법적 차수 0.8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승강장과 엘리베이터 바닥 사이는 턱이 없어야 하고, 틈새 간격을 3cm 이하로 한다.
-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이 자동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개폐장치의 감지 높이 범위는 바닥면으로부터 0.3m~1.4m 이하로 한다.



엘리베이터 본구조 예시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승강기 내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전면의 일부에 투시창 사용을 고려한다. •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후면의 0.6m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한다. • 엘리베이터 내부 유효바닥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1.4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에는 폭 1.1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수평 손잡이의 설치 지름은 32mm~38mm, 높이는 0.85m 내외, 벽과 손잡이의 이격거리는 50mm 내외로 설치한다.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조작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스위치 조작설비의 높이는 성인 및 시각장애인은 1.5m, 어린이 및 휠체어 사용자용은 0.85m 내외로 하며, 버튼에 점자표기를 하여야 한다. • 조작설비는 양각 형태의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병기한다. • 조작버튼의 크기는 최소 20mm 이상이어야 한다. 엘리베이터내부 가로 조작설비는 밑면이 25°정도 들어올려지거나 손잡이에 연결하여 설치된 형태로 한다.



엘리베이터 본구조 예시

관련 법률 및 지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별표1_9.장애인등용 승강기

B-5 복도

- 정의
 - 방과 방을 잇는 일정한 폭을 가진 건물 내 통로를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

- 복도는 실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이동공간이므로 이용자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적절한 여유 있는 폭을 확보해야 한다.
- 이용자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차가 없고, 설비기구나 기둥 등의 돌출물이 없도록 한다. ①
-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소화기는 벽 매입식으로 하고, 자동판매기, 의자 등이 복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주변에 이동장애물이 전혀 없도록 한다. ②
-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가 수 있도록 필요한 유도·안내 정보를 적재적소에 설치한다.
- 복잡하게 연결하거나 방향전환이 적은 복도로 계획하여 어린이, 노인,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배려한다.
- 벽면이나 독립기둥 등에는 안전을 위해 돌출부를 설치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안내판은 바닥 설치식이 아닌 것으로 하여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점자블록에 의한 유도만을 의존하지 않고, 손잡이, 벽면의 요철, 음성 또는 음향신호, 소리, 냄새, 빛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수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복도 모퉁이의 벽 모서리를 0.3m 이상 사선 방향 또는 둥글게 면 처리한다.
- 화장실 표지판의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 복도는 각 실의 최단거리로 도달할 수 있도록 짧게 하며, 시각장애인의 방향 인지가 쉬운 구조로 되어야 한다.
- 통행에 눈부심이 없도록 하며 발밑조명, 비상용 조명 장치를 적절히 배치하여 필요한 조도를 확보한다. ③



① 단차없이 이용 가능



② 복도 시설물 설치 지양



③ 통행에 필요한 조도 확보

구조

유효폭 및 보행장애물

- 복도 높이 2.1m 이내에 안내사인이나 장식 등의 보행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복도 높이 2.1m 이내 보행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벽이나 난간 등을 설치한다.
- 유모차 이동이나 휠체어의 방향전환 등을 고려해 유효폭은 1.5m 이상 (법적치수 편복도 1.2m 이상, 중복도 1.5m 이상 확보할 수 있다).
- 휠체어사용자 안전을 위하여 복도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15~0.35m의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 목적지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높이에 유도 및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며, 외국인 등을 위해 외국어 병기나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①

손잡이

- 복도 손잡이는 반드시 연속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방화문 등으로 인해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절되지 않도록 설치 방법에 유의한다. ②
- 시각장애인에게 손잡이는 진행방향,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필요로 생각되는 위치마다 손잡이 상부면에 점자로 정보를 표시한다.
- 복도 손잡이의 단면 형상은 움켜잡기 쉬운 크기인 원형 단면으로 한다. ③
- 복도 손잡이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은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도록 아래 방향 또는 벽 방향으로 굽혀 설치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 복도 손잡이의 직경은 32mm~38mm으로 하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0mm으로 한다.



복도 본구조 예시

재질

- 복도의 바닥면에는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④
- 바닥표면은 평탄하게 마감하며, 넘어졌을 경우 기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⑤
- 벽 마감재는 손으로 만졌을 시 촉감이 좋고 쉽게 더러워지지 않으며 관리하기 좋은 재료로 한다. ⑥
- 벽면이나 바닥마감 재료의 질감, 색상 등을 층별이나 조닝 별로 달리하여 건물 내 이용자의 현 위치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유도나 경고용으로 활용한다.



① 적절한 위치와 높이의 안내표지판



② 연속되는 손잡이



③ 손잡이의 단면 형상



④ 복도 바닥면 단차



⑤ 바닥면은 평탄하게 마감



⑥ 벽면 마감재

관련 법률 및 지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준기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별표1_7.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B-6 사무실

- 정의
 - 조직 내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 회사에 따라 행정직, 관리직 또는 생산직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

- 파티션과 칸막이 없는 개방형 공간으로 계획한다.
- 파티션·칸막이 등 물리적 장벽을 최소화하여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대화하도록 유도하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개별업무가 독립적이고 보안이 필요한 조직에는 부분장벽을 계획한다.

구조

- 파티션을 만들 경우에도 책상 위 30cm 이하(서로 얼굴이 보일 정도)로 구축하여 직원 간 소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칸막이가 필요한 경우에도 투명 재료를 사용하여 개방적인 느낌을 주면서 설치 개수를 최소화한다.
- 1차적으로 부서장 이하는 단독 공간 없이 직원들과 평등하게 좌석을 배치하고, 향후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 직급·직위에 구분 없이 동일한 크기의 책상을 지급한다.
- 직급 높은 사람이 전망 좋은 창가 자리를 독점하지 않는다.



일자형 배치 예시

관련 법률 및 지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B-7 민원실

- 정의
 - 관공서에서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 유모차, 노인,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여유 있는 치수로 계획한다.
- 어린이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비치되는 가구나 공간, 설비 등에 여유가 있고 가변성 있게 계획한다.
-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문화 가정이나 관광객 등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 정보표기나 픽토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구조

- 민원·행정 창구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창구로서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신고 업무수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우편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간이므로, 안내데스크, 대기공간, 사무공간 등의 계획 시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해야 한다.
-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해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 팩시밀리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갈음할 경우에는 안내표시를 붙이고, 민원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민원실 본 구조 예시

관련 법률 및 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_22.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B-8 수유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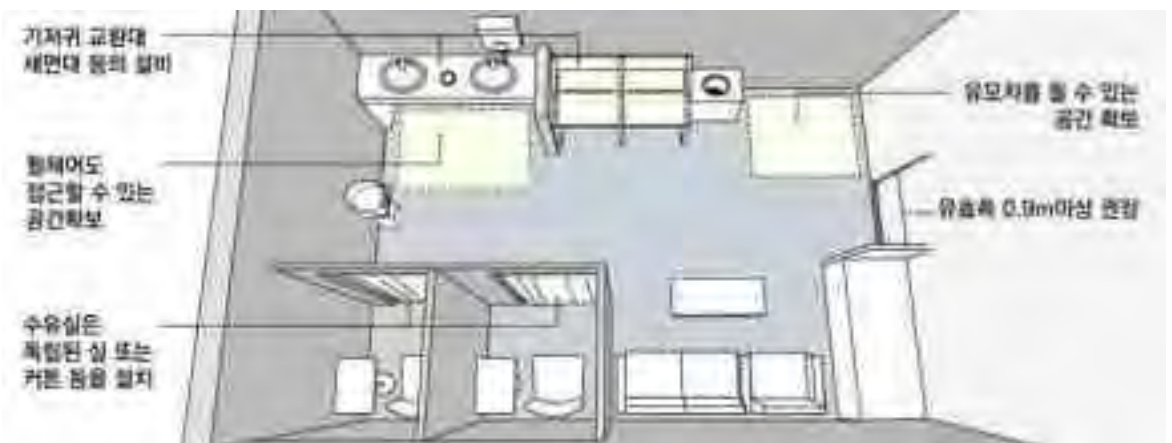
- 정의
 - 아기에게 젖을 먹이도록 마련된 방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

- 영유아 동반자를 위해 유모차 등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며, 수유나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고, 임산부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배려한다.
- 수유실은 긴급적 독립된 실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로비나 민원실 등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한다.
- 영유아 동반자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유 장소나 기저귀 교환 장소를 하나 이상 설치한다.

구조

- 수유실은 남성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모유를 주는 공간은 프라이버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독립된 실 또는 커튼 등을 설치한다.
-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1.5m X 1.5m 이상 (법적 치수 1.4m X 1.4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 기저귀 교환대와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수유실 본구조 예시

관련 법률 및 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별표1_2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B-9 화장실

- 정의
 - 대소변을 배설하고 손을 씻거나 화장 따위를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

- 화장실은 누구나 일상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생활공간이며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동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
-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쉬운 설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장애인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등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설비와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①
-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되 노인·임산부 등 접근이 불편한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인을 부착한다.
-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변기, 세면대, 손잡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영유아 동반자를 위해 기저귀 교환대, 임산부나 노인을 위한 간이침대, 내부 장애인을 위한 오스트메이트 등 필요한 설비나 가구를 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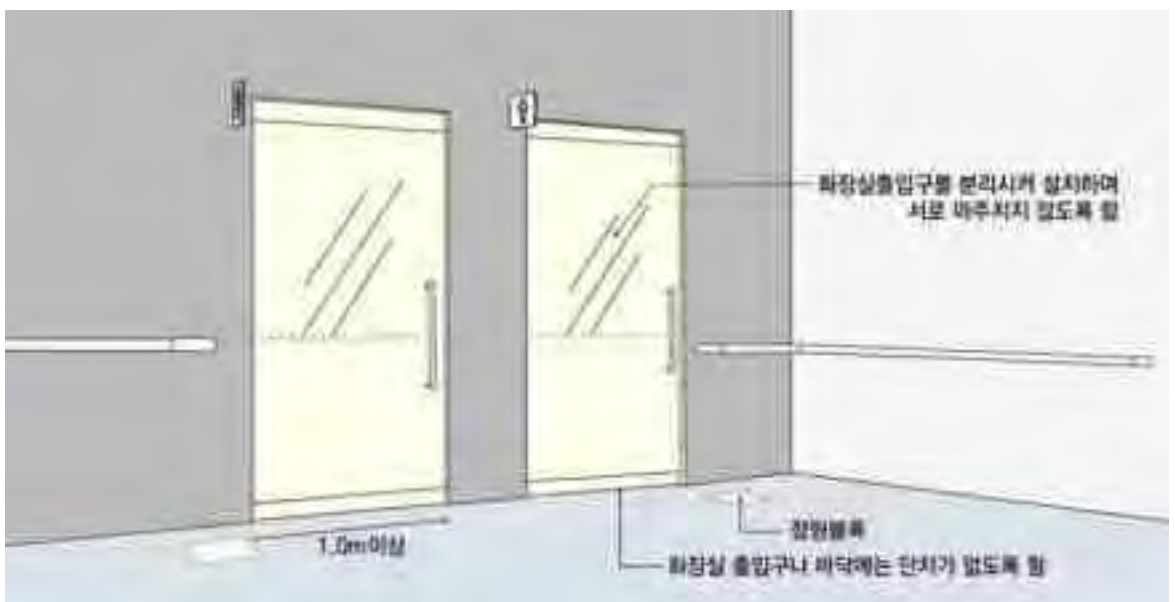
① 모두가 사용 가능한 다목적 화장실

관련 법률 및 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별표1_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证기준

구조

<p>접근통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 접근통로는 유모차 동반자, 휠체어 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접근 유효폭 단차가 없는 1.5m 이상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장실 접근통로에 1/18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p>출입구(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화장실을 분리하여 출입구를 설치하고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출입구의 위치나 방향 등을 결정한다. 화장실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하거나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화장실 내·외부 출입문으로 인해 문턱이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출입구의 유효폭은 1.0m 이상을 확보한다.
<p>안내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녀 구분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화장실 출입구 점자표지의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형블록이나 바닥마감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p>내부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의 출입구나 바닥 면에는 단차가 없도록 한다. 남녀화장실을 완전 분리시켜 출입구를 설치함으로써 남녀가 서로 마주치지 않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화장실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 유효폭은 0.85m 이상으로 하며, 가급적 0.9m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화장실 본구조 예시

대변기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대변기부스의 유효바닥면적은 임산부, 노인 등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을 확보한다. • 화장실 대변기부스 여닫이문일 경우 문 개폐 방향은 통로 쪽이 아닌 대변기부스 안쪽으로 열리도록 하며 출입문의 유효폭은 0.8m 이상 확보한다. • 화장실 대변기부스 출입문에는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 화장실 대변기 부스 잠금장치는 견고하면서도 조작이 쉽고, 비상시 외부에서 열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대변기 부스의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대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대변기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하는 벽걸이형 양변기로 하며, 바닥부착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않도록 유의한다. • 화장실 대변기의 좌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의 범위내로 설치한다.
소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한다. • 화장실 소변기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고 후면에는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 화장실 소변기는 벽면부착형으로 설치한다.
세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세면대는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을 설치한다. • 화장실 세면대 거울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전면거울을 설치하거나, 거울의 상단 부분을 15°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설치한다. •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는 누름버튼식, 레버식, 광감지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자동급수가 아닌 경우에는 냉·온수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과 점자를 병기한다.



화장실 본구조 예시

다
목
적
화
장
실

- 다목적화장실은 장애인, 임산부,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용자가 많을 시 주요 층에 최소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다목적화장실 출입문의 전면공간은 유모차나 휠체어가 방향 전환이 용이하도록 폭 1.5m 이상을 확보한 통로에 설치하도록 한다.
- 다목적화장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1.0m 이상을 확보하며, 자동문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다목적화장실의 유효 바닥 면적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기존시설의 구조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최소한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대변기 측면에는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대변기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비상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비상호출장치는 대변기에 앉은 자세에서 또는 쓰러진 자세에서 이용과 조작이 가능하도록 상단과 하단에 각각 설치한다.
- 화장실 출입문은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며, 잠금장치는 비상시 외부에서 열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화장실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다목적화장실은 손잡이와 같은 높이에 휠체어 사용자, 노인, 임산부, 유아 및 동행한 사람 이외에는 사용을 양보해 달라는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화장실 부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화장실 본구조 예시

재질

-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배수가 용이 하도록 한다.
- 오염에 강하고, 자국이나 흠집이 쉽게 생기지 않는 내마모성 재료를 사용한다.
-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틈새가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파손시 개보수가 용이하며 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마감재를 활용한다.
- 청결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색채의 마감재를 선정하며, 실내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색채 계획으로 한다. ①
- 다목적 화장실은 휠체어, 유모차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단차를 없애고 편의시설을 배치한다.
- 손잡이의 마감재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온화한 느낌의 논슬립형으로 마감 처리한다. ②



유니버설화장실 이용안내를 위한 시안



① 청결한 색채의 마감재



② 차갑고 미끄러운 손잡이 지양



관련 법률 및 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별표1_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C-1 공중화장실

- 정의
 -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이용하도록 길거리나 공원 따위의 공공장소에 만들어 놓은 화장실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

-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통로의 폭을 충분히 넓게 하고, 단차를 제거한다.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진입로와 출입구 주변에 조명을 설치한다.
- 과도한 규모와 지나친 표현주의적 디자인은 금지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구조

- 남녀 화장실은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출입로를 설계한다.
-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차가 발생할 경우 보행 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 악취의 발생을 막기 위해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공기 순환이 용이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한다.

재질

- 실내에는 내습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간이부스형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조립이 용이한 소재를 사용한다.
-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 주변 환경 및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를 선정한다.
- 주조색은 원색이나 고채도, 고명도의 자극적인 색채사용을 지양한다.

관련 법률 및 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별표1_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3 공공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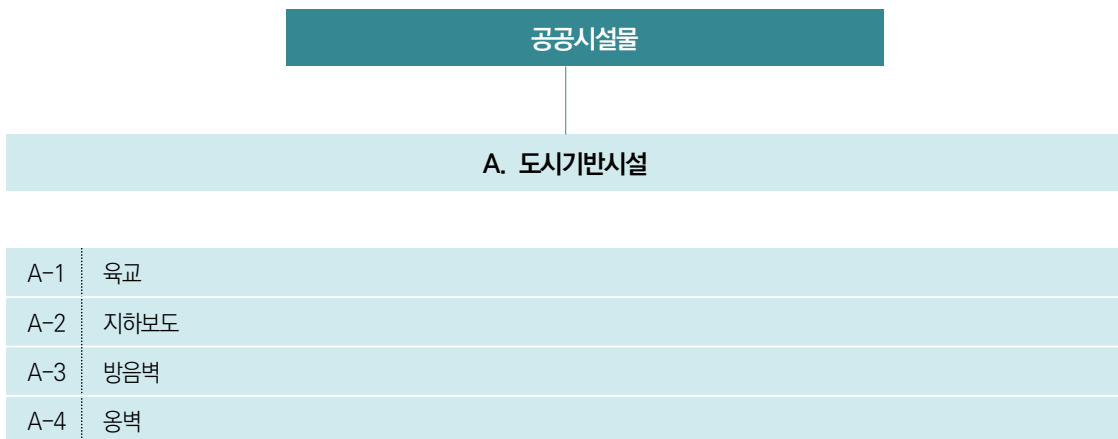
(1) 개요

- 불특정 다수에 의해 이용되는 시설물 또는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유사 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과 일부 구조물을 의미한다.

(2) 목표

- 본 가이드라인은 용인시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자문, 발주, 실행 및 유지 관리에 적용 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명시된 규정들은 제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 다양한 사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배려한 디자인을 구현한다.
 -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구현한다.
 - 공공시설물 디자인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근본원칙과 기준, 세부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3)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4) 기본방향

-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인 ‘편의성’, ‘조화’, ‘유지·관리’에 알맞은 공공시설물의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편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성과 편의성이 고려된 디자인 추구 ② 역별 통합·차별화 방안을 반영한 시설물 계획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공공시설물 통합설치 ④ 용인시의 정체성 구형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관련규정

분류	관련 법·제도	관련 상위계획
공공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농어촌 도로 정비법 - 농어촌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디자인가이드라인 -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 경기도 인공 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 경기도 자전거 이용시설 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A

도시기반시설

- 정의
 - **육교** : 도로나 철로 위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 건너질러 놓은 다리를 의미한다.
 - **지하도** : 지하차도-주로 차량의 통행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지하도를 의미한다.
 - **방음벽** :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벽을 의미한다.



교량



육교



고가차도



방음벽

A-1 육교

- 정의
 - 도로나 철로 위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 건너질러 놓은 다리를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

- 보도육교의 경우 구조물의 가로공간 점유를 최소화 하고, 장애인 및 자전거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경사로 설치보다는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권장한다. ①
- 구조적 기능과 관계없는 장식적 개념의 형태를 지양하고, 기능성 중심의 간결함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계획한다.
- 교각, 거더, 펜스 등에는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물 및 장식물을 부착하는 것을 지양한다.

구조

- 주변 경관의 특징을 고려하여 스케일이나 형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도록 계획한다.
- 펜스 등의 시설물 디자인에는 지역을 상징하는 특정 이미지 등을 형상화시켜 적용하는 디자인을 지양한다.

유지 및 관리

- 육교에 적용되는 재료는 미관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권장한다.
- 색채계획의 경우 주변 공간의 색채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한다. ②
- 쾌적한 야간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의 안전을 위한 조명 이외의 조형적측면의 경관조명연출은 지양한다.



① 엘리베이터 함께 설치



② 고채도의 사용 지양



A-2 지하도

- 정의
 - 보행자와 차량의 지하 통행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보도 또는 차도를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

- 안전 및 방재시설은 시각적 일체화 및 동선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빌트인 개념으로 계획한다.
- 시설물의 설치공간에 따라 보행자를 위한 안전펜스, 볼라드 및 캐노피 등의 설치로 물리적, 심리적 안전성을 확보한다.
- 외부 배전함 및 구조물은 일체화 개념으로 제작하고 부득이한 경우 녹지 또는 구조물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 시설물별 입구에 안내사인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현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지하도 진입구에 명칭 사인만 부착하고, 그 외에 시설물, 장식물, 광고물 등의 부착은 제한한다.
- 지하도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난이 쉬운 공간구조로 계획한다.
- 지하도 시설 내부와 외부의 조도차이를 최소화하여 안전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도록 한다.
- 지하도의 경우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CCTV를 설치한다.

구조

- 지하도는 과도한 그래픽, 불분명한 패턴이 있는 콘크리트 캐스팅을 지양하여야 하며 미송 패널 패턴의 노출 콘크리트 기법 등을 활용한 장식적이지 않으며 정돈한 형태가 되도록 계획한다.
- 지하도의 입면 디자인은 운전자와 보도 이용자의 시점에서 이동을 통해 연속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지하도 입면에는 도시를 상징하는 특정 이미지 등을 형상화 시킨 장식적 개념을 지양한다.
- 지하도 진입부에는 경사 및 사면처리로 진입시 느낄 수 있는 불안감 및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한다.
- 지하도의 시각적 차단·차폐를 지양하고, 동선상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재질

- 차량 진입부의 지하차도 명은 과도한 크기나 형태의 자자체 상징물과 의미전달이 불분명한 슈퍼그래픽, 고채도의 색채계획은 지양한다.
- 차가운 이미지를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 소재 및 반사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한다.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재료계획을 통해 설치한다.
- 저채도, 저명도 색상을 적용하며, 특히 내부공간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밝고 따뜻한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A-3 방음벽

- 정의
 -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벽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

- 내외부 조망시아와 개방감 확보를 통해 밝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식생을 이용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경관을 형성한다.
- 과도한 패턴 및 그래픽 디자인은 지양한다.

구조

- 방음벽 내외부 식재계획으로 녹음을 유입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한다.
- 보도폭이 넓은 경우 방음벽 전후 녹화, 방음벽, 화단 조성 등을 통하여 인공성을 완화 하도록 유도한다.
- 주변경관과의 단절이 없고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방음벽의 재료 및 형태 적용으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다.
- 공동주택지의 경우 일조 및 채광, 주변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방음벽 설치를 권장하되, 2층 이하 저층부는 외부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 재료를 채택하거나 방음벽 후면의 차폐식재를 통해 정주환경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재질

- 보도폭이 좁을 경우 수목식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연재료나 식생블럭 등의 도입을 고려한다.
- 밝고 편안한 이미지 조성을 위해 저채도 고명도의 색채를 사용한다.
- 재료의 고유색을 반영하되 높은 방음벽의 경우 아래쪽은 저명도의 색채를 사용하고 위쪽은 고명도 색채를 사용한다.
- 정돈된 도시가로 경관조성을 위하여 복잡한 형태의 광고물 및 직접적 형상을 표현한 장식 부착을 금지하고, 패턴 및 그래픽 적용 시 되도록 간결하고 통일감 있게 표현하도록 한다.



자연친화적인 마감재 및 색채·재질



시각적 개방감 확보



관련 법률 및 지침

-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A-4 옹벽

- 정의
 -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벽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

- 특정 이미지의 형상화를 지양하고, 단순화한 패턴으로 조성한다.
- 심리적, 시각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요소 및 주행 방향을 고려한 단순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
-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난잡한 패턴 및 과도한 정보전달 그래픽 적용을 지양한다.

구조

- 보행자 및 운전자 등 사용자의 심리적, 시각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형태를 적용한다.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경관의 연속성 및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를 적용한다.
-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장식적 요소를 지양하고, 기초조형요소를 기본으로 한 간결한 형태를 적용한다.
- 차폐감 및 위압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적부와 측면에 다단 구성 및 경시면 처리, 원충공간(식재)조성을 할 수 있다.

재질

- 차가운 이미지를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 소재 및 반사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한다.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재료계획을 통해 설치한다.
- 주변과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색채를 적용한다.
- 저채도, 저명도 색상을 적용하며, 특히 내부공간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밝고 따뜻한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 고유의 특성이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 전체 스케일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산업재의 반복된 적용을 지양한다.
- 구조물의 수명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한다.
- 고채도의 원색은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하고 주변과 이질감을 형성하므로 지양한다.



저채도, 저명도의 색채 적용

관련 법률 및 지침

- 경기도 인공벽면 디자인 가이드라인

2.4 공공시각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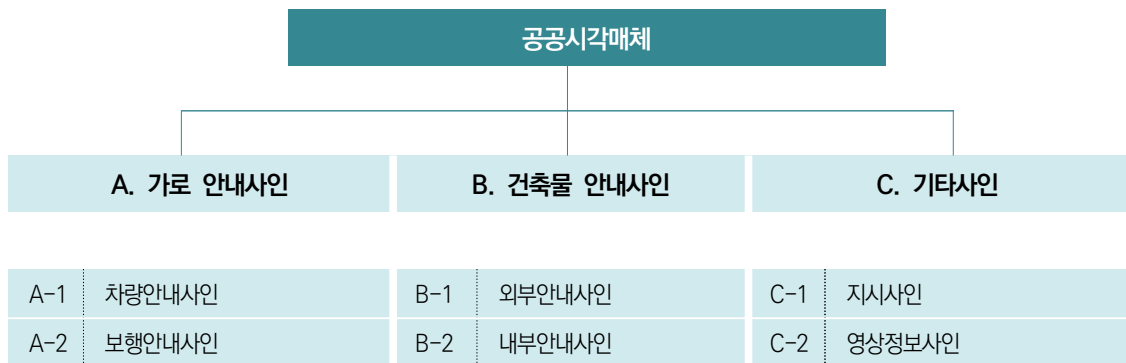
(1) 정의

- 공중에게 공공 정보를 알릴 목적으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각 표지물을 의미한다.

(2) 목표

- 본 가이드라인은 용인시 공공시각매체 디자인의 자문, 발주, 실행 및 유지 관리에 적용 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명시된 규정들은 제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 이용자별로 최적화된 공공매체를 디자인하여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한다.
 - 통합적 설치·관리를 통해 도시 경관의 질을 향상시킨다.
 - 시각매체의 개선으로 용인시의 공공정보가 보다 잘 읽히고, 찾기 쉽도록 용인시 공공매체를 구축한다.

(3)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4) 기본방향

-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인 ‘편의성’, ‘조화’, ‘유지·관리’에 알맞은 공공시각매체의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편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화된 시각매체 적용 ② 미래지향적 기술요소의 도입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적용대상의 기능에 적합한 색채계획 ④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디자인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관련규정

분류	관련 법·제도	관련 상위계획
공공 시각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 도로표지규칙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디자인가이드라인 -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 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 - 한국 어문 규정집 -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용례집

A

가로 안내사인

- 정의
 - **차량안내사인** : 차량에게 현재의 위치 및 주변의 시설물을 알리거나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를 의미한다.
 - **보행안내사인** :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및 주변의 시설물을 알리거나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를 의미한다.



주차안내표지



자전거도로표지



테마안내도



건물명표지

A-1 차량안내사인

(1) 주차안내표지

- 정의
 - 차량에게 현재의 위치 및 주변의 시설물을 알리거나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를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보행자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한다.
- 주차장 이용 안내에는 주차 요금 등 주차장 이용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표기하며 표기된 문장이나 단어는 내용 파악이 쉽도록 명시한다.
- 장애인 차량 이용자를 배려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법적 대수를 명확히 산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외국인 차량 이용자를 배려하여 주요정보는 다국어로 표기할 수 있다.

배치/유지관리

- 보행자의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③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는 해당 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한 후에도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표시한다. ①
- 표지판 마감처리를 미려하게 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시각을 쾌적하게 한다.
- 장애인 차량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형태/색채/재질

- 픽토그램 및 기호 등은 표기법과 정렬방법이 일관성을 갖도록 표준화한다.
- 일관성 있는 색채와 서체를 적용하여 주차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색채계획의 주요색과 보조색 허용범위를 준수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롭도록 디자인한다.



① 주차 후에 보이는 주차구역 표지



② 시인성이 떨어지는 사인물



③ 잘못된 위치에 적용된 사인물

관련 법률 및 지침

-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가이드라인

A-2 보행안내사인

(1) 테마안내도

- 정의
 - 도시 내 테마거리 및 공원의 상세정보를 표시해 놓은 지도를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테마거리 및 공원의 상징성을 반영한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보행자 안내 이외의 불필요한 정보 표기나 장식의 사용을 금지한다.
- 주요방향 안내에 표기되는 시설은 공공성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부여하여 표기한다.
(‘문화재 > 관광지 > 관공서 > 상업시설’ 순으로 우선권 부여)
- 모든 방향 표시는 항상 보행자가 바라보고 있는 정면을 기준으로 하며, 주요방향안내는 보행자 정면으로 상·하·좌·우 4방향으로 표시한다.

배치/유지관리

-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와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안내 내용이 600~1700mm 높이에 표기한다.
- 테마거리 및 공원안내도에는 주변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함께 배치한다.
- 지도형식의 안내정보일 경우 방위, 척도, 기본구간 및 보행자의 도보로 소요되는 시간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한다.
- 다른 지주 시설물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형태/색채/재질

- 일관성 있는 색채와 서체를 적용하여 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및 주차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문과 영어의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 지형 및 도로 등 지도의 기본정보와 그래픽에는 무채색을 사용할 수 있다.
- 문화재 및 관광지 등의 중요 정보는 눈에 잘 띄도록 지정색채 및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문화재 및 관광지 등의 중요 정보를 픽토그램을 사용해 표기

(3) 건물명 표지

- 정의
 - 찾아오는 이용자가 건물의 명칭을 확인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표지이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표기정보는 시설명명의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①
- 국문의 세로 높이는 건물의 높이 12m 기준 600mm으로 하며 건물의 높이가 3m 증가할 때 마다 최대 1m 이내에서 국문의 세로 높이 100mm씩 크게 할 수 있다.
-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조명을 설치할 수 있으나 광원을 직접 노출시키거나 점멸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배치/유지관리

- 설치 위치는 건물의 상단에 가로로 표기한다. ②
-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한글 및 영문을 함께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③
- 환경오염 등으로 훼손된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권장한다.

재질

- 재질은 스테인레스스틸(SUS)를 적용한다.



① 시설명의 표기



② 건물 외벽 상단 부착



③ 영문 미표기

관련 법률 및 지침

-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가이드라인

B

건축물 안내사인

- 정의
 - **외부안내사인** : 부지출입구에서 주출입구까지 이동하는 동선에서 위치나 방향, 명칭 등을 알려주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 **내부안내사인** : 주출입구에서 각 실까지 이동하는 동선에서 위치나 방향, 명칭 등을 알려주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외부안내사인(위치안내사인)



외부안내사인(유도안내사인)



내부안내사인(위치안내사인)



내부안내사인(유도안내사인)

B-1 외부안내사인

(1) 명칭안내사인

- 정의
 - 부지출입구에서 주출입구까지 이동하는 동선에서 위치나 방향, 명칭 등을 알려주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건축물의 상단이나 주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①
- 식재나 주변 건축물 및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도록 한다.
- 대지 내에 여러 건물 및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 대지 출입구에서 주요 건물로 이동하는 동선에 설치한다.
- 보행 및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보행로에 설치 시 유효 폭 1200mm 이상을 확보한다.

배치/유지관리

- 기관 및 시설물 명칭과 배치도, 현 위치 정보 등을 표기한다.
- 기관 및 시설물 명칭, 방향, 현 위치로부터 거리 정보(단위:m)등을 표기한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정보는 바닥면으로부터 1500~2100mm 높이에 표기한다.
- 문자를 이용한 최소한의 표기로 건축물 입면의 차폐율을 최소화한다.
- 다른 요소로부터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다.

형태/색채/재질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문자의 정면과 측면 색상 또는 재질을 다르게 적용한다. (정면 K0, 측면 K60 권장)
- 재질과 제작방법은 건축물 입면 현황을 고려한다.

관련 법률 및 지침

-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가이드라인

(2) 위치안내사인

- 정의
 - 올바른 위치 정보를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대지 내에 여러 건물 및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 대지 출입구에서 주요 건물로 이동하는 동선에 설치한다.
- 보행 및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보행로에 설치 시 유효 폭 1200mm 이상을 확보한다.
- 기관 및 시설물 명칭과 배치도, 현 위치 정보 등을 표기한다.

배치/유지관리

- 이용자가 안내사인을 바라보는 정면 시점이 지도상의 상부방향으로 작성한다.

(3) 유도안내사인

- 정의
 - 목적인 장소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대지 내에 여러 건물 및 시설물이 있는 경우 설치한다.
- 대지 출입구와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교차지점에 설치한다.
- 대지 출입구 및 건물로부터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동선에 연속하여 설치한다.

배치/유지관리

- 기관 및 시설물 명칭, 방향, 현 위치로부터 거리 정보(단위:m)등을 표기한다.
- 방향을 정확히 표기한다.

관련 법률 및 지침

-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가이드라인

(4) 주의·규칙 안내사인

- 정의
 - 주의 경고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접근이나 금지 행동에 대한 주의·경고가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 주의나 규칙, 픽토그램 정보 등을 표기한다.



픽토그램을 이용한 주의, 규칙 표기



픽토그램을 이용한 주의, 규칙 표기

B-2 내부안내사인

(1) 실명안내사인

- 정의
 - 각 실의 명칭을 안내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벽 부착형의 경우 실로 진입하는 출입구(문) 옆 손잡이 쪽 벽면에 설치한다.
- 돌출형의 경우 실로 진입하는 출입구(문) 상부에 설치하며 벽부착형 실명 안내사인으로부터 사선방향에 설치한다.
- 명칭안내가 필요한 곳에 부착 가능한 벽면 등이 없는 경우 천장에 달대형으로 설치한다.
- 분리수거함 등 안내가 필요한 시설물 또는 시설물이 접한 벽면에 설치한다.

배치/유지관리

- 실 명칭, 점자 정보, 픽토그램 등을 표기하며, 시설물 안내사인1)은 시설물의 명칭을 표기한다.
- 벽 부착형 안내사인1)은 바닥면으로부터 1000~1700mm 높이에 표기하며 1500mm 내외에 점자를 병기한다.
- 돌출형의 경우 안내 정보는 바닥면으로부터 2100 ~ 2400mm 높이에 설치한다.
- 달대형의 경우 안내정보는 바닥면으로부터 2100 ~ 2400mm 높이에 설치한다.
- 안내 정보는 바닥면으로부터 600 ~ 1500mm 높이에 표기한다.



실명안내사인

관련 법률 및 지침

- BF 인증기준-건축물
-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가이드라인

(2) 위치안내사인

- 정의
 - 올바른 위치 정보를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건물로 진입하는 주출입구에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한다.
- 건물로 진입하는 주출입구(문) 옆이나 엘리베이터, 계단실 등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한다.
- 계단실 내부 참 벽면에 설치한다.

배치/유지관리

- 층별 실 명칭, 평면도(현위치, 안내데스크, 유도동선, 실 명칭, 픽토그램, 범례 포함)를 표기한다.
- 각 층별 실의 명칭 정보를 표기한다.
- 현위치를 기준으로 윗층과 아래층의 층수를 표기한다.
- 안내정보는 바닥면으로 부터 600 ~ 1700mm / 1000 ~ 1500mm / 2100 ~ 2400mm 높이에 표기한다.
- 유리면 등에 설치 시, 투명한 재질을 사용하여 개방감을 확보한다.
- 사용자가 안내사인을 바라보는 시점이 지도상의 위쪽 방향이 되도록 표기한다.



층별안내사인



층수 안내사인



점자안내사인

관련 법률 및 지침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 BF 인증기준-건축물

(3) 유도안내사인

- 정의
 - 목적인 장소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주요 공간과 시설물이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 복도 진입 지점, 복도에 접하는 공간이 한눈에 인지되지 않는 곳 벽면에 설치하며 벽면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천장(달대형)이나 바닥면(바닥표시형)에 설치한다.
- 실 명칭, 시설물 명칭, 픽토그램, 방향정보, 현 위치로부터 거리 정보 (단위:m)등을 표기한다.

배치/유지관리

- 안내 정보는 벽 부착형의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1000mm ~ 1500mm 높이에 표기하며, 달대형의 경우 2100 ~ 2400mm 높이에 표기한다.



달대형 유도안내사인



부착형 유도안내사인



바닥을 활용한 안내사인

관련 법률 및 지침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 BF 인증기준-건축물

(4) 주의·규칙 안내사인

- 정의
 - 주의 경고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접근이나 금지행동에 대한 주의·경고가 필요한 곳에 주의나 규칙, 픽토그램 정보 등을 표기한다.
- 충돌위험이 있는 유리로 된 실이나 주출입문에 점이나 선, 픽토그램 등을 표기한다.

(5) 피난·안전 안내사인

- 정의
 - 피난시 안전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건축물의 주출입구 및 각 실의 잘 보이는 벽면에 설치한다.
- 비상대피 안내 사인에는 평면도(현위치, 대피동선, 공간 명칭, 픽토그램, 소화시설물 위치, 범례 포함)와 화재시 대피요령과 소화기 사용방법 정보 등을 표기한다.

배치/유지관리

- 안내 정보는 바닥면으로부터 600 ~ 1700 mm 높이에 표기한다.
- 사용자가 안내사인을 바로 보는 시점이 지도상의 위쪽 방향이 되도록 작성한다.



피난안내도

C

기타사인

- 정의
 - **지시사인, 영상정보사인** : 보행자 및 지역주민, 방문객에게 지역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가로공간이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게시판



알림판 A



불법사항경고표지



알림판 B

C-1 지시사인

(1) 알림판

- 정의
 - 공간 및 건축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행사 및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게시판 및 알림판이 설치되는 공공건축물, 공공공간과 연계되어 통합디자인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①
-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은 시각적으로 통합되어 보일 수 있도록 정보간의여백을 조절하고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 문자의 크기, 여백, 화살표 위치 등 표기법과 배치, 정렬의 원칙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 하나의 게시판·알림판에 여러 색상을 사용하여 시각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배치/유지관리

- 설치 장소의 경관, 시설물,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안내정보는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결정한다.

형태/색채/재질

- 다양한 정보 내용이 동시에 표기될 때에는 정보의 위계를 고려하여 정보의 크기와 색상 등을 조절할 수 있다.
- 지나친 장식이나 조각, 색채의 사용을 지양하고, 시인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 힘든 고명도, 고채도의 색상을 주조색, 배경색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한다.



① 주변환경과 조화롭지 못한 게시판

(2) 불법사항경고표지

- 정의
 - 공간 및 건축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규칙이나 금지사항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가로수 및 다른 표지 등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용어의 사용은 금지한다.
- 교차로와 같이 지주시설물이 많은 경우, 다른 지주 시설물과의 통합설치를 할 수 있다.
- 표지판 뒷면의 지주 결합 부위 및 마감 처리를 미려하게 한다.

배치/유지관리

- 시민 및 방문객들의 접근이 많은 지역이나 불법사항에 대한 인지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위압적인 디자인 보다는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을 사용한다.

형태/색채/재질

- 정보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적정거리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한다.
- 자체 심볼마크 및 상징문구 등의 과도한 부가 내용 표기는 제한한다.
- 문자, 픽토그램, 그래픽, 기호 등 다양한 정보가 동시에 표기될 때에는 가장 알아보기 쉬운 정보요소로 강조할 수 있다.
- 표현내용과 배경은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를 두어 읽기 쉽게 한다.
- 고채도 원색은 강조할 부분에 사용하여 포인트 색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로수로 인한 시인성 확보 불가



픽토그램의 색채 차별화로 효율적인 정보 전달



이해가 쉬운 표기요소 도입

C-2 영상정보사인

(1) 미디어보드

- 정의
 - 미디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심야에는 조도를 낮추거나 조도 조절이 가능한 기능을 탑재한다.
- 광역적 차원에서 동일한 디자인과 설치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크기 및 형태를 최적화하여 유사 기능의 시설물과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배치/유지관리

-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타 시설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회도를 계획한다.
- 내장된 영상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잠금 장치가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수 있다.

형태/색채/재질

- 자극적인 문구, 서술형 문구의 사용 및 상업광고는 금지한다.
- 터치스크린과 스피커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직접 시청각으로 접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 역동적인 영상이나, 명시성 높은 색상은 중요한 정보에 한정해 사용하고 남용하지 않는다.



목적에 맞게 크기와 형태를 정하여 설치

(2) 안내전광판

- 정의
 - 여러 개의 전구를 평면에 배열하고 전류를 통하여 그림이나 문자 따위로 정보전달을 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는 지나치게 잦은 점멸은 금지한다. ①
- 광역적 차원에서 동일한 디자인과 설치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햇빛에 의해 난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사각을 적용하고 야간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조명 설치를 할 수 있다. ②

배치/유지관리

- 충격 및 빗물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며, 하부의 기초볼트, 앵커 등이 노출되지 않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 내장된 영상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수 있다.

형태/색채/재질

- 교통 신호등과 동일한 색채의 사용 및 다양한 색채의 사용은 금지한다.
- 주재료는 내구성이 강한 스틸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내마모성이 우수한 무광 도장으로 표면을 마감할 수 있다.



① 지나친 점멸 금지



② 난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

2.5 옥외광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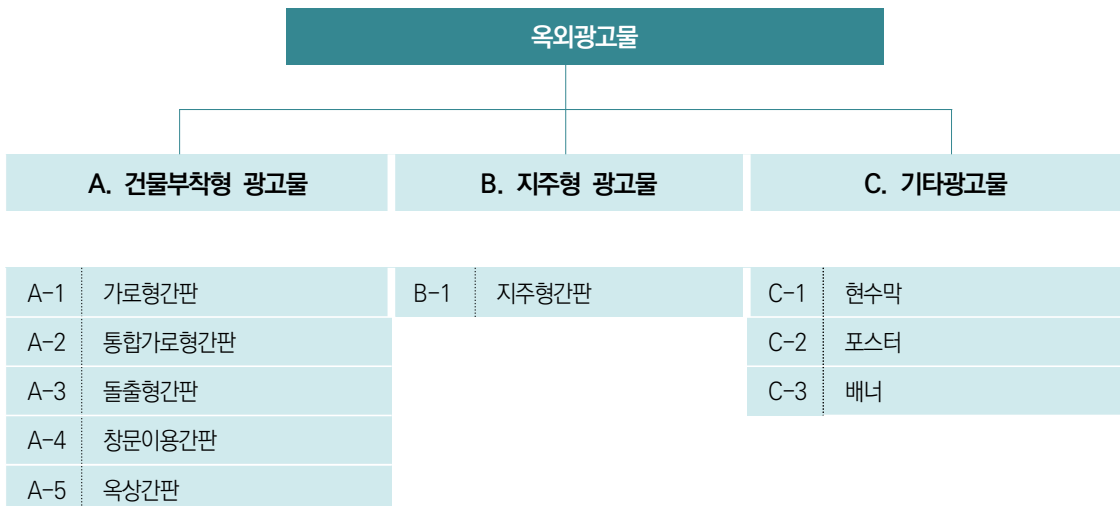
(1) 개요

- 공중에게 업소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알릴 목적으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각 표지물을 의미한다.

(2) 목표

- 본 가이드라인은 용인시 옥외광고물 디자인의 자문, 발주, 실행 및 유지 관리에 적용 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명시된 규정들은 제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 기능적 측면은 물론 도시 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서 개인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 옥외광고물 전반에 걸쳐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여 체계를 정립한다.
 - 도시 경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조형적 요소로서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거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3)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4) 기본방향

-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인 ‘편의성’, ‘조화’, ‘유지·관리’에 알맞은 옥외광고물의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편의성	① 잘 읽히는, 잘 보이는 도시 ② 적절한 표기요소의 도입
조화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디자인 ④ 업소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 추구
유지·관리	⑤ 철저한 규제 및 관리

(5) 관련규정

분류	관련 법·제도	관련 상위계획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도로법시행령	- 용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A

건물부착형 광고물

• 정의

- 건물부착형 광고물이란 건물에 부착 설치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용되는 옥외광고물을 의미한다.
- **가로형간판** : 이름이나 판매 상품, 업종 따위를 가로로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이게 걸거나 붙이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 **통합가로형간판** : 둘 이상의 이름이나 판매 상품, 업종 따위를 가로로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이게 걸거나 붙이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 **돌출형간판** : 이름이나 판매 상품, 업종 따위를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이게 건물 바깥으로 걸거나 붙이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 **창문이용간판** : 상가의 창문이나 쇼윈도우를 이용하여 상호명이나 판매 상품, 업종 따위를 시트지 등으로 붙여서 광고하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 **옥상간판** : 이름이나 판매 상품, 업종 따위를 써서 옥상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단독가로형 간판



통합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A-1. 가로형간판

- 정의
 - 이름이나 판매 상품, 업종 따위를 가로로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이게 걸거나 붙이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커튼월(Curtain wall) 건물에는 입체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한다.
- 벽면형 옥외광고물은 건축물의 3층 이하에만 설치한다.
- 건축물의 각 면별로 설치하며 둘 이상의 면을 연결하는 설치는 금지한다.
- 입체형의 경우 주요 표기 문자의 세로 평균은 최대 45cm이내로 하고, 보조 표기 문자는 옥외광고물 세로의 1/4이내로 한다.
- 가로는 업소의 벽면 가로의 80%이내로 하되, 최대 10m이내로 한다.
-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30cm이내로 한다.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하며 친환경 소재를 권장한다.

A-2. 통합가로형간판

- 정의
 - 둘 이상의 이름이나 판매 상품, 업종 따위를 가로로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이게 걸거나 붙이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벽면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표시한다.
- 신축 건물의 경우 간판 게시의 설치를 의무화 한다.
-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계열의 과다사용을 지양한다.
- 표기내용의 크기는 개별간판 면적의 1/30이내로 표기하거나, 표기내용의 평균 세로크기를 개별간판 세로 폭의 1/20이내로 한다.
- 공동으로 사용되는 벽면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벽면 1곳에만 표시한다.
- 3층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6층 이상인 건물의 동수가 50% 이상인 정비구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다.
- 3층 까지 50cm 이하, 4층 이상 5층 이하는 65cm 이하로 한다.
- 4층 이상 건축물 최상층 3면에 건물명 간판을 설치 할 수 있으며 간판 글자 크기는 5층 이하 70cm, 6층 이상 90cm 이하로 한다.



가로형간판



통합가로형간판

A-3. 돌출형간판

- 정의
 - 이름이나 판매 상품, 업종 따위를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건물에 걸거나 붙이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의 전면 폭이 20m이상인 경우 양측단에 설치한다.
-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80cm이내로 하며, 2개 이상 설치되는 경우 돌출 폭을 통일시킨다.
- 세로 높이는 건물의 1개 층 이내로 한다.
- 돌출 옥외광고물의 주요 표기 요소는 상호 또는 브랜드명으로 한다.
- 소형 돌출 옥외광고물은 조형성, 심미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보도면에서 3m이상 이격 거리를 두어 설치한다.
- 돌출형 옥외광고물은 건축물의 5층 이하에만 설치한다.

A-4. 창문이용간판

- 정의
 - 상가의 창문이나 쇼윈도우를 이용하여 상호명이나 판매 상품 따위를 시트지 등으로 붙인 광고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만 설치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한다.
- 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서 옥외광고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물의 설치는 지양한다.
-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세로 20cm 이하의 띠로 설치한다.



돌출형간판



창문이용간판

A-5. 옥상간판

- 정의
 - 이름이나 판매 상품, 업종 따위를 써서 옥상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옥상간판의 수평거리 50m이상을 유지한다.
- 건축물과 도시의 스카이라인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옥상간판의 형태는 건축물의 옥상평면과 일치시킨다.
- 정보량을 최소화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만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 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m 이상일 경우 항공장애표시등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옥상간판

관련 법률 및 지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B

지주형광고물

• 정의

- 지주형광고물이란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가로형A



가로형B



세로형A



세로형B

B-1. 지주형간판

- 정의
 -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간판 상단까지 높이가 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해당 건물 높이의 1/2 이내)
- 1면의 면적은 5㎡ 이내,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2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통합 유도형 간판은 폭 6m이상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업소에 한해 설치한다.
- 점멸을 통한 색의 변화나 영상 변화의 사용을 통한 광고를 금지한다.
- 간접조명방식을 권장하며 내부조명의 경우는 부분조명방식을 사용한다.
- 저채도의 색상을 활용한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건물 쪽에 위치한다.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위압감을 주는 과도한 형태의 디자인을 지양한다.



간결한 디자인과 가독성을 높인 배색

관련 법률 및 지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C 기타광고물

- 정의
 - **현수막** :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나 도형을 표시하여 건물의 벽면, 지주·게시시설 및 기타시설물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 **포스터**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나 그림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 및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 **배너** : 일반적으로 가로등에 현수하는 기를 의미하며 게시방법에 따라 양수형과 편수형으로 분류되고 띠 모양의 광고면을 이용, 반복적으로 현수하여 행사 및 축제 등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현수막 A



현수막 B



포스터 A



포스터 B

C-1. 현수막

• 정의

-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나 도형을 표시하여 건물의 벽면, 지주·게시시설 및 기타시설물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 재질은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 용인시 공공시설물 색채계획의 지정색을 적용하며, 공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 포스트와 접하는 바닥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을 권장한다.
- 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이라도 포스트는 반드시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 제작 규격은 가로7m, 세로0.7m를 기준으로 하고, 설치 장소 및 위치에 따라서 대, 중, 소 구분하여 통일감 있게 설치한다. [대: 가로8m, 세로0.7m / 중: 가로7m, 세로0.7m / 소: 6m, 세로 0.6m]
- 일반광고물과, 행정광고물을 구분하여 배경색채 및 내용을 구성한다.
- 일반광고: YR계열(CMYK 3/3/15/0),(CMYK 15/13/25/0) 행정광고: 연한파랑(CMYK 25/5/7/0), 흰색(White Color 100%)
- 현수막 내용은 가장자리에서 상·하 0.5m의 여백을 두어 표기한다.
- 글자의 크기는 가로 0.35m이하, 세로 0.4m 이하로 한다.
- 문자의 색은 4가지 이하로 적용하며, 명도20이상, 채도60이하가 되도록 한다.
- 주 광고내용: 주 광고문구, 업체명 등 표기 보조광고내용: 보조 광고문구, 위치, 연락처, 기호·사진·심벌 등 표기
-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볼트 및 노트와 같은 부속물 등이 지면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 광고물의 바탕색, 글자색은 지정색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지만 글자색은 약간의 톤차이를 줄 수 있다.
- 정보의 위계를 정립하여 주요 정보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크게 나타내고 기타 정보는 최소한의 크기로 나타낸다.
- 교통이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 방향 및 방위 등을 표시하는 기호를 문자와 함께 표기할 경우, 기호와 문자의 시각적 균형을 유지한다.



게시대를 활용한 현수막



주변경관을 해치는 현수막

C-2. 포스터

- 정의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나 그림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 및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지정된 게시판에만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크기는 가로 40cm 이내, 세로 55cm 이내가 되도록 한다.
- 관리자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준수한다.
-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에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주거 및 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는 철저히 규제한다.
- 시에서 규정한 광고규격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다른 포스터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C-3. 배너

- 정의
 - 일반적으로 가로등에 현수하는 기를 의미하며 반복적 노출을 통해 행사 및 축제 등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구조

- 교체도, 원색 사용은 광고물의 강조할 부분 이외에는 지양하여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각적으로 혼란을 야기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을 방지한다.
- 광고물의 배경색은 중채도, 저채도 색상을 사용한다.
- 교통이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효율적 정보 전달이 가능한 색채 사용

2.6 야간경관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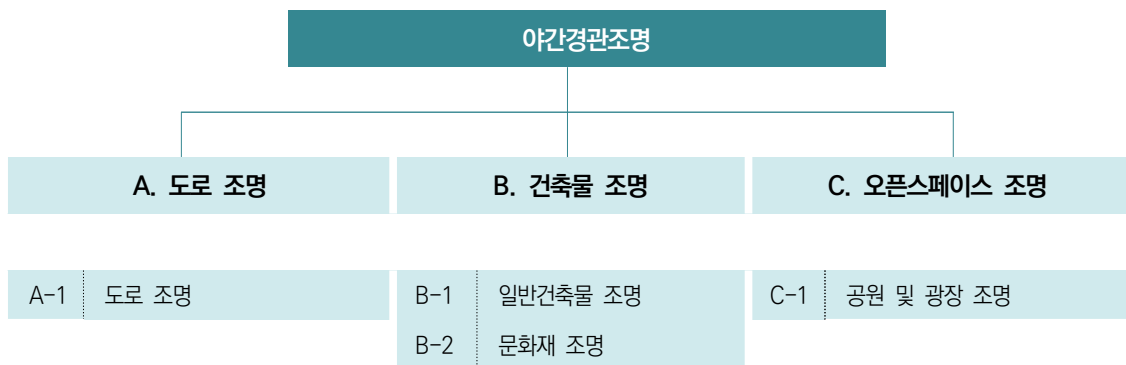
(1) 개요

- 도시의 야간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명시설물을 의미한다.

(2) 목표

- 본 가이드라인은 용인시 야간경관조명 디자인의 자문, 발주, 실행 및 유지 관리에 적용 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명시된 규정들은 제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 야간경관계획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근본 원칙과 기준, 세부적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 조명 신기술과 고효율 친환경 조명계획으로 야간경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 야간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생활문화를 조성한다.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조명계획으로 야간문화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3)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4) 기본방향

-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인 ‘편의성’, ‘조화’, ‘유지·관리’에 알맞은 야간경관조명의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편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② 공적역할이 가능한 조명도입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야간경관으로 인한 도시공간 활성화 ④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명계획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 도입

(5) 관련규정

분류	관련 법·제도	관련 상위계획
야간 경관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범죄 예방 건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 경기도 인공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

A

도로 조명

- 정의
 - 주·야간 이동 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 및 보도를 비추는 조명시설물을 의미한다,



횡단보도 조명 A



횡단보도 조명 B



교차로 조명



교량조명

A-1 도로 조명

- 정의
 - 야간에 차량의 운행이나 시민의 통행, 상가의 번영, 범죄의 방지 따위를 위하여 도로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인근 주거지 침입광 발생 방지를 위한 설치 높이, 조사각도 조정한다.
- 보안등 앞, 뒤 장애광으로 농작물 생산 피해 발생 차광판 설치한다.
- 인근 주거지 침입광 발생 방지를 위한 설치 높이, 조사각도 조정한다.
- 횡단보도 이외 장애광으로 보행자, 운전자 눈부심에 유의하여 조명을 설치한다.
- 원칙적으로 KS C 8010 (도로조명기구)을 적용한다.
- LED가로등의 경우 KS C 7658 (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를 우선 적용한다.

배치/유지관리

-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보행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 범죄 유발 심리 억제를 위한 충분한 밝기의 보안등을 설치한다.
- 연속조명과 색온도를 달리하여 횡단보도의 존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광원을 설치한다.
- 횡단보도의 전체를 밝히는 조명방식을 사용한다.
- 도로의 모퉁이의 조도를 주위보다 밝게 하여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는다.
- 고효율 램프사용을 권장하며 설계기준에 적절한 소비전력의 제품을 사용한다.
- 하절기 동절기, 주거밀집지역, 교차로 등 사고다발지역 점·소등 시간을 조정한다.
- 유지관리가 용이한 기구 및 램프를 적용한다.
- 일정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적정 밝기를 유지한다.
-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도로는 보안등을 별도로 설치한다.
- 여성, 학생 등의 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의 안전특화 거리로 지정하여 한층 강화된 CCTV연동 비상벨 조명을 설치한다.
- LED등의 사용을 권장하며 설계기준에 적절한 소비전력의 제품을 선정한다.
- 하절기 동절기, 주거밀집지역, 교차로 등 사고다발지역 점·소등 시간을 조정한다.
- 유지관리가 용이한 기구 및 램프를 적용한다.
- 무조명 구간에 배경휘도가 높은 방향은 보행자의 배경을 밝히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 배경휘도가 낮은 방향은 보행자 몸체를 밝히는 방식을 권장한다.
- LED의 경우 시간대별 자동디밍 기능의 사용을 권장한다.

형태/색채/재질

- 가로등주와 일체화되고 동일한 기구디자인의 보행등으로 설치한다.
- 컷오프형, 세미컷오프형 방식의 기구를 적용한다.
- 신호기 부착형은 정격전력 40W 이하를 사용한다.
- 원칙적으로 KS C 87417(LED횡단보도등)을 따른다.
- 횡단보도 부근에 있는 교통신호기, 도로표지 등 교통시설물과 일체화가 가능한 경우 통합하여 설치한다.
- 주변 시설물을 고려하고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고효율 조명



빛의 분포가 균등하고 눈부심이 적은 LED적용



적절한 설치수량 확대로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빛이 균등하고 눈부심이 적은 LED적용



조명설치로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관련 법률 및 지침

- 2030용인시 야간경관계획

B

건축물 조명

• 정의

- **보행자조명** : 주·야간 이동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를 비추는 조명시설물을 의미한다.
- **육교조명** : 본 안전확보 측면과 보행자가 주·야간 이동시 육교에 설치하는 조명시설물을 의미한다.
- **교량조명** : 지역경관 개선 및 안전확보 측면에서 교량에 설치하는 조명시설물을 의미한다.



건축물 조명



건축물 조명



건축물 조명



문화재 조명

B-1 일반건축물 조명

- 정의
 - 야간에 건축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조명시설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상향배광 기구적용 지양하고 적정 배광 기구 적용하여 누출광 최소화한다.
- 주변 인접한 주거지로의 침입광 발생이 없도록 한다.
- 시간대별 연출제어로 빛의 밝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 대상물에 정확히 조사되는 배광 선택하여 적용 등기구 수량 최소화한다.
- 체육시설 설계단계에서 주거지, 보도, 도로 등의 빛공해 피해 대상 위치 연직면 조도 고려 조명기구와 에이밍을 결정한다.

배치/유지관리

- 고효율 LED램프 사용으로 기구수량과 소비전력량을 최소화한다.
- 자동 점·소등시스템, 감광장치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 반영한다.
- LED램프의 경우 밝기변화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권장한다.
- 직접광원노출 지양하며 간접조명을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색채와 관계 검토하여 유사한 색상으로 조명기구를 도장한다.
- 야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출입부의 조명을 설치한다.
- 건축물 입면 및 저층부를 이용한 보행로 조명을 적용한다.
- LED 사용을 권장하며 설계기준에 적정한 소비전력 제품을 사용한다.
- LED의 경우 시간대별 자동디밍 기능의 사용을 권장한다.

형태/색채/재질

- 건축물 형태, 재질, 색채 종합 반영하고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연출한다.
- 건축물 내부 조명을 경관조명의 요소로 적극 활용한다.
- 직접조명을 지양하고 간접조명과 수목조명을 활용하여 편안한 조명연출을 한다.
- 바닥면에 돌출조명이 없도록 하여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한다.



내·외부의 조화로운 조명 연출



외전면을 야간경관조명 으로 연출



균일한 조도로 야간보행 환경개선

B-2 문화재조명

- 정의
 - 야간에 문화재의 조형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조명시설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투광조명을 사용한다.
- 칼라조명방식을 지양하고 라인조명을 금지한다.
- 문화재 화재 위험을 고려하여 조명광원은 LED를 권장한다.
- 조명등기구 노출은 지양한다.

배치/유지관리

- 휘도율은 1:5, 색온도는 2800~3000K를 유지한다.

형태/색채/재질

- 광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직접 조명 방식을 지양하고 간접 조명방식을 권장한다.
- 문화재의 조형성이 강조되도록 간접조명을 설치한다.



투광조명의 사용으로 주변지역의 빛 공해를 최소화 함

관련 법률 및 지침

- 2030용인시 아간경관계획

C

오픈스페이스조명

- 정의
 - **공원조명** : 공원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물을 의미한다.
 - **광장조명** : 광장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조명시설물을 의미한다.



공원 A



공원 B



광장 A



광장 B

C-1 공원 및 광장 조명

- 정의
 - 공원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및 주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하는 조명시설물을 의미한다.
- 세부가이드라인

계획/설계

- 공공시설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을 고려하여 도시 내 공원 및 광장의 야간이미지를 구축한다.
-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명으로 독특한 시각 경험이 가능한 장소를 조성한다.
- 블라드, 간접조명 등 눈부심 적은 조명으로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연출한다.
- 공원 및 녹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빛공해를 최소화하는 시간대별 점등 계획을 마련한다.
- 예술작품 적용 시 배광정보를 정확히 조사하여 등기구의 수량을 최소화한다
- 역동적인 조명쇼 및 특별 행사로 공공공간에 활력을 부여한다.

배치/유지관리

- 시각지대 없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적정 밝기(연직면조도 5lx)를 유지한다.
- LED 사용을 권장하며 설계기준에 적절한 소비전력 제품을 선정한다.
- 야외 공간과 가로 조명 연동을 통한 통합일정 관리 및 제어시스템을 마련한다.
- 하절기, 동절기, 시민 이용 높은 도심공원 점·소등시간을 조정한다.
- 보행로 밖으로 새는 누출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광 선정, 배치 조정한다.
- 지역 특성 고려하여 시간대별 연출제어로 주변 침입광을 관리한다.
- 주변 인접한 주거지로의 침입광 발생이 없도록 조명기구 설치 위치를 고려한다.
- 파고라 및 벤치 주변의 밝고 안전한 조도 유지하기 위해 보안등을 설치한다.
- LED의 경우 시간대별 자동디밍 기능의 사용을 권장한다.

형태/색채/재질

- LED램프의 경우 밝기 변화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장착한다.
- 유동성을 고려한 조명기구 및 장치를 설치한다.



보행자 동선을 유도하는 균등한 조명

관련 법률 및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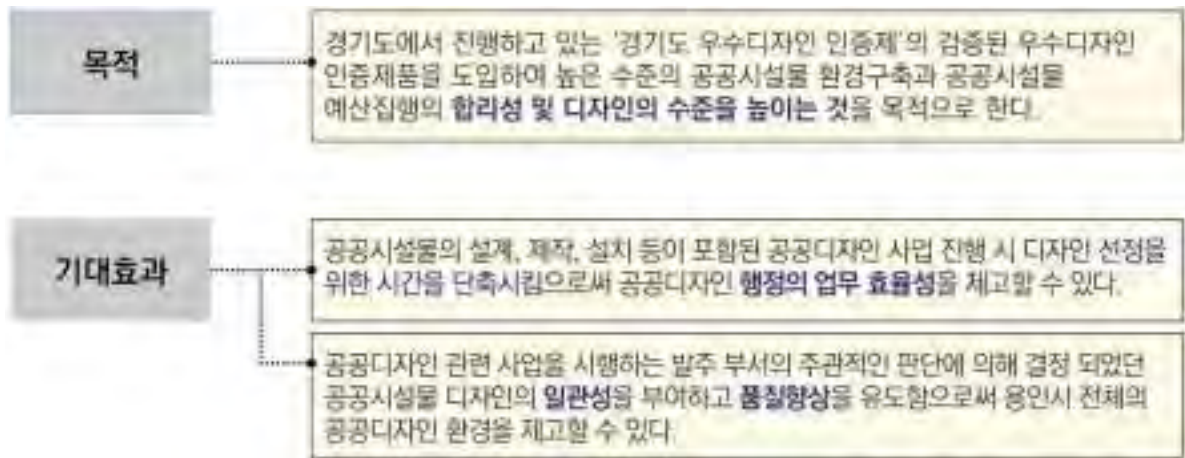
- 2030용인시 야간경관계획

1. 표준디자인 기본방향	298
2. 가로시설물	302
3. 안내사인	324

1. 표준디자인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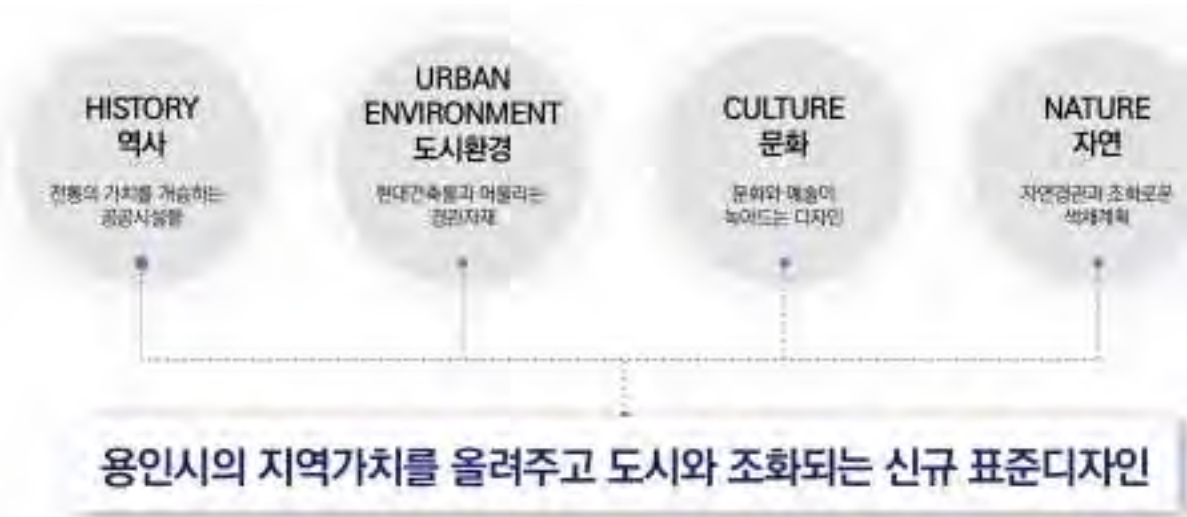
1.1 개요

- 오늘날 용인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에 살면서, 지역 고유의 문화를 가꾸고 발전시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해 가고자 하며,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이를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공공디자인 개념이 반영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시설물의 과도한 디자인과 배치계획, 유지관리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무질서하고 낙후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용인시 공공시설물에 적극 도입한다.



1.2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컨셉 및 가이드라인

(1) 컨셉



(2) 디자인의 기준 / 설치방안 제시

- 상위계획을 준수하고 기존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고려한다.
-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과 이미 조성된 지역을 구분하여,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은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을 새롭게 활용하도록 하고, 이미 조성된 지역은 기존 시설물과 통일감을 주기위해 기존 제품을 활용한다.



상위계획을 준수하며 기존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과 조화로우면서도 지역별 통일감을 유지시키는 신규 표준디자인

1.3 디자인의 적용

(1) 적용원칙

용인시 자연환경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및 차별화 범위를 설정하고 적합한 색채 및 재료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적용한다.

- 용인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디자인이며, 시설물의 기준이 되는 표준디자인을 제시하였다.
- 지역적, 장소적 특성을 활용하여 특화할 수 있는 디자인이며, 역사·문화형, 첨단·미래형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문화재 주변·특화거리 등 일부 구간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디자인의 적용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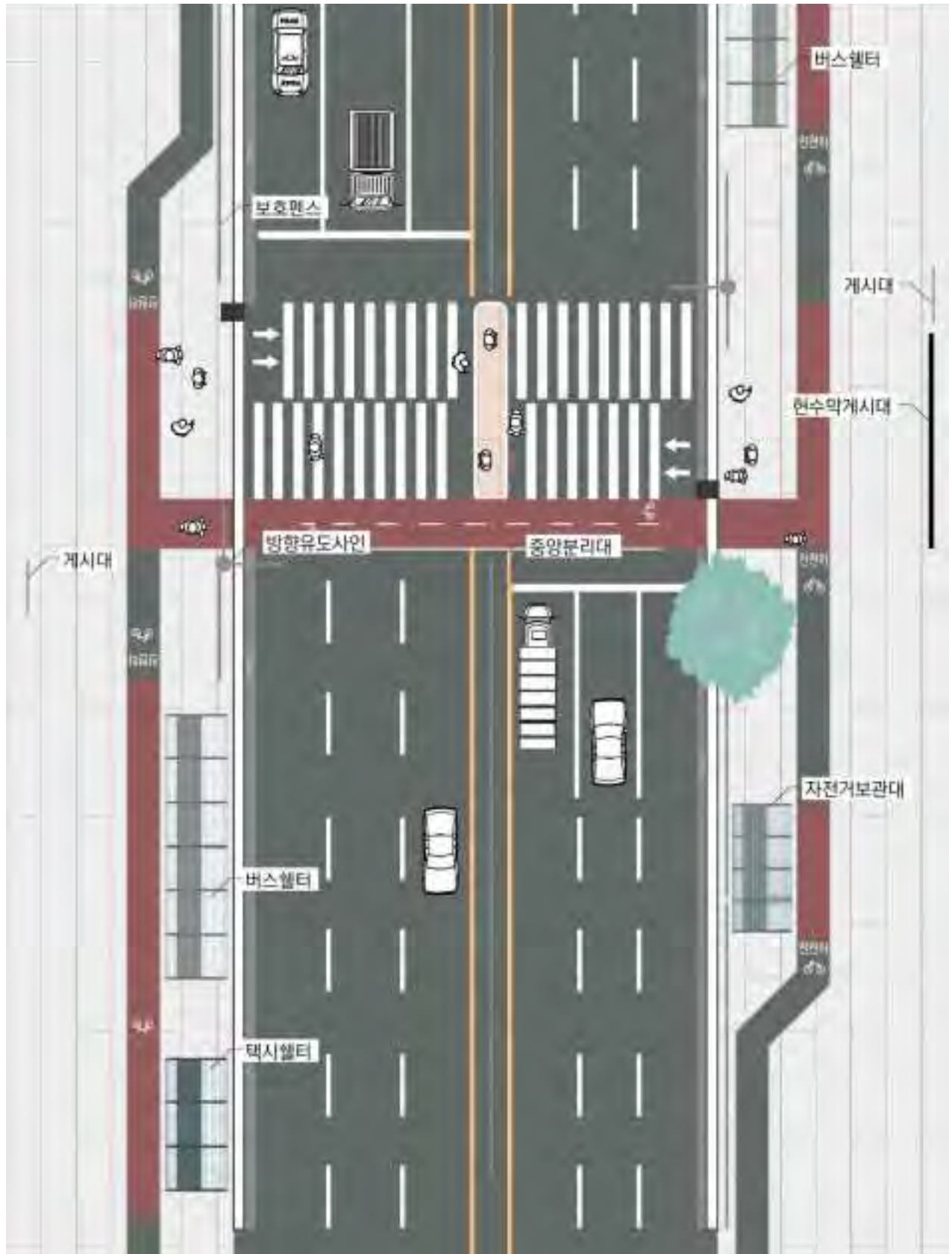
(2) 적용기준

- 2010년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과 경기도 인증제품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설물의 경우,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예정인 지역에서는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이미 개발이 진행되었거나 일부 구간을 정비하는 지역에서는 2010년에 개발된 용인시 표준디자인 제품을 적용한다.



대분류	구분		경기도 인증제품 사용	2010년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사용	표준디자인(신규) 사용
	중분류	소분류			
가로 시설물	교통 시설물	버스쉘터	0		
		버스쉘터 표지판	0	0	
		택시쉘터	0	0	
		택시쉘터 표지판	0	0	
		자전거 보관소	0	0	
		자전거 보관대	0		
		블라드		0	
		보호펜스(보행자)	0	0	
		보호펜스 (어린이보호구역)			0
		보호펜스(교량)	0		0
		중앙분리대	0		0
		보안등	0	0	
		가로등	0	0	
	공공시각매체	게시대			0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0
	환경·위생시설물	휴지통	0		
	휴게·판매시설물	벤치(평벤치, 등벤치)	0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덮개	0			
	가로화분대	0			

• 총괄도



2. 가로시설물

2.1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1) 교통시설물_버스쉘터 표지판 [2010년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 규격 : 700L×125W×3200H (mm)
- 재료 : STL PIPE, STL PLATE, 유백 플라스틱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유광_광택도 30%

색채

적용 위치	구조체, 배경색
Munsell	9.5Y 3.7/1.5
CMYK	C 65 / M 57 / Y 66 / K 9
도로용표준색	F-804000

- 설계지침
 - 버스의 승·하차 및 보행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
 - 버스쉘터 표지판은 버스 승하차 지점에서 1m 이내에 설치
 - 보행자가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한 표지 상단에 인지성이 높은 픽토그램·심벌을 적용
 - 버스 노선 안내도는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1500mm 내외로 버스 노선도의 높이를 설정
 - 기초 시공 시 지지대 및 앵커볼트가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 추후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출시 시, 경기도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



(2) 교통시설물_택시쉼터 [2010년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 규격 : 4220L×1730W×2570H (mm)
- 재료 : STL PIPE, STL PLATE, 강화유리, AL-CASTING, HARD WOOD, LED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유광_광택도 30%

색채		
적용 위치	구조체, 배경색	벤치
Munsell	9.5Y 3.7/1.5	1.6Y 4.5/5.6
CMYK	C 65 / M 57 / Y 66 / K 9	C 49 / M 56 / Y 85 / K 4
도로용표준색	F-804000	F-356502

- 설계지침
 - 운전자와 승객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접근성 있고 개방감 있는 곳에 계획
 -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위에 설치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의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
 - 의자, 휴지통, 시각 정보 시설물 등은 통합하여 보행로 및 대기공간을 확보
 -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의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변의 공간체계를 조사하여 설계
 - 정류장의 규모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승객·보행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야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계획을 수립하며, 조명은 고효율의 LED 램프를 사용
 - 구조물의 외형적인 특성은 조형성 중심의 과도한 디자인 및 색채 지양
 - 시공성과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용접방식을 지양하고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로 적용
 - 기초 시공 시 지지대 및 앵커볼트가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 추후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출시 시, 경기도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



(3) 교통시설물_택시첼터 표지판 [2010년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 규격 : 700L×125W×3200H (mm)
- 재료 : STL PIPE, STL PLATE, 유백 플라스틱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유광_광택도 30%

색채	
적용 위치	구조체, 배경색
Munsell	9.5Y 3.7/1.5
CMYK	C 65 / M 57 / Y 66 / K 9
도로용표준색	F-804000

- 설계지침
 - 택시의 승·하차 및 보행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
 - 택시첼터 표지판은 택시 승하차 지점에서 1m 이내에 설치
 - 보행자가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한 표지 상단에 인지성이 높은 픽토그램·심벌을 적용
 - 주변지역 안내 지도는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1500mm 내외로 안내도의 높이를 설정
 - 기초 시공 시 지지대 및 앵커볼트가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 추후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출시 시, 경기도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



(4) 교통시설물_자전거 보관소 [2010년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 규격 : 110L×253W×565H (mm)
- 재료 : STS PIPE, AL-CASTING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유광_광택도 30%

색채		
적용 위치	구조체, 배경색	구조체
Munsell	9.5Y 3.7/1.5	8.0GY 6.6/0.7
CMYK	C 65 / M 57 / Y 66 / K 9	C 38 / M 27 / Y 32 / K 0
도로용표준색	F-804000	F-398001

- 설계지침
 -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의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
 - 개방적이고 정돈된 이미지의 가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에 인접한 녹지대나 공원, 공개공지에 설치
 - 자전거가 거치되었을 때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설물치 차지하는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설치
 - 설치 장소의 공간에 따라 캐노피의 설치 유무를 판단하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곳은 캐노피 설치를 지양하고 보관대만 설치
 - 자전거가 견고하게 걸속될 수 있도록 바닥 마감과 지면을 평탄하게 유지
 - 외국인 이용자를 배려하여 픽토그램을 활용한 공공정보매체의 설치 권장
 - 상업 또는 비상업적인 목적의 광고물 부착 지양
 - 자전거 걸이는 자전거와의 접촉 시 상호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테인리스스틸을 주재료로 설치
(단 스테인리스스틸을 사용할 시 표면의 광택을 저감할 것)
 - 시공성과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용접방식을 지양하고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로 적용
 - ※ 추후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출시 시, 경기도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



(5) 교통시설물_볼라드 [2010년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 규격 : Ø115(上), Ø140(下)×850H (mm)
- 재료 : STL PIPE, AL-CASTING
- 색상 : 지정색 고인장실리콘 마감,



색채		
적용 위치	구조체, 배경색	반사판
Munsell	9.5Y 3.7/1.5	YG 8.5/1.0
CMYK	C 65 / M 57 / Y 66 / K 9	C 19 / M 8 / Y 18 / K 0
도로용표준색	F-804000	F-418501

- 설계지침
 - 차량 진입으로부터 보행자의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
 - 볼라드 설치 위치의 300mm 전방에 시각 약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점형블록 설치
 - 야간 보행자 및 차량 이용자가 다방면에서 볼수 있는 밝은 색의 반사판 및 반사도로 등 사용
 - 외형적인 측면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능성 및 사용성을 중심으로 설치
 - 볼라드의 높이는 800mm~1,000mm 범위로 설치
 - 볼라드에 광고물 및 장식물의 부착을 금지하며,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
 - 고풍택 스테인리스스틸의 사용을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스테인리스스틸을 사용할 경우 적용 면적을 최소화하여 설치
 -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동을 위해 설치 간격이 1,500mm 내·외가 되도록 설치
 - 지면 고정부위는 고정볼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6) 교통시설물_보호펜스(보행자) [2010년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 규격 : Ø75(上), Ø100(下)×1100H (mm)
- 재료 : STL PIPE, AL-CASTING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유광_광택도30%


색채		
적용 위치	구조체, 배경색	반사판
Munsell	9.5Y 3.7/1.5	YG 8.5/1.0
CMYK	C 65 / M 57 / Y 66 / K 9	C 19 / M 8 / Y 18 / K 0
도로용표준색	F-804000	F-418501

- 설계지침
 - 2010년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기준으로 설치된 지역을 보수·재설치 하거나 연장하여 설치할 시 2010년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의 제품 사용
 - 보도와 차로의 연속된 구분이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설치
 -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무단출입이 예상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설치
 - 지면 고정부위는 고정볼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펜스가 경사면에 설치되는 경우 기둥은 반드시 수직이 유지되도록 설치
 - 경사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 지면의 경사도와 평행을 이루도록 설치
 - 기초와 접하는 바닥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
 - 펜스의 높이는 1,200mm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조정이 가능함



(7) 교통시설물_보호펜스(어린이보호구역) [표준디자인(신규)]

- 규격 : 1500L×80W×1200H / 400L×350H (mm)
- 재료 : STL PLATE, AL-CASTING, AL-EXTRUSION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유광_광택도 30%


색채		
적용 위치	강조색	구조체, 배경색
Munsell	4.8Y 7.4/11.0	9.5Y 3.7/1.5
CMYK	C 3 / M 33 / Y 90 / K 0	C 65 / M 57 / Y 66 / K 9
도로용표준색	F-288012	F-804000

- 설계지침
 - 보행자의 연속된 구분이 필요한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은 5개 경간당 1개 설치
 - 경사도가 낮은 언덕과 같은 장소에 설치할 경우 펜스를 계단형으로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할 시에도 펜스가 개방감을 갖도록 함
 - 영유아 및 저학년 어린이들이 안전펜스에 가려지지 않도록 간결한 형태로 개방감 확보
 - 파손이 되었을 때 기존 제품으로 교체 가능하도록 설치
 - 운전자와 어린이가 서로 볼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은 양면으로 설치하고 경간의 중앙에 설치
 - 상황에 따라 지주에 반사판을 설치



(8) 교통시설물_보호펜스(교량) [표준디자인(신규)]

- 규격 : 1500L×80W×1200H (mm)
- 재료 : STL PLATE, AL-CASTING, AL-EXTRUSION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색채	
적용 위치	구조체, 배경색
Munsell	9.5Y 3.7/1.5
CMYK	C 65 / M 57 / Y 66 / K 9
도로용표준색	F-804000

- 설계지침
 - 교량 위에 보도와 차로의 연속된 구분이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설치
 - 지면 고정부위는 고정볼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펜스가 경사면에 설치된 경우 기둥은 반드시 수직이 유지되도록 설치
 - 경사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 지면의 경사도와 평행을 이루도록 설치
 - 기초와 접하는 바닥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
 - 보도 유효 폭 이 좁은 구간(2m 미만의 보도)에서는 펜스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과 통합 설치를 권장
 - 펜스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200mm를 표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
 - 펜스의 높이는 1,200mm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조정이 가능함
 - ※ 추후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출시 시, 경기도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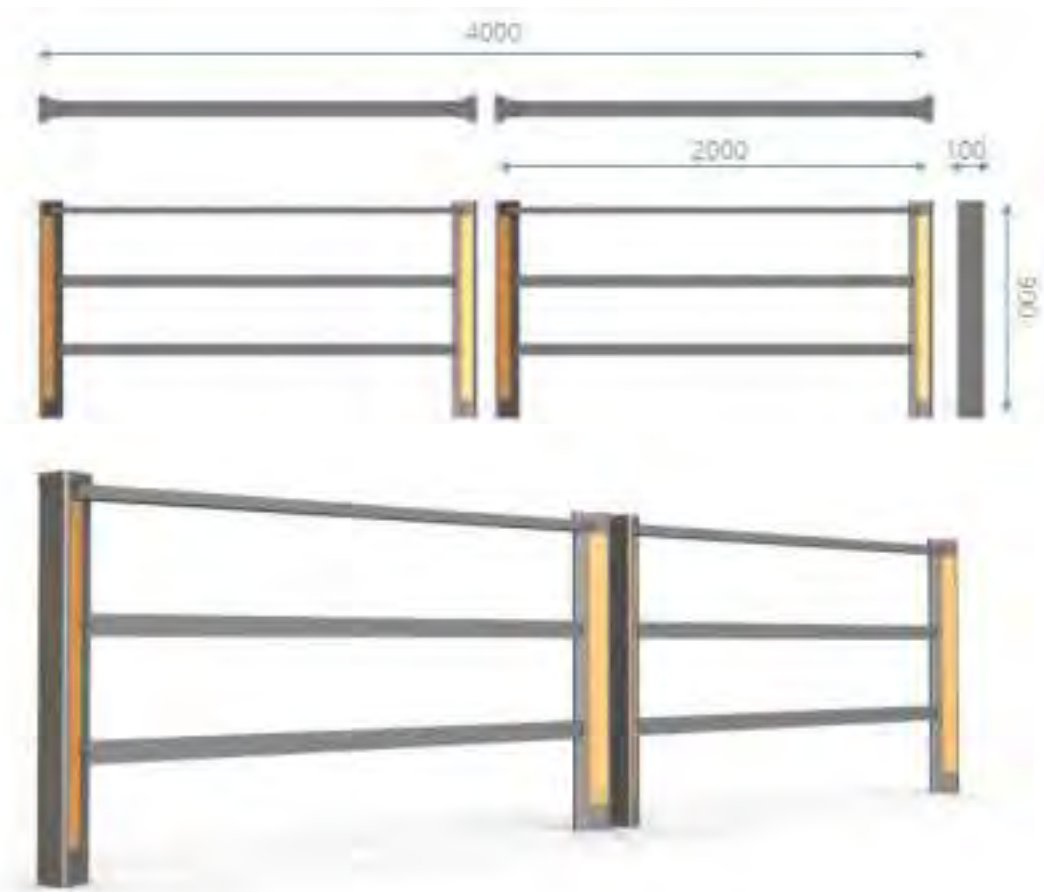


(9) 교통시설물_중앙분리대 [표준디자인(신규)]

- 규격 : 2000L×100W×900H (mm)
- 재료 : POLYURETHANE, (차량충돌 고려한 고탄성 폴리우레탄)
- 색상 : 지정색 압출,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색채			
적용 위치	강조색	구조체, 배경, 색	구조체, 배경색
Munsell	4.8Y 7.4/11.0	2.5GY 6.0/1.6	9.5Y 3.7/1.5
CMYK	C 3 / M 33 / Y 90 / K 0	C 37 / M 38 / Y 43 / K 0	C 65 / M 57 / Y 66 / K 9
도로용 표준색	F-288012	F-317502	F-804000

- 설계지침
 -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차량의 불법 유턴, 역주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은 구간에 설치
 - 차량의 충돌 시 부서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
 - 횡 방향 부재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900mm를 표준으로 설치
 - 중앙분리대가 연속적인 시선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설치
 - 경사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 지면의 경사도와 평행을 이룰 수 있게 설치
 - ※ 추후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개발 시, 경기도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



(10) 교통시설물_보안등 [2010년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 규격 : 1590L×250W×5300H (mm)
- 재료 : STL PIPE, STS PIPE, 지정헤드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유광_광택도 30%

색채	
적용 위치	구조체, 배경색
Munsell	9.5Y 3.7/1.5
CMYK	C 65 / M 57 / Y 66 / K 9
도로용표준색	F-804000

- 설계지침
 - 2010년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 적용된 지역을 보수·재설치 또는 연장할 시 2010년 표준디자인 제품 사용
 - 설치되는 곳에 맞는 보안등의 높이 및 암길이 설계
 - 보안등 설계 시 관련 사항(배광의 분포, 광속, 상방광속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
 -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
 - 전기적 안전성과 풍압, 자중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설치되는 지역에 가로등, 보행등, 신호등 등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통합지주를 활용하여 양호한 보행환경을 유지하도록 계획
 - 보안등 지주에 배너나 국기 등이 거치될 수 있도록 설계
 - 지주 디자인과 연계되는 헤드 디자인 적용
 - 기둥과 접하는 바닥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
 - 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이라도 기둥은 반드시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



Detail



일반형

(11) 교통시설물_가로등 [2010년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 규격 : 2215L×360W×11000H (mm)
- 재료 : STL PIPE, STS PIPE, 지정헤드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유광_광택도 30%

색채	
적용 위치	구조체, 배경색
Munsell	9.5Y 3.7/1.5
CMYK	C 65 / M 57 / Y 66 / K 9
도로용 표준색	F-804000

- 설계지침
 - 보안등과 동일하게 적용



Detail




일반형

가로등+보안등

교차로

(12) 공공시각매체_게시대 [표준디자인(신규)]

- 규격 : 3000L×160W×2300H (mm)
- 재료 : STL PLATE (저채도,저명도의 재질을 활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상)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색채		
적용 위치	구조체, 배경, 색	구조체, 배경색
Munsell	2.5GY 6.0/1.6	9.5Y 3.7/1.5
CMYK	C 37 / M 38 / Y 43 / K 0	C 65 / M 57 / Y 66 / K 9
도로용표준색	F-317502	F-804000

- 설계지침
 - 게시대와 지주는 분리되도록 하여 노후화된 게시대는 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치
 - 풍압 및 외부의 물리적 압력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갖도록 설계
 - 불필요한 정보 표기나 장식의 사용 지양
 - 정보 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표기 면적 이외의 여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설치
 - 이용자의 시야를 가로막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주변 환경요소와 시각적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
 -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볼트 및 너트와 같은 부속물 등이 지면에 노출되지 않게 설치
 - 기둥과 접하는 바닥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
 - 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이라도 기둥은 반드시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



(13) 옥외광고물_현수막 게시대 [표준디자인(신규)]

- 규격 : 4단-6550L×470W×4414H (mm) / 6단-6650L×470W×5990H (mm)
- 재료 : GALVANIZED STEEL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색채		
적용 위치	구조체, 배경, 색	구조체
Munsell	2.4GY 2.0/0.6	0.3YR 2.6/2.8
CMYK	C 80 / M 74 / Y 72 / K 47	C 63 / M 72 / Y 71 / K 26
도로용표준색	F-364002	F-264004

- 설계지침
 - 교통이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
 -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m 이상 유지
 -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볼트 및 노트와 같은 부속물 등이 지면에 노출되지 않게 설치
 - 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이라도 포스트는 반드시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
 - 기둥과 접하는 바닥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
 - 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이라도 기둥은 반드시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



2.2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1) 교통 시설물_버스쉼터

- 재료 : STEEL, WOOD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 고려사항
 - 버스쉼터는 기둥, 벽체, 지붕, 벤치, 교통정보 안내체계, 정보매체 등으로 구성
 - 여러 시·군을 관통하는 광역버스의 버스쉼터는 광역차원에서 동일한 디자인과 설계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
 - 내부에 있는 사람이 버스의 진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버스 진입 방향은 개방적인 구조와 재료로 디자인하며, 버스가 진입하는 방향의 버스쉼터 주변에는 가로시설물의 설치 지양
 - 이용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은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
 - 버스쉼터의 주변은 승차 공간과 보도의 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바닥 마감, 시설물, 식재 등을 이용하여 버스쉼터 대기공간과 보도를 분리하여 식별성을 높이도록 설치
 - 일반 도로에 버스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표준 폭은 2.5m 이상으로 하며, 보도의 폭이 축소되지 않도록 보도 외측으로 그 폭만큼 확장할 것을 권장
 - 정류장의 규모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승객·보행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광역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은 환승을 고려하여 설계된 제품을 사용
 - 야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조명을 계획하고, 사용되는 조명은 고효율의 LED 램프 매입형 설치 권장
 -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정보를 병기하고, 다국어 표기가 어려운 장소에는 픽토그램의 사용 권장
 - 구조물의 외형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조형성 중심의 디자인 지양하며, 기능 중심의 간결한 디자인 권장
 - 벤치, 조명, 정모 매체, 등 기능시설은 버스쉼터의 부피감을 축소시켜 도로점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벽체 및 지붕과 통합하여 디자인된 시설물 권장
 - 지붕은 눈과 비를 고려하여 5° 이내의 경사각을 적용하며, 빗물이 내부로 진입하지 않도록 배수 계획 수립
 - 정보매체는 정보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 예시
 - 일반정류장
 - 광역버스정류장(환승형버스승강장)



(2) 교통 시설물_자전거 보관대

- 재료 : STS PIPE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유광_광택도 30%
- 고려사항
 -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의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
 - 자전거도로 위에 연속적으로 설치할 때는 일관성 제공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동일한 디자인 사용
 - 지면에 고정되는 하부구조는 미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고정장치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는 공간은 포장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시공이 용이한 구조의 디자인 선정
 - 구조물의 외형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조형성 중심의 디자인 지양하며, 기능 중심의 간결한 디자인 권장
 -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용접을 지양하고 볼트를 이용한 접합 구조로 설치
 - 상업 또는 비상업적 목적의 광고물 설치 지양
 - 야간 이용자와 도난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도가 확보된 곳에 설치
 - 자전거의 보도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전거 보관대를 사선으로 배치하여 설치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채 사용 지양
 - 구조부의 주재료는 스틸을 기본으로 하고, 자전거 걸이는 자전거와 접촉 시 상호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테인리스스틸을 주재료로 설치
 - 캐노피를 설치해야 할 경우 주변 공간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색채가 없는 투명한 재료를 적용하여 설치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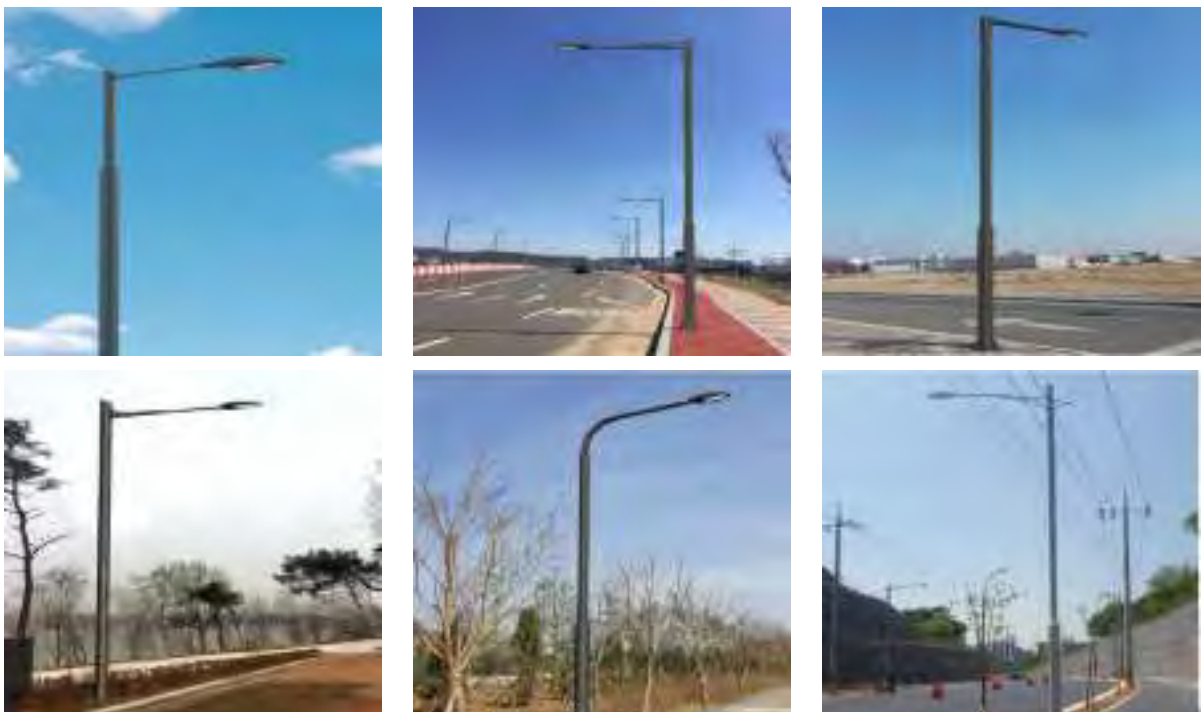
(3) 교통 시설물_보호펜스(보행자)

- 규격 : 1800L×78W×1200H (mm)
- 재료 : STEEL PIPE, STEEL PLATE, WOOD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유광_광택도 30%
- 고려사항
 - 펜스는 지주대, 방호재, 손잡이로 구성
 - 보도와 차로의 연속된 구간이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설치
 -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무단출입이 예상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설치
 - 인접한 주변 환경과 조화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며,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보도 펜스의 이미지가 상호 연속성을 갖도록 통합적으로 설치
 - 타 도시와 연결되어 설치되는 보호펜스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당 도시와 관련 업무를 협조하여 진행
 - 보도의 유효 폭이 좁은 경우 펜스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 다른 시설물과 통합하여 설치
 - 구조물의 외형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조형성 중심의 디자인 지양하며, 기능 중심의 간결한 디자인 권장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채 사용 지양
 - 지면 고정부위는 고정볼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펜스가 경사면에 설치되는 경우 기둥은 반드시 수직이 유지되도록 설치
 - 경사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 지면의 경사도와 평행을 이루도록 설치
 - 기초와 접하는 바닥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
 - 기존에 설치된 구간에는 2010년에 개발된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설치하며 신규로 설치하는 지역에는 경기도 인증제품을 설치
 - 펜스의 높이는 1,200mm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조정이 가능함
- 예시



(4) 교통 시설물_가로등

- 규격 : 220L×220W×8500H (mm)
- 재료 : STL PIPE, STS PIPE, 지정헤드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유광_광택도 30%
- 고려사항
 - 가로등은 지주와 조명대, 램프 헤드로 구성
 -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며,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가로등의 이미지가 상호 연속성을 갖도록 통합적으로 설치
 - 지역의 보행동선과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
 - 형태, 색채, 재료, 사인과 구조에 모듈화 개념을 적용하여 보행등, 가로등, 신호등과 함께 통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 도시의 외곽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지역의 야간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조도와 배치 간격을 설정하여 설치
 - 가로등에 부여되는 권역표시, 고유관리코드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해당정보의 변경이 가능한 구조의 디자인을 선정
 - 지주대에는 탈부착 가능한 구조의 깃봉, 접이식 배너걸이 등을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사인물을 탈·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야간 보행의 안전을 위해 조도 확보가 필요한 구간에 우선적으로 설치
 - 경사면에서 설치되는 경우 포스트는 반드시 수직이 유지되도록 설치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채 사용 지양
 - 지면 고정부위는 고정볼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예시



(5) 교통 시설물_보안등

- 규격 : 400L×1000W×5000H (mm)
- 재료 : AL PIPE, AL DIE-CASTING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유광_광택도 30%
- 고려사항
 - 가로등과 동일하게 적용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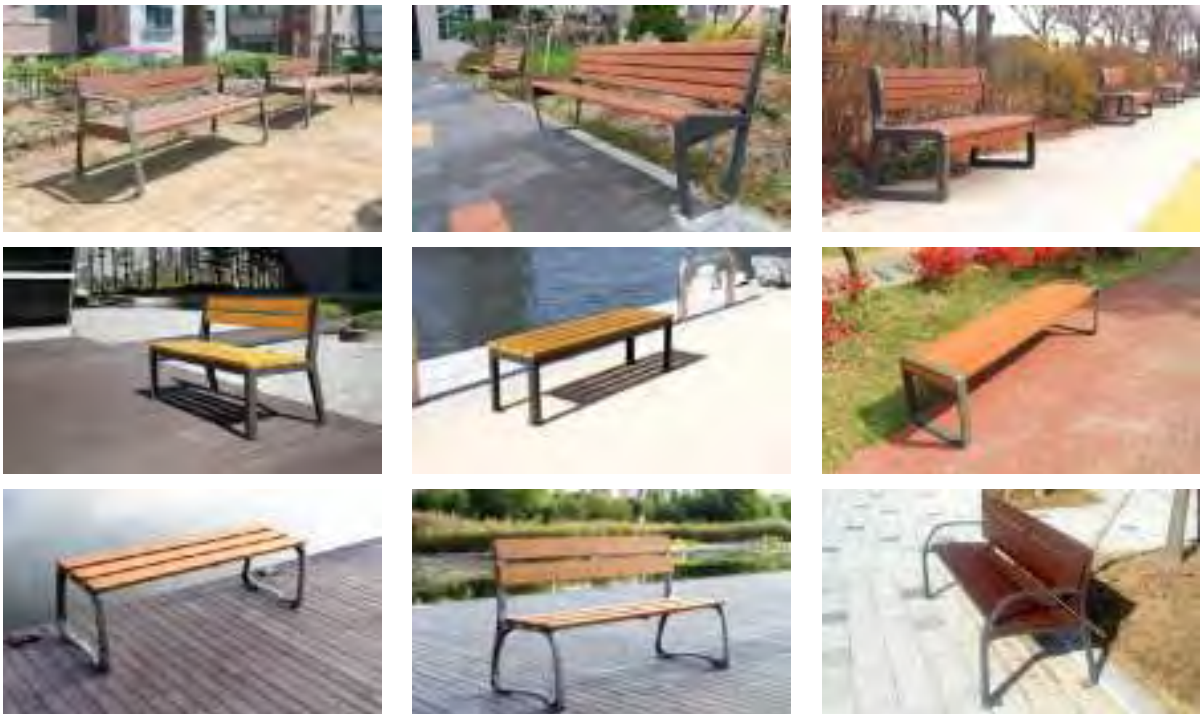
(6) 환경·위생 시설물_휴지통

- 규격 : 900L×450W×950H (mm)
- 재료 : EGI SHEET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유광_광택도 30%
- 고려사항
 - 휴지통은 외부통과 내부통으로 구성되며 형태에 따라 뚜껑이 추가적으로 구성
 -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인지성을 강조할 것을 권장
 - 쓰레기 투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투입구가 위로 향
 - 설치하려는 장소의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크기 및 수량을 산출하여 설치
 - 주변 시설물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여 설치
 - 수거, 청소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의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며, 쓰레기 투입이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하여 청결한 가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 사용
 - 외부통은 하단부가 빗물이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선정하며, 고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동물의 내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제품 사용
 - 광고물 및 장식물의 부착은 금지하며, 패턴과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슈퍼그래픽의 사용 지양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채 사용 지양
 - 지면 고정부위는 고정볼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예시



(7) 휴게·판매 시설물_벤치(평벤치, 등벤치)

- 규격 : 평벤치-1620L×430W×410H (mm) / 등벤치-1600L×553W×712H (mm)
- 재료 : AL-CASTING, HARD WOOD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유광_광택도 30%
- 고려사항
 - 좌판과 다리, 팔걸이, 등판으로 구성
 - 과도한 장식이나 상징물 등이 디자인에 남용되지 않은 간결한 형태와 구조의 디자인 사용
 - 벤치 사용자의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이용 시간이 긴 벤치의 경우는 좌판의 높이가 낮고 등받이를 길게 하는 등 활용도와 배치 장소에 따라 등받이의 유무를 구분하여 설치
 - 좌판은 우천 시 빗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가 용이하며, 건조가 쉽도록 디자인된 제품 사용
 - 신체와 접촉하는 부분의 안전성을 위해 둥글게 처리되거나 별도의 마감이 적용된 제품 사용
 - 유지·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용접을 지양하고 볼트를 이용한 접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설치되는 지역의 보행 동선과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채 사용 지양
 - 지면 고정부위는 고정볼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조명과 인접하여 야간 사용자 식별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
 - 소음이 심한 곳, 습지, 경사면, 바람받이 및 지반이 불량한 곳, 위생에 문제 및 공해가 심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도록 함
- 예시



(8) 녹지시설물_가로수 보호덮개

- 규격 : 1200L×1200W×20H (mm)
- 재료 : STL-PLATE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유광_광택도 30%
- 고려사항
 - 문자나 로고 등 그래픽 요소의 표기 및 부착을 지양
 - 보도에 설치되는 시설물로 미끄럼, 발 걸림 쓰레기 투척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 과도한 형태의 의장 요소와 자연물, 상징 요소 등을 모방한 형상, 패턴의 사용은 지양하고, 사각형의 형태, 최소한의 색채와 금속재 사용 권장
 - 하부의 청소가 용이한 디자인 사용
 - 상부 마감재(판재)에 충분한 두께를 확보하거나 구조재를 보강하여 설치 후 출렁거림이 없도록 설치
 - 금속재 사용 시 유색 도료나 유색 시트지 등의 적용을 지양하며, 도장용 도료의 색채는 무채색 계열 사용
 -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2회 이상의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분체도장 전에 원재료에 대한 표면가공하여 설치
 - 보행자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하여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예상되는 구간에 설치
 - 보도와 높이를 같게 하여 설치하되, 보도블록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
 - 설치되는 지역의 보행동선과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
 - 주변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포장재의 색채와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
 - 노출이 불가피한 볼트(너트)는 시설물 본체의 색채와 동일한 색채 적용
 - 보도 폭이 2m 미만인 경우 가로수 보호덮개의 마감은 주변 도로의 색채 및 재료에 맞추어 설치

• 예시



(9) 녹지시설물_가로화분대

- 규격 : 800L×800W×500H (mm)
- 재료 : STL-PLATE, HARD WOOD
- 색상 : 지정색 분체 도장 마감, 유광_광택도 30%
- 고려사항
 - 물 공급과 배수를 고려하여 설계하되, 화분대의 내부 토양을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우 시 토양의 유출이 없도록 설치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서리 등은 곡선으로 처리되도록 설치
 - 가로화분대는 석재나 목재 등의 자연친화적 재질의 사용 권장
 - 단일 색채를 통해 간결한 디자인으로 설치
 - 설치되는 지역의 보행동선과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
 - 충분한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 설치되는 보도의 바닥 패턴과 수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 예시



3. 안내사인

3.1 안내사인 개요

(1) 서체

- 서체의 세부 사용 지침은 다음 표를 따르며, 해당 서체의 고유 특성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다.

기본				최대조절가능범위		
구분	서체	자간	장 (가로 폭)	자간	장 (가로 폭)	크기
국문	윤고딕330, 340	-10	95%	-15~0	92~100%	서체 크기의 80%까지 허용
한자	윤고딕330, 340	10				
영어	Frutiger 65	0				
숫자						

(2) 표기 방법

- 시설명은 국문과 영문의 병기를 기본으로 한다.
- 지정된 글자 삽입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되, 서체 항목의 최대조절가능범위를 준수한다.
- 거리 표시 단위는 미터(m)를 기본으로 하며 1,000m 이상의 경우에는 킬로미터(km)로 표기한다.
- 모든 픽토그램은 국제표준(ISO) 또는 국내표준(KS) 기준을 준용한다.
- 다음의 시설에 대해서만 픽토그램을 시설명과 함께 표기한다.
 - 화장실, 주차장, 수유실, 장애인 편의 시설, 철도 역사, 지하철역, 버스 터미널, 관광안내소

픽토그램 예시						
						
화장실 (남성용)	화장실 (여성용)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 (가족도우미)	주차장	수유실	시각장애인
						
지하철	버스	관광안내소	비상구	소화기	금연	주차금지
						
화살표 (보행자용)		화살표 (운전자용)				

(3) 색채

-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의 기본 색상 적용을 참고하되, 다음 표의 각 색 체계 색상 값과 최대한 유사한 색상을 사용한다.
- 배경 색과 글자 색의 명도차가 최소 4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안전)	
색채					
Munsell	9.5Y 3.7/1.5	N 9.5	10YR 8/11	9GY 8.8/16.5	6.2R 4.0/11.7
CMYK	C65/M57/Y66/K9	C0/M0/Y0/K0	C0/M9/Y80/K0	C49/M0/Y76/K0	C20/M93/Y82/K0
도로용표준색	F-804000	F-809500	F-308506	F-388004	F-164012

(4) 재질 및 사용자재

- 외부 안내사인
 - 금속 또는 아크릴 등 내구성이 보장된 표면 재질을 사용한다.
 - 외부 안내사인의 표면은 기본적인 방식이 가능하도록 2회 이상 도색하고 열처리 마감한다.
 - 고무, 아크릴, LED, Fomex, STS, 갈바륨, 알루미늄, PVC/PET 시트 등의 자재를 사용해 정보요소를 표기한다.
 - 시트를 사용해 정보 요소 표기 시 옥외용 시트를 사용한다.
- 내부 안내사인
 - 금속 또는 아크릴 등 내구성이 보장된 표면 재질을 사용한다.
 - 야광재질 및 반사시트 등을 활용하여 비상상황 또는 야간에 시인성을 높일 수 있다.
 - 아크릴, Fomex, 갈바륨, PVC/PET 시트 등의 자재를 사용해 정보요소를 표기한다.
 - 표기하는 정보 요소는 스키시, 스텐실프린팅, 시트커팅 부착 등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재질 및 사용자재 예시						
표면 재질			정보요소 사용자재			
						
아크릴	포맥스 (Fomex)	STS, 갈바륨, 알루미늄 강재	고무스카시	아크릴스카시	LED채널 (광확산PC)	PVC/PET 시트

(5) 설치방법

- 외부 안내사인
 - 보행 및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보행로에 설치 시 유효 폭 1200mm 이상을 확보한다.
 - 안내사인 정보는 바닥면으로부터 600~1700mm 높이에 표기한다.
- 내부 안내사인
 - 안내 정보는 바닥면으로부터 600~1700mm 높이에, 점자는 1500mm 높이에 표기한다.
 - 돌출형, 달대형 안내사인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00mm 이상에 설치한다.
 - 요철 및 볼트(너트)의 노출을 지양한다.

3.2 안내사인 예시

(1) 피난 안내사인

- 정의
 - 피난 안내사인은 재해상황을 대비해 이용자에게 피난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매체를 의미한다.
- 규격 및 설치방법
 - 다음의 크기와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하되, 크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백 비율을 유지하여 적용가능하다.
 - 설치 시에는 피난 안내사인 상단부가 바닥면으로부터 1700mm 높이를 넘지 않도록 한다.



구조체 및 배경색
C64/M56/Y57/K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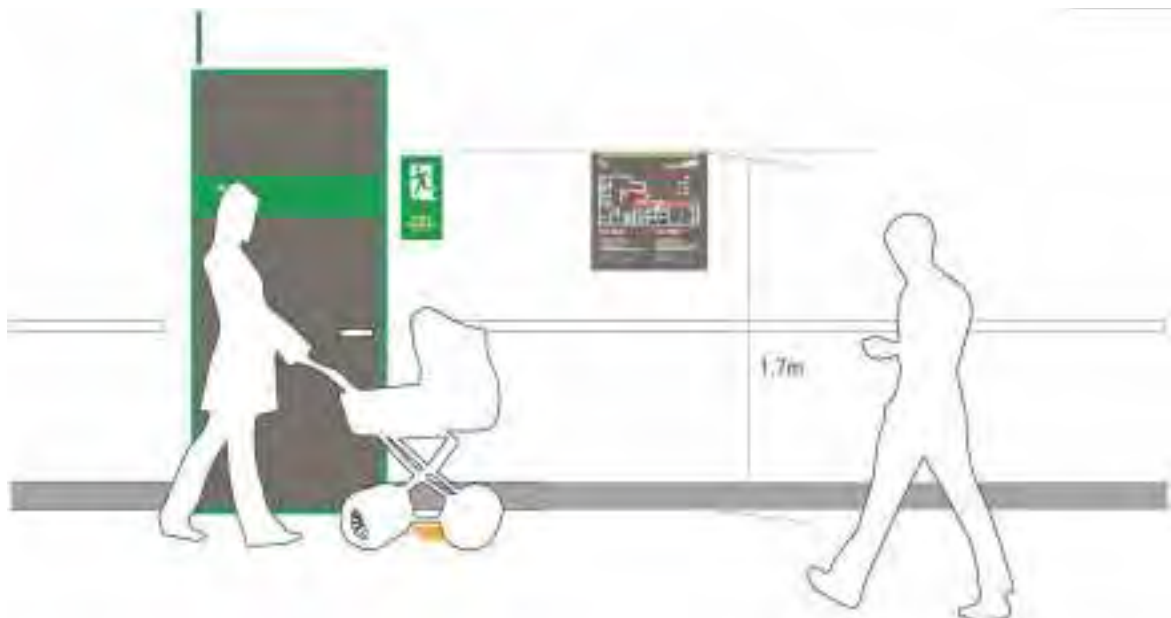
문자 및 테두리색
C0/M0/Y0/K0



강조색
C49/M0/Y76/K0



- 예시



(2) 소화전 안내사인

- 정의
 - 소화전 안내사인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소방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정보매체를 의미한다.
- 규격 및 설치방법
 - 다음의 크기와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하되, 소화전 규격에 맞추어 여백을 연장하거나 축소하여 적용한다.
 - 소화전을 열었을 때에도 사용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시설물에 시트지로 제작하며 야광재질을 활용한다.



구조체 및 배경색
C64/M56/Y57/K3



문자 및 테두리색
C0/M0/Y0/K0



강조색
C20/M93/Y82/K0



- 예시



참고자료

경관법 (201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주차장 법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용인시 경관 조례 (2019)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018)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2020)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0)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2)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가이드라인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2010)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2012)
경기도 유니버설가이드라인 디자인 개발 (2012)
경기도 인공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자전거 이용시설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2017)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1)
경기도 인공벽면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2)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2012)
용인시 공공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2010)
용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2010)
2030 용인시 경관기본계획
2030 용인시 야간경관계획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2018)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2010)
201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 사례집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19)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도시공원 및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환경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주차구역 표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행정 업무안내서 (2020)

발행처	용인시
발행부서	주택국 도시디자인과
발행일	2020. 9.

용인시	임도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종만	공공디자인팀장
	조학근	실무관
	김영	실무관
	문민홍	실무관

수행기관	(주)로커스파트너스
	김석훈 책임연구원

자문위원	채민규	명지대학교
	이준석	명지대학교
	성우철	단국대학교
	박희면	홍익대학교
	유용우	백석문화대학교
